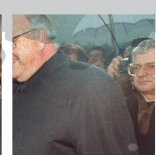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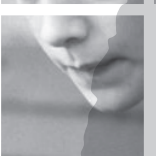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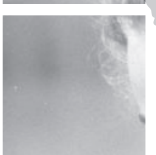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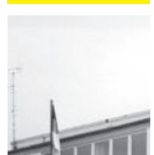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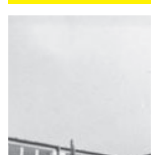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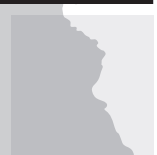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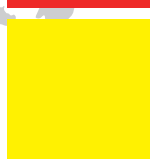


17 독일통일 총서  
교육통합 분야  
관련 정책문서



통일부



17

독일통일 총서

# 교육통합 분야

관련 정책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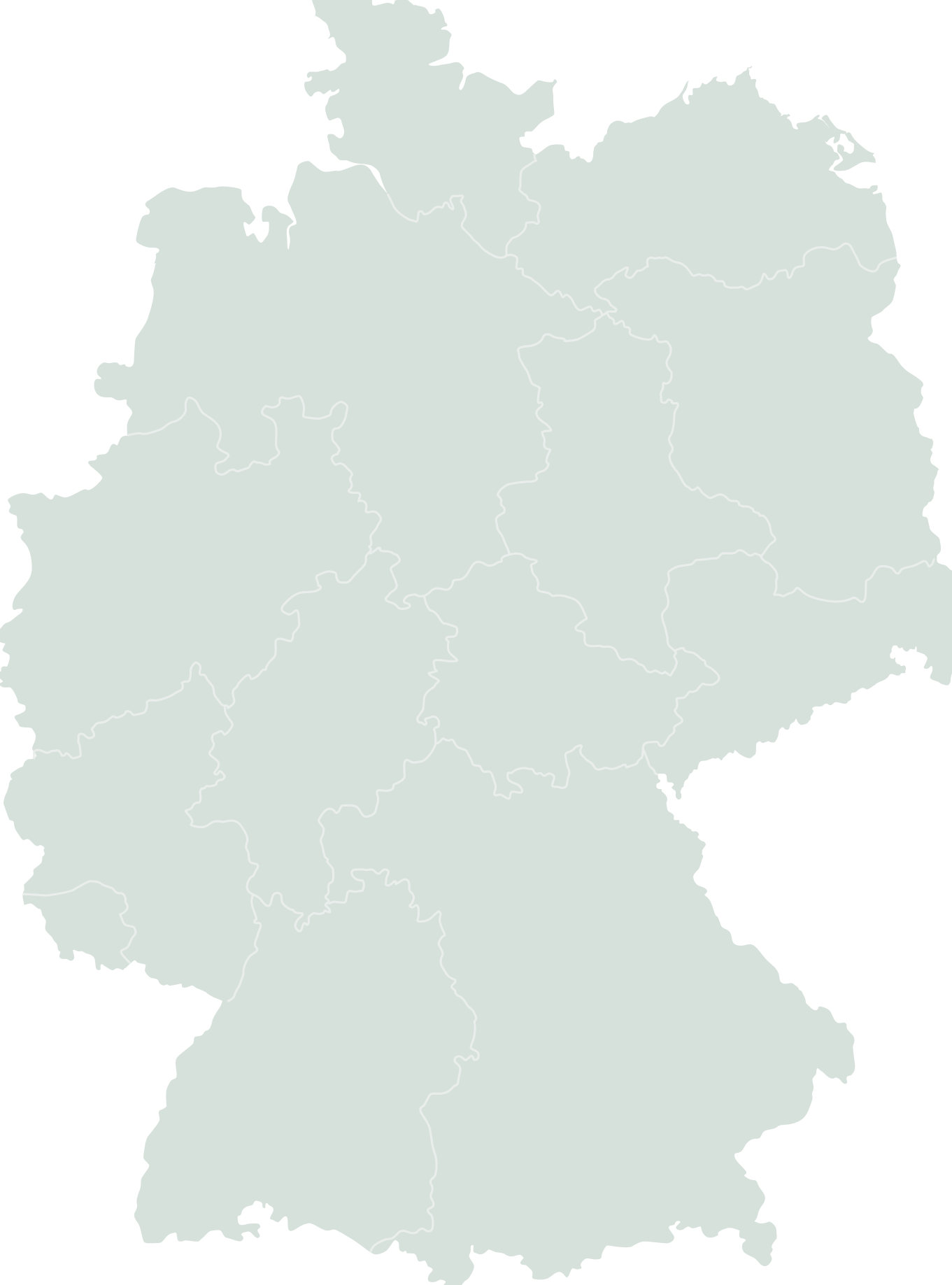
독일통일 총서 17

## 교육통합 분야 관련 정책문서

발행일 2016년 11월

발행처 통일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전화 02)2100-5757

디자인·제작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전화 02-2272-0307



# CONTENTS



## 독일의 교육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   |    |
|---|----|
| 제1장 서론  | 10 |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0 |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1 |
| 제2장 교육 분야 독일 통일 · 통합 개관   | 13 |
| 제1절 통일 전 동서독 교육   | 13 |
| 1. 통일 전 서독 교육   | 13 |
| 2. 통일 전 동독 교육   | 17 |
| 3. 통일 전 동서독 교육 비교   | 20 |
| 제2절 통일 전후 교육통합의 과정 : 베를린 장벽 붕괴(1989.11.9)에서<br>통일(1990.10.3)까지의 동독 교육개혁 | 21 |
| 1. 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 동독의 자체 개혁   | 23 |
| 2.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독지역의 공식적인 교육개혁 추진 과정                                   | 25 |
| 3. 동독지역 교육개혁에 대한 서독의 입장   | 29 |
| 4. 통일협상에서의 교육   | 30 |
| 제3절 동서독 교육통합 결과   | 33 |
| 1. 교육통합 개관  | 33 |
| 2. 영역별 교육통합   | 35 |
| 3. 교육통합 과정 요약   | 78 |

|                                    |     |
|------------------------------------|-----|
| 제3장 교육 분야 독일 통일 · 통합 연구 상황         | 79  |
| 제1절 한국에서의 연구 상황                    | 79  |
| 1. 연구물 현황                          | 79  |
| 2. 연구 주제                           | 80  |
| 3. 연구 특징                           | 80  |
| 제2절 향후 연구과제                        | 81  |
|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83  |
| 제1절 독일 교육통합이 주는 시사점                | 83  |
| 제2절 남북 교육통합 시 예상되는 이슈와 문제점         | 84  |
| 1. 단기적 이슈                          | 85  |
| 2. 중장기적 이슈                         | 86  |
| 제3절 남북 교육통합을 위해 준비하여야 할 사항         | 89  |
| 1. 통일 전 남북 교육통합 준비단계               | 89  |
| 2. 통일 직후 남북 교육통합 실행 단계             | 92  |
| 3. 통일 후 북한교육 개혁(재구조화) 방안           | 94  |
| 부록                                 |     |
| 1. 독일통일 전후 주요 교육 연표                | 101 |
| 2. 구동독지역 교육개혁을 위한 현안과제와 역할분담체제     | 104 |
| 3. 구동독지역 대학 학과(시설) 폐지, 신설 및 재정비 상황 | 107 |

# CONTENTS



## 정책문서를 통해 본 교육제도의 통합

|                                |            |
|--------------------------------|------------|
| 들어가며                           | 112        |
| <b>제1장</b> 교육제도의 통일 준비를 위한 기본틀 | <b>115</b> |
| 제1절 장벽 붕괴 후 변혁 초기의 교육개혁        | 115        |
| 제2절 동서독 공동교육위원회와 학술자문위원회의 활동   | 118        |
| 제3절 통일조약-37조, 38조              | 125        |
| <b>제2장</b> 학교제도의 통합            | <b>128</b> |
| 제1절 학교교육 체제의 개편                | 129        |
| 제2절 교과과정의 새로운 편성               | 135        |
| 제3절 대학 및 연구기관의 통합              | 138        |
| 1. 대학제도의 개혁과 대학의 설립            | 141        |
| 2. 전공과정의 신설 및 통폐합              | 146        |
| 3. 대학 외 연구소 및 학술원 연구기관의 통폐합    | 150        |
| 제4절 교육인력의 통합                   | 153        |
| 1. 학위 및 교사자격의 인정               | 153        |
| 2. 재임용 심사                      | 160        |
| 3. 급여체계의 통합                    | 163        |
| 나오며                            | 166        |



## 교육통합 분야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 170

문서 요약 192

문서 요약(문서번호 1~135) 192

독일어 원문 자료(CD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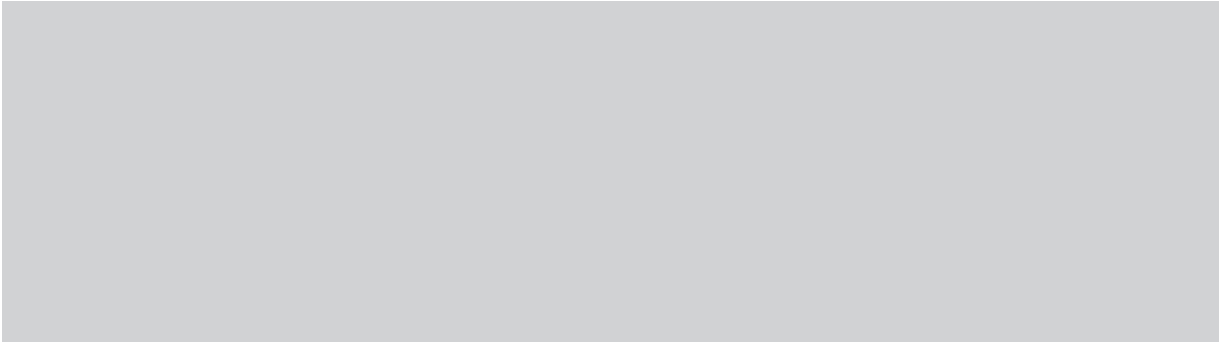


### 표 목차

|                               |    |
|-------------------------------|----|
| 표 1-1) 통일 전 동서독 교육 비교         | 20 |
| 표 1-2) 독일통일 전 주요 정치 현안 및 교육이슈 | 21 |
| 표 1-3) 동서독 각 주의 자매결연          | 34 |
| 표 1-4) 통일 후 교육시스템 통합          | 40 |
| 표 1-5) 구동독지역(신연방주) 교육과정의 변화   | 51 |
| 표 1-6) 통일 이후 해임된 동독출신 교원수     | 54 |
| 표 1-7) 통일 당시 동서독 대학교원 수       | 71 |
| 표 1-8) 동서독대학 신입생 수            | 72 |
| 표 1-9) 동서독 교육통합 과정 요약         | 78 |



교육통합 분야  
관련 정책문서



# 독일의 교육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김 창 환 (한국교육개발원)





# 제1장

##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독일은 세계의 중심 무대에 있지 않았다. 영국, 프랑스 등 다른 유럽의 나라에 비해 산업 발전이 뒤쳐진 나라였다. 정치적으로도 수백 개의 영주 국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힘을 통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독일은 전 세계의 중심 국가로 부상하였다. 강력한 군사대국이요,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였다.

그렇다면 독일이 짧은 기간에 세계의 대국으로 성장한 원인과 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 주요 요인을 교육과 과학, 기술의 발전에서 찾고 있다. 교육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들이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을 가져오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독일은 경제대국이요, 기술강국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그러한 독일은 동시에 인재강국이다.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가발전을 이루고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독일의 교육은 통일을 맞으면서 큰 도전을 받게 된다. 갑자기 온 통일과 더불어 교육 분야에서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되었다. 자유민주주의의 교육과 사회주의의 교육을 통합하는 역사적인 과업을 안게 된

것이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독일은 교육통합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었고, 독일의 교육이 갖고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국가발전과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전 세계는 세 나라의 리더십에 주목하고 있다. 전통적 강국인 미국, 떠오르는 강국인 중국, 그리고 유럽의 맹주 독일이다. 미국, 중국,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이다.

이렇게 현재 독일은 세계에서 강대국이다. 독일이 강대국으로 부상한 데에는 통일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통일 이전에 독일은 경제대국이었으나 정치대국은 아니었다. 통일 이후에는 탄탄한 경제를 기반으로 유럽의 중심 국가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풍부하지는 않으나, 탄탄한 교육제도를 바탕으로 국가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을 배출하며 국가발전을 이루었다.

통일을 통해 더 강한 나라가 된 독일은 교육통합을 어떻게 이루었을까? 교육통합 과정에서 많은 난관에 봉착하였을 텐데, 그러한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하였을까? 본 연구에서는 독일 교육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통일 이후 어떻게 통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 교육통합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며 통일 후 대한민국 교육통합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통일 전후 독일 교육통합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독일이 통일 되기 이전에 동서독의 교육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서독의 교육제도와 특징, 동독의 교육제도와 특징을 각각 살펴보고, 통일 전 동서독 교육제도를 비교하도록 하겠다.



둘째, 독일통일 과정 속에서 진행된 교육통합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베를린 장벽 붕괴(1989년 11월 9일) 이후 독일이 공식적으로 통일(1990년 10월 3일)될 때까지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 기간 동안 교육 각 영역의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이슈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독일 교육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결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교육이념, 교육시스템, 취학전교육, 초중등교육(학교제도, 교육과정, 교원, 학생), 직업교육, 고등교육, 교육행정체제 등으로 구분하여 동서독 교육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교육 분야 독일 통일·통합 연구 상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교육의 각 영역별로 이루어진 독일 교육통합 연구 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섯째, 독일의 교육통합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일 후 남북 교육통합 시 예상되는 이슈와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준비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 전후 독일 교육통합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문헌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하고, 국내에서 수행된 독일 교육통합 연구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통합 분야의 독일 주요 문헌과 정부 문서를 분석하고자 한다.

## 제2장

## 교육 분야 독일 통일·통합 개관

본 장에서는 독일의 통일에서 교육통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통일 전 동서독 교육을 먼저 살펴보고, 통일 이후 교육통합 과정 속에서 동독지역의 교육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고찰하도록 하겠다.

## 제1절 통일 전 동서독 교육

## 1. 통일 전 서독 교육

## 1) 서독의 국가 모델

선진국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모델이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가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인간의 삶의 질과 복지(welfare)를 강조하는 복지 모델이다.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자유와 평등의 균형 및 사회통합을 중시하는 사회민주주의(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이다. 중유럽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선진국 모델들은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대체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자유, 평등, 복지, 정의, 평화, 공생, 삶의 질, 사회의 질 등은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들이다. 이러한 가치는 통일한국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가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 모델 국가인 독일의 사회 시스템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다. 하나는 사회통합(균형과 조화)의 가치이다. 개인과 사회, 자유와 평등, 경쟁력 제고와 복지 확충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사회적 응집력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 시스템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는 달리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분배의 정의를 도모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와 시장의 역할 분담과 균형,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절충을 강조한다.

## 2) 서독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

서독의 국가 모델은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독일 헤센주 교육법<sup>1</sup>에 명시된 학교교육가치를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헌법적 가치이다. 독일의 헌법에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 그리고 교육권이 포함되어 있다.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존중하되, 평등한 기회 실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둘째는, 전통적 가치이다. 독일의 전통적 가치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기독교 정신과 인본주의적 전통을 보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는, 본질적 가치이다. 학생의 소질, 적성, 능력을 키워 전인으로 성장시키고, 진로·직업교육에 충실하려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담겨져 있다. 넷째는, 사회적 가치이다. 민주시민교육, 사회성 교육(존중, 관용, 정의, 연대), 성평등 교육, 다문화교육, 국제이해교육, 다양성 인정 및 차별 금지(소수자, 이민자 포함), 자연 환경 보존에 대한 책임 등을 강조하며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가치들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독의 교육시스템은 크게 세

.....  
<sup>1</sup> Hessisches Schulgesetz in der Fassung vom 14. Juni 2005(GVBl. I S. 441), zuletzt geändert durch Gesetz vom 24. März 2015.

가지 성격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다양성(제도 및 운영의 다양성), 효율성(제도 및 성과), 형평성(균등한 기회 제공)이 그것이다. 이러한 점은 교육제도에 서부터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이르기까지 구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서독의 교육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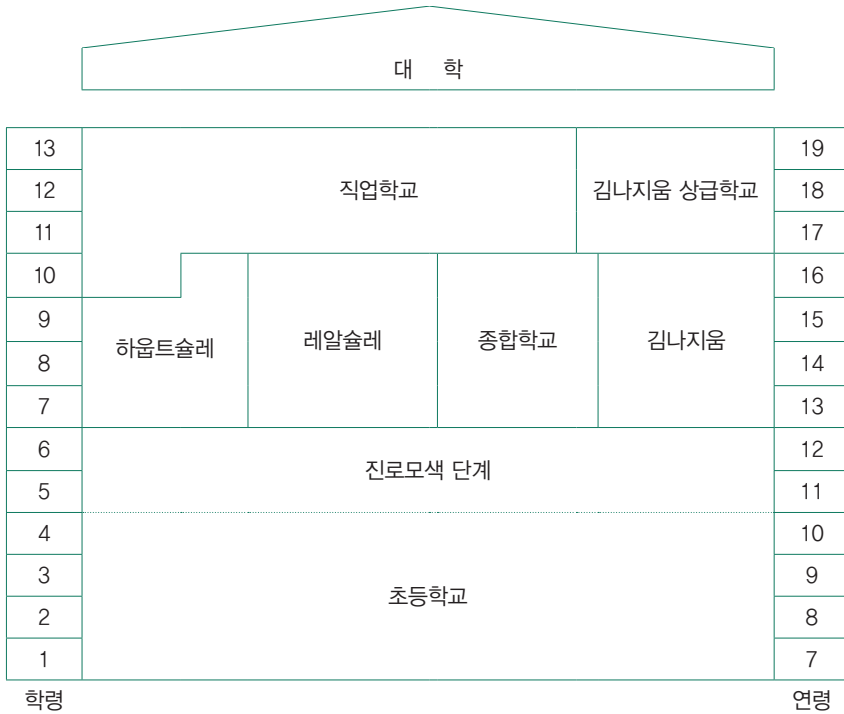
교육을 학제에 따라 구분할 경우 일반적으로 취학전 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학교), 중등교육(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교육(전문대학, 대학교)으로 나눈다. 통일 전 서독의 교육제도 역시 크게 보면 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등교육 부분에서 세 방향으로 분화되고 있다는 점이 독일 교육과 우리 교육의 차이점이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독일의 학생들은 하웁트슐레(Hauptschule), 레알슐레(Realschule), 김나지움(Gymnasium)으로 진학한다. 때문에 독일의 교육제도를 분화된 복선형 학제라고 부른다.

위의 기간학제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서독의 학제는 먼저 기초영역으로서 4년제 초등학교가 있다. 전기 중등학교로는 하웁트슐레(5~6년제), 레알슐레(6년제), 김나지움(6년제)이 있고, 하웁트슐레와 레알슐레의 경우는 이 단계에서 학업이 종료된다. 후기 중등학교로는 김나지움 상급반(3년제)과 직업학교(1-3년제)가 포함된다. 직업학교에는 하웁트슐레와 레알슐레 졸업생들이 진학하게 된다. 고등교육기관에 해당되는 대학에는 일반적으로 김나지움 상급반 졸업생들이 입학하게 되고,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계속해서 전문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일반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다. 구서독의 교육제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1) 구서독의 교육제도



\* 출처 : 김창환(2008). 인재강국 독일의 교육, p.24.

독일 기간학제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기회균등(평등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수준의 차이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동일한 교육을 받는다.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선에서 출발하도록 하고, 국민기본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즉,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다. 둘째, 수월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중등 단계에서부터 이 원칙이 적용되는데,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3가지 수준(우수 학생을 위한 김나지움, 보통 학생을 위한 레알슐레, 열등 학생을 위한 하업트슐레, 그리고 세 가지 형태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종합학교)으로 구분하여 능력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즉, 평등성의 기반 위에서 학생들의

능력에 부응하는 다양한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sup>2</sup>.

이렇게 볼 때, 서독의 교육제도에서는 수직적 다양화와 수평적 다양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능력 중심 교육관에 기초하여 학생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 다양하고도 차별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동일한 교육제도 내에서도 수평적인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를 중점학교 형태로 운영하여 언어김나지움, 사회김나지움, 경제김나지움, 수학김나지움, 과학김나지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 수준별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직적 다양화와 수평적 다양화를 바탕으로, 특성화는 있으나 서열화는 없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 2. 통일 전 동독 교육

### 1) 구동독 교육의 특징

통일 전 구동독은 한 마디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국가였다.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이 국가사회 전체를 지배하였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은 단지 도그마가 아니라, ‘행동을 이끄는 지침서’가 되어야 하며, ‘혁명적 정치를 이끄는 과학적 근거’로서의 구실을 하였다<sup>3</sup>. 교육 역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정치와 이념과 경제와 교육의 통합’이 구동독 사회주의 정권이 추구하던 핵심 원칙이었다<sup>4</sup>. 이 점은 교육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

<sup>2</sup> 김창환(2008). 인재강국 독일의 교육. 신정, p.25.

<sup>3</sup> Grundlagen des Marxismus-Leninismus. Lehrbuch, Berlin, 1960, p.7.

<sup>4</sup> S. Baske(Hrsg.)(1979). Bildungspolitik in der DDR, Berlin, p.69.



구동독의 교육정책은 독일 전체에 사회주의 국가를 완성하도록 학생들을 이념적으로 교화시키고 사회주의 인간으로 양성하는 것이었다. 구동독 교육법 제1장 제1조 1항에는 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은 전체 국민을 다면적이고 조화롭게 교육하여 사회주의 인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sup>5</sup> 이어서 2항에서는 “사회주의 교육제도는 시민들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기술적인 혁명을 이루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사회주의 인격을 갖추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인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독 국가가 건설되고 1989년 동독이 붕괴될 때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왔다.

통일 전 동독 교육의 기본 목적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 정책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학교교육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동독 당국은 ‘국가시민’ 교과를 정규교과로 채택하였다. 국가시민 교과 수업은 학생들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을 익히고 사회주의 혁명 과업을 완성해 가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끄는 과제를 갖고 있었다. 국가시민 교과는 정치이념교육으로서 학생들을 사회주의 시민으로 키우고,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공산주의 이상,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을 일깨워 사회주의 모국과 공산당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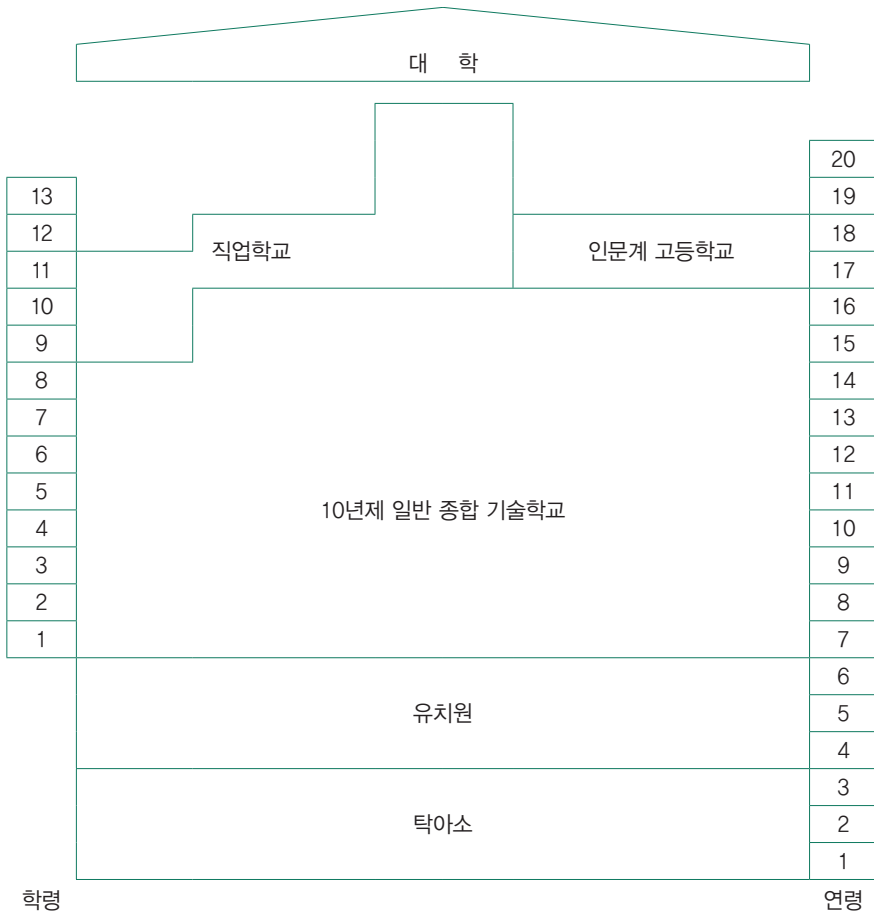
<sup>5</sup> Ministerium fuer Volksbildung(Hrsg.)(1988). Sozialistisches Bildungsrecht, Berlin, p.20.

<sup>6</sup> O. Anweiler(1988). Schulpolitik und Schulsystem in der DDR, Opladen.

## 2) 구동독의 교육제도

구동독의 교육제도는 서독과 같이 복선형 학교제도가 아니라, 단선형 학교제도를 갖고 있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한 10년제 일반 종합 기술학교(Polytechnische Oberschule: POS)와 더불어 2년제의 상급고등학교(Erweiterte Oberschule: EOS)(인문계와 직업학교)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림 1-2) 구동독의 학교제도



\* 출처 : O. Anweiler(1988). Schulpolitik und Schulsystem in der DDR, Opladen, p.128.



### 3. 통일 전 동서독 교육 비교

통일 전 서독과 동독에서 시행된 교육을 분야별로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통일 전 동서독 교육 비교

|        | 서독   | 동독  |
|--------|--|---|
| 교육의 이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유민주주의</li> <li>기독교적 정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산주의</li> </ul>  |
| 교육의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의 소질과 능력 개발</li> <li>민주시민으로서의 육성</li> <li>사회적 가치교육(자유, 평등, 정의, 평화 등)</li> <li>개인이 국가에 우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산주의 인간 육성</li> <li>사회주의적 가치 전달</li> <li>집단이 개인에 우선</li> </ul> |
| 교육자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정부의 교육주권 인정</li> <li>각 주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교육 실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집권적 교육제도</li> <li>공산당(SED)이 교육에 대한 전권을 행사</li> </ul>         |
| 학교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선형 학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선형 학제</li> <li>사립학교가 없음</li> </ul>                            |
| 직업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원적 교육체제(학교에서 이론교육을 하고 산업체에서 실습교육 실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의 통제 아래 기업 내 직업학교에서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실시</li> </ul>                |
| 고등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의 전문성과 자율성 강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주의 이념 교육</li> <li>사회주의 인간 양성</li> </ul>                      |
| 교육의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과(전공) 교육</li> <li>교과(전공) 외 활동</li> <li>종교교육 실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념교육</li> <li>군사교육</li> <li>집단교육</li> </ul>                    |
| 교육의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식 전수</li> <li>토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식 전수</li> <li>이념 교화</li> </ul>                                |

## 제2절 통일 전후 교육통합의 과정 : 베를린 장벽 붕괴(1989.11.9)에서 통일(1990.10.3)까지의 동독 교육개혁

1989년 11월 9일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년 후인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공식적으로 통일되었다. 동서독통일은 형식상 합의에 의한 통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독의 체제가 서독에 편입되는 흡수통일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교육에서의 통합은 사실상 서독식 교육제도가 동독에 적용되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통일 후 서독지역의 교육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동독의 교육은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사회주의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변한 것과 같이, 사회주의 교육체제가 민주적인 교육체제로 전환되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통일이 될 때까지 1년의 기간 동안 동독의 교육은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단계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1-2) 독일통일 전 주요 정치 현안 및 교육 이슈

| 연도          | 정치 현안                                       | 주요 교육 현안             | 비고   |
|-------------|---|----------------------|------|
| 1989. 10.18 | 동독 공산당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 사퇴, 에곤 크렌츠 신임 공산당 서기장 취임 |                      |      |
| 10.20       | 동독 교육부장관 마르곳 호네커(M. Honecker) 사퇴            |                      |      |
| 11.05       |   | ‘군사 교과’ 폐지 결정        | 긴급조치 |
| 11.06       |   | ‘국가시민 교과’ 폐지 결정      | 긴급조치 |
| 11.09       | 〈베를린 장벽 붕괴〉                                 |                      |      |
| 11.10       |   | 교육개혁을 위한 액션 프로그램 발표  |      |
| 11.13       | 한스 모드로우 신임 동독 수상 취임                         |                      |      |
| 11.17       |   | 한스 모드로우 수상이 교육개혁을 선언 |      |
| 11.23       |   | ‘주5일제 수업’ 도입         | 긴급조치 |
| 11.28       | 서독 콜 수상 동독 지원 〈10대 프로그램〉 제안                 |                      |      |
| 12.01       | 동독 〈헌법〉 개정                                  |                      |      |



|             |   |  |      |
|-------------|---|--|------|
| 12.19       | 동서독 수상이 <조약공동체 형성을 위한 의향서>에 합의  |  |      |
| 1990. 01.12 |   | 동서독 교육부장관 회합, 교육협력을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 합의                 |      |
| 02.21       |   | 1990년 2학기부터 '국가시민 교과'를 철폐하고, '사회 교과'를 설치             | 긴급조치 |
| 03.05       |   | 동독 시민단체로 구성된 <원탁회의>에서 교육개혁안 제시                       |      |
| 1990. 03.18 | 동독에서 처음으로 자유 총선거가 실시됨. 선거 결과 서독의 집권당인 기민당(CDU)과 연대한 정당그룹이 47.79%를 획득하여 승리 |  |      |
| 04.09       |   | 신임 로타 드 메지에르 동독 수상이 구 동독의 교육제도를 비판하고 새로운 교육제도 도입을 천명 |      |
| 05.01       |   | 동서독 교육부장관 회합, <동서독 교육위원회> 설치 합의                      |      |
| 05.10       |   | 동독 출신 학생들이 서독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허용                          | 이행조치 |
| 05.16       |   | 서독의 교과서를 동독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                             | 이행조치 |
| 05.18       | <동서독 화폐, 경제, 사회통합조약> 체결   |  |      |
| 05.30       |   | <학교 지도부에 대한 규정> 공포                                   | 이행조치 |
| 05.30       |   | <교육청 설립에 관한 규정> 공포                                   | 이행조치 |
| 06.06       |   | <직장유치원, 직업교육기관에 관한 규정> 공포                            | 이행조치 |
| 06.13       |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지침> 제정                                   | 이행조치 |
| 06.17       | <동독헌법>이 개정되면서 동독의 평화로운 민주혁명이 법적으로 완성                                      |  |      |
| 07.19       |   | <서독 직업교육법의 동독지역 적용에 관한 법률> 제정                        | 이행조치 |
| 07.22       |   | 잠정 <사립학교법> 제정  | 잠정조치 |
| 08.01       |   | <사립 보육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이행조치 |
| 08.31       | <통일조약> 체결   |  |      |

|             |        |                                       |      |
|-------------|--------|---------------------------------------|------|
| 09.18       |        | 〈잡정 학교규정〉 제정. 이 규정은 1991년 6월 30일까지 유효 | 잡정조치 |
| 09.18       |        | 〈잡정 교원양성규정〉 제정                        | 잡정조치 |
| 1990. 10.03 | 〈독일통일〉 |                                       |      |

- \* 긴급조치(1989.10.18.~1990.3.17) : 베를린 장벽 붕괴 전후, 동독주민들의 개혁 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동독정부가 긴급히 취한 조치  
 이행조치(1990.3.18~1990.10.3) : 동서독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취한 조치(서독식의 교육제도 도입이 주 내용)  
 잡정조치(1990.10.3~1991.6.30) : 동서독 통일 이후, 주교육부가 교육관련 법을 정식으로 제정하기 이전에 임시로 취한 조치(규정이나 법)

## 1. 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 동독의 자체 개혁

1985년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등장하면서 동구권에는 개혁과 개방의 바람이 불었다.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일부 동구권 국가들은 고르바초프의 정책에 부응하여 개혁·개방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나 동독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보다는 폐쇄정책으로 일관하였다. 동독 공산당은 독자적인 사회주의 노선을 유지하였다. 구동독의 교육 역시 사회주의체제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사회주의 인간을 양성하는 사회주의 이념 교육 형태로 이루어졌다. 교사들에게는 학생들이 사회주의적 인격을 갖추고 사회주의 이념을 현실에 구현하도록 하는 과제가 부여되었다. 1986년 4월 개최된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동독교사는 학생들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에 기초한 신념에 기초하여 창조적인 생각과 주체적인 행동을 하도록 지도할 것’을 촉구하였다<sup>7</sup>. 동독정부의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집착은 베를린 장벽 붕괴(1989년 11월 9일)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1989년 가을에 동독시민들의 대규모 탈출과 이주 행렬이 계속되면서 개혁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었으나, 동독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

<sup>7</sup> H. W. Fuchs, L. R. Reuter(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p.56.





동독정부의 반개혁 자세에도 불구하고 1989년 가을 동독체제를 비판하는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드디어 1989년 11월 2일 동독 교육부장관 마르곳 호네커(Margot Honecker)가 공식적으로 사퇴하였다. 이와 함께 교사, 학생, 학부모, 학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동독의 교육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였다.

동독의 개혁그룹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활동하기도 하면서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이 당시 제시된 개혁안은 1970-1980년대 동독의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제안된 것들이었다<sup>8</sup>. 1978/1979학년도부터 시작된 군사 교과가 비판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개혁자들은 1986년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연구그룹을 결성하고 동독 교과서를 분석하여 이데올로기에 지배된 교과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교육의 이데올로기화, 청소년연맹(FDJ)의 활동, 사회주의에 대한 맹세 등이 특히 비판대상으로 떠올랐다.

1989년 6월에 개최된 ‘제9차 교육학 대회’에서 구동독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되었다<sup>9</sup>. 동독의 사회주의 세계관 교육이 핵심 비판대상이 되었다. 특히, 역사 교과, 국가시민 교과, 독일문학 등의 교과 교육이 비판 대상이 되었다.

1989년 가을과 겨울 사이에 수많은 재야단체 및 시민단체가 결성되어 활동하였다. 또한 ‘원탁회의(Runde Tische)’와 같은 포럼이 결성되어 개혁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sup>10</sup>. 그들은 특별히 사회주의적 단일교육체제를 비판하였다. 이 가운데 ‘신(新) 포럼(das Neus Forum)’은 1989년 10월 1일 사회개혁안

<sup>8</sup> Eva-Maria Kabisch(2016). Umstrukturierung des Bildungssystems in den neuen Bundeslaendern nach 1989,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195.

<sup>9</sup> H. W. Fuchs, L. R. Reuter(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p.82.

<sup>10</sup> Eva-Maria Kabisch(2016). Umstrukturierung des Bildungssystems in den neuen Bundeslaendern nach 1989,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196.

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어 교육개혁안도 발표하였다. 다양성, 기회균등, 열린 세계관 등이 핵심 개혁 원칙으로 제시되었다<sup>11</sup>. ‘원탁회의’ 역시 1990년 3월 5일 교육개혁에 대한 포지션페이퍼를 발표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정, 평생교육권, 민주적인 참여 등의 내용을 법으로 보장할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제기되었던 교육개혁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sup>12</sup>.

- 유아보육 및 교육 분야 :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교육의 개혁
- 일반 학교교육 분야 :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교육법 개정, 교육과정의 탈이념화, 외국어 교육 개혁, 교육목적의 쇄신, 다양한 교과목 설치, 예술과 음악교육의 강화, 종교수업 허용 등
- 교사 분야 : 교사의 교육적 자유 보장

## 2.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독지역의 공식적인 교육개혁 추진 과정

베를린 장벽 붕괴 전후 동독의 공식 교육정책에도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변화의 시작은 1989년 10월 17일 동독 공산당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 서기장이 사퇴하고, 1989년 11월 2일 동독 교육부장관 마르곳 호네커가 공식 사퇴하면서 시작되었다. 마르곳 호네커의 후임으로 교육부차관 이었던 귄터 폭스(Guenther Fuchs)가 임명되었다. 취임 후 그는 즉각적으로

.....  
<sup>11</sup> H. W. Fuchs, L. R. Reuter(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p.83.

<sup>12</sup> H. W. Fuchs, L. R. Reuter(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pp.13-14.



군사 교과를 폐지하겠다고 천명하였다<sup>13</sup>.

1989년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제10차 동독 공산당 대회가 개최되었다. 동독 공산당은 대회를 폐막하면서 11월 10일 동독의 개혁을 위한 액션 프로그램(Aktionsprogramm)을 발표하였다. 이 액션 프로그램에는 교육개혁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는데, 군사 교과 폐지, 주5일제 수업 도입 등이 포함되었다.

1989년 11월 13일 한스 모드로우(Hans Modrow)가 동독 수상에 취임하였다. 모드로우는 한스-하인즈 에몬스(Hans-Heinz Emons)를 동독 교육부장관에 임명하였다. 모드로우는 11월 17일 정부담화문을 발표하고, 동독 정치의 근본적인 쇄신을 천명하였고, 사회주의 혁신을 위해서는 교육개혁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교육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하였다<sup>14</sup>.

1989년 말부터 1990년 초에 동독의 변화는 빠르게 이어졌다. 동독 공산당이 붕괴되고, 자유독일청년연맹(FDJ)<sup>15</sup> 등 정부 기관들이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수많은 조직원들이 이탈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청소년 조직인 에른스트 텔만(Ernst Thaelmann)<sup>16</sup> 역시 1990년 3월에 해체되었다.

1990년 3월 동독 교육부에서 ‘교육개혁에 관한 테제(Thesen zur Bildungsreform)’를 발표하였다. 이 테제에는 야당이 주장하였던 주요 교육개혁

.....

<sup>13</sup> H. W. Fuchs, L. R. Reuter(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p.152.

<sup>14</sup> 김진숙·박은아·정채관·김창환(2015).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연구(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104.

<sup>15</sup> 자유독일청년연맹은 북한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과 유사한 조직이다. 8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청소년이 가입할 수 있는 대중조직으로 동독 청소년 조직을 대표한다(Huettmann, Jens(2016). Politische Erziehung in der DDR,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11).

<sup>16</sup> 에른스트 텔만(Ernst Thälmann) 연맹은 유소년들을 위한 학생 조직이다. 북한의 조선소년단과 유사한 조직이다. 에른스트 텔만 연맹은 자유독일청년연맹의 지도를 받으며 1학년부터 7학년까지의 어린이들이 가입대상이다(Huettmann, Jens(2016). Politische Erziehung in der DDR, 제 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11).

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교육의 기회 균등 보장, 학부모의 교육권 인정, 학교와 당의 분리, 교육내용의 탈이데올로기화, 교육의 다양성 확보 등이 핵심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었다<sup>17</sup>.

1990년 3월 18일 동독에서 처음으로 자유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자유 총선거는 교육개혁의 전환점이 되었다. 선거 결과 서독의 집권당인 기독교민주당(CDU)과 연대한 정당그룹이 47.79%를 획득하여 승리하였다. 1990년 4월 9일 신임 로타 드 메지에르(R. d. Maiziere) 동독 수상은 하루 속히 독일 통일을 이루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천명하고, 서독의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는 구동독의 교육제도를 비판하고 새로운 교육제도 도입을 천명하였다. 관료주의적인 국가 통제를 제거하고, 교육제도를 다양화하고,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각 주의 교육주권을 인정하는 등의 개혁을 천명하였다.

총선에서 승리한 로타 드 메지에르 정부가 들어서자 개혁 조치들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당시 국내외 정세가 동서독통일로 급격히 선회하면서 각종 교육개혁 조치들이 추진되었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과도기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긴급조치’ 또는 통일 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행조치’들의 성격을 띠었다.

1990년 5월 30일 제정된 ‘학교 지도부에 대한 규정’에 의거하여 공산당 당원이었던 학교장과 교감은 해고되었다. 이 규정에서는 새로운 지도체제로서 교사, 학생, 학부모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였다. 1990년 5월 30일에 제정된 ‘교육청 설립에 관한 잠정 규정’은 주교육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교육청 조직 구성에 대한 것을 규정하였다. 구동독 시절의 지방자치단체 대신에 주교육위원회와 지방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하였다. 1990년 6월 14일 제정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

<sup>17</sup> H. W. Fuchs, L. R. Reuter(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p.12.



지침'에서는 학교지도부 선거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은 서독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여 적용하였다.

1990년 6월 6일 제정된 '직장 유치원 정상화에 관한 규정'은 당시 혼란스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이었다. 통일 직후 화폐, 경제통합 등의 영향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구동독의 많은 기업들이 몰락하면서, 동독의 기업들은 더 이상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유치원이 폐쇄되었다. 직장 폐쇄와 유치원 폐쇄로 인하여 많은 여성들이 실직하고 집에서 어린이를 돌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구동독에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동독사회에 커다란 혼란과 불만을 낳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독 교육부는 동독 유치원을 폐쇄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도 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통일조약'에도 포함되었고, 통일 후 동독 5개 주정부가 교육법에 명시할 때까지 유효하게 적용되었다.

1990년 7월 22일 동독의회에서 제정된 '사립학교법'은 동독 교육제도 개혁의 중대한 조치였다. 모든 학교가 국가 교육기관이었던 사회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국가 외의 기관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잠정 학교규정', '잠정 교원양성규정' 등은 199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은 1991년 6월 이전에 새로운 교육법에 의해 대체되었다.

서독 주교육부장관회의(KMK)에서 1990년 10월 5일 제정한 '구동독에서 획득한 교원자격증의 인정에 관한 잠정규정'은 교원자격증의 인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었다. 동독 교원자격증은 제1차 임용시험 합격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고, 구동독 당시 취득한 중등교원자격은 중등1단계(중학교)까지만 인정하고, 2년 간 진행되는 교원연수원 교육의 기간을 줄여주는 특혜를 구동독 교원자격증 취득자에게 부여하였다. 구동독 교원이 중등2단계(고

등학교) 교원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할 것을 규정하였다.

### 3. 동독지역 교육개혁에 대한 서독의 입장

구동독의 교육개혁은 서독측의 관심사이기도 하였다.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인 1989년 11월 28일 서독 헬무트 콜(Helmut Kohl) 수상은 동독을 지원하기 위한 ‘10대 프로그램(10-Punkte-Programm)’을 제안하였다. 동독에 한스 모드로우(Hans Modrow) 정부가 들어서자 1989년 12월 19-20일 서독 콜 수상과 동독 모드로우 수상은 동서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약공동체 형성을 위한 의향서’에 합의하였다. 서독의 연방정부, 지방정부, 지자체, 정당, 노조, 단체, 협회(학회) 등 각종 기관들도 동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별히 동독의 유관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 1월부터 이러한 협력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동서독 민간 단체 간의 협력은 1986년 5월에 제정된 ‘동서독 문화협정(Kulturabkommen)’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1990년 1월 12일 서독 교육부장관 위르겐 뮐레만(Juergen Moellemann)과 동독 교육부장관 한스-하인츠 에몬스(Hans-Heinz Emons)가 최초로 만나 동서독 교육정책 아젠다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작업반(deutsch-deutsche Arbeitsgruppe)을 조직하기로 합의하였다.

서독 주문교부장관회의(Kulturministerkonferenz, 약자 KMK)는 1990년 2월 19일 교육 분야에서 동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천명하였다. 특히 KMK는 통일 후 실질적으로 제기된 이슈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동독 학력인정 문제, 동독에서 취득한 자격인정 문제 등을 심의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1990년 3월 18일에 실시된 동독 총선거 이후 서독측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동독 수상이 조속히 통일을 하는 것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자,



서독측의 대응도 빨라지기 시작하였다. 서독의 협회, 단체들은 동독측의 파트너 기관들을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서기 시작하였다<sup>18</sup>.

#### 4. 통일협상에서의 교육

1990년 5월 16일 서독 교육부장관 뮐레만과 동독 교육부장관 한스-요아킴 마이어(Hans- Joachim Meyer)가 만나 ‘동서독 교육위원회(deutsche-deutsche Bildungskommission)’를 설치할 것에 합의하였다<sup>19</sup>. 이 위원회는 동서독 교육제도의 통합을 준비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었다. 동독 교육의 혁신, 동서독 교환-협력 프로그램, 동독 직업인의 서독 이주, 동독에서 취득한 자격의 인정 등이 주요 이슈가 되었다.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 교육 통합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가 핵심 논의의 주제가 되었다. 서독측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대표가 절반씩 참여하였다. 이 위원회 산하에 4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일반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 평생교육 소위원회가 그것이다. 또한 영역 초월 주제로서 교육통계, 도서관제도 등의 주제가 논의되었다.

동독측은 이 위원회에서 동독 교육의 현대화와 더불어, 동독의 학자들이 서독으로 이주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응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반면, 서독측에서는 동독 교육개혁을 인적, 물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화폐-경제통합으로 야기된 동독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동독의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서독의 직업교육제도를 동독에 이식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sup>20</sup>.

.....

<sup>18</sup> 김진숙·박은아·정채관·김창환(2015).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연구(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106.

<sup>19</sup> Eva-Maria Kabisch(2016). Umstrukturierung des Bildungssystems in den neuen Bundeslaendern nach 1989,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198.

<sup>20</sup> H. W. Fuchs, L. R. Reuter(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p.201.

이 위원회는 1990년 5월부터 9월까지 활동하며 동독 교육제도의 개혁과 통일 교육제도를 만드는 일들을 추진하였다. 9월 26일 활동을 종료하며 위원회는 향후 과제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일반교육 분야에서는 기회균등과 통일성의 원칙 아래 새로운 교육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의무교육 연한 확대, 중등교육 단계의 다양화, 대학입학시험 규정 개선, 교원 양성제도 개선 등의 개혁안도 제시하였다. 직업교육 분야에서는 서독식의 직업교육제도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동독지역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위원회의 공식 활동은 동서독이 1990년 10월 3일 통일이 되면서 마무리되었다. 세부적인 개혁안은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주정부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다.

‘동서독 교육위원회’와 더불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위원회가 가동되었다. 정부 당국자가 참여하는 ‘정부위원회’는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되었다. 1990년 8월 31일 동서독의 ‘통일조약’이 체결되었다. ‘통일조약’은 향후 동서독통일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조약이었다. 통일조약은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이루면서 통일 후에 예상되는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통일조약은 특히 동독지역 내에서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통일조약 제37조에는 교육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구동독 시절 획득한 자격을 승인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핵심 사항이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 통일조약은 동독 내에서 습득한 학력과 학위의 인정 문제, 교원 채용을 위한 시험과 그 절차, 기능훈련생의 자격증, 학제 변경에 관한 규정, 대학생들의 진학, 대학 진학 자격 등에 관한 조항을 두었다<sup>21</sup>.

.....  
<sup>21</sup> 한만길·김창환·정지웅(1998).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p.113.





〈통일조약(1990년 8월 31일) 제37조: 교육〉

- (1) 구동독에서 취득한 국가 학력(초중등학교졸업, 직업학교졸업, 대학졸업)과 자격은 통일 후 동독지역에서 동일하게 인정된다. 구 동독과 구서독에서 취득한 시험이나 증명서는 동일한 가치로 인정될 경우 전체 독일지역에서 동등하게 인정된다.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약에서 다루는 학력이나 자격인정 문제는 독일 연방정부와 유럽공동체의 법적 근거에 우선권을 부여 한다. 기존에 승인되거나 부여된 학문적 타이틀, 등급, 명칭 등은 그대로 인정된다.
- (2) 교사자격은 주문교부장관회의(KMK)에서 별도의 심사를 하여 승인절차를 밟는다. 주문교부장관회의는 관련된 경과규정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 (3) 직업교육을 통해 이수한 자격과 직업학교 졸업시험 증명서 또는 도제시험합격 증명서는 동일하게 인정된다.
- (4) 동독지역의 학교제도 변경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은 동독지역 주정부가 결정하도록 한다. 동독지역 학교 졸업에 대한 인정심사 관련 규정은 주문교부장관회의(KMK)에서 합의될 것이다. 이러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구서독 시절 맺은 함부르크 협정과 주문교부장관회의 결의안들이 기초가 될 것이다.
- (5) 대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대학을 옮기려고 할 때에는, 구서독의 디플롬시험규정(ABD) 또는 국가시험규정에 근거하여 지금까지의 학업과 시험결과를 검토하여 승인한다.

(6) 구동독 시절 취득한 엔지니어학교 및 전문학교 졸업장을 기초로 대학입학자격을 신청하면 주문교부장관회의(1990년 5월 10일) 결정에 기초하여 인정된다. 구동독 시절 취득한 대학졸업장을 승인하는 문제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는 주문교부장관회의에서 정하도록 한다.

서독측은 구동독에서 취득한 학력이나 자격에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비교적 관대하게 동독의 자격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통일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구동독의 학력이나 자격이 당시 서독 및 유럽연합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동등하게 인정되지는 않았다. 동등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조건 인정한다기보다는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주문교부장관회의(KMK)는 세부 규정을 만들어야 했다. 또한 필요한 경과규정들을 마련하여 구동독지역(신연방주)에서 교육제도가 완비될 때까지 교육통합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려고 노력하였다.

### 제3절 동서독 교육통합 결과

#### 1. 교육통합 개관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의 교육은 5개 주정부의 책임 하에 놓이게 되었다. 서독에서는 교육이 연방정부가 아니라 각 주정부의 소관사항이었는데, 그러한 점이 동독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동독지역의 교육은 이제 국가의 책임에서 각 주정부의 책임으로 바뀌었다.

동독지역 각 주정부들은 잠정적인 경과조치들을 취하며 당면 과제를 해



결해 나갔다. 이러한 잠정조치들은 항구적인 ‘교육법’이 만들어지기까지 한 시적으로 적용되었다. 동독지역의 주정부들은 나름 독자적인 형태로 교육개혁 조치들을 취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큰 틀에서 서독식의 교육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5개 주의 교육시스템은 유사한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동독지역의 각 주정부들은 교육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서독지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통일조약 35조에는 서독지역의 주정부가 동독지역 주정부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동서독지역 주정부는 상호 자매결연을 맺고 협력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는 서독의 쉘레스비히-홀슈타인, 함부르크, 브레멘 등 3개 주의 지원을 받았다. 브란덴부르크주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베를린, 헤센 등 3개 주의 지원을 받았다. 작센-안할트주는 서독의 니더작센과 헤센주의 지원을 받았다. 튀링겐주는 서독의 라인란트-팔츠, 헤센, 바이에른주의 도움을 받았다. 작센주는 서독의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헤센주의 도움을 받았다<sup>22</sup>.

표 1-3) 동서독 각 주의 자매결연

| 동 독          | 서 독                    |
|--------------|------------------------|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함부르크, 브레멘  |
| 브란덴부르크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베를린, 헤센   |
| 작센-안할트       | 니더작센, 헤센               |
| 튀링겐          | 라인란트-팔츠, 헤센, 바이에른      |
| 작센           | 바이에른, 헤센, 특히 바덴-뷔르템베르크 |

.....  
<sup>22</sup> H. W. Fuchs, L. R. Reuter(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p.26.

서독지역의 주정부는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독일교육 시스템을 재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동서독지역이 상호협력하며 동독 시스템을 개혁해 나갔다. 서독지역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동독체제의 전환 과정은 쉽지 않았다.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동독의 교육은 조금씩 변해갔다. 1994년까지 동독의 새로운 교육체계가 정비되었으나, 이후에도 내적인 개혁과 변화는 상당 시간이 더 소요되어야 했다.

주정부뿐 아니라, 지방행정부 차원에서도 자매결연과 상호협력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구동독은 구서독의 인적, 물적 지원 및 조언과 자문을 받아 교육의 구조를 새롭게 짜기 시작했다. 새로운 교육법을 제정하고, 교육제도를 만들고, 교육 각 분야에서 개혁을 단행하였다.

많은 서독 전문가들의 다방면에 걸친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동독지역(신연방주의) 교육행정 구축은 많은 난점을 초래하였고, 전환과정도 주에 따라 소요시간 및 개혁의 폭 등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1994년까지 구조적이고 법률적인 개혁은 거의 완료되었으나, 내부적인 쇄신과 적응의 문제는 계속 남아 있었다.

## 2. 영역별 교육통합

독일통일 이후 교육통합은 동독의 교육시스템이 서독식으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서독의 교육시스템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동독의 교육시스템은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주로 동독을 중심으로 교육시스템의 구조 개혁을 정리해 살펴보고자 하겠다<sup>23</sup>.

.....

<sup>23</sup> H. W. Fuchs, L. R. Reuter(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pp.13-21.



### 1) 교육이념 통합

교육이념 통합은 구동독의 이념교육이 해체되고 서독식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통합이 이루어졌다.

구동독체제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모든 교육활동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교육의 목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세뇌(Indoktrination)하는 것에 놓였다. 사회주의 교육원리에 따른 획일적인 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을 상실하게 하고, 무비판적이고, 순응적이고, 획일적인 인간을 길러냈다.

따라서 통일 후 교육에서는 편중된 이데올로기 교육내용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교육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민주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별히 학생들의 독창성과 자율성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이 강조되었다<sup>24</sup>.

### 2) 교육시스템 통합

교육시스템 통합은 구동독의 시스템이 붕괴하고, 서독식의 교육시스템이 구동독지역으로 확장되는 형태를 취하였다.

통일 이전에 서독의 교육시스템은 45년 동안 제도 구축, 팽창, 현대화, 개혁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그러나 통일 후 동독지역의 경우 단시간 안에 서독식의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정착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법, 제도, 인력,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 모든 측면이 한꺼번에 변화되어야 했다.

특히 교육적 자유의 결여, 학생의 피동적인 수업 참여, 교사에 대한 각종 평가 및 통제가 핵심 비판대상으로 떠올랐다. 더불어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교육법 개정, 교육과정(특히 국가시민 교

.....  
<sup>24</sup> 한만길·김창환·정지웅(1998).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p.116.

과, 역사, 지리, 독일문학사)의 탈이데올로기화, 외국어 교육 개혁, 교육목적의 쇄신(예; 자율성, 독자성, 인간주의적 가치, 민주법치국가 시민의식 형성), 다양한 교과목 설치, 예술과 음악교육의 강화, 종교수업 허용 등이 개혁 대상이 되었다.

동독사회 전체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학교의 내적 구조의 민주화가 요청되었다. 학교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특별히 새로운 학교법의 제정이 필요하였다. 그와 함께 국가와 당이 분리되고, 이념교육이 폐지되었다. 학생들의 관심과 요구에 따른 교육활동이 장려되었다.

1989년 12월 1일 단행된 헌법개정에 따라 국가와 당이 분리되었고, 이와 더불어 공산당의 감독 규정이 폐지되었다. 학교의 이데올로기 교육이 폐지되었고, 교사 교육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1989년 가을부터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토요일에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주5일제 수업이 시작되었고, 구동독의회는 1989년 12월 ‘주5일제 수업’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였다. 동독 시절의 ‘학교규정(Schulordnung)’은 폐지되고, 새로운 (잠정) 학교규정(Schulordnung)이 1990년 9월 18일에 통과되었다. 이 학교규정은 1991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였다.

1989/1990학년도 말까지 대학입학자격도 변경되었다. 구동독에서 시행되었던 대학입학자격 수를 제한하는 조치(쿼터제)가 폐지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대학에서 공부할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대학입학 요건을 학부모의 신청과,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완화했다.

교육기관에서의 국가적 청소년 조직(자유독일청년연맹 등)을 철폐하고, 다양한 청소년 조직들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립학교도 세워졌다. 구동독의 헌법에서는 국가만이 교육에 독점 권한을 갖고 있었다. 국가 외에 다른 기관이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구동독 붕괴 후 일반교육과 취학 전 교육 분야에서 일반국민들의 사



립학교 건립에 대한 희망이 높아졌다. 특히 서독의 발도르프 학교가 강하게 요구하였다. 1990년 7월 22일 동독의회는 잠정적인 ‘사립학교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새로운 사립학교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사립학교의 설립을 승인하는 것이 골자였다.

1990년 10월에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1990/1991학년도는 과거 방식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구동독의 교육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교육내용은 서독식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다양한 경과조치들이 취해질 수밖에 없었다.

동독지역 교육제도 혁신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었다. 하나는, 동독사회가 민주사회로 전환되고, 현대화되는 데 있어 교육이 기여하는 것이었다<sup>25</sup>. 다른 하나는, 새로운 민주적이고 현대적인 교육제도, 교육내용, 교육방법들이 학교를 통하여 가정에도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내용적, 방법적, 인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구동독의 교육제도는 신속히 서독식으로 변해야 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동독지역의 상황과 동독지역 주민의 요구는 거의 반영되지 못하였다. 또한 주문교부장관회의(KMK)에서 주요 사항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동독지역 주정부의 자율적인 역할도 미미하였다.

1990년 10월 14일 동독에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에서 시행된 첫 지방선거였다. 지방선거 후에 5개 지방정부가 구성되었다. 동독지역 주정부는 각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였다. 무엇보다 법을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정규법을 제정하는 데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한시적인 잠정 조치가 단행되었다. ‘잠정교육법’은 통일 1년 후인 1991/1992학년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잠정교육법’의 유효 기간은 2-3년으로 정하였다. 다만 예외적으

.....  
<sup>25</sup> H. W. Fuchs, L. R. Reuter(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p.28.

로 작센주의 경우에는 1991년 7월 3일 조기에 정식 ‘교육법’을 제정하였다.

교육의 영역에 따라 ‘유아보육법’, ‘학교법’, ‘사립학교법’, ‘직업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교육법들은 대체적으로 1992-1994년 사이에 제정되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1992년 5월 28일 ‘교육법’이 공포되었는데, 그 내용은 서독지역의 ‘교육법’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sup>26</sup>. 통일 후 4년 정도가 지나면서 독일의 교육통합 작업은 제도적으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동독지역의 교육법들은 이제 서독지역의 교육법들과 거의 유사하게 되었다. 교육제도의 기본적 틀 역시 서독의 제도와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되었다.

통일 후 구동독지역 교육시스템의 변화와 관련하여 특히 네 가지 점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 왔다. 첫째, 학교제도의 변화이다. 동독의 단선형 교육제도가 서독식의 복선형 교육제도로 변하였다. 둘째,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의 변화이다. 교육목적의 개혁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다. 구동독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구현하고, 사회주의 인간을 육성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sup>27</sup>. 그러한 교육이념과 목적은 이제 폐지되었고,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구현하는 새로운 교육목적이 설정되었다. 학교의 교육 목적은 새로 제정된 ‘교육법’에 담겨졌다. 셋째, 학부모의 교육권을 인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개혁 과제였다. 구동독 시절에는 국가가 학생이 다니는 학교를 결정하고, 학생의 진로를 결정하였다. 국가의 경제계획, 계급, 당성이 더 이상 진학의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서독지역과 같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이 보장되었고, 그것은 새로운 ‘교육법’에 규정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학부모의 교육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학교 수용여건이 불충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적(작센주)이나 입학시험(튀링겐주)을 치러

.....  
<sup>26</sup> 권이중·양도원·허정무·안이환(1995). 통독 전후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분석 연구: Brandenburg 주정부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독일통일교육과정연구위원회, pp.219-249.

<sup>27</sup> Grundlagen des Marxismus-Leninismus. Lehrbuch, 1960, p.7.





진학하기도 하였다. 넷째, 사립학교 역시 개혁의 핵심 내용이 되었다. 구동독 시절에는 사립학교가 없었다. 모든 학교를 국가가 관리하였다. 그러나 구서독의 경우 사립학교가 존재하였다. 통일 이후 동독지역 주정부들은 ‘사립학교법’을 제정하여 사립학교 설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교회가 설립한 학교, 특정한 사상에 기초하여 설립된 학교(발도르프 학교), 스포츠학교, 영재학교 등의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 사립학교는 일반적으로 별도의 입학시험을 치러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표 1-4) 통일 후 교육시스템 통합

|      | 구동독     | 통일 후 교육시스템     |
|------|---------|----------------|
| 교육제도 | 단선형     | 복선형(다양성)       |
| 교육목적 | 사회주의 교육 | 자유민주주의 교육      |
| 교육권  | 국가      | 학부모            |
| 신설   |         | 사립학교법, 주5일제 수업 |

### 3) 취학 전 교육 분야 통합

취학 전 교육 분야 통합은 구동독의 교육이 사라지고, 서독식의 취학 전 교육시스템이 구동독지역에 적용되는 형태를 취하였다.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 취학 전 교육 분야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에 따른 지배 이데올로기 교육이 주요 비판대상으로 떠올랐다. 구동독의 취학 전 교육은 어린이들을 사회주의적 지배 이데올로기로 교육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자녀를 탁아소에 맡기지 않을 수 없었으며, 국가는 노동력의 확보와 함께 어린이들에 대한 이데올로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취학 전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통일 후 이와 같은 취학 전 교육기관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어렵게 되었으며, 또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아무런 비판능력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시켰던 점은 커다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미 1989년 가을에 ‘유치원에서의 교육활동을 위한 프로그램(Pro-

gramm für Erziehungs- und Bildungsarbeit im Kindergarten)'이 시행되었으며 교육을 정치적 목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이 이루어졌다. 유치원의 새로운 과제에 대한 적응과 함께 1990년에는 공장의 유치원과 전일제 탁아소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급속하게 나빠지고 있는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많은 공장들이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면서 공장에 부설된 유아교육기관들을 폐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여성 근로자들(전체 여성의 약 절반 가량)이 상당히 많았던 동독에서는 공장 부설 탁아소가 문을 닫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었다. 이에 동독의 로타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ere) 총리는 1990년 4월 19일자로 현재의 유아교육기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정부의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으며, 이후 염려할 만한 유아교육기관의 축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 10월 3일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유아보육 분야는 큰 타격을 받았다. 통일 직후 동독지역 상당수의 탁아소들이 폐쇄되었다. 더불어 탁아교사를 양성하는 기관들도 문을 닫았고, 지방의 공공기관들이 탁아 기능을 넘겨받았다. 지금까지 탁아소를 관리하던 탁아연합회도 해체되었다. 이렇게 되자 탁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고, 이는 상당 기간 동안 논란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통일 이후 교육통합 과정에서 서독측이 동독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실책 가운데 하나로 토론되기도 하였다.

동독지역 주정부들은 1991년부터 '유치원법' 또는 '유아보육법'을 제정하였다. 유아 관련 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아보육 및 교육을 사회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교육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부모의 양육권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국가가 아니라 부모가 유아보육 및 교육의 1차적인 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유아보육 및 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는 유아보육 및 교육의 담지자를 다원화하는 것이었다. 1990년 통일 전까지 동독지역의 유아보육 및 교



육기관은 국영기업 또는 공영기업이었다. 그러나 유아보육 및 교육의 담지자를 교회 등 민간에게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개혁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서독 지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민간의 역할을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동독지역에서 그러한 변화를 일시에 가져오기는 어려웠다. 유아보육 및 교육 담지자가 점차 다양화되기는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컸다. 민간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수요가 급감한 것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유아보육 및 교육에 대한 수요가 통일 이후 급감하였다. 통일 후 동독지역의 탁아소와 유치원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특히 탁아소가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그 주요 원인은 운영비 문제 때문이었다. 통일 후 경쟁력을 상실한 많은 기업체들이 도산하면서, 기업체가 운영하던 탁아소는 문을 닫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유아교육기관에 맡겨진 어린이의 50%가 감소하였다. 또한 많은 젊은이들이 서독으로 이주하였고, 출산율이 저하되었고, 더불어 여성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유아보육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러한 경향은 유치원에서도 유사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sup>28</sup>. 교육기관이 줄어들면서 당시 동독의 취업여성들은 자녀의 보육 문제로 곤란을 겪게 되었다. 더욱이 동독여성의 상당수가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보육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유아교사의 실직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다.

#### 4) 초중등교육 분야 통합

##### (1) 학교제도 통합

통일 이후 학교제도 통합은 서독식의 학교제도를 구동독지역에서 받아

.....  
<sup>28</sup> H. W. Fuchs, L. R. Reuter(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p.27.

들이는 방식으로 통합이 이루어졌다. 구동독의 통일된 학교제도가 사라지고, 구동독지역의 5개 주별로 서독의 다양한 학교제도를 도입하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구동독의 교육제도가 단일성을 띠고 있었다면 구서독의 교육제도는 각 주별로 독자성을 띠고 있었다. 구서독과 마찬가지로 구동독지역(신연방주)의 교육주권이 인정되고 존중되는 차원에서 구동독지역(신연방주)의 교육제도는 통일 후 각 주별로 상이하게 구성되었다.

통일 이후 학교제도와 운영에 있어 기초가 되는 학교법의 제정이 중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구동독지역(신연방주)에서는 1991/1992학년 초부터 적용되는 ‘과도기적인 학교개혁법’ 또는 ‘교육법’이 제정되었다. 과도기적인 학교개혁법은 1993년부터 점차적으로 학교법으로 대체되었다. 통일 이후 구체제의 사회주의적이고 통일적인 학교제도의 개편작업 역시 1991/1992학년 초에 착수되었고, 작센주는 1년 후에 개편되었다.

초등교육 분야에서는 통일 이후 5개의 신연방주(구동독지역)가 1964년 서독에서 일반학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함부르크 협정(Hamburger Abkommen)’에 따라 4년제의 초등교육체제를 도입하였다.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에서는 베를린과 마찬가지로 6년제 초등학교제도가 도입되었다. 신연방주 모든 곳에서 학교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전일제 학교제도가 운영되었다.

구동독지역의 중등학교는 학교형태가 서독과 같이 분화되지 않고 통일되고 획일적인 형태로서의 10년제 종합기술학교(Polytechnische Oberschule: POS)와 2년제의 확대고등학교(Erweiterte Oberschule: EOS) 형태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통일 후 동독의 이 같은 획일적 학교제도는 사라지고 서독과 같이 분화된 형태의 학교제도로 개편하였다.

종합기술학교와 확대고등학교는 새로운 형태의 분화된 고등학교가 설립될 때까지는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하였으며, 2년제의 확대고등학교(EOS)는



1992/1993학년도 초에 김나지움 상급반(gymnasiale Oberstufe)으로 개편되었으며, 일부 주에서는 1993년 여름까지는 과거 동독의 확대고등학교 시험규정에 따라 졸업시험을 봄으로써 대학입학자격(Abitur)을 인정하였다. 이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서 동독지역에서 학교를 다닌 청소년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중등 1단계에서는 구서독의 교육제도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구서독의 하웁트슐레(Hauptschule), 레알슐레(Realschule), 김나지움(Gymnasium), 종합학교(Gesamtschule)<sup>29</sup>가 기간 학제로 수용되었다. 수업 연한은 각 주별로 약간씩 차이가 난다.

중등 2단계 학교는 김나지움 상급반과 직업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역시 구서독의 교육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고 있고, 특이한 점은 주에 따라 김나지움 상급반이 10-12학년(일반적으로 11-13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sup>30</sup>.

학제 개혁을 구동독지역 각 주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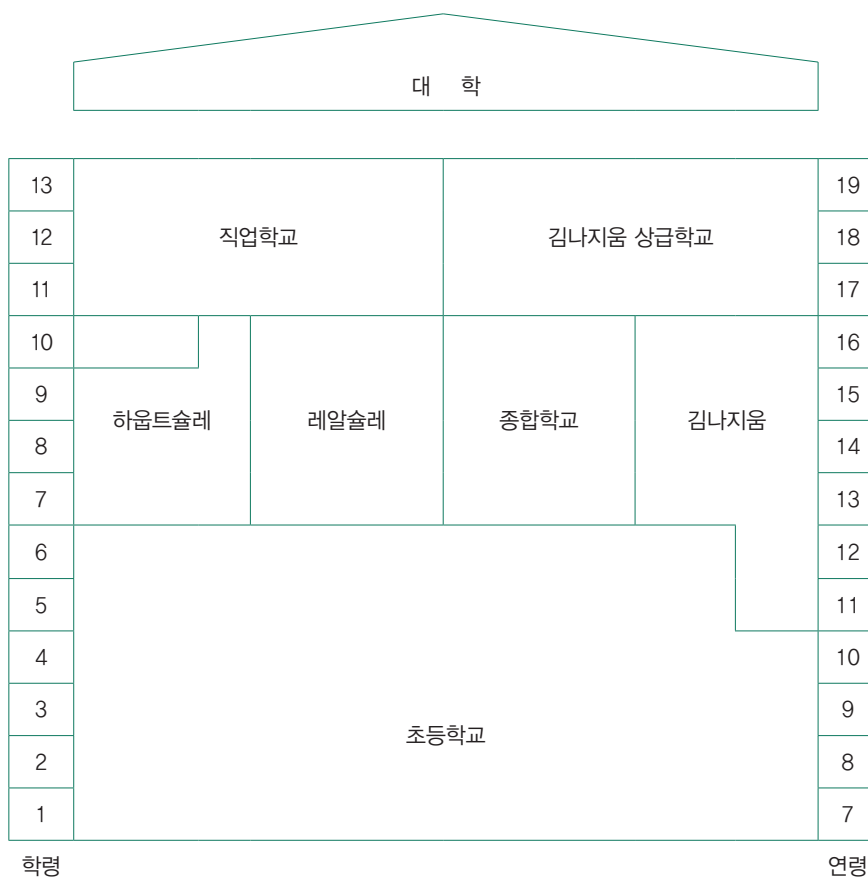
브란덴부르크주를 제외하고 모든 신연방주에서는 중등교육이 5학년에 시작된다. 모든 주에서 김나지움은 다 설치되었다. 과거 서독에 있던 3원제 학교 형태(하웁트슐레, 레알슐레, 김나지움) 및 종합학교제도가 신연방주에도 거의 그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중등 1단계 교육기관으로서의 하웁트슐레와 레알슐레는 신연방주에서 그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서 열등학교를 의미하므로 사용하지를 꺼리고 있었다. 그래서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에서는 아예 하웁트슐레라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작센(Sachsen)주에

.....  
<sup>29</sup> 하웁트슐레는 초등학교 졸업 후 학업성취도가 열등한 학생 가운데 약 30%가, 레알슐레는 중간 정도의 학업성취도를 보인 학생 약 30%가, 김나지움은 높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낸 학생 약 30%가 진학하는 중등학교이고, 종합학교는 위 세 가지 학교의 형태를 통합해 운영하는 학교이다.

<sup>30</sup> Eva-Maria Kabisch(2016). Umstrukturierung des Bildungssystems in den neuen Bundeslaendern nach 1989,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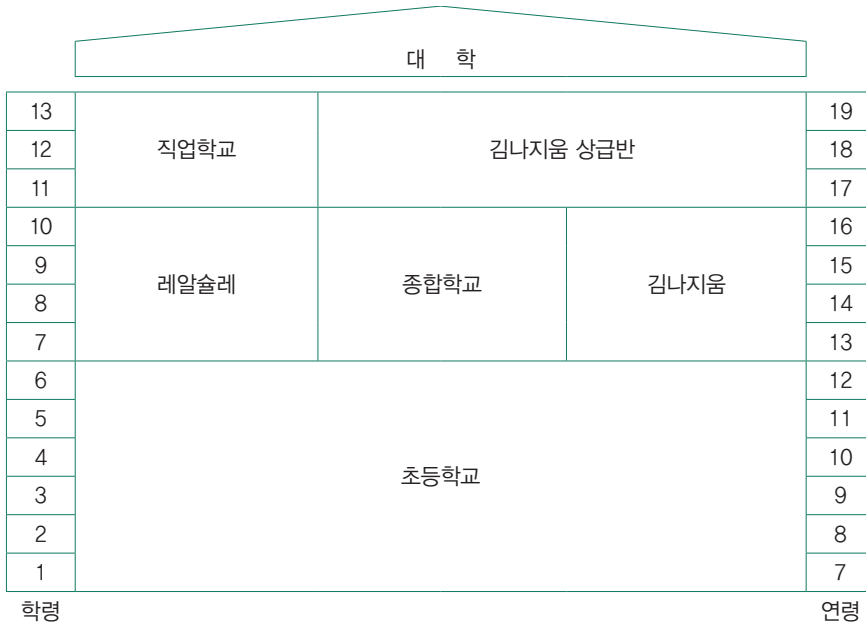
서는 중간학교(Mittelschule)로,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주에서는 중등학교(Sekundarschule)로, 튀링겐(Thüringen)주에서는 레겔슐레(Regel-schule)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하웁트슐레와 레알슐레를 통합한 형태의 중등 1단계 학교 형태를 도입하였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주에서는 서독의 학교형태와 똑같이 하웁트슐레, 레알슐레, 김나지움, 종합학교의 학교 형태를 모두 도입하였다.

그림 1-3> 베를린(Berlin)주 학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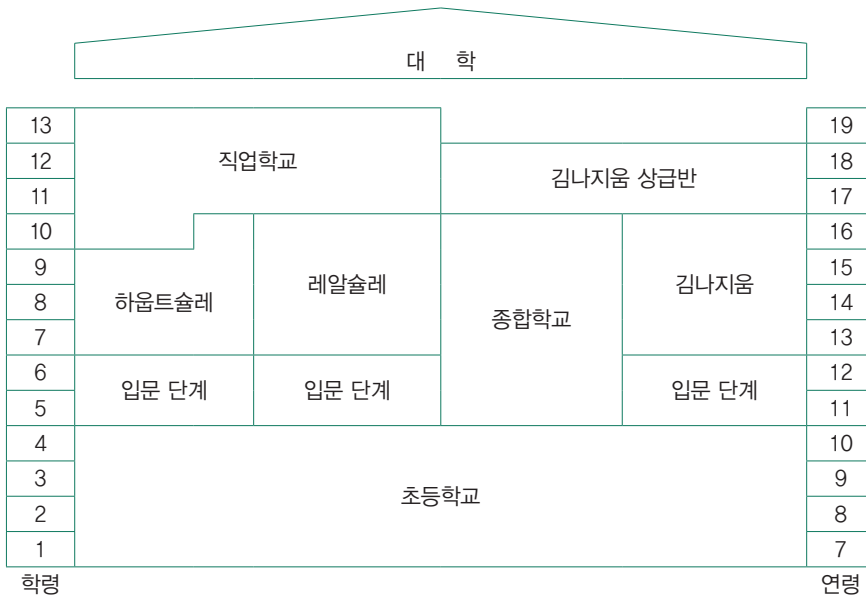
\* 출처 : 한만길·김창환·정지웅(1998).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p.119.

그림 1-4)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 학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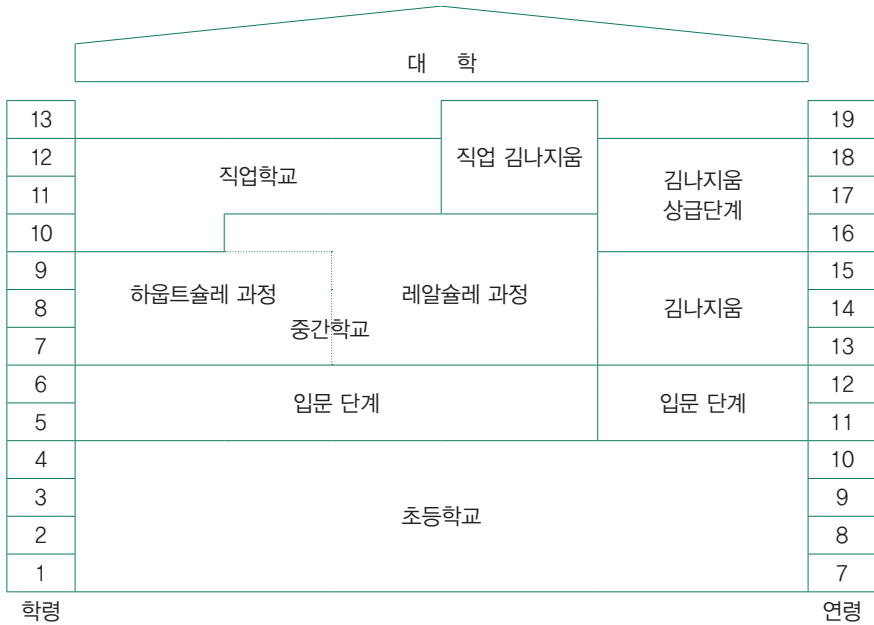
\* 출처 : 한만길·김창환·정지웅(1998).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p.120.

그림 1-5)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주 학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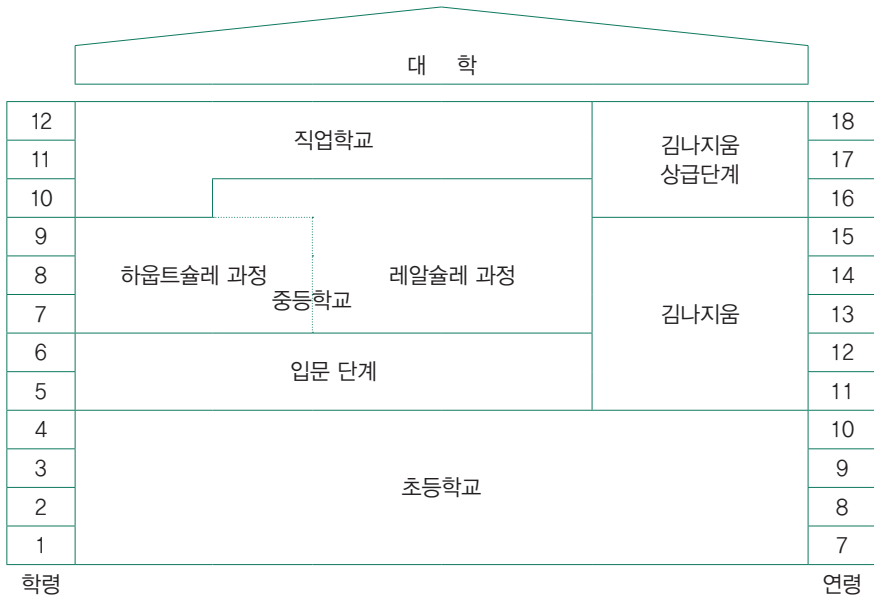
\* 출처 : 한만길·김창환·정지웅(1998).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p.120.

그림 1-6) 작센(Sachsen)주 학교제도



\* 출처 : 한만길·김창환·정지웅(1998).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p.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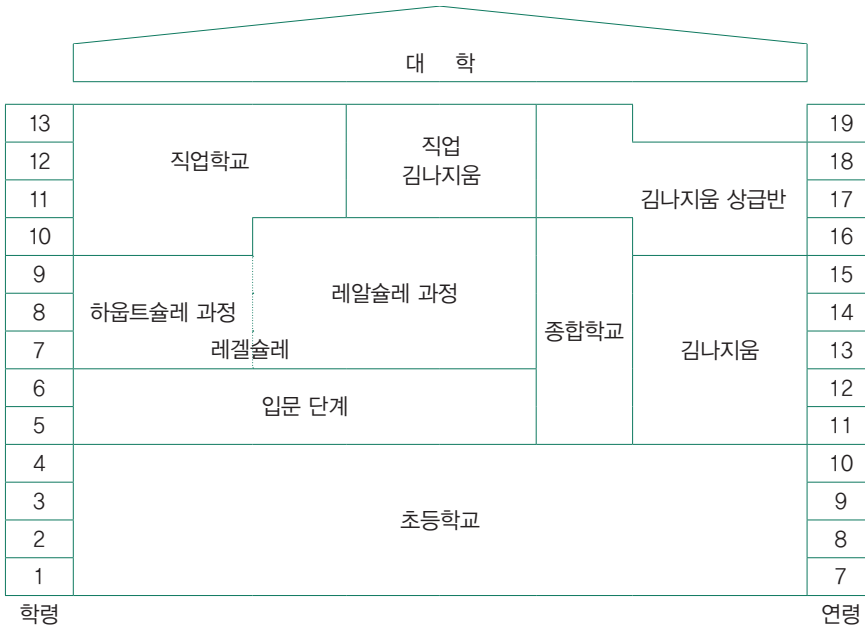
그림 1-7)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주 학교제도



\* 출처 : 한만길·김창환·정지웅(1998).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p.121.



그림 1-8) 튜링겐(Tueringen)주 학교제도



\* 출처 : 한만길·김창환·정지웅(1998).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p.122.

모든 구동독지역(신연방주)에서는 학생의 진로결정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고 어떤 종류의 학교에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김나지움에 보내고 싶어했으며, 김나지움의 수는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든 학생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기초학교에서 상급학교, 특히 김나지움으로 진학하려고 할 때에는 부모의 욕구뿐만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고려하거나(작센주), 일정한 형태의 입학시험(튜링겐주)을 통하여 선발하는 수밖에 없었다.

중등 1단계의 교육을 마친 학생들은 중등 2단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는 김나지움 상급반(gymnasiale Oberstufe)뿐만 아니라 직업교육도 해당한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중등 2단계의 교육을 받고 아비투어 시험을 합격해야 하는데, 김나지움 이외의 학교에서도 아비투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김나지움과 종합학교에 각기 고유한 상급반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베를린과 마찬가지로 김나지움 상급반과는 따로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을 동시에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전문대학 입학자격(Fachhochschulreife)을 부여하거나 또는 직업교육 및 아비투어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직업 김나지움, 전문 김나지움). 인구가 밀집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여러 김나지움이 연대하여 하나의 상급반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주에서도 김나지움이 아닌 종합학교에도 김나지움 상급반의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학 입학자격(Hochschulreife)의 취득은 직업교육기관, 예컨대 직업 김나지움(berufliches Gymnasium)을 통해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베를린(Berlin)과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동독지역(신연방주)에서는 12년 만에 아비투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대한 서독지역의 비판은 무척 많았으나, 기존의 동독교육을 존중해주고, 전 세계적으로 12년 간의 중등교육이 일반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12년 만에 아비투어 시험을 보고 이를 서독의 13년제 아비투어와 전혀 구별하거나 차별을 두지 않기로 하였다.

## (2) 교육과정 통합

통일 후 동서독 교육과정 통합은 서독의 교육과정을 구동독지역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구동독지역의 교육과정은 폐지되거나 변경되거나 신규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 ‘군사 교과’가 제일 먼저 개혁대상이 되었다. ‘군사 교과’는 1990학년도부터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이데올로기 교과인 ‘국가시민 교과’ 역시 폐지되고, 해당 교사의 재량 아래 수업계획안을 편성해 가르치도록 하였다. 이 교과는 나중에 ‘사회 교



과’로 대체되었다. 1990년 3월 1일 ‘사회 교과 기본계획안’이 만들어지고, 1990/1991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정치교육 시간에 정치, 사회적 주제와 더불어 철학, 심리, 윤리적 문제들이 다루어졌다. 교과서는 동독 교과서 대신 서독 교과서가 사용되었다.

1990/1991학년도부터 외국어 교육도 변화였다. 그동안 제1외국어로서 필수 교과였던 러시아어가 더 이상 제1외국어가 아니고, 영어, 프랑스어와 함께 필수선택 과목으로 바뀌었다. 1990/1991년에는 5학년 학생들의 90%가 영어를 제1외국어로 선택하였다<sup>31</sup>. 제1외국어가 러시아어에서 영어로 바뀌면서 영어 교사가 부족하게 되었다. 급한 대로 러시아어 교사를 재교육시켜 영어 교사로 활용하였다.

구동독에서는 교육에서 노동을 매우 중시하였다. 이론과 실천이 연계되고 학습과 노동이 연계되는 교육을 ‘폴리테크닉 수업(polytechnischer Unterricht)’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동독의 초중등학교는 ‘폴리테크닉 학교’로 불리었다. 폴리테크닉 수업은 사회주의경제를 뒷받침하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이는 통일 이후 비판을 받게 된다. 동독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이었던 종합기술(polytechnisch) 수업원칙의 존속 또는 폐지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금 당장 폐지하지는 않더라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맞추어 내용상의 변화는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폴리테크닉 교육 형식은 잠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내용으로 변화를 맞게 된다. ‘사회주의 생산 입문’이라는 교과는 ‘기술·경제 교과’로 대체되었다.

동독 교육부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교과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1990년 3월 ‘개인 생활(Gestaltung des persönlichen Lebens)’이라는 교육과정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또한 서독과 같이

.....  
<sup>31</sup> Eva-Maria Kabisch(2016). Umstrukturierung des Bildungssystems in den neuen Bundesländern nach 1989,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198.

‘종교수업’ 교과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어, 종교와 윤리 과목이 정식 과목으로 채택되었다.

구동독 교육과정이 통일 이후 변화된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동독의 교과는 존속, 폐지, 변경, 추가의 과정을 거쳐 변화되었는데,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교과는 존속되었고, 이념 교과는 폐지 또는 변경되었고, 영어와 종교 교과는 신규로 도입되었다.

표 1-5) 구동독지역(신연방주) 교육과정의 변화

| 통일 전 동독 교과목 | 교과 변화 | 내용 변화   | 변경 내역                |
|-------------|-------|---------|----------------------|
| 국어(독일어)     | 존속    | 변경(서독식) | 이념 제거                |
| 러시아어        | 변경    |         | 제1외국어 → 제2외국어        |
| 수학          | 존속    | 변경(서독식) |                      |
| 물리          | 존속    | 변경(서독식) |                      |
| 천문          | 존속    | 존속      |                      |
| 화학          | 존속    | 변경(서독식) |                      |
| 생물          | 존속    | 변경(서독식) |                      |
| 지리          | 존속    | 변경(서독식) |                      |
| 작업          | 폐지    |         |                      |
| 학교정원가꾸기     | 폐지    |         |                      |
| 폴리테크닉 수업    | 폐지    | 변경      | 경제, 기술, 가정으로 대체      |
| 1) 생산활동입문   | 폐지    | 변경      | 경제, 기술로 대체           |
| 2) 기술설계     | 폐지    | 변경      | 경제, 기술로 대체           |
| 3) 생산활동     | 폐지    | 변경      | 경제, 기술로 대체           |
| 역사          | 존속    | 변경      | 내용이 대폭 수정            |
| 국가사민 교과     | 폐지    | 변경      | 사회로 대체               |
| 미술          | 존속    | 변경(서독식) |                      |
| 음악          | 존속    | 변경(서독식) |                      |
| 스포츠         | 존속    | 변경(서독식) |                      |
| 바느질         | 폐지    | 변경      | 가정으로 대체              |
| 제2외국어       | 존속    | 변경(서독식) | 프랑스어, 라틴어, 그리스어 등 신설 |
| 영어          | 신규    | 신규      | 제1외국어                |
| 종교/윤리       | 신규    | 신규      |                      |

\* 출처 : 김진숙·박은아·정채관·김창환(2015).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연구(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117.



교과서 사용과 관련해서는, 통일 이후에도 잠정적으로 구동독 시대의 교과서를 사용하였다. 특별히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색채가 없는 수학과 같은 과목에서는 옛날 교과서를 당분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이념성이 강한 교과목, 즉 국어, 역사, 사회에서는 잠정적인 혹은 추가적인 교재를 사용하였다. 역사 교과에서는 서독의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영어와 같이 새로 생긴 교과목의 경우는 바로 서독의 교과서를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정 지출은 서독정부가 담당하였다<sup>32</sup>. 연방정부는 약 6,000만 마르크를 투입하여 1990/1991년 겨울학기예 독일어, 역사, 정치, 경제, 영어 및 직업 교육 교과서 250만 권을 일반학교의 상급학년에 공급하였다.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학교를 위한 교육과정 기본계획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서독의 교육전문가와 구동독의 교사들이 이 작업에 참여하였다. 잠정적 교육과정 기본계획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과목에 따라 구동독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시행한 경우도 있고, 구서독의 교육과정을 도입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고려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첫째, 구동독지역의 교사와 학생들은 오랫동안 사회주의체제 아래서 교육받고, 성장하고, 생활하며, 사회주의적 가치체제와 행동방식에 젖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학교 교육내용에서도 사회주의적 가치관 주입교육이 강조되었으며, 교육방법도 획일적이어서 학생들의 개성이 상실되고 독창성과 창의성이 무시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이다. 교사 역시 주어진 틀에서 가르치고 생활하여, 독자적인 수업계획안을 만들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다.

.....  
<sup>32</sup> 한만길·김창환·정지웅(1998).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p.124

셋째, 외국어 교육이 전반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이다. 구동독에서는 러시아어만 외국어로 학습하였다. 따라서 언어 교육을 강조하는 구서독의 교육과정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직업교육 역시 취약 분야이다. 직업교육이 공업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서비스산업 직업교육이 미약했고, 교과 내용에서도 상업, 회계 등의 과목이 없었다.

다섯째, 현대 국제화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구동독 학생들은 현대사회의 다원화된 사회구조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유럽연합 등 국제관계에서 고립된 지식을 갖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교육하는 것이 예상 외로 어려웠고, 새로운 사회구조에 적응하고 민주적인 갈등극복에 관한 효율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구동독지역) 각 주는 서독의 도움을 받아 교육과정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신연방주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은 구동독의 교육과정과는 많이 달랐고, 구서독과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무엇보다 교사의 교육적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었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상당한 수준의 개방성과 교육학적·교수학적·방법적 자율공간'<sup>33</sup>을 제공하였다.

### (3) 교원(교직원) 통합

통일 후 교원 통합은 구서독식의 교원 양성, 임용, 연수 시스템이 구동독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구동독지역 교원은 해고되거나 재교육을 받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구동독지역(신연방주)은 새로운 제도에 맞춰 교사를 양성하

.....

<sup>33</sup> 김상무(2012). 독일통일 이후 신연방주의 교육내용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사상연구회, 교육사상연구. 제26권. 제3호. p.28.



고,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사직을 마련해야 했다. 기존 교사는 각 주별로 심사를 거쳐 재임용 등을 결정하고, 재교육·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정치·사회 교과 교사들은 자유민주정치, 법률, 시장경제 등에 관한 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교직에 잔류가 가능하였다. 교육 분야에서 검증을 받은 총 인력은 약 218,523명이었고, 이 가운데 해고된 인력은 약 36,677명으로 20% 이상에 해당하였다. 가장 중요한 해고 사유는 ‘전문능력 부족’이었고, ‘국가보위부(슈타지) 연루’로 인한 해고는 전체 인원의 10% 정도를 차지하였다.

표 1-6) 통일 이후 해임된 동독출신 교원수

| 구동독지역(신연방주)  | 전체 교원 수(명) | 해임된 교원 수(명) |
|--------------|------------|-------------|
| 브란덴부르크       | 30,600     | 5,247       |
| 베를린          | 30,000     | 800         |
| 멕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 29,923     | 8,400       |
| 작센           | 52,000     | 10,000      |
| 작센-안할트       | 36,000     | 10,230      |
| 튀링겐          | 40,000     | 2,000       |
| 합계           | 218,523    | 36,677      |

\* 출처: 강구섭(2012). 독일통일 후 동서독 교육통합 사례 연구-학제, 교육과정, 교사 재임용 사례를 중심으로 -. 비교교육연구, 제22권 제1호, 53.

구동독에서는 서독에 비해 과잉된 교원인력을 양성·보유해 왔다. 인구 1만 명당 교원 수(1987년도)를 보면, 서독이 73명인데 반해, 동독은 100명이었다. 학생 1,000명당 교원 수(1988년도)에 있어서도, 서독이 66.6명인데 반해, 동독은 84.1명이었다. 학급당 학생 수에 있어서도 구동독 시기에는 최고 20명 내외로, 서독보다 적은 상황이었다.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에서는 공직 부문 전반에 걸쳐 기구 축소, 감원이 이루어졌다. 그와 함께 교원의 해고 문제도 중요 이슈로 떠올랐다. 구동독 출신 교원들에 대해서는 일단 모든 교원을 그대로 임용한 후, 통일조약에 따라 자격심사를 실시하였다. 자격심사의 내용은 교사의 전문능력, 교사로서의 적성, 특별히 ‘슈타지’(국가안전부)에 대한 협력 여부가 주요 고려 요건

이었다<sup>34</sup>. 통일조약에 근거해 과거 당적 보유 여부는 증시하지 않았다.

구동독체제 하에서의 교장과 교감 등 관리직 재임자는 대부분 교체되었다. 구동독 당시 교장과 교감은 대체적으로 공산당원이었기 때문에 개혁 대상이 되었다. 1990년 5월 30일에 제정된 두 가지 규정(‘학교지도부에 관한 규정’, ‘교육청 설립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약 6,700명의 교장과 교감이 1989/1990학년도 말까지 해고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공석된 자리는 공개채용 방식으로 채워졌다.

모든 교사에게 대학 및 교사교육기관 등에서 최소 40시간의 재교육 이수 가 의무화되었다. 특별히, 외국어 교과, 역사 교과, 사회·정치 교과, 종교·윤리 교과 교원들은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했다. 교사로서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가르칠 자리가 없는 교원들은 해고되어야 했다. 이념성 외에도 과거 구동독에서 과다한 교사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잉여 교사의 해고는 필연적이었다. 그리고 학급당 학생 수도 서독 수준인 20-30명으로 조정됨으로써 잉여 교사는 더욱 많아졌다. 이에 따라 많은 교사들이 해고되었다. 대부분의 교사 해고는 1991년에서 1993년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브란덴부르크주를 제외하고는 약 20%의 교사들이 해고되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수업시수 및 급여를 조정하여 교원들을 해고하지 않았다. 더불어 자유독일청년연맹(FDJ) 지도교사 등 무자격교사도 해고되었다. 장기간 실시된 전체 교원에 대한 검증작업으로 인하여 동독 교직계는 크게 동요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면서 불만이 쌓여 갔다.

그리고 교사인수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교사가 수가 과잉상태에 있었으나, 외국어나 음악, 미술 등 일부 교과목에서는 교사가 부족하였다. 이로 인해 교사가 부족한 과목의 경우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교사가 재임용되고, 수요가 감소한 과목의 경우 정치적으로 오염되지 않

.....

<sup>34</sup> 한만길·김창환·정지웅(1998).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p.127.





은 교사들이 해고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재임용된 교사들도 서독 교사에 비해 신분상, 급여상 불평등한 대우를 감수해야 했다. 이 모든 점들이 구동독지역 교사들의 불안과 불만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

해고되지 않고 학교에 남게 된 교사들은 재교육과 더불어 3년 간의 시보 교사로 임용되었다. 시보기간에는 한 단계 낮은 봉급이 지급되었다. 시보기간이 끝나면 수업관찰, 교과지식 및 교수법에 대한 면접 등을 통해 심사·평가하여 정식 교사로 임용되었다<sup>35</sup>.

교사 재교육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로, 구동독 교원 등 교육 종사자들의 편향된 이데올로기 의식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정치체제의 안정을 위해 교육이 이용된 결과 구동독에서 교사자격을 획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 혹은 ‘과학적 마르크스주의’라는 기초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고, 학생들을 세뇌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보유하도록 요구되었다. 그리고 교사로 임용되면 체제유지를 위해 공산당과 국가보안체제에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활동해 왔다. 동독의 교수, 연구원들도 ‘정치경제학’,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 ‘과학적 공산주의’, ‘부르조아 이론과 실상에 대한 비판’ 등의 교과에 정통하도록 요구받아 왔다.

둘째로, 교사의 질이 서독보다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어 재교육이 요청되었다. 교사의 재교육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주요 고려 사항이 되었다. 교육학 기초학문을 대폭 강화·보완하고, 외국어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고, 교사들이 지금까지의 타율성에서 벗어나 자유와 자율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교육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셋째, 사회주의-공산주의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체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겪게 되는 지식인들의 가치체계 혼란과 그들의 불확실한 미래는 특

.....  
<sup>35</sup> 한만길·김창환·정지웅(1998).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p.128.

별히 교사들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들은 기성세대의 가치체계를 성장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을 주임무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사들의 재교육 프로그램이 단지 전공교육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정치교육적 측면에서도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교사 재교육에서 정치관련 교과(역사, 철학, 사회, 정치 등)를 필수적으로 이수하는 것이 장려되었다<sup>36</sup>.

교원연수제도 역시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1989년 가을에 이미 교사의 정치교육 연수 지침이 폐지되었다. 이후 교원의 연수는 교사 재량에 맡겨졌다. 교원연수를 담당하던 교육기관들은 1990년 말까지 폐지되었다. 대신 민간 기관(예, 주정치교육센터)들이 교원연수를 담당하게 되었다. 교사양성 과정에 있어서도 새로운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1990년 9월 18일 ‘교사양성을 위한 과도기 규정(Übergangsverordnung über die Ausbildung für Lehrämter)’에 의해 서독 교사양성의 기본 구조가 동독에 도입되었다. 여기서는 특별히 18개월에서 24개월의 교원연수생 기간을 두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의 1단계만의 교원양성제도를 보완하는 계획을 세웠다. 1990년 9월 18일에 마련된 교원양성의 과도기적 규정들을 통하여 서독의 교사교육제도의 기본 골격을 동독에 적용하였다.

교원연수에 관한 개혁안은 주로 교사의 교육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교육이 외부의 조종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는 자신의 고유한 책임 하에 수업을 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sup>36</sup> 한만길·김창환·정지웅(1998).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p.129.



#### (4) 학생 통합

동서독 학생의 통합 역시 서독식 학교 문화로 통합되는 과정을 밟았다. 통일 후 구동독 학생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여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되었다.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민주주의, 자본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획득하여야 했다. 또한 새로운 학교제도와 학교문화에 적응하여야 하였다.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문화적 적응은 더욱 어려운 과제였다.

##### ① 구동독 청소년의 통일사회 적응과정

통일과정에서 전개된 정치, 경제, 사회의 빠른 변화 상황에서 학생들은 적응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고,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구동독의 학생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고, 자기동일성을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들은 하루 아침에 뒤바뀐 민주적이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할지 많은 걱정을 하였다.

특히 구동독 청소년들은 통일 후 가치관의 혼란이라는 어려움을 겪었다.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옳다고 확신하였던 가치들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성스럽고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가르쳐졌던 이념들이 왜 하루아침에 무가치한 것으로 변했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왜 이전의 적이 동지가 되고 동지가 적이 되는지 알 수 없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존속하였던 체제가 영구히 실패한 실험으로 끝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많은 경우 혼자서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부모나 교사 등 기성세대 역시 가치 혼란과 방향 상실 등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도울 형편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구동독 학생들을 도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하였다. 어떻게 하면 구동독 학생들이 변화된 사회환경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고, 다원화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가? 여기서 정치교육의 필요성이 등장하였다.

구동독지역의 정치교육은 통일 전후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통일 이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을 매개하고, 사회주의체제를 옹호하는 교육으로 일관하였으나, 통일 이후 서독식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가르치고 민주시민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뒤바뀐 것이다. 사회주의 가치관, 세계관, 역사관을 강조하는 교육에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관, 세계관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뒤바뀌었다. 이제 통일 이후 동서독지역의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의 형태에서는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적어도 정치교육 내용에서는 동서독은 통일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구동독지역에서의 정치교육은 기대와는 다른 모습의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국가가 주도하는 정치교육에 대한 불신이 문제였다. 통일은 서독지역의 학생들에게는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이전의 정치교육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순기능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동독지역 학생들에게는 자기부정 및 정치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 동독국가가 서독에 편입되면서 동독지역 학생들은 구동독 시절 국가가 주입하는 정치사상교육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다.

둘째, 구동독지역 학생들이 새로운 통일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다. 구동독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은 '적응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구동독 학생들이 새로운 체제에 잘 적응하는 데 정치교육이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민주주의적이고 다원주의체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과 더불어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개발하는 것이 정치교육의 주 과제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통일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치교육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셋째, 구동독지역 학생들의 정치교육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동서독 주민들 간의 갈등이다<sup>37</sup>. 통일 전 동서독인들은 서로 다른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서로 다른 가치관과 희망을 갖고 있었다. 동독인들이 사회주의적이고 집단적인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서독인들은 개방적이고, 민주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고와 의식의 이질성은 동서독인들의 내적 통합을 가로막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더불어 통합과정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동서독주민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크게 부각되면서 정치교육은 기대한 결과를 낳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통일 초기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구동독 청소년들의 부적응과 적응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가능하면 신속히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들은 직장생활에서 성공하고 높은 수입을 올리려고 노력하였다. 물론 그들이 그렇다고 새로운 사회에 잘 적응한 것은 아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적응 과정에서 내적 갈등을 겪었고, 따라서 완전한 사회화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둘째, 적응과정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좌절에 빠졌다.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좌절에 빠지면서 청소년들은 점차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갖게 되었다. 1993년 드레스덴(구동독지역 소재) 공과대 학생들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22.3%의 대학생들이 구공산당의 후예 정당인 PDS를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특별히 이러한 회귀현상은 열등학생 등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은 학생들에게서 눈에 띄게 나타났다. 비록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통일을 찬성하지만, 40-60%에 달하는 상당수의 구동독 청소년들이 구동독에 대한 향수에 젖어 있다고

.....  
<sup>37</sup> 허영식(1996). 민주시민교육론, 배영사, 101-102.

조사되었다<sup>38</sup>.

셋째, 구동독 청소년들의 좌절은 폭력으로 나타났다. 부적응으로 인한 폭력성은 구동독 청소년들이 구서독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2년의 조사에 의하면 51.9%의 동독 청소년들이 폭력을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았다<sup>39</sup>. 구동독 청소년들의 폭력성은 특별히 외국인에게로 향하였다. 1992년에는 단지 2.2%만이 외국인 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문제라고 말한 반면, 1993년에는 외국인 적대감이 훨씬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폭력성과 외국인 적대감정은 극우주의 성향의 표현이다. 비록 조직적이거나 이념에 기초한 것은 아니지만 구서독 청소년들에 비해 극우주의 성향이 두드러졌다. 청소년 폭력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나치시대에 대한 비판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둘째 구동독에서는 민주적인 정치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셋째 가치 혼란의 시대에서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1990년 통일 직후 대부분의 구동독 청소년들은 분명 적응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갖게 되었다. 방향상실감, 행동의 불안정, 적대감, 편견, 공격성과 폭력 등으로 부적응이 표출되었다. 특별히 대량실직 등 통일 휴유증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1992-1993년은 외국인 적대감, 극우주의 등 수많은 부정적인 양상이 강하게 표출된 해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비교적 새로운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기성세대와 비교해 볼 때 구동독 청소년들의 적응과정은 눈에 띈다. 1993년 독일의 주간지 디차이트(Die Zeit)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20대 이하의 구동독 청소년들은 새로

.....

<sup>38</sup> Bundesministerium für Frauen und Jugend(1993). Zur Lage der Jugend in Ost- und Westdeutschland, Bonn, p.4. 이러한 구동독에 대한 향수는 오스탈기(Ostalgie) 라는 말을 만들어 내며 구동독에 대한 향수가 한때 더욱 보편화되어 가는 현상을 낳았다.

<sup>39</sup> L. Böhnisch, u.a.(1992). Gesellschaftsstudie, Dresden, p.27.



은 제도에서의 적응과 학습 속도가 빠르고, 시장경제체제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미래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서독주민들과 동화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0</sup>. 종합적으로 볼 때, 통일 초기 동독 청소년들의 의식과 적응과정을 분석해보면, 통일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 ② 구동독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과정

구동독 학교는 구서독 학교와 비교해 볼 때 전혀 다른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구동독의 학교는 철저히 학습학교(Lernschule)로서 교사가 전달한 지식을 학생들은 단지 복습하는 것에 열중하였다. 반면, 독자적인 작업수행과 의사소통 능력은 별로 중요시되지 않았다. 교육방법 면에서도 교사가 중심이 되는 엄격한 교화와 훈육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였다<sup>41</sup>. 국가의 교육 통제는 권위주의적이고 획일적인 교육방법을 낳았다. 교사중심-강의중심의 수업 아래서 학생들은 복종심을 함양하고, 엄격히 훈육되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자기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진실성이 결여되고,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게 되었다. 때문에 통일 이후 서독식의 자율적-아동중심적 수업에 심각한 이질감을 느끼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sup>42</sup>. 학생들의 적응상의 어려움은 일부 폭력으로 표출되었다. 학생들의 폭력은 가치혼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원인을 제공하였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학급 내 집단주의적인 가치관 소멸, 과도한 학업 성취 능력의 요구, 학교에서의 자유시간의 철폐 등에서, 즉 새로운 학교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 데서 주원인을 찾을 수 있다.

<sup>40</sup> 통일원(1994). 독일통일 3년 현황과 전망. p.242.

<sup>41</sup> Jens Huettmann(2016). Politische Erziehung in der DDR,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10.

<sup>42</sup> F. Pöggeler(1992). Bildungsunion im vereinten Deutschland, Frankfurt, p.17.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신뢰할 수 있는 대화상대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였다. 교사들도 새로운 학교문화에 적응해야 했고, 수많은 과제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었다. 보다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사회의 가치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교사들이 제공하는 지식에 대한 깊은 불신이 학생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sup>43</sup> 단지 소수의 교사들만이 수업에서 문제가 있을 때, 학생들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독일통일은 교육의 목적과 내용, 교육을 하는 교사,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별히 구동독지역의 학교와 교육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 교사와 학생들에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였고, 부적응 문제를 야기시켰다.

구동독은 통일된 단선형 교육제도를 갖고 있었던 반면, 구서독은 복선형 교육제도를 갖고 있었다<sup>44</sup>. 통일된 단선형 교육제도에서 서독식의 다양하고 분화된 복선형 교육제도로의 전환은 대부분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는 낯선 것이었고,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고 그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청소년들도 무척 혼란스러워 했다.<sup>45</sup>

“교육제도 또한 서독의 교육제도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형편이어서 거기에 적응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동독 일반계 고2 여학생)

<sup>43</sup> M. Papst, D. Schuster(1993). Jugend-Gewalt in Sachsen Anhalt. Ergebnisse eines Forschungs- und Bildungsprojekts,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2-3/1993, p.35.

<sup>44</sup> Eva-Maria Kabisch(2016). Umstrukturierung des Bildungssystems in den neuen Bundesländern nach 1989,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195.

<sup>45</sup> 위르겐 뵘 외 엮음, 이학로 옮김(1994). 헤이, 오씨 안녕, 베짜: 독일 청소년들의 통일 소감집. 푸른 나무, p.71., p.87.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교육제도 등등, 학교에 무서운 속도로 밀어닥치는 변화에 적응하느라 눈코 뜰 새 없었다.”(동독, 실업계 고1 여학생)

교육제도와 함께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sup>46</sup>. 먼저 구동독의 정치이념 과목인 국가시민 교과가 폐지되고, 대신 사회 또는 정치교육 과목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외국어 과목이 대폭 보완되었다. 제외국어가 러시아어에서 영어로 바뀌었고, 프랑스어 등 현대어와 라틴어 등 고대어도 교육과정 안에 포함되었다. 더불어 종교와 윤리 과목이 정식 과목으로 채택되었다.

기존 교과목의 내용이 점차적으로 서독식의 교육내용으로 바뀌고 새로운 교과목이 생기면서 학생들은 이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새로운 교과목을 배워야 하는 것과 더불어 동일한 교과목에서도 구동독 때보다 배워야 할 교육내용이 많은 것이 큰 어려움이었다. 더불어 폐쇄사회에서 고립된 지식을 갖고 있었던 동독 학생들에게는 자유시장경제 원리, 개방적인 민주사회, 다원화된 사회 원리를 익히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았다. 여기에 교사의 이해 부족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이 충실히 운영되지 못하였다<sup>47</sup>.

교육내용뿐 아니라,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구동독의 교육방법은 사회주의적 가치관 주입교육이 강조되었으며, 교육방법도 획일적이어서 청소년들의 개성이 상실되고 독창성과 창의성이 무시되었다. 구동독의 학교는 철저히 ‘학습학교’로서 교사가 전달한 지식을 청소년들은 단지 복습하는 것에 열중하였다. 교사중심-강의중심의 권위주의적 수업 아래서 청소년들은 복종심을 함양하고, 엄격히 훈육되었다. 교사 역시 주어진 틀에서 가르치고 생활하여, 독자적인 수업계획안을 만들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sup>46</sup> Eva-Maria Kabisch(2016). Umstrukturierung des Bildungssystems in den neuen Bundeslaendern nach 1989,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195.

<sup>47</sup> 강구섭(2012). 통일 후 동서독 교육통합 사례 연구-학제, 교육과정, 교사 재임용 사례를 중심으로 -. 비교교육연구, 제22권 제1호, p.57.

실시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바뀐 교육과정 및 내용에 부합하는 교수법, 교육방법에 대한 이해와 교수역량의 부족이 적지 않은 문제로 작용하였다<sup>48</sup>.

때문에 동독지역 학생들은 통일 직후 서독식의 자율적-아동중심적 수업에 이질감을 느끼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sup>49</sup>.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서 학생들은 점차 새로운 학교 문화와 교육방법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새로운 교육방식이 교사중심의 통제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이 존중되는 교육임을 점차적으로 깨우치게 되었다<sup>50</sup>.

“통일되고 눈에 띄게 달라진 곳이 학교다. 이제 더 이상 ‘사회주의’를 영 무새처럼 되풀이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선생님들은 전에 비해 훨씬 개방적으로 변했고 수업내용도 이제는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서 좋다.”(동독, 실업계 중3 여학생)

“학교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 수업 분위기도 전에 비해 훨씬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바뀌었으며, 이제 학교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옛날처럼 호락호락하게 속아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동독, 실업계 중3 여학생)

##### 5) 직업교육 통합

통일 전 동독의 직업교육은 사회주의경제를 지탱하는 도구였다. 통일 후 사회경제가 붕괴되면서 구동독의 직업교육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구동독

<sup>48</sup> 강구섭(2012). 통일 후 동서독 교육통합 사례 연구-학제, 교육과정, 교사 재임용 사례를 중심으로 -. 비교교육연구, 제22권 제1호, p.57.

<sup>49</sup> F. Pöggeler(1992). Bildungsunion im vereinten Deutschland, Frankfurt, p.17.

<sup>50</sup> 위르겐 뵘 외 엮음, 이학로 옮김(1994). 헤이, 오씨 안녕, 베짜: 독일 청소년들의 통일 소감집, 푸른나무, p.45., p.46., p.61.



의 직업교육 전체가 혁신될 수밖에 없었다. 구동독의 직업교육 전체가 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부합하는 직업교육체제로 바뀌면서 교육의 각 영역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동독 변혁 초기부터 동독 직업교육 담당 비서는 직업교육을 개혁하는 제안을 하였다. ‘국가시민 교과’가 1990년 9월부터 직업교육 교과로서 폐지되었다. ‘직장경제’, ‘사회주의 법’ 교과는 쇄신되어야 했다.

1990년 4월 교육부는 ‘사회’, ‘산업경제’, ‘자동화기술’, ‘정보처리’에 관한 교육과정안을 공포하였다. 구동독 직업교육의 개선은 서독 교육정책가들의 중요 관심사였다. 구동서독 교육부장관이 합의한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구동독의 직업교육을 튼튼히 하는 것은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었다. 1990년 5월 18일에 체결된 ‘동서독의 경제, 화폐 및 사회통합 조약’에서도 구동독의 직업교육 문제는 중요 사항으로 다루어졌다. 위 조약 19조에서는 서독의 실직자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구동독의 직업을 촉진한다는 사항을 담고 있다. 그것을 위해 구동독은 서독의 직업문화와 직업교육제도를 도입할 것이 의무화되었다. 그것은 국가 주도의 직업교육에서 공공기관과 기업체가 책임을 지는 직업교육체제로, 국가주도의 직업계획과 운영에서 자유로운 직업선택으로의 변화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1990년 5월 18일 ‘동서독의 경제, 화폐 및 사회통합 조약’이 체결되면서 동서독의 경제통합이 급격히 진행되자,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독 직업교육제도의 도입이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1990년 7월 19일 동독의회는 서독의 ‘직업교육법’을 1990년 9월 1일부터 동독에 적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서독의 법과 규정이 동독에 도입되어 적용된 것이다. 급진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게 될 인적·물적·구조적 문제점들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잠정적인 규정들이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 직업연수생들의 불법 해고, 직업학교 재정문제, 열악한 직업학교의 시설과 실습실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통일 이후에 제정된 구동독지역의 ‘교육법’은 직업교육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은 새로운 ‘교육법’의 적용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동독 직업교육의 개혁에는 커다란 난관이 존재하였다. 독일의 직업교육은 학교와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이원적 시스템(dual system)으로 유명하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을 받을 사업장 자리가 충분해야 하는데, 통일 직후 구동독지역에서는 이러한 사업장이 많이 부족하였다. 통일 후 동독경제가 붕괴되면서 수많은 기업(사업장)이 도산하였기 때문이다. 살아남은 기업도 자본주의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비용을 절감하여야 했고, 직업교육생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웠다. 절반 정도의 청소년들에게만 실습의 기회가 주어졌다. 또한 산업이 구조적으로 취약하였고, 직업교육 과정이 공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 분야의 실습 가능성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자의 절반 정도만이 실습장소를 얻을 수 있었다. 기업체의 도산과 실습장소의 부족은 결과적으로 심각한 청소년 실업문제를 가져왔다.

직업학교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자,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면서 동독의 기업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기업이 더 어려워지면서 직업교육생에게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다시 어려워지는 등 한동안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되자 연방정부와 동독의 5개 주정부가 개입하여 막대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동독지역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직업교육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었다.

사태가 악화되자 기업이 운영하던 직업학교를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직업교육에서의 실무교육을 일반 기업체가 아니라, 별도의 직업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또한 건물의 낙후와 교육시설 및 장비의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서독의 기업과 경제단체에서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 6) 고등교육 통합

통일 후 고등교육 분야의 통합은 서독식 고등교육 시스템이 구동독에 확장되는 형태를 띠었다. 탈이념, 대학의 자율성, 현대화 등에서 구동독지역의 대학은 큰 변혁을 맞게 되었다.

구동독지역 고등교육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었다<sup>51</sup>. 이 데올로기적 목표와 중앙집권주의적 계획에 입각한 구동독의 대학운영 구조는 인사선정, 학사규정의 공표, 연구과제를 위한 재정조달 측면에서 왜곡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것은 법률학, 경제학, 교사양성을 비롯하여 정신과학과 사회과학의 일부 학과에 걸쳐 특히 심했다. 또한 연구를 대학으로부터 아카데미로 집중시킨 조치는 대학교육의 질에 악영향을 끼쳤다. 더불어 서방측과의 접촉 금지, 불충분한 커뮤니케이션 및 연구여건 미흡, 학자의 연구가능성의 제한 등으로 말미암아 연구가 거의 단절되었으며, 학문 후속세대의 개발 기회를 제한시켜 버렸다. 따라서 국제적 자질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춘 연구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구제도의 구조가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대학의 건물과 기자재 대부분은 매우 불량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구동독지역 대학과 연구체제는 통일 직후 곧 개혁 대상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의 개혁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강조되었다. 무엇보다 전통적인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를 되살리고자 하는 내용이 중심과제로 등장하였다. 대학생들은 수강 과목을 스스로 결정하여 자신의 학문탐구에 있어서 개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선택 교과목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up>52</sup>. 교수에게도 강의와 연구에서 자유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고등교육의 개혁에 있어서 교수-학습-연구의 자율성 보장과 함께 또 하나

<sup>51</sup> 신세호·박성조·양성철·김영철·박재운·백성준(1993). 독일 교육통합과 파생문제점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p.293-294.

<sup>52</sup> J. Borchardt, U. Staendig(1993). Hochschulgesetz in Brandenburg. Hilde Schramm(Hrsg.) (1993). Hochschule im Umbruch-Zwischenbilanz Ost, pp. 105-106.

중요하게 제기된 것은 대학진학의 자유 보장이었다. 대학입학을 자질과 능력이란 기준만으로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하고, 대학수학 장소와 전공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기초 교과 의 폐지, 표준 교육내용의 폐지와 학생들의 자율적인 과목 선택권 보장, 국가적 통제의 폐지, 학문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의 정착, 학문 출판의 자유 확대, 대학환경의 구조적-지역적 재구조화, 교육연구에서의 행정적-이념적 제한 철폐 등이 개혁방안으로 제안하였다. 구동독의 대학에서는 이미 1989년 가을 필수 기초 과목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수업을 폐지하였으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배제한 보편적인 학과를 개설하였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책임있게 자신의 학업을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었다<sup>53</sup>.

통일 당시 구동독지역(신연방주)에는 54개 대학에 13만 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었다. 1989년을 기준으로 일반대학은 117,000명, 통신강좌 및 야간대학은 15,000명, 평생교육과정은 28,000명, 대학원과정에 11,500명이 등록되어 있었다. 구동독지역의 대학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에 방향전환을 시작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 관련 강의를 중단하고 관련 시설물을 폐쇄하였다. 1990년 5월 구성된 ‘동서독 교육위원회’는 학문 및 대학에서 동서독지역의 대학 간 동일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90년 7월 독일학술원(Wissenschaftsrat)은 ‘통일과정에서의 학문 및 연구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통일조약 제38조는 학술원으로 하여금 대학제도를 포함하여 학문과 연구에 필요한 개혁을 준비하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학술원은 구동독지역(신연방주)을 대상으로 대학의 전공학과와 관련된 권고안들을 마련하였다.

통일 직후인 1990년 11월 독일학술원(Wissenschaftsrat)은 구동독지역 대학 개혁을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구동

.....

<sup>53</sup> 한만길·김창환·정지웅(1998).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p.126.



독지역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및 교수초빙에 관한 권고안(Empfehlungen des Wissenschaftsrates zur Bildung von Hochschulstrukturkommissionen und zur Berufungspolitik an den Hochschulen in den neuen Laendern und in Berlin(Os))'을 발표하였다. 이 권고안에서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과제를 네 가지로 천명하였다<sup>54</sup>. 첫째, 구동독지역 대학 구조 개혁, 특히 대학과 전문대학 설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학과(전공) 개혁(재구조화 또는 신설) 및 전공 교육과정 개혁에 관한 것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대학과 연구소에 투자를 증대하는 것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는 것이다. 넷째, 대학의 교수초빙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것이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은 대학총장협의회 의회의 자문을 받아 주정부가 결정하였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은 10-12명을 넘지 않도록 하였고, 과반수가 대학의 저명한 학자들이 담당하게 하였다. 나머지는 대학과 관련된 공직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해당 주 출신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하였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는 대학교수 초빙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였다<sup>55</sup>. 구동독지역 대학의 전공 가운데 정신과학, 사회과학, 경제학 분야의 경우 거의 새롭게 학과를 구성하는 정도의 근본적인 교수 쇄신이 이루어졌다. 이 분야의 교수 채용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적용되었다.

독일학술원은 1992년 '구동독지역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권고안(Empfehlungen des Wissenschaftsrates zur kuenftigen Struktur der Hochschullandschaft in den neuen Laendern und im Ostteil von Berlin)'을 다

<sup>54</sup> H. W. Fuchs, L. R. Reuter(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p.263.

<sup>55</sup> H. W. Fuchs, L. R. Reuter(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p.263.

시 발표하였다. 이 권고안은 구동독대학의 문제점, 권고안 영역, 권고안 기본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sup>56</sup>.

첫째, 구동독대학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오염된 현실을 비판하였다. 구동독대학 교육과정의 20%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교육, 군사교육, 스포츠교육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교수들의 숫자가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1990년에 동독에는 38,000명의 교수가 있었는데, 이는 서독지역에 비해 두 배 가량 많은 숫자였다<sup>57</sup>.

표 1-7) 통일 당시 동서독 대학교원 수

| 전공 영역              | 서독 대학교수<br>(1988년, 명/%) | 동독 대학교수<br>(1989년, 명/%) |
|--------------------|-------------------------|-------------------------|
| 언어과학, 문화과학, 스포츠과학  | 14,575(14.30)           | 8,103(20.82)            |
| 사회과학               | 12,375(12.10)           | 5,483(14.09)            |
| 수학/자연과학            | 23,886(23.40)           | 5,831(14.99)            |
| 의학                 | 21,414(21.00)           | 7,964(20.47)            |
| 수리학                | 974(1.00)               | 408(1.05)               |
| 농업, 입업, 영양과학       | 2,693(2.60)             | 840(2.16)               |
| 공학                 | 17,502(17.10)           | 6,395(16.44)            |
| 예술학                | 3,221(3.20)             | 1,021(2.62)             |
| 대학행정업무             | 5,416(5.30)             | 1,329(3.42)             |
| 기타 대학행정업무(구동독만 해당) | 0(0.00)                 | 1,535(3.94)             |
| 합계                 | 102,056(100.00)         | 38,909(100.00)          |

\* 자료 출처 : Doris Scherers(1993). Personalbestand an den ostdeutschen Hochschulen 1989, 1990 und 1991. Hilde Schramm(1993). Hochschule im Umbruch-Zwischenbilanz Ost, 157.

<sup>56</sup> H. W. Fuchs, L. R. Reuter(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p.279.

<sup>57</sup> 1990년에 서독에는 동독에 비해 4배 가량 많은 대학에 72,000명이 교수가 가르쳤다(H. W. Fuchs, L. R. Reuter(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p.279).





반면 학생 수는 서독에 비하여 매우 적은 편이었다. 대학입학자격을 제한하여 1989년에 26,000명의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였다. 대학입학생 비율은 전체 학생의 11-12%로서 서독의 26-27%에 비하여 절반도 되지 못하였다.

표 1-8) 동서독대학 신입생 수

| 연도    | 서독지역 대학 입학생 수<br>(명, %) | 동독지역 대학 입학생 수<br>(명, %) |
|-------|-------------------------|-------------------------|
| 1989년 | 222,475(30.3)           | 33,671(15.0)            |
| 1990년 | 209,042(31.5)           | 33,447(16.0)            |
| 1995년 | 179,362(36.7)           | 46,634(26.0)            |
| 2000년 | 216,667(40.5)           | 78,000(36.0)            |

\* 출처 : Michael Weegen(1993). Studierende und Personalbedarf in den neuen Bundeslaendern bis zum Jahr 2000. Hilde Schramm(1993). Hochschule im Umbruch-Zwischenbilanz Ost, 160.

둘째, 구동독대학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이 권고안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sup>58</sup>. 제일 먼저 지나치게 많은 대학 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과학과 사회과학(경제학 포함) 영역의 교육과정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탈이념과 더불어 서독대학 수준의 교육과정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자연과학 분야도 공학에 비하여 취약한 영역으로 나타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대학개혁을 위해 단기적인 방안과 중장기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셋째, 구동독지역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 권고안에서는 7가지로 제시하였다<sup>59</sup>. 1) 연구의 강화, 2) 대학과 대학 외 연구소와의 협업, 3)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단과대학을 종합대학으로 통합, 4) 경쟁력 있는 전문대

.....  
<sup>58</sup> H. W. Fuchs, L. R. Reuter(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pp.280-281.

<sup>59</sup> Hans-Juergen, Block(1993). Die Empfehlungen des Wissenschaftsrates fuer die Hochschulen in den neuen Bundeslaendern. Schramm, Hilde(1993). Hochschule im Umbruch-Zwischenbilanz Ost, 139-141.

학 설립, 5)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전공 통합, 6) 신규 대학 설립 이전에 혁신 추진, 7) 기존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전문대학 신규 설립을 우선적으로 추진 등.

통일 직후 구동독지역(신연방주)의 대학들은 범지역적 학술활동 지원 기관에 가입하였다. 독일학술원, 독일연구재단(DFG), 독일학술교류재단(DAAD), 대학총장협회, 전문대 학장협회, 연방-주교육위원회, 주문교부장관회의 등이 그것이다. 구동독지역 대학들은 통일조약 및 학술원의 권고안들을 기초로 대학개혁 및 전문대학 인력개편과 시설확충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구동독지역 대학들은 1991년 7월 대학 및 연구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24억 3,000만 마르크의 재원을 투입하여 대학인력 개혁, 학문잠재력 보존, 학문과 연구의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였다. 1989년 구동독지역 54개의 대학은 1995년 48개의 대학으로 감소하였고, 대학교사의 수는 1989년과 비슷한 6,700명 수준을 유지하였다.

통일조약에 따르면, 구동독지역에서 취득하였거나 혹은 국가적으로 공인된 대학졸업증은 구동독지역에서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 조약은 또한 구동독과 구서독의 다른 주들에서 취득한 졸업증은 그 가치가 동일하면 서로 동등한 것이며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주문교부장관회의’는 대학 및 직업교육 수료증이 서독과 동등한 것인지, 단순히 수준만 동등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동등하지 않은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유형을 정립하여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동독의 경제 및 사회제도과 관련된 부분(경제학, 철학, 사회학, 역사학 등)의 졸업증은 수준만 동등할 뿐 서독의 것과는 등격화 될 수 없었다.

통일 이후 추진된 고등교육 개혁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60</sup>.

첫째, 통일 후 구동독대학은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많은

.....

<sup>60</sup> 한만길·김창환·정지웅(1998).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pp.126-127.



대학이 폐쇄되고, 새로운 대학이 설립되었다. 기존의 대학은 재구조화되고 현대화되었다. 기존의 54개 대학(종합대학 6개, 공과대학 18개, 교육대학 9개, 의과아카데미 3개, 경제대학 2개, 농업대학 2개, 예술대학 12개, 체육대학 1개, 정치-법과대학 1개)이 1993년까지 14개 종합대학과 공과대학, 10개 예술대학으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구동독에는 없었던 전문대학 26개가 설립되었다. 그 외 4개의 사립대학이 설립되었다. 또한 각 주의 여러 대학이 통합되었다. 이를 위해 서독의 교수와 행정가들이 구동독에 파견되어 대학 설립 또는 대학 구조조정 기초위원으로 활약하였다.

둘째, 대학의 내적 구조개혁 면에서는, 먼저 대학 내의 마르크스-레닌주의 관련 기관들 및 이데올로기 학문단체들이 해체되었고, 법학, 사회학, 경제학, 사학, 교육학과는 폐지 또는 재편되었다. 그리고 대학 행정구조와 인력구조가 개편되었다. 또한 연구소 평가 작업과 함께 대학의 연구기능이 강화되었고, 동서독 학문협력이 증진되었으며, 학문·출판의 자유가 확대되었고, 신진학자들의 계속교육 기회의 확대와 취업이 적극적으로 알선되었다. 더불어 도서관 등 대학시설이 개선되었고, 기숙사가 건립되었다.

셋째, 대학교육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자율성이 제고되고 학문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혁되었다. 먼저 통일된 교육내용이 폐지되고 학생선택의 자유가 확대되었다. 교육 연구에서의 행정적·이념적 제한이 철폐되었고, 내용상의 국가적 통제 역시 폐지되었다.

넷째, 교원 정리하고 문제를 보면, 일반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대학에서도 정리하고 문제는 가장 큰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전 대학직원이 정치성과 전공능력이 따라 평가되었다. 정치성에 대한 평가는 '구동독 국가보위부 문서 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하였고, 학문적인 능력의 평가는 각 대학이 담당하였다. 정치적인 인물로 명백히 드러났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고되었다. 그리고 교원 공급이 초과된 학과의 교원들도 해고되었다. 또한 학과나 기관의 폐지로 인한 수요 감소로 해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과가 가능한 인력은

구제되었다. 대학 교원의 해고는 1995년 말까지 거의 완료되었으나, 심한 저항을 초래하였다.

참고로 구동독지역 베를린에 위치하고 있는 훔볼트대학에서의 개혁 노력을 보면, 먼저 교수자격재심사를 통해 ‘슈타지’(구동독 비밀경찰) 협력교수 130명을 해고하였다. 그리고 신입교수 116명을 새로 채용하였다. 그 가운데 구서독지역 출신의 대학교수를 약 50% 충원하였다. ‘학문의 식민지화’를 방지하기 위해 구서독 출신 교수 채용 비율은 50% 이내로 자체 제한하였다. 또한 구동독체제 하에서 자유화 운동을 하다 제적된 학생들에 대한 복학을 허용하였고, 공산 정치 엘리트 양성 목적의 교과과정을 전면 개편하였다.

그러나 대학 교원의 대량 실직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특별히 모든 동독의 지식인들과 과학자들을 옛 동독정부에 동조한 사람으로 몰아붙여 역량 있고 능력 있는 학자들마저 대량으로 해고하는 사태를 가져온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1994년 구동독지역 작센주 연구부 장관 한스 요아킴 마이어(Hans Joachim Meyer)는 독일 대학의 개혁에 대하여 강연(Die Hochschulen in den neuen Laendern. Eine problemorientierte Bilanz)을 하였다. 이 강연에서 마이어는 구동독지역 독일대학 개혁에 대해 중간평가를 하였다<sup>61</sup>. 먼저, 독일대학 구성원(특히, 교수)은 폭넓은 인적 쇄신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많은 교수들이 구서독지역 또는 외국에서 초빙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골간으로 하는 교육내용에도 쇄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군사조직과 청소년조직들도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과와 전공에서도 쇄신이 이루어져, 기존 전공의 개혁과 새로운 전공이 신설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

<sup>61</sup> H. W. Fuchs, L. R. Reuter(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pp.324-325.



### 7) 교육행정체제 통합

교육행정체제의 통합은 구동독 시스템이 사라지고, 서독식 교육행정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통일 전 구동독에서는 중앙교육행정기관으로 인민교육부(Ministerium für Volksbildung)가 있었고,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는 도교육위원회(Bezirksschulrat)와 군교육위원회(Kreisschulrat)가 있었다.

구서독에서는 중앙교육행정기관으로 연방교육과학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와 주문교부(Kultusministerium)가 있었고,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는 광역교육청(Landesschulamt)과 지역교육청(Kreisschulamt)이 있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 구동독의 교육행정조직은 커다란 비판을 받았다. “중앙집중, 위계화, 관료화, 이데올로기화, 교육기관에 대한 전방위적 통제, 효율성 부족, 과도한 행정인력, 많은 교육행정가들의 자질 부족 등이 집중적으로 비판받고 있었다.”<sup>62</sup>

통일 후 구동독의 교육행정시스템의 개혁이 단행되었다. 먼저, 교육행정체제에서 막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당 조직이 해체되었다. 그리고 국가중심의 교육행정체제가 지방중심의 교육행정시스템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광역교육청 및 기초교육청이 구성되었다. 잠정적으로 주교육위원회가 교육청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교육감과 교육장은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 아래 결정되었다. 교육부는 잠정적으로(주별로 자치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을 구성하기 전까지) 최고의 감독기관으로 존립하였다.

더불어 학교경영 구조가 변화되었다. 구동독에서 학교장과 교감은 원칙적으로 공산당원이었고 학교는 교육적인 측면과 함께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  
<sup>62</sup> 김상무(2013). 독일통일 이후 신연방주 교육체제 전환에 관한 연구. 교육사상연구회, 교육사상연구. 제27권, 제3호, p.101.

원칙에 따라 운영되었다. 1990년 3월 30일 조령에 따라 약 6,700명의 일반학교와 직업학교의 교장과 교감이 1989/1990학년 말로 해임되었다.

그러한 잠정적인 시기를 거쳐 구동독지역(신연방주)은 구서독의 교육행정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교육행정체제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도교육위원회(Bezirksschulrat)와 군교육위원회(Kreisschulrat)가 해체되고, 도(Bezirk)와 군(Kreis) 수준에 각각 광역교육청(Landesschulamt)과 지역교육청(Kreis-schulamt)을 설치하였다<sup>63</sup>.

통일 후 신설 5개 주에서는 서독의 지원으로 교육행정기관의 건립, 교과서 공급, 시설 개·보수, 기자재 확충 등이 대폭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 및 구서독의 공무원들이 구동독지역에 파견되어 자문하는 등 광범위한 지원이 있었다. 더불어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지원이 따랐다.

교육지원체제 역시 통일 후 구동독지역 내의 학교 건물, 교실, 도서관, 학사관계 사무행정 등 개별 학교들로부터 주정부의 교육부에 이르기까지 현대 교육의 수준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실정에 있었다. 대다수의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의 건물들은 보수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고, 어떤 것은 기본적 수준에도 미달하는 실정이었다. 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학, 사범대학 등의 건물들 중에서 단지 31%만이 ‘잘 관리되고 있고’, 30% 정도가 60년 이상 된 건물이며, 14% 정도는 90년 이상 된 건물이라는 것이다. 도서관에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등의 교화용 도서들은 많이 소장되어 있으나, 일반 학문 연구를 위한 문헌은 부족하며, 직업교육과 학문 연구를 위한 자료관리체제나 전자적 장비는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통일 후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교육시설과 기자재가 구서독 수준으로 현대화되었다.

.....

<sup>63</sup> 한만길·김창환·정지웅(1998).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p.133.



### 3. 교육통합 과정 요약

독일의 교육통합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sup>64</sup>.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전후부터 독일통일을 거쳐 제도적-법적 통일이 완성될 때까지 교육통합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9) 동서독 교육통합 과정 요약

|         |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br>(1989.10~1989.11.9)  | 베를린 장벽 붕괴~ 동독총선거<br>(1989.11.9~1990.3.18)   | 동독총선거~ 통일통일<br>(1990.3.18~1990.10.3)   | 독일통일 후 잠정법령시기<br>(1990.10.3~1991.6.30)   | 독일통일 후 법령제정시기<br>(1991.6.30~1994)   |
|---------|--|---|--|--|---|
| 동독 정치상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리히 호네커 서기장 사퇴</li> <li>• 동독 개혁 시작</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 총선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서독 화폐, 경제, 사회통합 조약 체결</li> <li>• 통일조약 체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 후 첫 총선거 실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정치체제 가동</li> </ul>                             |
| 통일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독개혁기 (자체개혁 단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독개혁기 (긴급조치 단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준비기 (이행조치 단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체제형성기 (잠정조치 단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화시기 (정규법 제정)</li> </ul>                        |
| 교육조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 교과 폐지</li> <li>• 국가시민 교과 폐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5일제 수업 도입</li> <li>• 동서독 실무 작업반 설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서독 교육 위원회 설치</li> <li>• 구동독 대학 입학자격 인정</li> <li>• 서독 교과서 동독에 공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독 교원 자격증 인정</li> <li>• 동독 직업교육 이수자격 인정</li> <li>• 유치원 교사 자격증 인정</li> </ul> |   |
| 교육법령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지도부에 대한 규정</li> <li>• 교육청 설립에 대한 규정</li> <li>• 잠정 교육법</li> <li>• 잠정 사립학교법</li> <li>• 직업교육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정 학교법</li> <li>• 잠정 사립학교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보육법</li> <li>• 학교법</li> <li>• 사립학교법</li> </ul> |
| 변화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군사화</li> <li>• 탈이념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독화</li> </ul>  |  |   |

\* 출처 : 김진숙·박은아·정채관·김창환(2015).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연구(I).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sup>64</sup> Eva-Maria Kabisch(2016). Umstrukturierung des Bildungssystems in den neuen Bundeslaendern nach 1989,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204.

## 제3장

## 교육 분야 독일 통일·통합 연구 상황

## 제1절 한국에서의 연구 상황

독일통일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교육 분야에서의 통합에 대한 연구물도 확인되고 있다. 교육 각 분야에 걸쳐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연구물이 풍부한 편은 아니다.

## 1. 연구물 현황

독일의 교육통합에 관한 연구는 유아부터 평생에 이르기까지 교육 전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독일통일 전후의 유아교육제도 비교연구(손지영, 2005), 유아교육 분야의 동서독 통합과정(최민숙, 2000), 그리고 통일 이후의 유아교육 현황과 과제(이명환, 1996)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독일의 유아교육이 연구되기도 하였다(양옥승, 2014).

둘째,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전반(한만길 외, 1998; 김진숙 외, 2015), 교육제도(이향규, 2003; 권오현, 2006; 김창환, 2008; 이상훈, 2011; 김상무, 2013; 강구섭, 2016), 교육과정(김주성, 1994; 김상무, 2012; 김진숙 외, 2014, 2015; 강구섭, 2016), 수학교육(전환옥, 2008), 사회과교육(차조일 외,





2014; 원준호, 2014), 외국어교육(권오현 외, 2005), 독어교육(이원경, 2009, 2010), 직업교육(김용운, 2005) 분야의 통합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셋째,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주로 통일 이후 대학제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갖고 추진되었다(김종영, 1993; 김진업, 1997; 김영호, 2000; 김상무, 2009).

넷째, 평생교육 분야의 연구물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주로 통일 이후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이병준, 1999; 강구섭, 2009, 2010).

## 2. 연구 주제

독일 교육통합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연구가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독일 교육통합의 과정을 소개한 연구물이 가장 많다. 교육 각 분야에서 추진된 통합의 과정과 내용, 결과들을 객관적으로 소개한 연구물이다. 둘째, 독일과 한국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교육통합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가 추진되었다.

## 3. 연구 특징

독일 교육통합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하게 된다. 첫째, 교육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다. 연구물 수가 절대적으로 불충분하고, 그 연구물들도 초·중·등 교육에 치중하여 유아 분야, 직업 분야, 대학 분야, 평생교육 분야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독일 사례에 대한 객관적인 소개가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합적인 관점은 미흡한 상황이다. 특정 주제에 대한 소개는 충실하나, 독일 교육의 배경요인, 환경요인 등을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교육통합을 다룬 연구는 드물다. 셋째, 특정 주제에 대한 소개가 주를 이루고 있어 심층적인 분석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통합 과정, 통일 후 구동독지역 교육통합의 문제점 등에 대한 심층

적 분석이 불충분한 실정이다. 넷째, 통일 이전의 서독과 동독의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하다. 즉, 통합의 배경이 되는 동서독의 교육에 대한 연구물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나마 서독과 남한을 비교한 연구는 있으나, 동독과 북한의 교육체제를 비교한 연구물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효과적인 통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분야의 연구가 보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시사점 논의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 학력인정, 자격에 대한 인정, 교원재교육 및 연수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연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한국 교육통합의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들이 비교적 풍부하나, 그것을 기초로 통일한국 교육통합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통일이 미래지향적인 사건이라고 본다면,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교육통합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전체적으로 볼 때, 독일 교육통합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고 생산적으로 발전하기 보다는, 특정 주제에 대한 분절적인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공통의 주제, 핵심 이슈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이 미흡한 상황이다.

## 제2절 향후 연구과제

독일의 교육통합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본 결과, 그동안 연구성과가 많이 축적되었으나, 과제도 발견되고 있다.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독일 교육통합의 진행과정과 문제점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육통합 과정의 쟁점, 교육통합 결과의 문제점, 더불어 해결방안들까지 면밀한 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면밀한 연구는 남북 교육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와 문제점을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둘째, 남북통일 이후 교육 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 교육통합은 단순히 A와 B의 결합이 아니다. 남북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지향하는 통합이 되어야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남과 북의 합을 넘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통합될 때, 남북 교육통합의 가치가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 영역별로 남북 교육통합을 위한 세부적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취학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 학교급별 구체적 통합 방안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격증 인정, 학생, 교원, 교육과정, 교과서, 교육행정, 교육재정, 교육시설, 교육법 등 교육 주제별로 통합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동서독의 교육통합과 마찬가지로 남북 교육통합 역시 단계별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긴급조치, 잠정조치, 이행조치 등의 방안들과 더불어 북한교육 개혁 단계, 통합과정 단계, 통합 단계 등 단계별로 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정치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남북 교육통합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독일통일에 대한 연구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과 교육통합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통합의 문제점들이 시간을 두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생의 의식과 가치관 변화 및 사회적응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지 등을 면밀히 연구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다. 탈북 배경, 청소년들이 남한 교육에 적응하는 과정을 정치하게 연구하여 통일 후 북한학생들의 교육적응 과정을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제4장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여기서는 독일 교육통합이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도록 하겠다. 통일 후 남북 교육통합 시 예상되는 이슈와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준비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하겠다.

## 제1절 독일 교육통합이 주는 시사점

동서독 교육통합이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교육통합의 방향성이 명료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적절성 여부를 떠나 서독식으로 통합한다는 방향성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통일 이후 큰 혼란을 줄일 수 있었다. 만약, 방향성이 명료하지 않았다면 교육통합에 더욱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혼란도 더 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남한식 통합, 절충식 통합 등 통일 모델을 분명히 설정하고 이에 대비하는 통합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육통합은 단계별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서부터 최종적으로 통합교육법이 남북한에 적용될 때까지 단계별



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서 취한 긴급조치, 이행조치, 잠정조치 등은 주요 참고사항이 된다.

셋째,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분야에 대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서 제작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과정 통합 방안을 사전에 세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총론 수준과 더불어 각 교과별로 통합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 독일보다 교육과정 통합기간을 줄일 수 있다. 통합교육 과정에 근거한 교과서를 준비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단기간에 북한에 공급하는 방안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구동독과 북한은 교육체제에서 구조적인 유사점이 많이 있다. 학제, 취학전 교육의 강조, 사회주의 교육이념, 고등교육기회의 제한, 직업교육, 학생단체 등. 때문에 독일의 교육통합 과정과 대책 방안이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 남북한 교육통합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따라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교육실태를 분명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서독은 통일 이전에 상대방의 교육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학년별, 교과별로 북한의 교육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교육통합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교사 문제에 대한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존교사의 자격 인정 문제, 검증 문제, 재교육 문제, 신규 교과 교사채용 문제 등에 대한 면밀한 대책 방안이 사전에 수립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 수를 고려한 교과별 교사의 수요-공급 문제에 대한 진단과 연구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제2절 남북 교육통합 시 예상되는 이슈와 문제점

여기서는 남북 교육통합 시 예상되는 주요 이슈와 문제점들에 대하여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 1. 단기적 이슈

### 1) 학력 및 자격인정

독일의 통일조약에서 가장 중요시 취급되었던 것이 학력 및 자격인정 문제였다. 동독에서 취득한 학력과 자격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남북한의 경우에도 학력과 자격제도가 달라 이 점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학력과 자격인정 문제는 기준에 대한 논란과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공산주의 이념 교육 및 주체사상 교육 문제

독일의 경우 ‘국가시민’ 교과가 통일 직후 폐지되었다. 더불어 사회주의 교육도 사라졌다. 민주주의 사회로 전환되면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이다.

남북한의 경우에도 공산주의 이념 교육과 주체사상 교육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이슈로 제기될 것이다. 공산주의 이념 교육과 주체사상 교육을 즉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에 대한 대체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3) 교원 문제

독일에서는 교원해고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관리직 교원과 이념 교과 교원이 주로 해고되었다.

남북의 경우에도 교원해고 문제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적을 보유한 교원, 관리직 교원, 공산주의 이념 교과 교원, 주체사상 교과 교원 처리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판단된다. 해고되지 않은 교원의 재교육 문제도 중요한 이슈이다. 북한 모든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4) 교과서 보급 문제

독일에서는 통일 직후에도 일정 기간 동독의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사회주의 교육이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남북의 경우에도, 북한지역에 교과서를 보급하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리 준비한 잠정 교육과정안에 기초하여 교과서를 신속히 보급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가르칠 수 있는 남한의 교사를 파견하는 것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퇴직 교원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5) 청소년 조직

독일의 경우, 통일 직후 동독의 청소년 조직은 해체되었다. 이러한 조직은 정치사상 교육에서 핵심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동독의 청소년 조직과 북한의 청소년 조직(조선소년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유사한 조직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남북통일 즉시 북한의 청소년 조직을 해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중장기적 이슈

### 1) 교육이념과 목적

독일의 경우, 자유민주주의를 골격으로 하는 서독의 교육이념은 사회주의를 골격으로 하는 동독의 교육이념과 서로 다른 구조를 갖고 있었다. 통일 후 동독의 교육이념과 목적은 서독식의 교육이념과 목적으로 바뀌면서 교육이념 및 목적 통합이 이루어졌다.

독일과 남북한은 교육이념과 목적 측면에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통일 후 북한의 사회주의 이념과 주체사상 이념이 제거되는 방향으로 교육이념 및 목적 통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2) 교육제도

독일의 경우, 서독의 교육제도와 동독의 교육제도는 서로 다른 구조를 갖고 있었다. 통일 후 동독의 교육제도가 서독식의 교육제도로 바뀌면서 교육제도 통합이 이루어졌다.

남한의 교육제도는 6-3-3-4제도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고, 북한의 경우 5-3-3-4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통일 이후 교육제도의 통합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

남한의 교육제도가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므로 남한의 교육제도에 맞추어 북한의 교육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3) 교육과정 및 교과서

독일의 경우, 서독의 교육과정과 동독의 교육과정이 서로 다른 구조를 갖고 있었다. 통일 후 동독의 교육과정은 서독식의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교육과정 통합이 이루어졌다. 특히 사회주의 이념 교과는 없어지고, 현대화되는 과정을 겪었다.

남북의 경우에도, 글로벌 보편성을 지닌 남한의 교육과정으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공산주의 이념 교육과정과 주체사상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순수한 교육과정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4) 학생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동독지역 학생들의 통일사회 적응이 매우 큰 문제가 되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공산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적응상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학교 내에서도 교육목적, 내용, 방법 등의 변화로 인하여 큰 혼란을 경험하였다.





남북의 경우에도, 통일 후 북한학생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북한학생들의 재사회화 교육이 대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5) 교원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동독지역 교원들이 해고되거나 재교육을 받아야 했다. 또한 서독의 교원이 동독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기도 하였다.

남북한의 경우에도, 통일 후 북한교원 처리 문제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원의 재교육과 신규 수급 문제가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교원 재교육 방안과 신규 채용 방안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남한 교원 파견 문제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 6) 사립학교

독일의 경우, 사립학교가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도 생겨났다. 구동독에서 교육은 국가의 사무이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존재하지 않았다. 사립학교법이 만들어지고 서독식의 사립학교가 생겨났다.

남북의 경우에도 상황이 비슷하다. 북한에는 사립학교가 없기 때문에 통일 후 사립학교 설립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7) 직업교육

독일의 경우, 서독의 직업교육과 동독의 직업교육은 서로 다른 구조를 갖고 있었다. 서독은 시장경제의 원리 하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면서 직업교육이 이루어졌고, 동독의 경우 국가가 통제하며 직업교육이 이루어졌다. 통일 후 독일의 직업교육체제는 서독식의 직업교육체제로 바뀌면서 직업교육체제 통합이 이루어졌다.

남북한의 경우에도 시장경제가 중심이 되는 직업교육 방식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이념교육을 제거하고,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직업교육체제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 8) 고등교육

독일의 경우, 서독의 고등교육과 동독의 고등교육은 유사하면서도 다른 구조를 갖고 있었다. 서독은 민주적이고 세계화에 부응하는 구조로 고등교육을 운영하였고, 동독의 경우 공산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이념적 도구로 고등교육을 운영하였다. 통일 후 서독식의 고등교육체제로 동독의 고등교육체제가 바뀌면서 통합이 이루어졌다.

남북의 경우에도, 탈이념, 고등교육의 세계화 및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 9) 교육행정체제

독일의 경우, 서독의 교육행정체제와 동독의 교육행정체제는 서로 다른 구조를 갖고 있었다. 통일 후 동독의 교육행정체제는 서독식의 교육행정체제로 바뀌면서 교육행정체제 통합이 이루어졌다.

남북한의 경우에도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통일 이후 북한에서 당의 지배를 받는 북한식의 교육행정체제는 폐지될 필요가 있다. 민주적 교육행정체제 및 교육자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교육행정체제가 통합될 필요가 있다.

### 제3절 남북 교육통합을 위해 준비하여야 할 사항

#### 1. 통일 전 남북 교육통합 준비단계

독일통일이 낳은 최대 문제점은 통일이 준비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



는 점이다. 그 당시 동서독이 통일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 독일통일은 남북의 통일도 언젠가 가능하다는 상황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준비 작업이 지금부터 계획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독일의 통일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점은 우리의 통일도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준비 작업이 지금부터 계획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도 통일 이전에 통일 이후의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통일을 전제하고 준비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며, 관계 전문가들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단기적 이슈에 긴급히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 및 자격 인정 방안, 공산주의 교육 및 주체사상 교육 제거 방안, 청소년 조직 해체 방안, 교과서 보급 문제, 교원 해고 및 재교육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통일 후 즉시 투입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에서 취득한 학력과 자격의 인증 업무가 폭증할 것에 대비하여 통일 직후 한시적으로 ‘북한교육·자격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육통합 마스터플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남북 교육통합이 실현될 것을 가정하고, 교육통합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방향과 방안을 담은 종합계획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방안에는 구체적 추진전략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 남북 교육통합은 글로벌 스탠다드, 헌법적 가치, 미래적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구체적인 교육통합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교육영역별로 세부적인 방안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교육단계별로는 취학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을 아우르고, 교육영역별로는 교육제도,

교육과정, 학생, 교원, 교육행정조직 등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넷째, 단계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교육통합이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1단계, 2단계, 3단계 등으로 구분된 단계별 통합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남북 교육통합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쟁점에 대한 깊이 있는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교육과 사회주의 교육을 장기간 시행해 온 덕분에 남북 간의 교육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독일통일 이후 법을 제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여, 통일 이후 적용될 교육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 안에는 통일 이후 통합교육제도의 모습이 담겨질 것이다.

일곱째, 독일통일 이후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여, 통일 이후 사용될 통합교육과정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독일통일 이후 교과서를 만드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안이 마련된 이후 제작이 가능한 것임을 고려하여 통일교육과정안이 개발된 이후 교과서 제작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교과서의 경우 과도기 통합교과서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합교육과정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남한 교과서를 임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독일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교사의 해고 문제는 교육통합의 가장 큰 난관이었다. 그리고 재임용된 교사는 철저히 재교육시켰다. 남북통일이 독일식으로 이루어진다면 통일 이후 북한지역 교사의 해고와 재임용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사 해고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교원들의 자격 인정 문제가 이슈가 될 것에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북한교원자격 인정심사위원회’를 두어 자격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히 심사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또



한 교원(교수 포함) 수급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화하고, 남한의 퇴직 인력 및 임용대기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북한 교사 재교육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사전에 개발될 필요가 있다. 북한지역 전 교원을 대상으로 장·단기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남한교원의 파견 또는 남북한교원 교차근무 등을 통한 상호이해 및 전문성 신장 노력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홉째, 구동독 학생들은 기성세대인 어른보다는 빨리 새로운 사회체제에 적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구동독 학생들의 부적응과 갈등 양상이 특별히 통일 초기에 심각하였던 점은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통일 초기 사회 불안과 불확실한 미래, 심리적 갈등이 폭력과 부적응으로 표출되었다. 남북한의 경우에서도 통일 이후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부적응과 갈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통일 후 예상되는 남북한 학생들의 갈등 요인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째, 북한 교육시스템을 개혁할 인적, 물적 자원들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 직후 북한의 교육을 개혁할 자원들이 필요한 것이다.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정부들이 나서서 동독의 각 주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2. 통일 직후 남북 교육통합 실행 단계

통일 직후 남북 교육통합 실행단계에서는 준비된 통합 방안들을 혼란 없이 시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첫째, 독일의 경우, ‘교육통합추진위원회’를 두어 교육통합을 준비하였다. 남북의 교육통합을 추진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운영위원회와 영역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통합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일은 통일이 급속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통일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통합을 위한 과도 규정을 만들었다. 남북한도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되든 통일 이후 발생할 여러 문제점과 후유증을 예상해, 남북한 교육체제의 완전한 통합 이전에 통용되는 잠정적 학교운영 방안, 교육과정 계획안,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긴급조치, 잠정조치, 이행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일 직후 긴급하게 실행하여야 하는 긴급조치 방안, 법적 통합까지 유효한 잠정조치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에 대한 신속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통합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예, 교육행정조직 운영, 교원 파견, 교과서 보급 등)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여 곧 바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지역 교육 분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교육개혁가들을 북한에 파견하는 것을 준비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북한 교육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고, 북한 교사들을 재교육할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퇴직 공무원과 퇴직 교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육조치를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 교육법’을 제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교육법’을 확장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학교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이 필요하다. 임시로 남한의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북한지역에 확장하여 ‘잠정 교육과정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남한의 지자체(교육청)들이 북한의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북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매결연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통일이 되면 즉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덟째, 통일 직후에는 잠정적인 방안(조치)들이 마련되어 적용되지만, 동시에 항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육법, 교육과정, 교육행정



시스템 등 새로운 통일 대한민국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 3. 통일 후 북한교육 개혁(재구조화) 방안

통일 후 교육통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북한교육을 전면 개편하고 재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교육시스템 전반에 걸쳐 구조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의 후진적인 교육시스템을 뜯어고쳐 선진 교육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교육제도, 교육시설, 교육행정, 교육과정, 교육시설 등을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교육시스템 재구조화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 계획을 갖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교육이 매우 낙후된 점을 고려하여 북한교육 재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북의 균형을 이루는 통합적 관점, 미래 교육체제에 부합하는 미래적 관점에서 북한의 교육을 재건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교육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선진시설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통일 직후 독일정부는 구동독의 교육개혁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구조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제도, 취학 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교육행정 및 재정, 교원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였다. 우리도 통일 후 교육개혁을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별히 현재 북한지역에 사립학교가 없는 점을 고려해, 통일 후 북한지역에 사립학교 설립을 촉진할 수 있는 법 제정과 대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재 북한의 직업교육이 대단히 취약한 점을 고려해, 통일 후 실업계 고등학교의 설립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통일 후 독일은 지역, 기관, 학교의 자매결연을 통해 인적, 행정적, 재

정적 지원과 교류를 하였다. 통일한국 역시 원활한 교육통합을 위해 교육행정기관, 교육기관의 자매결연을 통한 인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남북한 교사와 학생의 상호교류 사업을 조직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통일 전부터 학생교류 등 인적 교류를 통하여 이질감을 해소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청소년 관련 여러 사업 또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동서독 학생들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구동독 학생들의 적응을 도왔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러한 상호교류 사업과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 외에도 사회단체나 종교단체가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통일 후 북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사회 적응 교육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통일사회 적응 교육을 한시적으로나마 정규 교육과정 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별히 통일 후 구서독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반감과 불안이 증가되는 현상을 볼 때, 남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 이해, 갈등을 평화롭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이 중심 과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남한 학생들이 우월감에 사로잡히거나 거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교육도 중요하다. 남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은 지금부터 프로그램 마련과 더불어 실시되어야 한다. 통일독일은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정치교육센터뿐 아니라, 구동독 주정부 산하에 정치교육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정치교육을 실시하였다. 우리도 통일 후 정치교육을 담당할 기구나 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성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북한지역 교원 양성 및 재교육도 중요하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교원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교원 재교육은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장기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연수를 총괄하는 기





관(북한교원연수원)의 설립이 필요하고, 장기간에 걸쳐 모든 교원에 대해 여러 차례 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 확보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강구섭(2009). 독일통일 후 구동독지역에서 실시된 평생교육의 역할에 대한 고찰: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한국평생교육학회, 평생교육학연구, 제15권, 제2호, pp.29-51.
- 강구섭(2010). 동서독 통합 개념을 통해 살펴본 평생교육의 과제.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제1호, pp.275-304.
- 강구섭(2012). 통일 후 동서독 교육통합 사례 연구-학제, 교육과정, 교사 재임용 사례를 중심으로 -. 비교교육연구, 제22권 제1호, pp.45-69.
- 권오현(2006). 독일통일 후 동독지역의 교육통합 연구: 초·중등 학제 개편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독일어문학회, 제32권, pp.271-29.
- 권오현·양현권·이병민(2005). 독일통일의 경험에 따른 남·북한 학교 외국어교육 통합 방안.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독어교육, 제34권, pp.7-42.
- 권이종·양도원·허정무·안이환(1995). 통독 전후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분석 연구: Brandenburg 주정부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독일통일교육과정연구위원회.
- 김상무(2009). 독일통일 과정과 이후 구동독 대학의 변화: 구조와 인적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 제31권, 제2호, pp.47-73.
- 김상무(2012). 독일통일 이후 신연방주의 교육내용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사상연구회, 교육사상연구, 제26권, 제3호, pp.21-46.
- 김상무(2013). 독일통일 이후 신연방주 교육체제 전환에 관한 연구. 교육사상연구회, 교육사상연구, 제27권, 제3호, pp.99-116.
- 김상무(2013). 1989-1990년 동·서독 교육통합 과정에 관한 연구-초·중등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의 이론과 실천, 18권 2호, 한독교육학회.
- 김영호(2000). 통일독일의 새로운 학위제 도입과 대학개혁.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0권, 제1호, pp.287-310.
- 김용윤(2005).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의 직업교육실태 연구: 탈북 청소년 직업교육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화(2006). 독일통일 후 독일대학에서 슬라브학 및 슬라브연구소의 변화: 자유대학과 훔볼트대학 슬라브연구소의 통합사례와 대학개혁을 중심으로. 한국러시아문화학회,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23권, pp.289-318.
- 김종영(1993). 통독 후 신연방주(구동독)에 있어 경영경제학 도입에 대한 연구: 미래에 있어 남북한의 경우에도 모델이 될 수 있는가. 한독경상학회, 경상논총, 제11권, pp.239-265.
- 김주성(1994). 통일 이후의 교육과정에 관한 모델 연구: 시민교육 관련 교과를 중심으로. 북한 및 통일연구논문집 제5권, 통일원.
- 김진숙(2016). 통일 이후 한국의 교육통합 방향.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251-262.
- 김진숙·박순경·김창환·황인표(2014). 통일 및 미래사회 대비 남북한 초·중등학교의 통합교육과정 개발 방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진숙·박은아·정채관·김창환(2015).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연구(I). 한국교육과정

- 평가원.
- 김진업(1997). 독일통일과 대학제도의 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 사회. pp.115-138.
- 김창환(2008). 인재강국 독일의 교육. 신정.
- 김창환·양금희·윤재홍(2002).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태 분석. 통일부.
- 노상우·정영수·김창환(1999). 통일 후 독일의 국민통합을 위한 교육정책 연구. 한독교육학회. 교육의 이론과 실천. pp.41-90.
- 박명기(2016). 통일대비 사회통합과 교육과제.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214-229.
- 손지영(2005). 독일통일 전후의 유아교육제도 연구.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세호·박성조·양성철·김영철·박재윤·백성준(1993). 독일 교육통합과 파생문제점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양옥승(2014). 통일대비 미국, 중국, 독일, 스웨덴의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 분석. 한국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 제34권. 제6호. pp.585-597.
- 오인택(1993). 통일독일에서의 교육의 역할.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통권 제416호. pp.132-148.
- 위르겐 뵘 외 엮음, 이학로 옮김(1994). 헤이, 오씨 안녕, 베씨: 독일 청소년들의 통일 소감집. 푸른나무.
- 원준호·차조일(2014). 독일통일 이후 신연방주에서의 사회과 도입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시민교육연구. 제46권. 제2호. pp.307-334.
- 원준호·차조일(2014). 통일 전 동독의 국가시민과에 대한 연구: 교육목적과 체계, 교육내용, 교수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제17권. 제2호. pp.227-256.
- 이명환(1996). 통독의 보육 및 유아교육의 현황과 실제. 미래유아교육학회.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2권. pp.135-166.
- 이병준(1999). 독일통일 후 구동독지역에서의 성인교육 분야의 변형(transformation)과정에 관한 반성적(反省的)연구. 사회교육학연구. 제5권. 제1호.
- 이상훈(2011). 통일 이후 교육체제 통합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경(2009). 독일통일기의 독어교육. 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009권 제1호. pp.23-30.
- 이원경(2010). 독일통일기의 독어교육. 한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 제131호. pp.25-48.
- 이향규(2003). 통일 후 교육제도 통합과 사회적 삼투현상: 독일과 한국. 통일문제연구. 평화문제연구소. 제15권. 제2호. pp.273-293.
- 정영수(1998). 독일통일 이후 교육통합의 문제점 분석. 한독교육학회. 교육의 이론과 실천. pp.213-236.
- 정환옥(2008). 독일통일 전후 동서독 중등학교 수학교육의 현황과 수학 교과서의 비교 분석 및 이의 활용 방안 연구. 한국수학교육학회. 수학교육. 제47권. 제3호. pp.353-371.
- 통일원(1994). 독일통일 3년 현황과 전망.
- 한만길·김창환·정지웅(1998).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II). 한국교육개발원.
- 한상우(1993). 통독 이후 교육·문화부문에서의 통합에 대한 고찰: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

- 력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제5권. 제4호. pp.94-127.
- 허숙·차우규·오기성(2002). 통일대비 교육과정 연구의 방향. 인천교육대학교 통일대비교육과정연구위원회.
- 황선혜(2004). 동독 교육발전사와 사회주의 교육제도: 울브리히트 체제 하 10년제 일반종합기술학교제도를 중심으로.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제16권. 제2호. pp.137-171.

### 〈외국 문헌〉

- Anweiler, Oskar(1998). *Schulpolitik und Schulsystem in der DDR*. Opladen.
- Block, Hans-Juergen(1993). *Die Empfehlungen des Wissenschaftsrates fuer die Hochschulen in den neuen Bundeslaendern*. Schramm, Hilde(1993). *Hochschule im Umbruch – Zwischenbilanz Ost*, 137-143.
- Böhnisch, L., u.a.(1992). *Gesellschaftsstudie*, Dresden.
- Borchardt, J., Staendig, U.(1993). *Hochschulgesetz in Brandenburg*.
- Hilde Schramm(Hrsg.)(1993). *Hochschule im Umbruch – Zwischenbilanz Ost*, 105-108.
- Bundesministerium für Frauen und Jugend(1993). *Zur Lage der Jugend in Ost- und Westdeutschland*, Bonn.
- Deutscher Bundestag(1997).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1997*.
- Deutscher Bundestag(1998). *Jahres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m Stand der Deutschen Einheit 1998*.
- Deutsches Jugendinstitut(1992). *Schüler an der Schwelle zur deutschen Einheit*, Leske Budrich.
- Fuchs, H. W., Reuter, L. R.(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 Grundlagen des Marxismus-Leninismus*, Lehrbuch, Berlin, 1960.
- Huettmann, Jens(2016). *Politische Erziehung in der DDR*,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 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9-16.
- Kabisch, Eva-Maria(2016). *Umstrukturierung des Bildungssystems in den neuen Bundeslaendern nach 1989*,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 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192-205.
- Kehm, Barbara H.(2016). *Bildungs- und Hochschulsysteme der DDR und der BRD*, 제6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6. Sitzung des Deutsch-Koreanischen Konsultationsgremiums zu Vereinigungsfragen, 2016.5.26.-27, 베를린, 163-177.



- Ministerium fuer Volksbildung(Hrsg.)(1988). *Sozialistisches Bildungsrecht*, Berlin.
- Papst, M., Schuster, D.(1993). *Jugend-Gewalt in Sachsen Anhalt, Ergebnisse eines Forschungs und Bildungsprojekts*”,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2-3/1993.
- Pöggeler, F.(1992). *Bildungsunion im vereinten Deutschland*, Frankfurt.
- Scherer, Doris(1993). *Personalbestand an den ostdeutschen Hochschulen 1989, 1990 und 1991*. Hilde Schramm(1993). *Hochschule im Umbruch – Zwischenbilanz Ost*, 154-160.
- Schramm, Hilde(1993). *Hochschule im Umbruch – Zwischenbilanz Ost*.
- Sturzbecher, D., Kalb, K.(1993). “*Elterliche Erziehungsziele in der ehemaligen DDR und der alten Bundesrepublik*”, *Psychologie in Erziehung und Unterricht*, 40(1993), 143-147.
- Weegen, Michael(1993). *Studierende und Personalbedarf in den neuen Bundeslaendern bis zum Jahr 2000*. Hilde Schramm(1993). *Hochschule im Umbruch – Zwischenbilanz Ost*, 160-165.
- Weidentfeld, W., Korte, K,-R.(1996).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Frankfurt.

## 〈부록 1〉 독일통일 전후 주요 교육 연표

| 연도   | 주요 교육 일지   | 비고   |
|--|--|------|
| I. 베를린 장벽 붕괴 전후 동독 교육개혁(1989.10~1990.3.18) |  |      |
| 1989.10.18                                 | 동독 공산당 서기장(국가 원수)이었던 에리히 호네커(E. Honecker) 사퇴, 에곤 크렌츠(E. Krenz)가 신임 공산당 서기장으로 취임                                  |      |
| 10.20                                      | 동독 교육부장관 마르곳 호네커(M. Honecker) 사퇴   |      |
| 11.05                                      | 동독 신임 교육부장관 귄터 폭스(G. Fuchs)는 1990년부터 ‘군사 교과’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 긴급조치 |
| 11.06                                      | 동독 직업교육 담당 서기 보도 바이데만(B. Weidemann)은 ‘국가시민 교과’를 직업교육 과정에서 즉각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천명                                       | 긴급조치 |
| 11.09                                      | 〈베를린 장벽 붕괴〉  |      |
| 11.10                                      | 동독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일반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액션 프로그램(Aktionsprogramm)을 발표   |      |
| 11.13                                      | 한스 모드로우(H. Modrow)가 동독의회에서 신임 동독 수상으로 지명됨  |      |
| 11.17                                      | 한스 모드로우 수상이 교육개혁을 선언함  |      |
| 11.23                                      | 동독정부는 ‘주5일제 수업’을 1990년 3월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함  | 긴급조치 |
| 11.28                                      | 서독 콜 수상이 동독을 지원하기 위한 〈10대 프로그램〉 제안   |      |
| 12.01                                      | 동독 〈헌법〉 개정   |      |
| 12.19                                      | 동서독 수상이 〈조약공동체 형성을 위한 의향서〉에 합의   |      |
| 1990.01.03                                 | 동독 교육청소년부는 대학입학규정을 개정. 신규정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충성 고백을 삭제함   |      |
| 01.12                                      | 동독 교육부장관 하인쯔 에몬스(H. Emons)와 서독 교육부장관 위르겐 뮐레만(J. Moellemann)이 동베를린에서 회합, 교육협력을 위한 〈실무작업반〉 구성 합의                   |      |
| 01.13                                      | 동서독 정치인, 학자, 예술가들이 ‘독일정치교육학회’를 결성함   |      |
| 02.07                                      | 서독정부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독일통일위원회〉 및 6개 분과위원회(화폐통합 및 재정 분과, 경제개혁 분과, 에너지 및 환경 분과, 노동/사회/교육 분과, 국가 공공질서 분과, 외교안보 분과) 설치 |      |
| 02.21                                      | 1990년 2학기부터 ‘국가시민 교과’를 철폐하고, ‘사회 교과’를 설치하기로 함  | 긴급조치 |
| 03.05                                      | 동독 시민단체로 구성된 〈원탁회의〉에서 동독의회에 교육개혁안 제시   |      |
| II. 총선 후 통일까지의 교육 상황(1990.3.18.~1990.10.3) |  |      |
| 1990.03.18                                 | 동독에서 처음으로 자유총선거가 실시됨. 선거 결과 서독의 집권당인 기독교민주당(CDU)과 연대한 정당그룹이 47.79%를 획득하여 승리                                      |      |
| 03.27                                      | 동독에 언어 교과 교사연합(Philologenverband)이 결성됨   |      |
| 04.05                                      | 서독 교육부장관은 직업교육현대화를 위한 10대 중점 계획 발표   |      |
| 04.09                                      | 신임 로타 드 메지에르(R. d. Maiziere) 동독 수상이 구동독의 교육제도를 비판하고 새로운 교육제도 도입을 천명함   |      |



|                                       |  |      |
|---------------------------------------|--|------|
| 05.01                                 | 서독 교육부장관 뮐레만과 동독정부 대변인인 볼프강 마이어(W. Meyer)는 동서독 <교육위원회(deutsch-deutsche Bildungskommission)>를 설치할 것으로 천명함 |      |
| 05.01                                 | 서독 연방의회 예산위원회는 동독에 교과서 제공 결의   |      |
| 05.10                                 | 서독 주교육부장관협의회(KMK)는 동독 출신 대학입학자격자들이 서독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허용   | 이행조치 |
| 05.16                                 | 서독 교육부장관 뮐레만과 동독 교육부장관 한스 마이어(H. J. Meyer)는 동서독의 교과서를 동독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 이행조치 |
| 05.16                                 | 동서독 교육위원회가 결성되고, 첫 회의가 개최됨   |      |
| 05.18                                 | 동서독 <화폐, 경제, 사회통합 조약>이 체결됨. 이는 통일의 전 단계 조치임  |      |
| 05.21                                 | <동서독 교육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
| 05.30                                 | <학교 지도부에 관한 규정> 공포   | 이행조치 |
| 05.30                                 | <교육청 설립에 관한 규정> 공포   | 이행조치 |
| 06.06                                 | 동독 국무회의는 <직장유치원, 직업교육기관에 관한 규정>을 공포함   | 이행조치 |
| 06.13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지침> 제정   | 이행조치 |
| 06.17                                 | 동독 <헌법>이 개정되면서 동독의 평화로운 민주혁명이 법적으로 완성  |      |
| 06.21                                 | 제2차 <동서독 교육위원회> 회의 개최  |      |
| 07.19                                 | 동독의회는 <서독 직업교육법의 동독지역 적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이행조치 |
| 07.22                                 | 동독의회는 잠정 <사립학교법>을 제정하여 사립학교 설치를 가능하게 함   | 잠정조치 |
| 08.01                                 | 동독국무회의는 <사립 보육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  | 이행조치 |
| 08.31                                 | <통일조약> 체결  |      |
| 09.18                                 | 동독의회는 <잠정 학교규정>을 제정함. 이 법안은 1991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고, 그 안에 동독지역의 각 주정부는 주의 고유한 교육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됨             | 잠정조치 |
| 09.18                                 | 동독의회는 <잠정 교원양성규정> 제정   | 잠정조치 |
| 09.26                                 | 제3차 <동서독 교육위원회> 개최(최종회의)   |      |
| 09.29                                 | 동베를린 주의회와 서베를린 주의회는 공동의 학교법과 학교제도를 설치할 것에 합의함  |      |
| III. 독일통일 후 교육 상황(1990.10.3.~1994.10) |  |      |
| 1990.10.03                            | <독일통일>   |      |
| 10.05                                 | 주교육부장관협의회(KMK)는 <구동독에서 획득한 교원자격증의 인정에 관한 잠정 기준>을 제정함   | 잠정조치 |
| 10.14                                 | 통일 후 첫 총선거 실시. 집권 기민당 승리   |      |
| 12.07                                 | 주교육부장관협의회(KMK)는 동독 5개 주의 학제를 승인함   |      |
| 1991.01.04                            | 구동독지역 5개주의 교육부장관이 미팅을 갖고 학교제도, 직업교육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
| 02.09                                 | 작센(Sachsen)주에서는 1991/1992학년도부터 5학년부터 '종교수업'을 실시할 것을 공표함  |      |
| 03.21                                 | 튀링겐주 의회는 <잠정 교육법>을 공표함. 이 법은 1993년 8월 1일까지 유효함   | 잠정조치 |

|            |   |      |
|------------|---|------|
| 04.26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주에서 <교육개혁법>을 제정함                    | 잠정조치 |
| 05.24      | 작센-안할트(Sachsen-Anhalt)주에서 <학교개혁법>을 제정함. 이 법은 199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잠정조치 |
| 05.28      |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에서 <학교개혁법>을 제정함                                     | 잠정조치 |
| 06.14      | 주교육부장관협의회(KMK)는 통일조약에 근거하여 구동독에서 취득한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인정함                     |      |
| 06.20      | 작센(Sachsen)주 의회는 <학교교육법>을 제정함. 이 법은 구동독지역의 교육법 가운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최초의 교육법임  |      |
| 06.26      | 브란덴부르크주 교육부는 <학부모, 학생, 교사의 학교교육참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 이 규정은 1993년 6월 17일에 개정됨 | 잠정조치 |
| 06.26      | 작센-안할트주에서는 <유아보육촉진법>을 제정함   |      |
| 07.11      | 작센-안할트주 의회는 <잠정적 학교개혁법>을 제정함  | 잠정조치 |
| 08.01      | 서베를린의 <학교법>, <사립학교법>이 동베를린에도 적용됨  |      |
| 09.09      | 작센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교육부는 상호협력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함                                  |      |
| 10.11      | 주교육부장관협의회(KMK)는 통일조약에 근거하여 구동독지역에서 취득한 직업교육이수자격을 승인함                    |      |
| 1992.02.04 | 작센주에서 <사립학교법>이 공포됨  |      |
| 02.13      | 작센주에서 초등학교 단계에 제1외국어 교과를 도입함  |      |
| 05.19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의회는 <유아보육촉진법>을 제정함  |      |
| 06.03      | 브란덴부르크주는 '윤리/종교' 교과 모델 수업을 3년 동안 실시하기로 결정함                              |      |
| 06.26      | 주교육부장관협의회(KMK)는 구동독지역 5개 주에서 취득한 교원자격증을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함                    |      |
| 09.10      | 작센주 교육부는 <교사 및 학생의 학교교육 참여 규정>을 공포함                                     |      |
| 09.22      | 작센-안할트주 교육부는 <사립학교 규정>을 공포함   |      |
| 12.08      | 작센-안할트주에서는 <종교/윤리수업에 관한 규칙>을 공포함  |      |
| 1993.03.11 | 작센-안할트주 의회는 <학교법>을 제정함  |      |
| 03.15      | 구동독의 브란덴부르크주의 3,000명의 교사가 구서독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4주 간 연수교육을 받음             |      |
| 05.17      | 주교육부장관협의회(KMK)는 <구동독 시절 취득한 교원자격증을 승인하는 합의안>을 공포함                       |      |
| 08.06      | 튀링겐주의 <학교법>이 제정됨  |      |
| 09.10      | 작센주 의회는 <유아보육촉진법>을 제정함  |      |
| 1994.01.20 | 튀링겐주는 <초등학교, 레겔술레, 김나지움, 종합학교에 관한 규정>을 공포함                              |      |
| 04.01      | 튀링겐주 의회는 <사립학교법>을 제정함   |      |
| 05.04      | 작센-안할트주 <학교법>이 개정됨  |      |
| 07.15      | 작센주의 <학교법>과 <사립학교법>이 개정됨  |      |
| 11.07      | 200명의 구동독지역의 '정치교육' 교과 교사가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3년 간의 재교육 과정을 이수함                 |      |



## <부록 2> 구동독지역 교육개혁을 위한 현안과제와 역할분담체제

### ○ 일반사항

| 현안문제  | 담당기관  |
|---|---|
| <b>동독 교육정책</b><br>- 취학전 교육<br>- 일반 교육제도<br>- 직업교육   | 주정부, 공공기관<br>주정부, 주문교장관회의<br>연방정부, 주정부, MKM, 사회단체<br>연방정부, 주정부, MKM, 사회단체 |
| <b>대학</b><br>청소년 학교 외 훈련<br>일반 전문 훈련(사회보장제도 포함)<br>교육계획, 교육목표, 개혁계획 등의 정보 교환<br>통계자료, 예상자료의 조직적 교환<br>Germen-Germen 연구자료 개발 | 연방·주정부, 공공기관<br>연방·주정부, BLK, KMK<br>연방·주·시, KMK, 해당기관<br>BLK              |
| <b>다음의 제 문제에 대한 협조</b><br>보건교육(마약, Aids 등)<br>환경교육, 통신기술교육<br>여성자원, 영재교육<br>장애인교육<br>예술 분야 교육                               | 연방, 주<br>BLK, KMK   |

### ○ 취학 전 교육

| 현안문제   | 담당기관  |
|--|---|
| 유치원 교육의 담당자 연수 및 연수기관<br>동독측과의 전문가 협의<br>도서관 훈련본부의 전문가 후원<br>유치원 내·외의 교구공급(장난감, 스포츠키구 등) | 주정부, 공공단체<br>연방·주, 공공단체<br>주, 공공기관<br>주, 공공기관 |

### ○ 직업교육 및 연수

| 현안문제   | 담당기관   |
|--|--|
| 실습교사, 전문가의 자질 개선, 재교육<br>직업교육 전문가 및 교사의 교류<br>직업교육의 현대화 촉진(서비스, 수공업 분야)<br>동독에서의 중소기업에서의 자격 재심사<br>학교 간의 상호실습 교류의 촉진<br>직업교육 기관의 협동사업<br>교육 분야의 연구·심사 기구 관계자의 협조 | 연방·주정부 및 내각<br>Carl·Duisberg Gesellschaft<br>연방·주정부, BIB, 내각, 회사연합체<br>연방정부, 독일 수공업연합회<br>BIB, 서독 주정부 간 교류중앙위원회<br>BIB<br>연방·주정부 |

## ○ 일반교육 제도

| 현안 문제   | 담당 기관                     |
|---|---------------------------|
| <b>교육·행정 전문가 교환, 동독 교육제도 개혁 지원, 자문</b><br>- 민주학교 재구성(학부모, 학생, 교사회)<br>- 학교제도 새법규 제정<br>- 민주행정 구성(행정·조직)<br>- 학교제도·구조에 관한 문제(학부형의 학교 참관, 진학상담)   | 주정부, KMK, BLK             |
| <b>일반적 교육 문제(수업방법 자유, 학비, 학생·학부모 역할)</b><br>- 특수교육 문제(특수학교, 외국어 조기 교육, 복합기술 교육, 영재교육 등)<br>- 교과과정, 특수 과목 문제(독어, 역사, 지리, 사회과학, 보건, 교통, 환경, 교육 등)<br>- 동독 교사연수의 재편성 자문 및 지원(교사연수 상호교류, 교사회 조직 등)<br>- 교사교류, 합동회의, 특수 과목에서의 교사 상호교류, 학위관계, 수학여행관계<br>- 동독학생에 대한 교육제도, 프로그램 소개<br>- 동독의 교재지원<br>- 동·서독 분단 근접 지역에서의 교류(운동장, 학교건물 사용) | 주정부, KMK, BLK             |
| <b>학교 휴일 규정</b>   | 연방·주, 교과서회사<br>주정부<br>KMK |

## ○ 대학

| 현안 문제  | 담당 기관  |
|--|--|
| 새 대학 구조 개선 지원(대학행정기구, 교육과정)<br>과학, 연구, 학문 및 학생, 과학자 교류<br>신연구과정개발 추진   | 연방·주정부, KMK, WRK<br>대학, DAAD<br>연방·주정부, 대학 WRK, DAAD,<br>대학연합회   |
| 소장과학자를 위한 지속적 연구과정개발 지원<br>동독대학의 학생수용력의 가능성 및 필요성 조사<br>현재 학생 및 졸업생의 서독대학 입학 가능성연구<br>동독대학생 및 직업훈련생의 서독에서의 하계대학참가<br>객원교수 동독 파견 문제<br>동독대학 졸업 과학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문제<br>대학부설연구소 간의 협동연구 촉진<br>독일연구재단(DFG)을 통한 과학 협력 강화<br>동독대학 도서관제도, 도서관 육성을 위한 긴밀한 협조<br>통신교육의 협조 | 대학, 주정부, WRK, DAAD<br>연방·주정부 과학위원회<br>연방·주정부, 대학, DAAD<br>연방·주정부, 대학, DAAD<br>연방·주정부, 대학, DAAD<br>연방·주정부 AUH<br>연방·주정부, DAAD, 대학<br>연방·주정부, DFG<br>연방·주정부, 독일 도서관협회<br>연방·주정부, Hagen의 방통대학 |

### ○ 청소년 과외활동

| 현안문제   | 담당기관  |
|--|---|
| 동독 청소년의 정치교육 참여<br>서독의 세미나 및 각종회의에 청소년 과외 활동 담당자의 참여<br>각종 기구 및 연구소의 개발을 위한 자문 | 연방·주정부, 공공단체 및 기구<br>연방·주정부, 공공단체 및 기구<br>연방·주정부, 공공단체 및 기구 |

### ○ 일반 전문 교육 훈련

| 현안문제   | 담당기관   |
|--|--|
| 새 사회·경제제도에 대한 예비교육 개발 지원<br>수업자료 제공<br>전문교육 강사 교류<br>평생교육자의 재교육 지원<br>새사회·경제체제와 연관된 평생교육실천기구구성<br>평생교육 기구의 기술적 구성<br>전독 심포지움 세미나 개최 및 전문가 교류<br>지역별 평생교육 기구의 독자적 개발 자문<br>평생교육 기관의 자율적 구성지원<br>도서관의 체계적 정비 | 연방·주정부, 각종단체<br>연방·주정부, 각종단체 및 대중교육 연합회<br>평생교육 총연합회<br>평생교육 총연합회<br>연방·주정부, 평생교육 연합회<br>연방·주정부, 평생교육 연합회<br>연방·주정부, 평생교육 연합회<br>평생교육 연합회<br>평생교육 연합회<br>독일 도서관협의회 |

### ○ 교육 정책 및 교육 계획

| 현안문제   | 담당기관   |
|--|--|
| 유치원 보모 자격 인정<br>학위, 시험평가, 교사자격 문제<br>동독 대학입학 자격 인정<br>서독 유입 동독학생들의 지방분산 정책<br>동독학과 수료시험 합격자의 서독대학에서의 인정<br>직업교육에서의 최종시험 인정<br>통독 후의 통일 교육제도 개선<br>서독학생의 동독에서의 수학 가능성 및 학위 인정 | KMK, JMK<br>KMK<br>KMK<br>연방·주정부, KMK<br>KMK<br>연방정부, BIBB<br>연방·주정부<br>통일정부 |

\* 출처 : 신세호·박성조·양성철·김영철·박재운·백성준(1993), 독일 교육통합과 파생문제점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p.279-281.

### 〈부록 3〉 구동독지역 대학 학과(시설) 폐지, 신설 및 재정비 상황

(1991년 3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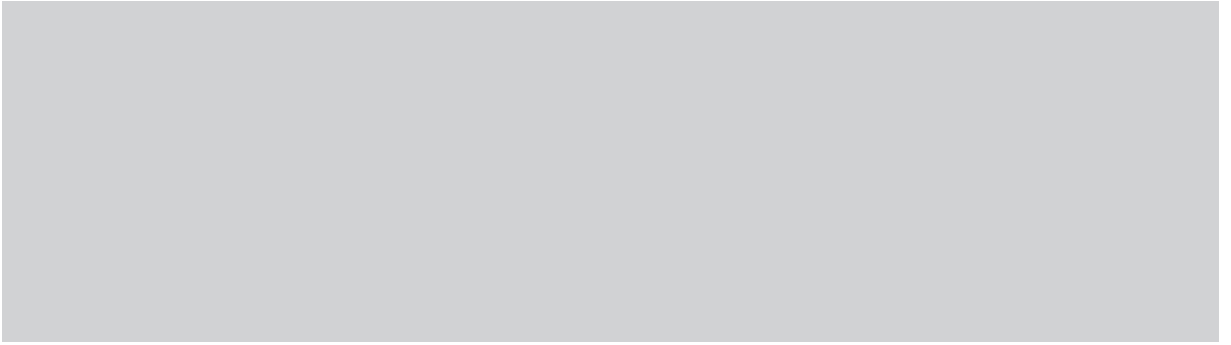
| 대 학  | 폐 지   | 신 설 (재정비)   |
|--|---|---|
| <b>동베를린지역</b><br>○ 훔볼트 종합대학<br><br>○ 베를린 리히텐베르크(Lichtenberg) 공과대학<br>○ 베를린 미술대학<br>○ 음악대학<br>○ 연극영화대학  | 형사학, 응용정부학<br><br>바르텐베르크(Wartenberg) 공과대학<br>경영대학   | 국가학, 철학, 사회학<br>재정비 : 법학, 경제학, 교육학, 역사학, 철학, 교육학<br>공업전문대학  |
| <b>부란덴부르크주(Brandenburg)</b><br>○ 브란덴부르크주 포츠담대학<br><br>○ 코트부스(Cottbus) 건축대학<br><br>○ 바벨스베르크(Babelsberg) 영화·TV대학   | 법과대학 및 행정대학 일부<br>청산(정치학, 경제학, 외국어)<br><br>동독 프랑크푸르크 종합대학교<br>법학·경제학과<br>경제학  | 법학·경제학과<br><br>동독 프랑크푸르크 종합대학교<br>법학·경제학과<br>경제학<br><br>매스미디어 대학 증설   |
| <b>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Mecklenburg-Vorpommern)</b><br>○ 로스톡(Rostock) 종합대학<br>○ 그라이프발트(Greifwald) 종합대학교<br>○ 비스마르크<br>○ 귀스트로우(Guestrow) 사범대학<br>○ 신브란덴부르크 사범대학 | 마르크스레닌사상 교육시설 일체 폐지<br>라틴 아메리카 연구학<br>교육심리학, 교육상담학, 군의학과<br>계획사무소<br>교육·사회학 연구소<br>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연구소 제외   | 법학, 경제학, 사회학 부문<br><br>법학, 경제학, 사회학 부문  |
| <b>작센(Sachsen)주</b><br>○ 험니츠(CheMNitz) 공과대학<br><br>○ 드레스덴 공과대학<br><br>○ 드레스덴 교통 통신대학<br>○ 드레스덴 사범대학  | 체육대학<br>마이센(Meissen) 농과대학<br>라이프치히(Leipzig) 문학연구소<br>철학, 사회학(기술사 제외)을 제외한 사회주의 경영학, 경제학, 교육학 연구소<br>철학, 문화학(도서관학, 기술사 제외), 사회주의 경영학(정보연구소 제외)<br>사회주의경제학 산업연구소<br>교통학, 경영학, 군사통신, 수송학<br>교육학, 심리학, 우호관계 개척학 | 드레스덴(Dresden)공 과대학으로 이월<br><br>라이프치히 종합대학교 참조<br>경제학, 법학, 교육학과<br>경제학, 경영학, 교육학, 사범학교 부문 강의 요강<br>법학과, 인문사회학과, 경제학, 사회·인문과학<br><br>경제학, 통신학 강의 요망<br>교육학과<br>일반교육학 이론 및 역사교육<br>심리학, 발달심리학 강의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레스덴 의과대학</li> <li>○ 드레스덴 미술대학</li> <li>○ 후라이베르크(Freiberg) 광산대학</li> </ul> | <p>마르크스 · 레닌 철학연구소, 군의학과 미술학, 문화학, 사회학부문<br/>사회주의 경영학<br/>기업경영연구소, 산업연구소, 사회학연구소</p>   | <p>재난대비의학<br/>경제학과</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이프치히 종합대학</li> </ul>  | <p>신문방송학, 법학, 국제학,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공산주의학, 마르크스 · 레닌 철학, 소련, 소련공산당, 사회주의체제, 동독 및 사회통일당, 역사부문 중 마르크스레닌주의 교수방식<br/>미학, 예술이론 부문 중 학문민족 해방운동, 교육부문 중 사회통일당, 교육론 및 교육사, 대학교육정책, 군의학부문, 대학교수방법부문, 헤르더(Herder)연구소의 동독학, 프란츠-메링(Franz Mehring)연구소 건축부문 산업연구소</p> | <p>경제학과, 법학과, 체육학과, 교육학과, 신문방송학과, 철학부문, 사회학, 정치학부문, 문화학 부문, 현대문학연구소(문인모임센터포함)<br/>강의요강<br/>신문학, 매스컴학, 사회학, 철학, 교육학</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이프치히 공과대학</li> </ul>  | <p>건축부문 사회 · 경제학연구소</p>  | <p>경제학과 및 경제학 강의 요강</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이프치히 사범대학</li> </ul>  | <p>동독 · 사회통일당, 소련역사부문 중 1917-1945 독일역사 교육학, 심리학, 마르크스 레닌주의, 잔여부문 시민학, 도덕 · 사회학 부문</p>  | <p>교육학 부문<br/>교육학 이론 및 역사<br/>교육심리 · 발달심리</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이프치히 경영대학</li> </ul>  | <p>사회주의 경영학<br/>사회주의 경제</p>  | <p>경제학과<br/>경영학, 경제학</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이프치히 음악대학</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이프치히 연극영화대학</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트바이다(Mittweida) 공과대학</li> </ul>   | <p>사회주의 경영학</p>  | <p>전문대학(사범대학)</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타우(Zittau)</li> </ul>   | <p>사회주의 경영학 일반론 부문</p>   | <p>경제학과</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츠빅кау(Zwickau) 공과대학</li> </ul>   | <p>사회주의 경영학(경제학 · 법학 · 특수경영학 연구소)<br/>회계학 · 통계학</p>  | <p>경영학 에너지경제학 강의 요강<br/>경제학과<br/>경제학 강의 요강</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츠빅кау(Zwickau) 사범대학</li> </ul>   | <p>마르크스 · 레닌주의 부문 시민학</p>  |  |
| <p><b>작센 · 안할트주(Sachsen-Anhalt)</b></p>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이나 메르제부르크(Leuna-Merseburg) 공과대학</li> </ul>                                | <p>경제학<br/>기업경영연구소<br/>철학, 사회학</p>   | <p>경제학<br/>기업경영연구소<br/>철학, 사회학<br/>교육학</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레괴텐(Halle-Koethen) 사범대학</li> </ul>  | <p>전문학교 교사 향상훈련 연구소<br/>국제교육협력 교육학</p>   | <p>교육학</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막데부르크(Magdeburg) 공과대학</li> </ul>   | <p>경제학, 철학, 사회학</p>  | <p>경제학과<br/>경영학 연구소<br/>기업경영연구소</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막데부르크 사범대학</li> </ul>  | <p>마르크스 · 레닌주의 관련 부문, 사회학 · 교육학, 심리학연구소</p>  | <p>교육학<br/>정치학, 사회학, 사회학 교수, 방법 연구소, 사회학연구소</p>  |

|                                       |  |  |
|---------------------------------------|--|--|
| ○ 할레 비텐베르크 종합대학교                      | 국가학 · 법학, 경제학, 철학, 사회학, 실험외과의술   | 법학과<br>경제학, 철학, 사회학연구소<br>경제학과   |
| ○ 코텐(Koethen) 공과대학                    | 경영학, 사회학   |  |
| ○ 베른부르크(Bernburg) 농과대학                | 경제학<br>법학, 사회학, 농업정책, 시장론, 경영학   |  |
| <b>튀링겐주(Thuringen)</b>                |  |  |
| ○ 예나(Jena) 종합대학교                      |  | 정치학, 사회학, 비교사상사, 국가학, 법학, 원료학, 교육학, 철학, 역사학, 마르크스 · 엥겔스 저서 소장부문 사회 위생학, 체육의학, 전염병학, 복음학, 병리해부학, 재난대비의학, 법학, 경제학, 철학, 역사학, 교육심리학 대학 체육, 언어실습실(건축대학과 공동) |
| ○ 바이마르(Weimar) 음악대학                   | 마르크스 · 레닌주의 관련 부문 교육학  | 바이마르 음악대학 참조   |
| ○ 바이마르 건축대학                           | 마르크스 · 레닌주의 관련 부문 사회학, 대학체육, 언어실습실, 계획사무실  |  |
| ○ 에르푸르트(Erfurt) 의과대학                  | 사회학, 철학<br>대학 영화사진 현상실<br>재난대비 의학  | 대학 영화 사진현상실  |
| ○ 에르푸르트 뮐하우젠(Erfurt-Muehlhausen) 사범대학 | 마르크스 · 레닌주의 관련 부문 및 부속시설<br>철학, 경제학,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교육학 연구소                        | 교육학, 심리학, 발달심리학  |
| ○ 일메나우(Ilmenau) 공과대학                  | 철학, 사회학<br>경제균형조정학<br>산업연구소<br>플라스마(Plasma)공학<br>정보 · 발명 및 법학연구소<br>대학 사진 · 영화 현상실 |  |

\* 출처 : 신세호·박성조·양성철·김영철·박재운·백성준(1993). 독일 교육통합과 과생문제점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p.302-304.

교육통합 분야  
관련 정책문서



# 정책문서를 통해 본 교육제도의 통합

이은정  
(독일 베를린 자유대)





## 들어가며

통일과 통합과정에서 실질적인 내적 통합을 달성하는 문제는 경제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다. 특히 독재체제에서 사회화된 주민들을 새로운 민주주의체제로 통합시키기 위한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교육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정확한 통계수치를 통해 증명할 수는 없지만 성인교육과 학교교육을 모두 포괄하는 효과적인 교육체계가 사회적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아가 교육은 체제의 장래를 담당할 인재를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국가에게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대학과 연구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술연구는 장래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을 담당할뿐만 아니라 동시에 경제발전과 직결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통일 과정에서도 구동독지역에서 교육과 연구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궤도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독일의 통일과 통합과정을 시기적으로 보면 통일이 실현되고 몇 년 지난 후에 1990년 통일과정에서 동독의 교육제도와 연구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연구 교육기관들을 통폐합한 것이 아닌가하는 비판이 등장한 것을 볼 수 있다.<sup>1</sup> 그러나 1990년 당시 통화, 경제 및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고 곧이어 통일이 실현되고 신연방주들이 설립될 것으로 전망되던 무

<sup>1</sup> 신연방주 내 대학 및 연구개혁프로그램(HEP) 및 학술연구자 통합프로그램(WIP) 연장에 대한 민주사회당(PDS) 및 사회민주당(SPD) 제출안 심의(문서번호 118).

렵에 동독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교체제를 서독체제에 상응하도록 변화시키는 것만이 유의미한 변화의 방향이라고 믿었다는 교육청 공무원의 회상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sup>2</sup>

동독의 변화는 통일과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래로부터 시작된 변화가 정치와 사회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것은 1990년 3월 18일 동독 최초의 자유총선거를 통해 로타 드 메지에르 수상이 이끄는 개혁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동독정부의 각 부처에는 대부분 지도부만 교체되었고 부처의 전체적 구성 자체가 사회주의통합당의 일당독재가 실행되던 시기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의 시각에서 보면 1990년 3월 이후 동서독의 통일을 위한 준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독일통일과 통합과정에서 연구, 교육과 관련하여 작성된 다양한 정책문서들은 제도의 통합이 단순히 제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교사 및 학자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90년대 중반에 교육연구 관련 정책논의에서 특히 교사와 학자의 삶과 관련된 문제가 특히 집중적으로 조명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통일·통합 과정에서 연구, 교육과 관련되어 작성된 정책문서들을 분류해 보면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통일준비를 위한 기본틀에 관한 문서, 학교제도의 통합과 관련된 문서, 대학과 연구기관의 개혁에 관한 문서, 학위 및 자격증의 인정 문제와 관련된 문서 그리고 연구 교육 인

.....

<sup>2</sup> 변혁기 중의 학교 교육: 통일 중 그리고 통일 이후 신연방주에서 교사들과 수업의 현황-동독 교육청 공무원의 보고(문서번호 127).

력, 즉 교수와 연구원 그리고 교사 임용과 관련된 문서 등으로 정리된다. 아래에서는 이렇게 분류된 문서들을 토대로 통일독일의 교육, 연구제도의 통합 과정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 교육제도의 통일 준비를 위한 기본틀

### 제1절 장벽 붕괴 후 변혁 초기의 교육개혁

동독정부에 의한 교육개혁 작업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바로 다음 날 시작되었다. 1989년 11월 10일 동독의 교육 기관지였던 독일교사신문에 교육부장관이 각급 학교에서 실시되던 교련 과목을 폐지하고 그 시간에 대신 인명구조를 위한 교육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sup>3</sup> 그러나 앞으로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지 당시에는 아무도 추측할 수 없었다. 같은 날 츠빅кау 도시의 교육대학 교수들은 교육개혁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민주국가의 시민을 교육하기 위해서 국가시민교육 교과는 폐지되어서도 안된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sup>4</sup>

동독사회에서 견잡을 수 없이 번지는 개혁에 관한 논의에 정부도 반응

.....

<sup>3</sup> 인민교육부장관 지시-교련 과목 폐지(문서번호 1).

<sup>4</sup> 동독 '국가시민교육' 교과의 재정비에 관해-츠빅кау 교육대학 내 '국가시민 교과 방법론' 학부의 입장(문서번호 3), 우리 시대의 투쟁에 있어 국가시민 교과의 의의-교육학술원 내 '사회과학수업' 연구소 소장의 논문(문서번호 2), 국가시민 교과 업무에 대한 교육부, 직업훈련 및 교육학 학술원 담당 차관의 권고(7학년에서 10학년 대상)(문서번호 4), 동독의 국가시민 교과 관련 토론-(동독) 교육부의 견해(문서번호 5), 사회 교과: 공교육 7학년-10학년 학생 관련 교육과정계획(문서번호 8) 참조.



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sup>5</sup> 개혁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한스 모드로우가 새로운 수상으로 취임하기 이틀 전인 1989년 11월 16일에 동독정부의 교육부는 국가시민교육의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장래 사회주의 개혁을 담당할 시민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들이 동독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강조한 것을 보면 당시 사회주의통합당의 정치엘리트들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에도 동독국가가 오랫동안 존속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을 알 수 있다.<sup>6</sup>

11월 18일에 수상으로 취임한 한스 모드로우가 이끄는 개혁정부의 교육부가 1989년 11월 29일에 발표한 교육개혁안 또한 동독의 지도층이 당시 시작된 변화가 얼마나 급격하게 진행될 것인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개혁안에서 동독 교육부는 1989/1990학년도에는 현행 교과시간을 계속 유지하며, 이후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상세한 계획은 1990년 말까지 공표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990/1991년도의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토론할 사안은 나중에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을 볼 수 있다.<sup>7</sup> 이때에도 교육부는 여전히 국가시민교육 과목이 성숙한 국가시민의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단지 국가시민교육을 통해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적 세계관과 무관하게 공동체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점이 이전의 교육부의 입장과 비교할 때 분명히 변화된 것이었다.

1990년 2월에 발표된 교육 개혁안은 한스 모드로우 정부가 시민사회로부

<sup>5</sup> 장벽 붕괴 이후 1989년 말까지 개혁을 추구하는 시민들이 동독 교육부에 제출한 건의의 수가 8,000개가 넘었다. Jan Hofmann/Helmut Soder, Inhaltsanalytische Untersuchung von im Zeitraum Oktober 1989 bis März 1990 außerhalb institutionalisierter Strukturen entstandenen bildungskonzeptionellen Vorstellungen. Bonn 1991 (Diskussionspapiere der Enquete-Kommission „Zukünftige Bildungspolitik-Bildung 2000“ des 11. Bundestages), p.10.

<sup>6</sup> 국가시민 교과 업무에 대한 교육부, 직업훈련 및 교육학 학술원 담당 차관의 권고(7학년에서 10학년 대상)(문서번호 4).

<sup>7</sup> 동독의 국가시민 교과 관련 토론-(동독) 교육부의 견해(문서번호 5).

터의 요구를 많이 반영한 것을 볼 수 있다. 국가시민교육 과목의 수업을 사회 과목 수업으로 대체하며, 이 과목의 수업을 담당할 교원도 사회 과목을 전공한 사람 또는 그와 관련된 연수를 통해 교육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로 충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의 교육청에 사회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교원을 자문으로 배정하고 서독교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sup>8</sup> 이를 통해 우리는 교육 분야에서도 이미 변혁의 초기 단계부터 동서독 간의 교류가 아주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직후 시작된 동독 내에서의 교육개혁에 관한 논의의 포커스는 주로 학교 내부에서 진행되는 수업 내용과 수업 방식의 개선을 통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참여 유도 등과 같은 문제에 집중되었다.<sup>9</sup> 고등학교 11학년과 12학년에서 이루어지는 철학 과목의 수업이 국가시민교육과 달리 상이한 세계관을 포용할 수 있도록 열린 수업이 되어야 하며, 편파적으로 하나의 특정한 가르침에 편향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피해야만 하며, 학생이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만 한다는 교육부의 권고안은 마치 서독의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인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chsbacher Konsens)<sup>10</sup>를 동독의 교육에서도 준수하겠다고 선언하는

<sup>8</sup> 동독 내 '사회' 교과서의 새 도입에 관해-동독 교육·학술부 지시(문서번호 6).

<sup>9</sup> 1989년 11월 이후 동독의 일반학교에서 시행되었거나 계획 중인 개혁조치 일람(독일 주정부 교육 문화장관협의체 연구논문)(문서번호 9).

<sup>10</sup>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1976년 보이텔스바흐라는 남부 독일의 작은 도시에서 정치교육의 방법, 문제를 주제로 각계각층의 서로 다른 정치노선을 걷는 학자들과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대표자들의 회의를 통해 얻어 낸 최소한의 합의를 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 간에 이루어진 비공식적인 합의사항이 오늘날에도 독일의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 외의 기관과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합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1. 민주시민교육에서 주입식교육 또는 일방적인 강요 또는 교화하는 교육을 금지한다. 바로 여기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정치 세뇌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정치적 세뇌를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의 교사의 역할이 아닐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키우고자 하는 정치교육의 목적에 반작용한다. 2. 정치권과 학계에서 논란이 되는 점들은 그 문제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

## 제2절 동서독 공동교육위원회와 학술자문위원회의 활동

1986년에 문화협정을 체결한 이후 동독과 서독은 교육, 문화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교류와 협력이 있었다. 1989년 11월 동독의 변혁은 양쪽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기본조건을 변화시켰고, 협력도 확대시켰다. 그것은 1990년 1월에 이미 서독 연방교육부와 동독 교육부가 공동실무팀을 구성하여 공동교육위원회 구성의 필요성과 공동교육위원회의 과제와 구조에 관해 협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서독의 경우 연방주들의 동기가 요구되었다. 교육정책은 연방주의의 원칙에 따라 각 주정부가 결정할 문제였기 때문이다. 동서독 간의 통일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2월부터는 정치, 경제적 접근과 통합과정과 함께 양측 교육부 간의 접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 3월 18일 자유총선거의 결과 구성된 로타 드 메지에르 개혁정부의 교육정책은 이미 통일된 독일을 염두에 두고 동독의 교육제도를 서독의 교육제도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동서독의 교육정책의 방향을 맞추고, 교육 및 학술제도의 점차적인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합의가 당시 동서독에 이미 일반적으로 존재하였다. 화폐통합에 관한 협상이 완료되어가고, 통일조약을 위한 협상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교육제도의 통일을 논의하는 것도 사실 당연한 것이었다. 1990년 5월 10일에 열린 서독 교육 및 문화 관련 연방주장관 회의 248차 회의에서 동독과 공동으로 교육개혁위원회

.....  
 로 전달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교육을 받는 학생과 시민들이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기존의 정치 상황을 자신의 이해관계에 부응하도록 변화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sup>11</sup> 사회 교과: 공교육 11학년 및 12학년 학생 관련 권고(문서번호 7).

를 설치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공동교육위원회를 통해 동서독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될 때까지 동독의 교육제도를 연방주의 원칙을 근거로 운영되는 서독의 교육제도와 유사한 구조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계획해야 한다는 점에 합의가 이루어졌다.<sup>12</sup> 서독의 연방주의 원칙 하에서 교육, 특히 학교제도와 관련된 문제는 각 연방주가 관할하는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동독지역의 교육제도 또한 서독지역에서와 유사하게 새로이 구성될 주 단위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었다. 연방주의의 기본원칙, 즉 각 연방주의 제도적, 정치적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독일 각지에서 획득한 모든 학위나 자격증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인정된다는 원칙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동등한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1990년 5월 10일 서독의 교육 및 문화 관련 연방주장관회의에는 동독 개혁정부의 교육부장관 한스 요아힘 마이어가 함께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서 1990년 5월 16일까지 동서독 공동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공동교육위원회는 정치적 차원에서 자문하고 조정하는 기관으로 동서독을 대표하는 각각 8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서독의 대표위원들은 연방정부와 연방주가 각각 4명씩 선정하였다.<sup>13</sup> 동독측의 위원들은 동독에 주 단위의 행정지역단체가 설립되고 난 후에 지역의 교육대표위원들이 참가하기로 하였다. 위원장은 동독 교육학술부장관과 서독 연방정부의 교육학술부장관 그리고 서독의 교육 및 문화 관련 주교육부장관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맡기

.....

<sup>12</sup> 동서독 공동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해-독일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KMK) 제248차 특별회의 (문서번호 10).

<sup>13</sup> 서독측에서 이 위원회에 참가할 인원을 연방정부와 연방주의 대표가 동일한 비율로 구성하게 된 배경에는 통일이 가시화되던 1990년 2월 15일에 연방주의 대표들이 독일통일이라는 거대한 과제는 연방정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연방주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통일과정에서 연방주와 관련되는 사안은 항상 연방주와 연방정부가 동일하게 참여하도록 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독일통일 총서 1권 행정통합 참조.





로 했다.<sup>14</sup>

동서독 공동교육위원회(Gemeinsame Bildungskommission)는 1990년 5월에서 9월의 기간 동안 총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1990년 5월 16일에 열린 1차 회의에서는 공동교육위원회의 구조에 관한 합의 외에 산하에 일반 학교교육, 학교 및 기업 직업교육, 대학/학술 및 계속교육 하부위원회 등 4개의 하부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사양성교육 지원, 교육통계, 도서관 분야에 대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기로 하였다.<sup>15</sup> 나아가 약 3,000만 독일 마르크에 달하는 협력 프로그램과 교환 프로그램 및 학교 교재 등의 지원에 합의하였다.<sup>16</sup> 이 회의에서 동독의 아비투어, 즉 대학입학자격시험을 서독의 아비투어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sup>17</sup> 동독의 아비투어를 서독의 아비투어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논의되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동독학생들의 아비투어 점수가 서독학생들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대학입학을 위한 심사에서 서독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교육위원회 회의는 의과대학처럼 지원자가 많아서 입학정원 제한규정이 있는 학과의 경우 일단 입학정원에서 동독에서 아비투어를 본 학생의 비율을 일정하게 제한하기로 하였다. 이 일종의 경과규정

.....

<sup>14</sup> 동서독 공동교육위원회의 과제 및 구조(문서번호 12).

<sup>15</sup> 동서독 공동교육위원회의 과제 및 구조(문서번호 12).

<sup>16</sup> 공동교육위원회의 1차 회의 결과에 대해 보도하면서 서독의 시사매거진 <슈피겔>지는 동독의 학교교육을 위해 서독이 제공하는 역사 교과서에 포함된 동독정권에 대한 표현이 지나치게 온건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동독의 일당독재 체제가 마치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인 것처럼 설명할 뿐, 이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슈피겔>지는 비밀경찰이나 법치주의원칙의 부재와 같은 면이 다루어지지 않는 교과서를 변혁 과정 중의 동독에 제공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하는 질문을 던진다. “‘동독에는 포르노그래피 따위는 없습니다.’ 사회주의통합당의 지배 하에서 살만 했다는 말이 동독지역 학생들이 서독의 교과서로 처음 배우는 내용이라니, 서독정부, 교과서를 보내주기 위해 수백만 마르크 지출.”(문서번호 11).

<sup>17</sup> 당시 서독의 권위 있는 주간 정치매거진 디 짜이트(Die Zeit)는 이 결정으로 유럽 전역에서 교육통합을 추진하는 서독이 앞으로 통일될 자기 나라에서는 일방적으로 장벽을 다시 세우려고 한다는 비난을 면하게 되었다고 논평하였다.(디 짜이트), 1990년 5월 18일.

은 1994년까지만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sup>18</sup>

1990년 6월 21일에 개최된 2차 회의에서 서독 연방정부의 뮐레만 교육부장관은 동독의 대학도서관을 위해 1,500만 마르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동독의 한스 요아힘 마이어 교육부장은 동독정부가 서독의 연방주의 원칙에 따른 학교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 중이며 직업교육과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고 직업학교의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하였다. 2차 회의가 개최되던 1990년 6월 동독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은 한 달 전인 5월에 비해 훨씬 열악해졌기에, 마이어 장관은 재정이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연구활동에 차질이 올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 인력이 대량으로 해고되는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sup>19</sup> 그런 상황에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났다.<sup>20</sup> 개인이 스스로 대학진학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던 동독이 변혁을 겪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무엇보다 변혁기의 과도정부가 그에 대처할 정치적,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공동교육위원회 3차 회의는 통일 직전인 1990년 9월 26일에 개최되었다.<sup>21</sup> 이 회의에서 공동교육위원회는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서 새롭게 정비될 학교제도의 기본원칙을 제안하였다. 거기에는 8학년까지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동독의 학교제도를 수정해서 서독과 마찬가지로 모든 학생이 최소 9년에서 10년 간의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중등교육 1단계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독에서 실행되었던 다원적 학교유형을

.....

<sup>18</sup> 아비투어 점수 평가에 관한 논쟁은 동서독 간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서독의 연방주 간에도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다. 특히 바이에른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아비투어 점수의 평가 문제를 두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sup>19</sup> 동서독 공동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회의록)(문서번호 19).

<sup>20</sup> 대학 신입생 수가 1989년의 25,853명에서 31,857명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469명의 지원자가 대학입학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sup>21</sup> 동서독 공동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최종회의)(회의결과기록)(문서번호 32).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sup>22</sup>

공동교육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교육 부문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틀이 마련될 수 있었다. 이 기구는 동독 교육부가 계획하고 있는 교육 관련 개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고 동서독의 전문가들이 교육 정책의 계획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는 장이 되었을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독 교육제도 개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물론 공동교육위원회의 회의가 아무런 갈등이 없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교육개혁을 통해 사회주의통합당의 일당독재 하에서 불가능했던 이상적인 교육을 실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갖고 있었던 변혁기 시민운동 출신 동독의 정치인들과 노련한 서독의 정치인 및 기술관료들 간에 진행된 협상에서 자주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현실정치적인 조건 하에서 내린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논리만으로 변혁에 대한 열망에 가득찬 동독대표들과 시민들이 그런 현실에 실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 등장한 교육개혁에 관한 논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독에서는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구조와 교육내용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아주 높았다. 그러나 공동교육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관철된 사안을 보면 당시 서독에서도 문제점이 적지 않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되던 제도를 그대로 동독지역에 이식한 결과에 다름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학부모로서 직업을 가진 여성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0학년까지 전일제수업을 보장해야 한다는 동독의 대표단의 의견은 관철되지 않았다.<sup>23</sup> 이 제안은 전 학년 전일제 수업을 진행하던 동독의 제도와 서독의 10학년 의무교육 제도를 절충해서 양쪽 제도의 장점

<sup>22</sup>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겐주 및 동베를린지역의 일반교육학교 재정비를 위한 기본원칙 및 권고(문서번호 33).

<sup>23</sup> 동서독 공동교육위원회의 과제 및 구조(문서번호 12), 동서독 공동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회의록)(문서번호 19).

을 살려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당시 서독에서도 전일제 수업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서독의 보수파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경제적 주체로서의 여성보다는 어머니로서의 여성에 있다는 데 더 강조점을 두었다. 1990년 당시 서독정부를 구성하던 다수파가 바로 이런 보수파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동독측 대표단이 제안한 사안이 관철될 수 없었던 것이다. 단지 동독지역에 새로이 건립될 연방주들이 12학년제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며 12학년을 마친 학생들이 대학입학자격시험인 아비투어(Abitur)에 합격할 경우 13학년을 마치고 졸업한 서독지역의 학생들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에 대해서만 합의가 이루어졌다.<sup>24</sup>

교육부분에서 통일 준비를 위한 기본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기구는 공동교육위원회와 함께 서독의 학술자문회의(Wissenschaftsrat)이다. 이 기구는 대학교육과 학술연구의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연방정부와 연방주에 자문해주는 기구이며, 지금까지도 독일에서 학술연구와 관련된 최고 자문기구로 남아 있다. 서독의 연방정부와 연방주 그리고 동독정부는 이미 1990년 초에 학술자문회의에 동독지역의 학술연구소와 대학에 대한 평가를 의뢰했었다.<sup>25</sup> 그 후 몇 년 간 학술자문회의는 신연방지역의 대학과 학술연구 활동과 관련된 자문을 해주었고,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어느 공공기관도 무시할 수 없는 많은 권고안을 발표했다.<sup>26</sup>

학술자문회의는 동독의 대학과 연구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동서독의 학자들로 구성된 다양한 실무단을 구성하였고, 현장평가도 실시했

.....

<sup>24</sup>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엔주 및 동베를린지역의 일반교육학교 재정비를 위한 기본원칙 및 권고(문서번호 33).

<sup>25</sup>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지역 의과대학에 대한 학술자문회의의 권고(문서번호 70).

<sup>26</sup> 대학과 연구기관의 구조개혁과 관련된 권고안은 대부분 학술자문회의를 통해 작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독일에서 학술자문회의가 갖는 권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실무단의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는 학술자문회의의 이름으로 정부에 제출되었고 언론에도 공개되었다. 1990년 7월 6일에 학술자문회의가 발표한 권고안은 대학의 역할이 교육에만 집중되어 있고 연구는 주로 대학 외의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던 동독의 체제를 점진적으로 대학이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서독의 구조와 유사하게 변경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sup>27</sup> 그를 위해 필요한 대학 연구시설과 도서관의 보완 및 건물의 현대화 등을 위해 1995년까지 소요될 최소 20억 마르크가 넘는 비용을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에 구축될 신연방주들이 감당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교육 연방주의의 원칙에 따른다면 당연히 이 비용의 50%는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해당 연방주가 50%를 부담해야 하지만 통일 초기에는 연방주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통일 이후에는 구동독지역의 대학진학률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에 대비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sup>28</sup> 대학교육구조의 개혁과 함께 시급한 문제가 대학의 국제화와 후진학자의 양성 그리고 연구기관의 구조개혁이며 이를 위해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았다. 동독의 학자들이 서독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독일학술재단(DFG) 또는 국제학술교류서비스(DAAD)와 같은 기관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 기관의 재정확대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  
<sup>27</sup> 독일통일을 목표로 본 학술 및 연구 분야의 전망들. 12가지 권고(문서번호 21).

<sup>28</sup> 실제로 통일 이전 동독에서는 한 해 출생인구 중 12-13 퍼센트만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서독의 경우 1989년에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비율은 해당년도 출생인구 대비 23%였다. 아비투어 합격자, 즉 대학입학자격을 획득한 학생의 수가 1992년에 구서독지역 33.1%, 구동독지역 22.9%였다가 1995년 이후에는 양쪽 지역이 차이가 없이 35%를 넘어선 것을 보면 학술자문회의의 이러한 예측이 정확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 제3절 통일조약-37조, 38조

1990년 5월 이후 이루어진 공동교육위원회 산하 다양한 분과위원회와 전문가그룹의 활동과 학술자문회의의 활동을 바탕으로 동서독의 교육제도와 학술연구제도를 통합하는 작업이 무리 없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된다. 근본적으로는 서독의 제도를 토대로 그것을 동독지역에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그것이 서독에 의한 동독의 식민화는 분명히 아니었다. 1차 공동교육위원회의 회의 문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서독 양측의 대표들은 서독에서 실행되던 교육연방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에 합의하였다.<sup>29</sup> 그 원칙에 따라 공동의 기본틀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비교 가능한 교육구조를 구축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결과 통일 후 구동독지역에서 해당 연방주의 특징을 고려해서 스스로 새로운 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자유영역이 보장되었다. 그것은 통일조약의 37조와 38조에 반영되어 있다.<sup>30</sup>

통일조약의 37조를 통해 동독에서 취득한 모든 학위, 시험성적 및 자격증이 서독의 그것과 동등하게 인정된다는 기본원칙이 명시되었다.<sup>31</sup> 38조에는 신연방지역의 모든 공립교육기관의 거취에 관해서는 통일 후 건립될 해당 신연방주에서 1991년 12월 31일까지 평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sup>32</sup> 서독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던 동독 소재 대학 외 연구기관들, 특히 동독 학술원 산하 연구소들의 경우에도 이들이 통일조약 38조에 따라 1990년 10월 3일자로 학술원과 분리되기는 하지만 1991년 12월 31일까지 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였으며, 그와 관련한 최종적인 결정은 신연방

.....

<sup>29</sup> 서독학교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동독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동독측의 입장(문서번호 23).

<sup>30</sup> 통일조약-제37조 교육(문서번호 25), 통일조약 38조-학술 및 연구(문서번호 30), 통일조약 부록 I-14장 대학교 및 직업교육장려(문서번호 31), 동서독 공동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최종회의)(회의 결과기록)(문서번호 32).

<sup>31</sup> 통일조약-제37조 교육(문서번호 25).

<sup>32</sup> 통일조약 38조-학술 및 연구(문서번호 30).



주의 주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독 연구자문회의만 통일과 동시에 완전히 해체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통일조약의 체결과 함께 모든 제도의 구축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추후 연방주의의 원칙에 따라 새로이 구축될 신연방주의 주의회와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 준 것이다. 이렇게 연방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종적인 결정은 통일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연방주의 정부와 의회가 내려야 한다는 규정을 통일조약 부록 I 14장에서 볼 수 있다.<sup>33</sup> 이에 따라 신연방주의 정부와 의회는 통일 후 3년 이내에 신연방지역의 대학을 위한 기본계획과 함께 대학기본법을 도입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았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합의된 기본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였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민주적 사회국가와 법치국가 그리고 연방주의 원칙의 기본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변혁과 개혁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졌다. 교육부분 통합작업의 최종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는 ‘호엔하임 협정서’에서도 연방주의 기본원칙 하에 두 체제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분명히 각인되어 있다. 이 협정서는 251차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KMK) 본회의에서 신연방주의 교육부장관들이 공식적으로 이 회의에 가입한 후 1991년 2월 21일과 22일에 열린 252차 회의에서 합의된 것이다. 이 협정서에서 각 주의 교육부장관들은 학교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각 연방주의 교육자치원칙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며, 각 연방주는 학교 교육과정이 다른 연방주와 비교 및 연계가 가능해지도록 전체적인 기본틀을 지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협정서의 기본적인 내용은 학교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각 주의 교육자치 원칙을 기본적으로 중시하며, 각 연방주들은 학교 교육과정이

.....  
<sup>33</sup> 통일조약 부록 I-14장 대학교 및 직업교육장려(문서번호 31).

다른 연방주와 비교 및 호환 가능하도록 기본틀을 보장한다는 것과, 학생이 대학입학자격인 아비투어에 합격한 경우 그때까지의 학교 수학기간이 12년 또는 13년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수학능력을 갖추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협정서를 통해 신연방주에서의 교육개혁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 학교제도의 통합

구동독의 신연방주들은 통일조약 37조에 따라 1991년부터 1993년 사이에 각 주별로 교육법과 학교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들은 신연방주들이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주어진 재량권을 바탕으로 보호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던 동독의 요소들을 새로운 틀로 옮겨왔음을 보여준다. 위에서 본 것처럼 교육개혁은 통일 이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변혁 초기와 후기의 교육개혁 논의의 차이는 초기에는 교련 과목과 국가시민교육 과목의 폐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교육내용의 개혁이 주를 이루었던 데 반해 후기에는 동서독 간의 교육제도 호환성에 그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것이다. 그런 변화는 이미 동독의 자유총선거 후 드 메지에르 수상이 이끄는 개혁내각이 구성되면서 분명해졌다. 그 이유는 물론 그때부터 통일을 위한 제도통합 작업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제도와 관련해 드 메지에르 정부가 취한 조치에는 학교 교장단의 구성과 업무영역에 대한 규정<sup>34</sup>, 학교회의의 참가자의 비율과 대표자 선출방식 수정<sup>35</sup> 등 학교 내부의 민주화와 관련된 내용도 적지 않았다.

<sup>34</sup> 학교 지도 및 운영에 있어 교감의 업무영역(문서번호 18).

<sup>35</sup> 학교회의의 구성에 관한 지침(문서번호 17).

## 제1절 학교교육 체제의 개편

통일 이후 베를린과 신연방의 각 주들은 신속하게 교육제도의 구조적 전환을 단행하여야만 하였다. 통일조약에 따라 1991년 8월 1일에는 모든 신연방주에도 새로운 학교교육법이 적용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조약에 의해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은 당시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었다.

동독의 구체제 하에서는 서독의 13학년 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12학년제의 학교시스템이 존재하였는데, 이 동독의 교육과정이 국제경쟁에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다. 참고로 국제적으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평가, 비교하는 피사 스테디에서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특히 핀란드의 학생들이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바로 이 핀란드의 교육시스템이 동독의 시스템의 장점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과도기와 통일 직후 모든 것이 급박하게 돌아가던 상황에서 동독의 시스템에 좋은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나 나아가 그것을 보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공감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물론 나중에 신연방주에서 통일에 대한 감흥과 열정, 흥분이 가라앉고 그곳의 많은 사람들이 체제전환의 성과가 자신이 기대한 것과 같은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는 실망감을 갖게 되면서 동독의 구체제에도 좋은 것이 있었는데 그런 제도들이 왜 사라졌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실망의 바람을 타고 동독에 대한 향수, 소위 말하는 ‘오스탈기’라는 단어가 등장하였다.<sup>36</sup> 그

.....

<sup>36</sup> 이러한 분위기는 교육과정의 개편에 관해 발표된 다양한 논문들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판적인 교육학자와 교육행정가의 시각에서 통일조약을 통해 동서독지역의 교육체계가 서로 호환적으로 되도록 규정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통일 이전에는 신연방주들을 대표할 교육부장관들도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통일조약을 협의한 공무원들이 굳이 헌법에 연방주의 소관으로 명기되어 있는 교육 문제까지 규정한 것이 너무 성급한 것이었다고 1990년에서 1992년까지 브란덴부르크주의 교육부장관이었던 마리안네 비어틀러는 비판을 한다. 독일 교육부장관회의 편, *Einheit in der Vielfalt. 50 Jahre Kultusministerkonferenz 1948-1998*, Neuwied/Berlin 1998,



렇지만 1990년 당시의 신연방주에서는 교육시스템과 관련해서도 가능한 한 서독의 기준을 비판 없이 빠른 시일 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1990년 10월 10일 베를린 문교부의 주관으로 열린 통일된 베를린의 총 23개 구의 교육위원들이 참석한 회의가 그 좋은 예를 보여준다.<sup>37</sup> 이 회의의 첫 번째 주제가 ‘베를린 학교 행정체제와 학교시스템의 통합’이었다. 이 회의에서 베를린 교육부장은 학교체제의 통합은 교육부의 전문공무원들이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며 동서 베를린 각 구의 대표들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실무그룹을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통일조약에 따라 1991년 8월 1일부터는 새로운 학교교육법이 베를린 전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 동 시교육부장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동서 베를린의 상이한 학교체제를 통합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모든 교육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교육부장은 특히 폴리테크니쉬 오버슐레(polytechnische Oberschule)라 불리던 동독의 중고등학교 시스템을 서베를린의 학교체제, 즉 4년 간의 초등학교 교육 이후에 김나지움(Gynasium), 레알슐레(Realschule), 하웁트슐레(Hauptschule) 그리고 게잠트슐레(Gesamtschule) 등 4종류의 상이한 학교체제가 공존하는 구조로 전환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sup>38</sup> 물론 새로운 교육법이 도입된다고 해서 동베를린의 모든 구에 4가지 유형의

.....

p.23.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구동독 학교의 개혁 브란덴부르크 및 기타 지역의 경험(문서번호 122).

<sup>37</sup> 시민교육/교육·문화/교육 및 청소년을 위한 시의회 회의록(1990.10.10) 시민교육/교육·문화/교육 및 청소년을 위한 베를린 시의회 회의록(문서번호 39).

<sup>38</sup> 김나지움: 5학년부터 13학년 과정을 이수한 후 아비투어(Abitur)를 보면 대학입학자격을 취득  
 레알슐레: 5학년부터 10학년 과정을 이수한 후 중등교육 이수 졸업장을 획득  
 하웁트슐레: 5학년부터 10학년 과정을 이수한 후 직업학교 이수 졸업장을 획득  
 게잠트슐레: 김나지움, 레알슐레, 하웁트슐레로 구분되는 고등교육 과정을 하나의 학교 내에서 수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학생에 따라 10학년을 이수하고 중등교육 과정 졸업장을 받을 수 있고 13학년까지 마치고 아비투어를 볼 수도 있다.

학교가 모두 도입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교육제도 개편을 위한 실무그룹은 조직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폴리테크니셰 오버슐레를 김나지움과 게잠트슐레의 2차과정 I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초등학교가 주거지역 전역에 충분히 만들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동베를린지역에서 김나지움과 게잠트슐레에 대한 수요가 아주 높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동베를린지역에서 레알슐레와 하웁트슐레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보고가 아직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전체 베를린의 학생들 중에서 약 삼분의 일이 대학입학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고등과정을 다닐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나아가 교육부장관은 이 회의에서 다른 신연방주들과는 달리 베를린은 교육체계의 단계적인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991년 8월 1일 까지 동베를린의 학교체계를 전환하는 작업을 종료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부 내에 있는 기획팀의 일부를 차출하여 프로젝트 그룹을 구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학교체계의 전환과정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보고하였다. 새로운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체계에 대한 교사연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그룹은 늦어도 1991년 3월 또는 4월까지 전환방안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그룹에는 각 구의 대표와 베를린 교육부의 행정담당자가 함께 참여할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 대해 동서베를린의 교육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 하였지만 1991년 8월 1일에 새로운 교육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결정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다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지적되었다. 그중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동베를린지역의 주민과 교사들이 서독의 게잠트슐레가 동독에 있었던 폴리테크니셰 오버슐레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뿐만 아니라 각종 학교 간의 차이점에 관해서 그리고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와 김나지움에 근무



하는 것이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동베를린지역의 각 구의 교육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서베를린 구청의 전문공무원을 파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베를린의 교육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은 위에 언급된 실무그룹과 프로젝트 그룹의 준비작업을 통해 비교적 신속히 이루어졌다. 그것은 다른 행정 분야의 통합과 마찬가지로 서베를린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계를 동베를린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신연방주에서 진행된 교육체계 전환과정과는 성격을 달리하였다.<sup>39</sup>

신연방주들의 경우 베를린에서와는 달리 특히 교육체제의 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당시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신연방지역의 주민들은 그로 인해 자신의 자녀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체제의 정착을 원했다. 그에 반해 학교 구조를 변경하는 데 시간을 더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등장하였다. 특히 1989년 이후 동독의 과도기체제에서 새로운 교육제도를 실험하고자 노력하였던 소수의 그룹이 볼 때 서독의 체제를 그대로 신연방주에 적용하는 것이 교육문제의 해결책은 아니었다. 그러나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현실적인 해결책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여론을 주도하였고 그 결과 신연방주들에서도 대부분 서독의 교육체계, 즉 김나지움과 게잠트슐레체제가 도입되었다. 하우스트슐레와 레알슐레에 대한 수요가 전혀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베를린의 학부모나 신연방주의 학부모들의 의견이 일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신연방주의 경우 대부분 하우스트슐레는 아예 도입하지 않았고 레알슐레의 경우 기존의 게잠트슐레의 중등교육과정 I

<sup>39</sup> 시민교육/교육·문화/교육 및 청소년을 위한 베를린 시의회 회의록(문서번호 39), 베를린의 통합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문서번호 40), 베를린시 학교장연맹(Interessenverband Berliner Schulleitungen)의 1990년 연례보고서(문서번호 43).

단계로 통합되었다.<sup>40</sup>

그러나 서독에 존재하던 김나지움과 게잡트슐레체제를 신연방주에 그대로 이식하였다고 해서 독일 전역에서 교육체제의 개혁에 관한 논의가 종결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더 많은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학교교육 기간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다. 서독의 체제에서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대학입학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3학년까지 마쳐야만 했다. 그러나 동독의 체제 하에서 학교교육 기간은 총 12년이었다. 모든 신연방주는 통일조약에 따라 1991년 8월부터 새로운 학교교육법을 도입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대학입학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학교교육 기간을 12년으로 감축하는 논의는 지속되었다.<sup>41</sup>

브란덴부르크주는 학교교육체제의 개편과정에서도 다른 주와는 다른 특별한 길을 선택하였다. 브란덴부르크에서는 서독의 학교체제 하에서 4년으로 제한되었던 초등교육 기간이 6년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1990년 당시 브란덴부르크주 교육부장관에 따르면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레알슐레를 정규학교로 도입하지 않고 게잡트슐레만을 정규과정으로 도입하려고 하였다. 그 대신에 교육단계를 구분하는 모델을 도입하여 서로 상이한 학교 형태와 교육과정 간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당시 브란덴부르크주 교육행정가들의 의도였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당시 자민당(FDP)의 반대에 부딪혀 관철될 수 없었다.<sup>42</sup>

<sup>40</sup> 브란덴부르크주의 1차 학교개혁법[발취](문서번호 60), 작센주 학교법-작센주 의회 제2차 법안심의(문서번호 63), 작센주 학교법(SchulG)(문서번호 67).

<sup>41</sup> 흥미로운 사실은 학교교육의 총 기간을 13년이 아니라 12년으로 규정하고자 한 이런 노력이 실제 결실을 거두어서 2010년 이후 전 독일에서 단계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11년의 대학입학생들의 경우 13학년을 마치고 졸업한 학생들과 12학년을 마치고 졸업한 학생들이 동시에 입학하게 되었기 때문에 각 과마다 규정 정원을 초과하여 입학허가를 내주어야만 했다.

<sup>42</sup> 독일 교육부장관회의 편, Einheit in der Vielfalt: 50 Jahre Kultusministerkonferenz 1948-1998. Neuwied/Berlin 1998, p.28.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구동독 학교의 개혁. 브란덴부르크 및 기타 지역의 경험(문서번호 122).



신연방주의 교육체제 개편의 진행과정에서 특기할 것은 각 주가 선택한 서독의 시스템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하고자 노력하면서도 브란덴부르크주의 6년제 초등학교체제 그리고 하움트술레를 도입하지 않고 레알술레를 고등교육과정 I단계에 통합한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연방주만의 조건에 맞는 해결책을 찾았다는 것이다. 신연방주의 이러한 시도는 이후에 역으로 구서독의 다른 주에서 벤치마킹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sup>43</sup>

각 교육과정 간의 호환성을 보장하면서도 각각의 다원성을 유지한 연방 정부와 베를린 교육부의 정책에서 교육체제 개편 정책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적어도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더욱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각급 교육청에서 기존의 교육체제의 특성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바람직한 체제인지에 대한 정보를 상대 기관 및 교원에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베를린의 경험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체제의 통합이 완성되어야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동베를린의 교사와 학부모들이 서독의 교육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통일 후 각 지자체에 있어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학교교육제도에 관한 구체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정보자료를 만드는 것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sup>43</sup> 독일 교육부장관회의 편, Einheit in der Vielfalt: 50 Jahre Kultusministerkonferenz 1948-1998. Neuwied/Berlin 1998, p.31.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구동독 학교의 개혁 브란덴부르크 및 기타 지역의 경험(문서번호 122).

## 제2절 교과과정의 새로운 편성

교과과정의 개편에 관한 논의의 진행과정을 보면 학교교육체계의 개편에 관한 논의와 유사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먼저 언급되어야 할 것은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인해 1991년 봄과 여름에 아비투어를 보아야 하는 신연방주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1991년 여름학기에 졸업시험을 치를 수 있을 만큼 학교 교과과정 개편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당시 신연방주의 교육행정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자기 지방의 독창적인 것을 만들자는 생각보다 가능하면 서독의 기존 제도와 유사한 것을 정착시키는 것을 모색하고 그 틀 내에서 변화가 가능한 것을 찾았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교과과정의 경우에 정치교육과 같이 특별히 정치색이 강한 과목을 제외하면 수업내용이 본질적으로 달라져야만 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수업방식, 교재 그리고 수업내용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일반적으로 아주 높았기 때문에 교과과정의 경우에도 이러한 개혁 작업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교과과정 개혁의 초기 기본 교과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없는 상태에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교과과정이 모델로 받아들여졌다.<sup>44</sup> 브란덴부르크주가 자체적인 교과과정 기본틀을 만들기 위한 구

.....

<sup>44</sup> 브란덴부르크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주정부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모든 행정 분야에서 협력했다. 여기에는 특히 당시 브란덴부르크 주지사였던 만프레드 슈톨페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주지사 요하네스 라우의 개인적인 친분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교육과 체육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협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한 것은 1991년 7월 3일이다. 이 협약을 통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가 브란덴부르크주의 교육 및 스포츠 분야를 확충, 재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그에 대한 행정협조와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지원은 전문가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지속적인 인적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공무원을 브란덴부르크주로 파견하거나 출장을 보내고, 브란덴부르크주 학교 및 스포츠행정부서 직원과 관리자들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견학 및 참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계획하였다. 이 협정문에서 특기할 것은 브란덴부르크주의 교육제도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복사본이 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와 관련해 브란덴부르크주에 의해 요청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사전에 준비된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 간 교육 및 스포츠 분야에 있어 행





상을 시작한 것은 2000년 이후의 일이다.<sup>45</sup>

그러나 일부 교과 과목에서의 새로운 시도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다음 날 이미 시작되었다. 통일이 실현된 후 이어진 교과과정 개혁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부분은 무엇보다 동독의 구체제 하에서 정치적 사상교육을 담당하였던 ‘국가시민교육’(Staatsbuergerkunde) 과목을 민주적 정치교육 과목 또는 사회 과목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sup>46</sup> 정치교육 또는 사회 과목의 수업은 구체제 하에서 ‘국가시민교육’ 과목을 담당했던 교사들이 아니라 다른 기타 과목을 담당했던 교사들이 일정 기간 연수를 받고 난 후에 새로이 배정받았다.<sup>4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연방지역에서 과도기와 통일 초기에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통당의 일당독재체제를 옹호하던 교사들이 며칠 간 재교육을 받고 와서 민주주의를 강의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당시 교육행정 당국에서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독의 교사를 신연방주로 대거 유입했다면 그로 인해 또 다른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브란덴부르크주 교과과정개발원의 전문가들은 말한다.<sup>48</sup>

.....

정적 협력에 대한 협정 초안[보고서 및 토의](문서번호 66).

<sup>45</sup> (생활-윤리-종교 과목 수업에 대한) 10년 간의 논쟁에 대한 연대기, 개신교 공보기록 52번 2001년 12월 17일.

<sup>46</sup> 브란덴부르크주 내 정치시민교육, 중등교육 1단계 ‘사회 과목’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문서번호 44),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내 사회 과목: 하움트슐레, 레알슐레 및 김나지움에 대한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문서번호 45), 작센-안할트주 내 사회 과목+N45, 중등학교 중 하움트슐레 관련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문서번호 46), 튀링겐주 내 사회 과목: 레알슐레 및 김나지움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문서번호 47).

<sup>47</sup> 동독 교육학술부 내 ‘정치시민교육’ 프로젝트 그룹의 권고(문서번호 26).

<sup>48</sup> 실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하는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서독에서 기존의 교사들 또는 새로이 교사자격을 받은 교사들이 몇 명 신연방주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에 관해서도 한번은 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를 통일된 지 26년이 지난 지금 시작하는 것이 새삼스러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간 만큼 더 솔직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시도된 교과과정 개편 작업 프로젝트 중에서 ‘국가 시민교육’ 과목의 폐지보다 여론의 주목을 더 많이 받은 프로젝트는 1992년에 시작된 ‘생활-윤리-종교’ 과목의 도입이었다. 이 과목은 서독학교의 교과 과목인 ‘종교’ 수업을 대치하는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동독 과도기에 학교개혁을 추구하던 시민그룹에 의해 추진되었던 것으로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교육부에서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대해 개신교에서 크게 반발하여 1996년에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제소까지 하였다. 제소 이유는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생활-윤리-종교’ 과목을 도입하였기 때문에 교회에 의해 운영되는 종교수업이 정식 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에 대해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기본법의 141조를 들어 각 연방주는 교단과 상관없이 종교 과목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는 2001년에 내린 판결을 통해 양쪽의 의견에 모두 동의하면서 조정안을 제안하였다. 그 제안은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종교’ 과목을 정규수업으로 도입하면서 동시에 ‘생활-윤리-종교’ 과목도 종교수업을 대체하는 과목으로 계속 운영하라는 것이었다.<sup>49</sup>

마리안네 비어틀러 브란덴부르크주 초대 교육부장은 개신교 교단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 자체를 아주 비판적으로 보았다. 그녀는 동독의 과도기 시절에 ‘생활-윤리-종교’ 과목을 도입하자는 시민단체의 의견에 개신교측에서도 동의하였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통일 이후 서독 개신교 교단의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받게 되면서 자신들의 입장이 강해지자 얼굴을 바꾸어서 공동으로 추진했던 프로젝트를 거부한다는 것이다.<sup>50</sup> 비어틀러 장관

.....

<sup>49</sup> (생활-윤리-종교 과목 수업에 대한) 10년 간의 논쟁에 대한 연대기, 개신교 공보기록 52번 2001년 12월 17일; 생활/윤리/종교 과목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개신교 공보기록 52번 2001년 12월 17일. 브란덴부르크주의 학교 개혁: ‘인생설계-윤리-종교’ 과목 시범모델(문서번호 73).

<sup>50</sup> 독일 교육부장관회의 편, Einheit in der Vielfalt: 50 Jahre Kultusministerkonferenz 1948-1998. Neuwied/Berlin 1998, p.35.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구동독 학교의 개혁 브란덴부르크 및 기타 지역의 경험(문서번호 112).



의 이러한 비난에는 과도기에 함께 준비했던 시민사회의 공동 프로젝트를 거부하는 개신교에 대한 일종의 배신감과 같은 감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 제3절 대학 및 연구기관의 통합

1989-1990년에 동독에는 54개의 대학에 127,000명의 대학생 그리고 24,500명의 교수 및 연구원이 있었다. 이 시기에 서독 연방정부의 요청으로 동독대학과 연구기관의 현황을 조사한 학술조사위원회는 동독의 대학과 연구소의 시설과 설비가 열악하고 외국 전문서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고했다.<sup>51</sup> 그러나 1991년 7월에 당시 학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디터 시몬 교수가 인터뷰를 통해 지적한 것처럼 장벽 붕괴 이전 동독의 연구기관 중에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곳도 있었고<sup>52</sup>, 대학들이 좋은 연구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아니었으며 자연과학 및 공학과학 분야는 아주 좋은 성과를 보였을뿐만 아니라 우주공학의 경우 서독보다 더 뛰어났었고, 인문과학, 사회과학, 법학 분야의 학자들을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시몬 교수는 강조했다. 그러나 1990년과 1991년 당시 독일사회에서 그의 비판이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더욱이 위에서 본 것처럼 1990년 7월 6일에 학술자문위원회가 동독대학의 역할이 교육에만 집중되어 있고 연구활동은 주로 대학 외의 연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통일 이후에는 동독의 대학도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는 기관으로 변경해야만 한다고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었다.<sup>53</sup>

<sup>51</sup> 독일통일을 목표로 본 학술 및 연구 분야의 전망들. 12가지 권고(문서번호 21), 신연방주 내 대학교 구조 재구성에 대한 학술자문회의의 권고에 대한 보고(문서번호 79).

<sup>52</sup> 통일 독일의 교육, 과학 및 문화정책에 대한 호엔하임 제안서(문서번호 52), 동독 학술원 소속 연구단들의 대학 내 재배치 절차에 대한 대학총장단회의의 권고(문서번호 57),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 상설 제122차 기관장회의(Amtscheftskonferenz) 의사록(문서번호 58), 작센주 학교법(SchulG)(문서번호 67).

<sup>53</sup> 독일통일을 목표로 본 학술 및 연구 분야의 전망들. 12가지 권고(문서번호 21).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변혁이 시작되었을 때 동독의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변혁운동의 중심에서 있지 않았다. 동독의 대부분의 교수들은 국가에 대해 충성하였으며 사회주의통일당의 당원이었다. 동독학계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국가의 계획경제와 마르크스 레닌 철학을 토대로 한 교육 방식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었다. 동독체제 하에서 대학생들과 제도에 충실한 학자들은 특혜를 누리는 집단이었다. 이들의 경력을 보면 대부분 청소년기에 ‘청소년 선봉대’(Jugend Pionieren) 또는 ‘자유독일청년단’(Freie Deutsche Jugend)과 같은 청년단체에 가입한 다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민군(National Volksarmee, NVA)에서 복무를 마친 후 대부분의 경우에 전공을 스스로 선택할 수는 없어도 정해진 대학에서 학업을 마친 후 교수로 임명될 수 있었다. 물론 대학의 교수직은 제한되었고 그만큼 경쟁도 치열했다. 대학에 입학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특권이였다. 동독에서 한 해 출생한 인구 중에서 12%만 12년제 종합기술고등학교를 마친 후에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동독체제 하에서 19세부터 21세 사이 청년들의 대학교 입학률은 1989년에 12.6%로 서독의 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그만큼 동독의 대학생들은 특권을 누리는 집단이었던 것이다. 대학에서의 전공배정은 동독의 계획경제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대학생의 40%는 기술 관련 학문이 전공으로 배정되었다. 대학에서의 학업은 항상 감독관에 의해 감시되었고, 학업 외에 수확작업과 같은 노력동원과 군사훈련을 병행해야 했다. 전공과는 별개로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 과목을 3년간 이수해야 했으며 이 과목은 졸업시험에도 포함되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았으며 기숙사를 제공받았다. 대학교 졸업 후에는 일자리가 보장되었다. 특혜를 받았던 만큼 대학생과 교수, 학자 그룹이 체제에 순응적이었던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물론 1989-1990년에 라이프치히시의 칼마르크스대학교와 같이 일부 대학교에서는 변혁의 움직임이 매우 서서히 일었고 교수들과 학생들도 새로운 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었다. 그러



나 대학 교수와 연구원 그리고 학생들이 동독의 변혁운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다. 1989년 라이프치히대학 화학과 정원 외 교수로 임명되었고,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라이프치히대학 총장을 역임한 코르넬리우스 바이스(Cornelius Weiss) 교수는 통일 20주년이던 2010년 9월 29일에 베를린의 일간지 타게스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1990년 당시의 대학 분위기에 관해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도시의 정신적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이 유감스럽게도 이미 오래 전에 실현되었어야만 하는 변혁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로 대학이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침묵한 채 기다리고, 오히려 변혁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대학의 역사에서 자주 있었던 것처럼 (동독의 대학은) 신중하고 보수적인, 그야말로 반동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독일통일 이후에 비판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때에도, 대학의 대부분의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과거를 청산하고, 정신적으로 쇄신하여 민주주의적 변혁을 일구어 내려는 의지가 없었다.”<sup>54</sup>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만 하는 것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동독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던 시기에 대학교육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입학생을 받았고 강의도 이어졌다. 강의를 지속하기 위해 새로운 교수를 임용하기도 했다. 1990년 8월 29일 서독 연방정부의 뮐레만 교육부장관이 동독 교육부가 계획한 240명의 신규교수 임용계획을 취소하라고 요구한<sup>55</sup>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변혁기에도 동독대학과 연구기관에서도 일상적인 교육과 연구활동이 이어지고 있었다.

<sup>54</sup> Berliner Tagesspiegel, 2010년 9월 29일자.

<sup>55</sup> 동독에서 더 이상 신입교수를 임용하지 말라!(연방 교육·학술부 보도자료)(문서번호 24).

## 1. 대학제도의 개혁과 대학의 설립

신연방주 대학과 연구환경의 장래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통일조약을 통해 규정되었다. 통일조약 부록 I 14장에 따르면 신연방주의 정부와 의회는 통일 이후 3년 이내에 대학기본법에 상응하는 연방주법을 도입할 의무가 있었다. 실제로 신연방주의 정부와 의회들은 1992년에 대부분 자체적인 대학기본법을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학술자문회의가 다양한 자문을 제공했다.

1990년 여름에 학술자문위원회는 동독정부와 서독의 연방정부 그리고 연방주의 정부들로부터 동독 내의 학술연구기관들과 대학교들의 현황을 평가하고 장래계획을 세우기 위한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받았다. 그리고 1990년 11월 6일 학술자문위원회는 신연방주 대학들의 연구, 교육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구조적 변화와 인적 쇄신을 위해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구조위원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었다.<sup>56</sup> 1991년 1월 25일의 권고안에서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해 서독지역 대학교들과의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으며, 1991년도에서 1995년도 사이에 10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학과를 설립하기 위한 창립교수’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sup>57</sup> 학술자문위원회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일조약의 규정을 바탕으로 동서지역의 제도를 상호 호환적으로 만들고 고등교육과 연구를 위한 동등한 질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자문하면서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새로 설립된 신연방주의 정부와 의회가 결정할 문제였다.

1991년 5월에 연방정부와 연방주들은 신연방지역의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대학개혁프로그램(Hochschulneuerungsprogram-HEP)을 도입하기로

.....

<sup>56</sup> 신연방주 및 베를린의 대학구조위원회 설립 및 대학교수임용정책 수립에 대한 권고(문서번호 41).

<sup>57</sup>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지역 대학 교수과정 개혁 및 신진학자 육성에 관한 권고(문서번호 49).



합의했다.<sup>58</sup>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신연방지역 대학교들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학문 후속세대를 지원하는 동시에 통일조약에서 합의된 대학 외 연구기관을 대학교 내로 귀속시키는 작업을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추진하는 데 소요될 재원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틀에서 신연방지역 대학의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200명의 창립교수(Founding-professor)를 초빙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그것은 기본법에 보장된 대학의 학문적 자율권을 지키면서 대학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sup>59</sup> 1991년에 발표된 대학개혁프로그램은 5년 동안 실행되며 총 17억 6,000만 마르크의 재원이 신연방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을 위해 지원될 계획이었다. 이 재원은 연방정부가 75%를 부담하고 신연방주들이 25%를 부담하기로 했다.

학술자문위원회는 1992년 1월에 신연방지역의 대학과 연구 환경의 장래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구동독지역에 있던 54개 대학교들을 12개의 종합대학교와 12개의 미술 및 음악대학교 그리고 20개의 전문대학교들로 전환하는 것과 인문학의 전공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그와 함께 동독학술원(아카데미) 소속 학자들을 대학교 내로 통합하고, 대학 외 연구기관과 대학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특수대학교를 종합대학교의 학부로 통합하고 전문대학교를 설립하며, 신규 종합대학교 설립 이전에 기존의 대학교들의 전반적 개혁을 추진하고 또 1995-1996년도까지 기존 대학교들의 교육, 연구 기반을 강화하면서 전문대학교를 확충해야 한다고 하였다.<sup>60</sup> 이런 기본방향을 발표하기 전에 학술자문

.....

<sup>58</sup> 신연방주 내 대학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개혁프로그램 대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 간의 합의-대학개혁프로그램(HEP)(문서번호 59).

<sup>59</sup> 새로운 단과대학 또는 학과의 설립과 개혁을 담당할 창립교수직의 대부분은 서독대학 출신 학자들에 의해 충원되었다. 그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신연방지역 출신 학자와 학생들이 통일 이후에 진행된 대학과 연구기관의 구조개혁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특히 창립교수들이 새로이 충원될 교수직에 자신의 제자를 초빙한 경우 그런 비판이 더욱 거세었다.

<sup>60</sup>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지역 내 미래의 대학 환경 및 구조에 대한 학술자문회의의 권고(문서번호 78).

회의는 1991년 1월과 7월에 발표된 권고문을 통해 당시 신연방주의 경제적, 사회적 구조 변화를 위해 서독지역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sup>61</sup> 전문대학교는 직업 현장과 직결되어 수업, 연구, 개발 및 계속교육이 이루어지 때문에 이 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중요한 추진력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장기적으로 보면 전문대학교의 확장을 통해 대학교육 기회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렇기 때문에 신연방주들이 기존의 종합대학을 확장 또는 재건하는 것보다는 전문대학교의 정원을 늘리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독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가시화된 문제, 즉 대학교육이 직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단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전공의 폭도 가능한 확대하여 교육 내용을 폭넓고 실용적으로 보완하며,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복수전공을 통해 기업 또는 다른 경제영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학술자문위원회의 입장이었다.

학술자문위원회의 제안과는 무관하게 1990년 7월에 동독의 교육부는 이미 베를린 리히텐베르크지역 및 미트베르다지역에 소재한 공업대학교(Ingenieurhochschule)를 국립 전문대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시험케이스로 선정하기도 하였다.<sup>62</sup> 학술자문위원회도 동독의 고등교육기관 중에서 공업대학교가 전문대학교로 전환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했고, 실제로 동독에 있었던 12개의 공업대학교가 이미 공과대학교(Technischen Hochschule)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공과대학교의 인적, 공간적 그리고 연구 설비는 1990년 당시에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지만 전문학교(Fachschule) 및 공업학교(Ingenieurschule)의 경우 시설 설비가 아주 열악하였다. 물론 이러한 이유에서 보다는

.....

<sup>61</sup> 동베를린 및 작센주 미트바이다지역 전문대 설립 관련 권고(문서번호 48), 신연방주 내 전문대학 설립에 대한 학술자문회의의 권고(문서번호 64).

<sup>62</sup> 동베를린 및 작센주 미트바이다지역 전문대 설립 관련 권고(문서번호 48).





전문학교와 공업학교는 구체적으로 직업학교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학술자문위원회의 입장이었다. 실제로 신연방주들이 전문대학교를 설립하면 그들이 지역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1992년 1월에 연방정부 교육부장관은 연방의회에 보고했다.<sup>63</sup>

그러나 1992년 3월에 작센 주의회에서 열린 대학구조법안에 관한 심의록을 보면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의 분위기가 이미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sup>64</sup> 녹색당 소속 의원이 작센주의 대학개혁 과정에서 서독지역 대학교들의 단점을 그대로 옮겨와서는 안되며, 대학의 자율성을 위협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민사당 소속 의원은 서독지역의 대학체계를 작센주에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그때까지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대학구조법안에 단지 ‘동독의 냄새가 나는 것’이라면 무조건 없애버려야 한다는 정서가 반영되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나아가 가능하다면 ‘통일 전의 서독의 과오를 반복하는 일 없이 신연방주들 내에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였다. 그에 대해 여당인 기민당 소속 에리히 뢰슬러 의원이 ‘산업에 필요한 기초연구에 교육이 집중되어 있고 소규모 전문대학교들이 산재해 있는 현 상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그것은 신연방주에 전문대학교를 확충할 것을 권고한 학술자문위원회의 제안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뢰슬러 의원이 작센주가 종합대학교, 전문대학교와 예술대학교 간에 균형 잡힌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을 보면 이미 1992년에 신연방주의 정부와 의회들이 자기 주의 독자적인 교육정책을 추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up>63</sup> 신연방주 내 대학구조 재구성에 대한 학술자문회의 권고에 대한 보고(문서번호 79).

<sup>64</sup> 작센주 내 대학 관련 분야 및 대학교 구조에 대한 법안 제정 관련 제2차 심의(문서번호 85). 이 법안은 기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작센주 교육부가 제출했으며, 당시 교육부장관은 동독의 마지막 개혁내각에서 교육부장관을 역임했던 한스 요아힘 마이어였다. 사민당과 녹색당 그리고 사통당의 후신인 민주사회당이 야당에 속했다.

독일통일과 함께 새로이 설립된 신연방주의 경우에도 교육과 관련된 정책은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각 연방주의 주정부와 주의회가 주관하는 문제가 되었다. 연방주의에 따른 정책결정 권한의 분할로 인해 중앙집권적인 정부와 달리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독일 할레-에나대학의 연구팀의 1992년 이후 20년 동안 진행한 체제전환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연방주의에 입각한 분권주의가 신연방지역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을뿐만 아니라 통일 후 신연방지역에 ‘동독의 정체성’이 아니라 5개 신연방주에 각각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오히려 통일된 독일연방의 내적 통합에 기여했다는 것이었다.<sup>65</sup> 5개 신연방주에 개별적인 정체성이 형성되는 것은 교육과 관련된 주정책의 형성과정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다. 1992년 6월에 열린 튜링겐주 회의에서 주교육부장관(학술 문화예술부장관)이 튜링겐주의 특색을 살린 대학교육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는 발언을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그는 튜링겐주는 다른 신연방주와는 달리 1990년에 이 지역에 있던 6개의 대학교를 전문대학교로 전환시키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튜링겐주에 설립된 3개의 전문대학교는 종합대학교에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설립된 것이며 대학교법 또한 브란덴부르크주의 대학교법보다 더 민주적인 것이라고 자랑하였다.<sup>66</sup>

1993년 3월에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에 제출한 신연방지역의 학술연구기반 강화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 지역의 대학들은 이미 독일의 일반적인 학술조직체계에 통합되었으며 각 주별로 대학교법이 제정되었다고 설명하였다.<sup>67</sup> 대학교 소재지가 확정되었고 전문대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  
<sup>65</sup> 할레-에나대학 특별연구영역 580연구팀의 연구결과들 참조.

<sup>66</sup> 튜링겐주 대학 분야 개혁을 위해(주 학술·예술부장관 연설)(발췌)(문서번호 89).

<sup>67</sup> 신연방주 그리고 통일독일에서 학술과 연구 기반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A장. 신연방주 대학 분야의 재구성(문서번호 97).



대학구조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자 주의 상황에 맞게 대학교의 구조와 발전을 위한 자문을 해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1991년도 7월에 시작된 신연방주 대학개혁프로그램(HEP)을 통해 1996년 말까지 24억 300만 마르크가 지출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 2. 전공과정의 신설 및 통폐합

1990년 11월 29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연방정부는 신연방지역 대학교에 개설된 학과의 폭이 비교적 협소할뿐만 아니라 법학, 경제학, 사회과학과 컴퓨터과학 전공은 완전히 새롭게 개혁되어야만 하지만, 동유럽과 소련 전문 분야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sup>68</sup> 그리고 1991년 1월 22일의 보고서에서 학술자문위원회는 신연방지역 대학의 구조조정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들 대학교에서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신속하게 신진학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대학의 수업내용과 학과개혁을 통해 이 지역 대학의 졸업생들이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강의가 휴강 또는 폐강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서독지역의 대학에서 이미 정년퇴직한 명예교수들을 투입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동시에 서독지역 대학의 신진학자들에게 신연방주의 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대학의 학과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동독의 체제 하에서는 대학교육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서독에서는 대학의 전공 과목이었던 과목과 관련된 것이었다.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동독에서는 대학의 학과목이 아니라 전문학교에서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교육하였다. 그러나 통일 이후 사회복지사는 전문대학교와 대학교의 학과로 개편되었다. 이런 시도는 통일이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1990년 9월에 포츠담에 소재한 보건사회복지전문학교

<sup>68</sup> 연방정부 보고: ‘대학정책 목표수립’[신연방주 관련 발췌](문서번호 42).

에 서독의 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공과정이 개설되었다. 1991년 1월 22일에 이 전문대학교를 방문한 학술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신연방지역에서 약 25,000명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연간 약 1,500명의 사회복지학과 졸업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신연방주 10에서 12개 도시에 평균 정원 500명에서 600명 정도의 사회복지학과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sup>69</sup> 당시 신연방주의 여러 지역에서 사립교육기관들이 운영하던 사회복지 교육과정은 대부분 연방노동청의 지원을 받는 직업전환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조속히 제공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학술자문회의의 견해였다. 포츠담 전문학교에 신설된 사회복지행정학과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서베를린에 소재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와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사회복지학 전공 이수계획을 만들 수 있었다.

학술자문위원회는 1990년 9월 초에 동독에 존재하던 9개의 의학교육기관에 설문지를 배포하고 1990년 11월부터 1991년 1월 사이에 실무단을 현지에서 파견하여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작성된 권고안을 1991년 9월에 발표했다.<sup>70</sup> 신연방지역의 의과대학 중에서 베를린의 샤리테의과대학, 그라이프스발트, 로스톡, 라이프치히, 할레, 막테부르크, 예나 및 에어푸르트에 소재한 의학 교육기관 등은 계속 유지하되, 신연방지역 의과대학의 총 정원을 4분의 1 정도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학술자문위원회는 나아가 신연방주 대학도서관들의 열악한 시설과 턱없이 부족한 장서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 1992년 1월에 제출된 권고안을 보면 신연방지역 대학도서관들의 공간문제가 재앙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

<sup>69</sup> 포츠담지역 내 대학과정 사회학과 개설 건에 대한 권고(문서번호 53).

<sup>70</sup>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지역 의과대학에 대한 학술자문회의의 권고(문서번호 70).



한 상태이며 장서목록 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sup>71</sup> 귀중한 고서본도 제대로 보존되지 못해 손실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하였다. 새로운 도서관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빨라야 5년에서 7년 이후에는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했다. 이 지역 대학도서관들의 절반은 1900년도 이전에, 다른 4분의 1은 1900년과 1949년 사이에 건설되었고, 아직까지 복구되지 못한 2차 대전의 피해도 남아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조사된 도서관들 중 40 퍼센트의 경우 신축 건물을 건립해야만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도서관이 건설되는 기간 동안이라도 신연방주의 대학도서관들이 가능한 한 빨리 기본 장서, 특히 교과서 장서를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신연방주 대학의 모든 학과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도서 약 670,000권을 앞으로 12년 안에 구비할 수 있게 해야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신연방주대학도서관들을 가능한 한 빨리 전국적인 도서관종합검색시스템에 연결시키도록 하고, 신연방주 정부는 신속하게 대학도서관들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그러나 신연방지역의 대학 학과 개편작업과 시설 설비의 개선작업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신속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1992년 초에 대학총장단회의에서 잘 드러난다.<sup>72</sup> 이 회의에서 독일대학의 총장들은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 대학의 전공구조의 수요에 관한 기본계획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난한다. 1990년 가을부터 대학생 수가 15.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대학들이 아직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비난은 물론 대학총장들을 비롯해서 당시 독일에서 정치적, 사

<sup>71</sup>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지역에 있어 대학도서관에 필요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것에 대한 권고(문서번호 82).

<sup>72</sup> 신연방주 및 베를린의 대학구조변화에 대해-대학총장단회의 결정(문서번호 84).

회적 책임을 진 사람들이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신연방지역을 독일연방 국가 체제 내에서 정착시켜야만 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생기는 조급함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그러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 교육개혁작업이 시작되었고, 본격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구축되기 시작한 것이 사실 통일 이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총장단의 비난은 너무 성급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조급함은 사실 1990년대 초 독일통일에 대한 평가에서 수없이 볼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대학교육과 학문연구를 위한 구조개혁이 그렇게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닐뿐 아니라 하루아침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더욱 아니다. 통일 후 25년이 넘게 흐른 2016년의 관점에서 보면 신연방지역의 대학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는 시각이 일반적이지만 1990년대 초반에는 하루라도 더 빨리 개혁을 완성하려는 조급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비판하였다.

1990년 여름부터 1992년 사이 학술자문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실무단을 동독지역의 대학에 파견해서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현지의 대학구조위원회와 협의 하에 각 전공영역에 관한 계획을 작성했다. 학술자문위원회가 1992년 7월에 제출한 최종권고안에는 인문과학 분야, 즉 철학, 역사, 언어학, 민속학, 고고학, 동양학, 예술사 등의 교육과 연구를 재구성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었다. 그것은 인문과학의 전공학부의 새로운 조직형태와 신연방주 내 대학별로 중점사업을 정해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었다.<sup>73</sup> 이 보고서에서 학술자문위원회는 구동독지역의 인문과학이 내용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리고 교수진과 연구진의 차원에서도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요구되지만 그렇다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

<sup>73</sup> 신연방주대학 내 인문학과와 관련 권고[발췌](문서번호 93).



### 3. 대학 외 연구소 및 학술원 연구기관의 통폐합

통일조약에서 동서독의 대표단은 동독 학술원 산하 연구기관들을 1991년도 말까지 폐쇄하기로 합의했다. 연방정부는 1990년 10월 11일에 발표된 ‘통일독일에서 연구·개발 부문의 전망(신연방주들에 대한 8개항 프로그램)’을 통해 신연방지역의 연구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sup>74</sup> 이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과제는 대학 외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역량을 대학교 내로 통합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1990년 여름에 동독의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았던 학술자문위원회는 2,000명의 학자들을 대학교들로 통합시키고 나머지 11,000명의 연구자들은 대학 외 연구기관에서 연구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하였다. 이런 제안에 실력을 갖춘 동독 학술원 소속 학자와 연구팀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개혁프로그램(HEP)의 일환으로 학술연구자통합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sup>75</sup>

학술자문위원회는 1990년 10월과 11월 사이에 동독 학술원 산하 7개 연구소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서 이 연구소들이 대부분 국제적인 경쟁력이 낮으며, 경제학, 정치학 분야의 경우에는 본질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하고, 심사 대상이었던 7개의 연구소를 모두 원칙적으로 해체하되 그 과정을 가능하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라고 권하였다. 연구인력과 연구팀의 경우 개별적으로 계속 유지될 가치가 있는 경우 계속 지원하며 새로 설립될 연구소로 이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제안했다.<sup>76</sup>

.....

<sup>74</sup> 신연방주 그리고 통일독일에서 학술과 연구 기반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B장. 신연방주 대학 외 연구 분야의 재구성(문서번호 98).

<sup>75</sup> 학술연구자통합프로그램(WIP)의 실행에 관해-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를 중심으로(문서번호 105).

<sup>76</sup> 신연방주 및 베를린의 대학 외 연구기관들에 대한 의견-경제학 및 사회학과들에 대해(발췌)(문서번호 51).

그러나 이미 언급한 것처럼 동독의 모든 연구소들의 연구역량이 서독에 비해 뒤떨어졌던 것은 아니다. 동독에 있었던 베를린 우주과학연구소의 경우 이미 국제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내고 있었다.<sup>77</sup> 할레에 있는 고체물리학 연구소와 전자현미경연구소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기관이었다. 학술자문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0년에 178명이었던 이 연구소의 인원이 1991년 1월에 이미 161명으로 감축되었다. 1960년에 할레대학교로부터 분리된 이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국제학술지에 지속적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해 왔을뿐만 아니라 신진학자의 교육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여 왔다. 학술자문위원회는 이 연구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 막스-플랑크연구소 산하 연구소로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sup>78</sup>

통일조약을 통해 해체되는 것으로 정해진 동독 학술원 산하 연구소의 연구팀을 대학 내 연구기관으로 이전하는 절차는 해당 연구팀이 자체적으로 이전신청을 할 경우 학술자문회의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대학교에 그 팀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은 대학개혁프로그램(HEP)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가능했었다. 이때 대학들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이 팀을 대학기관으로 흡수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는 연구팀장의 경우 교수임용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나아가 동독 학술원 소속 연구소를 막스-플랑크연구소나 프라운호퍼연구소와 같은 국립연구기관에 포함시킬 경우 기본적으로는 대학으로 이전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게 되었다.<sup>79</sup>

이렇게 개별적인 심사절차를 거쳐야만 했던 연구자 개인들이 이 과정을 일종의 모욕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

.....  
<sup>77</sup> 베를린 우주과학연구소 및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노이슈트렐리츠 소재 위성관측소에 대한 학술자문회의의 의견(문서번호 55).

<sup>78</sup> 작센-안할트주 할레 소재 고체물리학연구소 및 전자현미경연구소에 대한 의견(문서번호 56).

<sup>79</sup> 동독 학술원 소속 연구단들의 대학 내 재배치 절차에 대한 대학총장단회의의 권고(문서번호 57).





다. 이미 1991년 7월에 학술자문위원회 의장인 디터 지몬 교수가 이런 평가라는 것을 처음 받았던 신연방지역의 연구자들에게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언급했다. 더욱이 서독출신의 학자들이 대부분 이 평가과정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편파성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sup>80</sup> 그렇기 때문에 1990년 7월에 동독 학술원 원장이 학술원 및 산하기관에 대한 협상을 ‘점령 협상’이라고 비난한 것이다.<sup>81</sup>

1996년에 발표된 저서에서 한스 게오르그 볼프는 학술원과 그 산하 연구소의 해체과정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하면서 디터 시몬보다 더 비판적으로 언급하였다. 그에 따르면 동독 학술원은 그 고용인원이 거의 2만 명으로 그것은 동독에서 학술연구 분야에 종사하던 총인원의 14퍼센트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통일 당시 서독에 널리 퍼져 있던 선입견과는 달리 동독에서 연구활동이 완전히 대학교로부터 분리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학술원이 1989-1990년도에 사회변혁의 주체적인 세력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학술원에도 개혁의 상징과 같았던 ‘원탁회의’가 구성되었고, 여기에서 연구자들과 지도부가 함께 결정을 내렸을뿐만 아니라 비밀경찰 국가보위부 요원의 활동에 대한 청산작업도 시작했었다. 이 시기에도 학술원의 예산이 계속 보장되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국제협력과 동서독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 학문적인 네트워크를 넓히고 설비를 개선할 수 있었다. 학술원 내부의 변화 속도가 자체적으로 볼 때는 비교적 빠른 편이었지만 당시 급격하게 진행되는 정치적 변화의 속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느린 편이었고, 그로 인해 학술원의 지도부는 얼마 안되어 정당성과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서독의 매체들이 학술원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런 부정적인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학술원 산하 연구소들이 자체적으로 외부평가를 의뢰하였지만

<sup>80</sup> “당신들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소”-학술자문회의의 위원장 디터 지몬, 구동독지역 내 학술연구의 미래에 대해(문서번호 65).

<sup>81</sup> 동독 학술원-역사적 맥락 속에서 본 변화(문서번호 116).

그것은 결과적으로 학술자문위원회가 평가하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되었을 뿐이라고 한스 게오르그 볼프는 비판적으로 설명한다.<sup>82</sup>

동독의 학술원이 해산된 후 1992년에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는 학술원을 새롭게 조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로써 1700년에 프러시아의 왕명으로 설립되었던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학술원이 다시 부활되었다. 이 학술원은 동독 학술원의 인프라 설비 및 재산을 인수받았을뿐만 아니라 아직 남아 있던 프러시아 학술원의 재산도 인수받게 되었다.<sup>83</sup>

## 제4절 교육인력의 통합

### 1. 학위 및 교사자격의 인정

통일조약 37조 1항에 따라 동독에서 취득한 학위와 교사자격을 포함한 모든 자격증이 서독에 그와 유사한 것이 있을 경우 서독에서 취득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한다고 합의되었다. 통일조약의 협상과정에서 서독측은 학위와 자격증 인정 문제를 협상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그 문제가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새로 구성될 신연방주의 주정부와 주의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조약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만 규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동독과 서독에서 취득한 학위와 자격증을 실제로 동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독과 서독에서 이수한 학위과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었다.<sup>84</sup> 더욱이 통일조약에서는 비교 가능한 교육과정이 서독에 존재하지 않을 때 동독의 자격증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

<sup>82</sup> 동독 학술원-역사적 맥락 속에서 본 변화(문서번호 116).  
<sup>83</sup> 베를린-브란덴부르크주 학술원에 대한 협정(문서번호 87).  
<sup>84</sup> 통일조약 37조 1항 규정에 의거 학위의 동등성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의 결정(문서번호 74).



는 언급되지 않았다. 학위와 자격증의 인정 문제는 통일 이후 신연방주주민의 일상적인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였다. 구직자들뿐만 아니라 현직 학교 교사 및 대학교 교수와 연구자들에게도 그것은 자신의 장래가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든 논의에 신연방주의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통일 이후 이와 관련한 논쟁이 1년 이상 진행되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교원양성제도의 변혁은 동독 개혁정부에 의해 이미 시작되었다. 동독의 교육제도 하에서 초등학교 교사는 대학에서 수학할 필요가 없었다.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교육과정이 별도로 존재했다. 그러나 서독의 초등학교 교사는 석사과정을 마쳐야만 했다. 1990년 9월 드 메지에르 수상이 이끄는 동독 정부는 동독 초등학교 교사자격이 서독의 초등학교 교사자격과 동등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독의 교원들에게 요구되는 대학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보충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1991년에 학위과정을 마칠 예정인 대학생의 경우 통일 이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시험을 보도록 하고 1991년 9월 이후 1년 과정의 교직 과목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겠다고 규정하였다.<sup>85</sup> 이 조치는 이미 통일조약에서 합의된 내용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내려진 것이었다.

통일 직후 1990년 10월 5일에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장관회의에서는 통일 조약 37조 2항에 합의된 새로운 명령이 발효될 때까지 동독체제 하에서 취득한 교사자격의 인정 절차를 통일하기 위한 ‘임시 기본원칙’을 발표하였다.<sup>86</sup> 그에 따라 동독에 소재한 대학교에서 2개 또는 3개 교직과정 과목을 이수한 교사의 교사자격이 구연방주와 서베를린에서 유효한 제1차 국가고시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종합기술고등학교로 번역될 수 있는 동독의 폴

<sup>85</sup> 교원양성에 관한 명령(동독)(문서번호 27).

<sup>86</sup> 동독에서 취득한 교사자격의 인정에 관한 임시 기본 원칙(문서번호 36).

리테크니쉬 오버슐레(politechinische Oberschule) 교사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은 중등교육 1단계, 즉 5학년에서 10학년까지 수습 교사로 편입하게 되었다. 단순히 교직과정만을 이수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에게 한해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중등교육과정 중 11학년부터 13학년 단계의 수습 교사로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의 수습 기간인 2년이 지나면 독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수습 기간 2년을 마친 사람들이 정식교사가 되기 위해 치러야하는 2차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받는데, 그 수습 기간은 수업경험의 여부에 따라서도 단축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연방주의 교육부장관들은 신연방주에서 취득한 교원자격을 모든 연방주에서 그대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sup>87</sup>

통일된 독일 연방주의 교육부장관들이 동독에서 취득한 자격증과 학위의 인정을 위한 일반적인 기본원칙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그 규정이 신연방주의 모든 교사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신연방주의 모든 교사들은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 교사자격을 인정받아야만 했다. 이와 관련한 첫 번째 조치는 1991년 6월에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장관회의 사무국에 의해 발표되었다. ‘통일조약 37조 규정에 의거 동독법에 따라 이수한 교사자격 인정’을 위한 기본원칙이라고 불리는 이 조치에 따라 신연방지역의 기존 교사들의 교사자격 인정은 각 주의 청소년담당국과 해당 관청이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결정하게 되었다. 개별심사를 위해 해당 관청은 개개인의 교사들이 동독에서 이수한 교사양성교육의 입학자격, 내용, 기관 그리고 졸업시험 등이 유효규정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연수과정을 이수하였는지 그리고 교사직 직업경력을 통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하나씩 검토하고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그것을 근거로 국가가 공인하는 교사자격을 부여하였다. 이 기본원칙에 따라 동독에서 3년 이상 교사로

.....

<sup>87</sup> 동독에서 취득한 교원자격 인정과 관련한 임시 기본원칙(독일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회 의결) (문서번호 38).



근무한 사람의 경우 3년의 경력을 6개월 간 보충 연수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게 되었다.<sup>88</sup>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에서 동독 시절 획득한 교사자격의 인정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는 1993년 5월 7일 그라이프스발트에서 열린 주정부 교육문화 장관협의체(KMK)를 통해 이루어졌다.<sup>89</sup> 이 회의에서 동독체제에서 이수한 교사양성과정을 거쳐 신연방주에서 교사로 재직하는 교육공무원은 연방급 여규정 A호봉으로 분류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한 인정절차는 각 연방주의 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되며, 증명확인절차를 신청하기 위해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고 규정하였다: a) 일반 공무원법의 전제조건, b) 2차 급여 경과규정 취득을 위한 시험을 이수, 국가시민교육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는 배제, c) 최소 총 3-4년의 재직기간에 대한 증명, d) 50세 미만. 증명확인절차를 담당하는 최고 관할관청은 a) 인사 기록, b) 교사보충교육 참여 증명 및 c) 적합한 공무원에 의한 전문적 평가를 근거로 진행되며 심사결과의 소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수업참관과 개별면담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이 소견서에는 a) 중기 수업계획 제출, b) 수업과 교육과 관련된 성과 및 능력, c) 필요시 더 높은 지위에서의 성과 및 능력, d) 수업방문 후의 면담 평가, e) 일반적인 인격 및 자질, f) 기타 요소, 특히 의무의식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만 했다.

초등학교와 한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중등과정 I, II에 속하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자격인정 문제는 비교적 신속하게 분명한 원칙이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큰 불만이 제기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심사절차가 오랜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었고, 심사를 받는 동안 해당 교사 개인에게는 큰 부담을 주는 문제였을뿐만 아니라, 심

<sup>88</sup> 독일통일 이후 급여법의 경과규정에 관한 2차 명령(제2차 급여 경과규정-2. BesÜV)(문서번호 62).

<sup>89</sup> 동독에서 이수한 교직과정의 인정에 관한 협정(문서번호 99).

사를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장래에 대한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었다. 1990년대 전반기 신연방지역의 침체된 분위기가 이런 불안감에 더욱 일조를 하였다.

1995년에도 이 심사절차는 완료되지 않았었다. 베를린 시정부의 교육부는 그해 5월에 교육 관련 공무원을 평가하는 절차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베를린 각 지역의 교육청 제5국이 제출할 평가인의 소견서를 작성, 제출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교사의 심사를 위한 평가인 소견은 전적으로 교육청 제5국 소속 고위 관리와 장학사 또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수업참관은 최소 7일 전에 학교측에 통보하고, 학교측은 해당 교사에게 즉시 이를 알려야 한다고 했다. 모든 수업시간(45분) 그리고 제출된 수업단위에 대한 수업초안(90분)이 평가 대상이 되며, 각 45분씩 심층면담과 교육법/교육학 그리고 교수법 및 교수학에 관한 인터뷰가 진행된다. 1차 수업참관을 통해 충분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을 경우, 6개월 이내 수업참관을 다시 실시하도록 한다고 발표했다.<sup>90</sup> 나아가 평가인의 소견서 작성을 위해 a) 교육청의 고위 관리 및 장학사, b) 구서독지역 교육청의 고위 관리 및 장학사, c) 자체 지역을 제외한 구동독 지역 교육청의 고위 관리 및 장학사, d) 구동독 및 구서독지역의 교생 실습 세미나의 지도교수, e) 구동독 및 구서독지역의 세미나 상임 지도교수, f) 구동독 및 구서독지역의 수업견학 및 심층면담 세미나의 상임 지도교수 등에 자문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심사를 위해서 최대 5장의 수업계획안이 제출되고, 심층면담 최대 45분, 교육법/교육학 면담 최대 45분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규정했다.<sup>91</sup>

세부적인 사안까지 명확히 규정되었던 초등학교와 중등과정의 교사의

.....

<sup>90</sup> 교사자질 검증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인의 소견서 작성 절차(문서번호 114).

<sup>91</sup> 교사자질 심사를 위한 평가인의 소견서 작성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제안(문서 115).



자격심사와 달리 대학교와 연구소에 근무하던 교수와 연구원들을 심사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의 전문 자격을 평가하는 것은 대학과 연구기관의 구조개혁의 핵심적인 요소였다. 통일조약 37조 1항에 따라 동독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1993년 말까지 취득 예정인 학위가 원칙적으로 서독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동독체제와 특별히 밀접하게 연관되었기 때문에 학업의 내용이 서독의 유사한 학위과정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한해 학위의 '수준'이 동등하다는 사실(Niveaugleichheit)만 인정하기로 하였다.<sup>92</sup> 그에 따라 드 메지에르 정부는 1990년 9월 18에 당시 동독의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은 기존의 학사규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sup>93</sup>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박사학위까지 당시 규정에 따라 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동독에서 취득한 박사학위는 통일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통일 이후 독일연방공화국의 학위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통일 이후 현실적인 문제가 된 것은 그러나 이런 기본 원칙이 아니라 연구자들이 연구, 교육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야만 했다는 사실이었다. 연구자의 전문자격을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연구자 평가에 대해 당사자들이 불만을 터트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통일과정에서 서독의 학술자문위원회는 통일 이전부터 동독의 대학과 연구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평가했다. 그와 함께 서독의 학자들이 대거 동원되어 동독대학의 학과와 연구자들의 전문자격을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서독학자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완전히 배제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사실 학술자문위원회 의장 Dieter Zi

<sup>92</sup> 통일조약 37조 1항 규정에 의거 학위의 동등성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의 결정(문서번호 74).

<sup>93</sup> 대학교에 대한 법령(임시 대학교령)(문서번호 28).

문 교수도 평가과정에서 서독의 학자들뿐만 아니라 해외학자들을 더욱 많이 참여시킬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sup>94</sup> 실제로 동독 연구자들의 평가를 담당한 서독의 교수들은 대부분 단기간(이틀) 동독 대학 교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학과를 평가하고 등급을 매겼다. 평가서에는 개별 연구자들의 박사학위 논문과 교수 자격(동독에서는 박사학위 B로 명명) 취득을 위해 제출한 논문의 제목과 참고문헌 정도가 기록되었으며, 실제로 논문과 그들의 연구업적과 교육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평가과정을 마쳤을 때는 통일이 실현되고 한참 지난 후였다. 그때에 이미 서독에서 초빙되었던 창립학장이 학과를 개조한 후였고, 새로운 교수자리는 평가를 담당할 학자의 제자들로 충원되는 경우가 잦았다.

연구자의 전문자격의 인정 및 평가결과 또한 지역적 차이가 존재했다. 브란덴부르크에는 학자의 71%가 자격검사 시험에 통과한 반면 베를린에서는 50%도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포츠담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만프레드 괴르테마커(Manfred Görtemaker)는 동독 대학교 해고사유의 10%만 정치적 및 도덕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sup>95</sup> 그러나 1990년대 당시 신연방주의 연구자들과 해임된 교수들은 대부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통일 이후 신연방주 대학과 연구기관의 구조개혁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동독체제 하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교수가 될 수 없었던 중간층 학자군의 사람들에게 교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학과 연구소에서 교수 아래에서 연구와 교육 또는 행정업무의 처리를 담당하던 조교, 전임강사 연구원도 포함된다. 1990년에서 1994년 사이에 작센주에서 새로이 임명된 1,762명의 교수 중에서 동독

<sup>94</sup> “당신들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소”-학술자문회의의 위원장 디이터 지몬, 구동독지역 내 학술연구의 미래에 대해(문서번호 65).

<sup>95</sup> Tagesspiegel, 2016년 1월 27일.





의 대학과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1,164명으로 신규임용교수의 66%를 차지했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sup>96</sup>

## 2. 재임용 심사

통일과 통합으로 사회 전체가 급격한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도 학교교육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누가 주축이 되어 새로운 교육을 이끌어 갈 것인가하는 문제가 항상 제기될 것이다. 체제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구체제와 정치적으로 깊게 연관되어 있는 교사를 전원 대체하는 것도, 그대로 잔류시키는 것도 모두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를린과 신연방주들이 선택한 정책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통일 이후 신연방주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사의 경우 정치적으로 구체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에 남아서 3년 간 테스트 기간을 갖고 난 후에 교육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교사들이 구동독에서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인정문제뿐만 아니라 교사들 개인의 과거경력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다. 동독의 체제 하에서 교사는 사회주의통합당의 당원이었을뿐만 아니라 당의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새로운 체제에서 학생들에게 민주적 시민의식을 가르쳐줄 능력과 자격이 있는가하는 문제가 당연히 제기되었다. 교사들 중에 과거에 당 간부, 비밀경찰의 정보원 또는 협력자였던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 또한 하나의 정책적 과제가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신연방주 주정부의 성향에 따라 상이하였다. 서독에서 영입된 정치인 쿠르트 비텐코프가 주총리직을 맡은 작센주의 경우 정치적 문제가 있는 교사들을 비교적 엄격하게 처리하였다. 1991년 12월 31

.....

<sup>96</sup> 1,762명의 신규임용교수 중에서 559명이 서독에서 초빙되었고, 39명은 외국인이었다.

일까지 과거경력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교사들을 교직에서 해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5만 2,000명 중 7,000명에 달하는 교사들이 해고되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활동을 과거에 했던 교사들이란’ 과거 구청 및 지역 교육위원, 장학사, 인사과장, 블록정당의 상임위원 그리고 자유독일 청년당(Freien Deutschen Jugend, FDJ) 및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인민회의 원내 교섭 단체의 최고 위원회 회원들이었다. 1991년 9월 말까지 작센주 고등교육청에서 약 3,000명의 교육자를 ‘슈타지 교사’로 분류하고 이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였다. 사직 통보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었다. 그럴 경우 고등교육청의 청문위원회에서 자신이 공직을 수행하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만약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면 그 즉시 해고절차가 진행되었다. 해고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거의 모두 이의를 제기하였고, 자신들도 엄밀히 말하면 제도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였다. 교사노동조합(GEW)은 장학사 또는 인사과장의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가 ‘해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작센주의 교육부는 ‘깨끗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모토 아래 과거 경력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교육자들이 그들의 지위를 통해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제도를 결정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청문위원회 회원들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고 비밀에 붙여졌다.<sup>97</sup> 작센주의 교육부장관이었던 한스 요아힘 마이어가 1994년에 신연방지역의 대학개혁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은 무엇보다 동독체제 하에서 인권을 침해했던 대학 인사들을 해고한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당시 작센주 주정부의 입장은 단호했다.<sup>98</sup>

작센주에서만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모든 연방주에서 비밀경찰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 또한 해고의 대상이었다. 통일 직후 신연방지역에서

.....

<sup>97</sup> ‘망각의 시간’/시사주간지 슈피겔(Spiegel)의 기사-작센주에서의 교사 대량 해고(문서번호 71).

<sup>98</sup> 동독지역 대학개혁 결산(작센주 학술·예술부장관 강연)[발췌](문서번호 113).



공직에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신이 과거에 비밀경찰과 관련이 있었는지를 묻는 설문지에 답을 작성해야만 했다. 동독시기에 이미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사람들 또한 통일 후 계속 근무하기 위해서는 교사용 설문지에 성실하게 답해서 제출했어야만 했다. 이 설문지는 첫째, 교사로서의 자질에 관한 개인 진술 그리고 둘째, 동독에서의 비밀경찰 슈타지 활동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 설문지에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기술한 것이 드러날 경우 그것은 해고의 근거가 되었다. 그 이유는 설문지의 마지막 장에 포함된 사실진술에 대한 보증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만 했는데 이것은 그에 따라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장에는 “본인은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사실대로의 진실을 진술한 것을 서약한다. 만일 위 사실에 거짓이 있으면,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라고 쓰여 있었다.<sup>99</sup> 법치국가의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되기 때문에 이러한 서명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었고, 만일 동독 비밀경찰의 문서를 관리하는 가옥(Gauck)청에서 당시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있던 동독 비밀경찰 관련 자료에서 해당 공무원 교사가 서명한 것에 반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것은 결정적인 해고사유가 되었다. 물론 그런 이유로 해고되는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동독이라는 체제 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했었던 문제로 자신들도 체제의 희생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경찰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교사들은 모든 신연방주에서 해고되었다. 주정부의 기본입장이 과거를 과거로 두고 ‘화해’를 통한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는 것이었던 브란덴부르크의 경우도 교사 중에 비밀경찰과 연관된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해고조치가 이루어졌다.

.....

<sup>99</sup> 교사 설문지(문서번호 106).

### 3. 급여체계의 통합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의 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 동독에서 취득한 학위와 교사자격을 인정받고, 과거경력에 관한 검증을 거쳐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된 교사와 교수 연구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급여문제였다. 통일과 함께 한시적으로 신연방주의 공공기관에 근무하게 된 신연방주의 ‘공무원’들은 서독지역의 동료들과 동일한 급여를 받지 못했다. 1991년 6월 2일에 연방내무부가 도입한 ‘공무원 급여에 관한 2차 경과규정’에 의해 신연방주의 일반학교, 직업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들의 급여에 관한 규정이 다시 정해졌다. 이 규정에 따라 신연방주에서 처음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사의 경우 급여는 일반적으로 구연방주에서 지급되었던 급여의 60% 수준이었다. 교육전문학교 과정을 졸업한 ‘초등학교 교사’는 급여그룹 A10으로 분류되었다.<sup>100</sup> 반면에 구연방주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A11 또는 A12 급여그룹으로 분류되었다.<sup>101</sup> 2개의 교사학위를 취득한 교사(Diplomlehrer)는 A12 급여그룹으로만 진급할 수 있었고, A13에 대한 급여분류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sup>102</sup> 이와 같이 동등하지 않은 처우에 대한 근거로는 동독교사의 학문적 소양 또는 교육과정의 수준이 더 낮다는 점이 언급되었다.<sup>103</sup> 이 규정은 동독체제 하에서 교직을 이수한 교사들이 서독에서 교사자격을 취득한 교사들뿐만 아니라 새로이 신연방지역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교사자격을 취득할 사람들보다 낮은 급여그룹으로 분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sup>104</sup>

통일 초기에 신연방주의 교사들은 이러한 조치를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

.....

<sup>100</sup> 독일통일 이후 급여법의 경과규정에 관한 2차 명령(제2차 급여 경과규정-2. BesÜV)(문서번호 62).

<sup>101</sup> 교육-학술노조의 요구사항-‘동서독지역에서의 교직 평등을 위하여’(문서번호 103).

<sup>102</sup> 독일통일 이후 급여법의 경과규정에 관한 2차 명령(제2차 급여 경과규정-2. BesÜV)(문서번호 62).

<sup>103</sup> ‘망각의 시간’/시사주간지 슈피겔(Spiegel)의 기사-작센주에서의 교사 대량 해고(문서번호 71).

<sup>104</sup> 교육-학술노조의 요구사항-‘동서독지역에서의 교직 평등을 위하여’(문서번호 103).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3년에 연방정부가 동서독지역 교사들의 차등평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교사급여변경법의 초안을 발표하였을 때 통일 초기에 신연방주 교사들의 불만이 폭발하였다.<sup>105</sup> 1994년 6월 8일에 브란덴부르크주에 있는 약 1,000개의 학교 중 100개 이상의 학교에서 통일된 독일에서 전국적으로 동등한 급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교사들이 동맹파업을 벌였다. 이 시위는 그 후 신연방주와 베를린에서 벌어진 시위운동의 시작이 되었다. 6월 14일에는 독일 전역에서 모인 수천 명이 넘는 교사들이 시위에 가담했다. 시위의 계기는 연방회의(Bundesrat)가 제출하고 연방의회 내무위원회가 심의하게 될 교사급여 관련 법 초안이었다. 급여법의 변경을 위한 법 초안은 2차 경과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구동독지역의 초등학교 및 직업학교 교사들을 급여그룹 A10 및 A11로 분류하고, 구서독지역의 교사들을 급여그룹 A11 및 A12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은 구동독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의 급여가 구서독 동료들의 급여보다 2개 등급까지 낮게 분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회의는 구동독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육전문학교를 다녔고,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논거를 제시하였다. 그에 대해 교원노조와 약 5만 명에 달하는 신연방주 초등학교 교사 등은 설령 급여동등화를 급하게 실현시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는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구동독 교육체계를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자신들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평가절하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sup>106</sup>

1994년 6월 16일에 열린 연방의회 내무위원회의 회의에서 작센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발의한 동독에서 교사양성교육을 받은 교사들의 급여등급을 계속해서 2단계 낮게 평가한다는 내용의 논쟁의 여지가 있는 법

<sup>105</sup> '교사들의 압력'/신문기사(문서번호 107), 교사급여의 동등화에 관한 신문 기사(문서번호 108).

<sup>106</sup> '교사들의 압력'/신문기사(문서번호 107).

초안을 폐기하고, 각 신연방주에 교사급여의 규정을 결정할 권한을 위임하였다.<sup>107</sup> 이 결정에 따라 신연방주들이 1995년 말까지 교사들의 급여그룹 분류 방식을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동독체제 하에서 대학교 교직교육을 받지 않고 교사로 임용된 약 4만 명에 달하는 초등학교 교사들도 새로운 급여제도를 적용받게 되었다. 작센주를 제외한 모든 신연방주들은 교사들의 급여등급을 구서독지역의 기준에 맞추려고 했다. 그러나 작센주는 재정적인 이유로 인해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려고 했다. 1994년 8월에 들어서 연방의회는 연방회의와의 협의 하에 신연방지역의 교사급여규정의 변경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동독체제 하에서 교사자격을 획득한 교사들의 경우에도 교사그룹을 연방급여규정과 지방급여규정의 A호봉 그룹으로 분류하는 법을 적용하기로 했다.<sup>108</sup> 그리고 1994년 7월에 베를린 시의회는 동·서베를린 지역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급여를 1996년 10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균등화하기로 결정하였다.<sup>109</sup>

.....  
<sup>107</sup> 교사급여의 동등화에 관한 신문 기사(문서번호 108).

<sup>108</sup> 교사급여규정의 변경에 관한 법(문서번호 112).

<sup>109</sup> 베를린 공공부문의 소득 균등화에 관한 법(소득균등화법-EinkommAngG)(문서번호 111).

## 나오며

독일통일 과정에서 교육, 연구 부분에서의 통합작업에 관해서 잘못 알려진 정보가 많다. 그것은 학교와 대학 그리고 연구소의 개혁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능력이 있는 전문가 및 지식인이었다는 것과는 적지 않은 연관이 있다. 일반적으로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의 대학이 통일 이전에 서독에서 자리를 잡을 수 없었던 학자들에게 교수직을 주는 통로였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통계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의 대학이 새로 임용한 교수의 다수는 동독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수가 되지 못했거나 될 수 없었던 동독 출신 연구자들이었다. 동독체제에서 교사로 근무했던 사람들이 통일 이후에는 전부 해고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계의 과거청산을 가장 엄격하게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진 작센주의 경우에도 해고된 교사의 인원이 전체 교사 5만 2,000명 중에서 7,000명에 달할 뿐이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통일 초기 주정부 정책의 포커스가 과거청산보다는 화해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해고된 교사가 별로 없었다. 동독체제 하에서 정치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시민 교육 과목을 담당했던 교사들이 통일 이후 통합된 학교체제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 것 때문에 통일로 인해 동독의 교사들이 전원 해고되었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에 도움이 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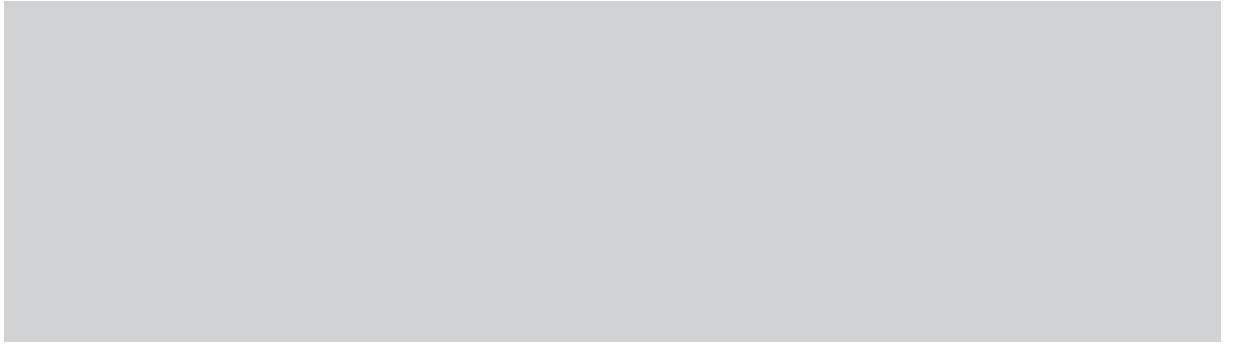
독일통일과 교육제도의 통합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어떠한 급격한 사회적,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학교와 대학에서 교육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변혁이 진행되는 중에도 학생들이 학교

에 입학하였고, 그들을 위한 졸업시험과 성적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통일과 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진행되던 중에도 교육기관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어야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다른 공공기관에 서와 마찬가지로 과잉 고용된 인원이 감축되고 신규인원은 신속히 보충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남은 인원으로 일상적인 업무와 통합작업을 동시에 진행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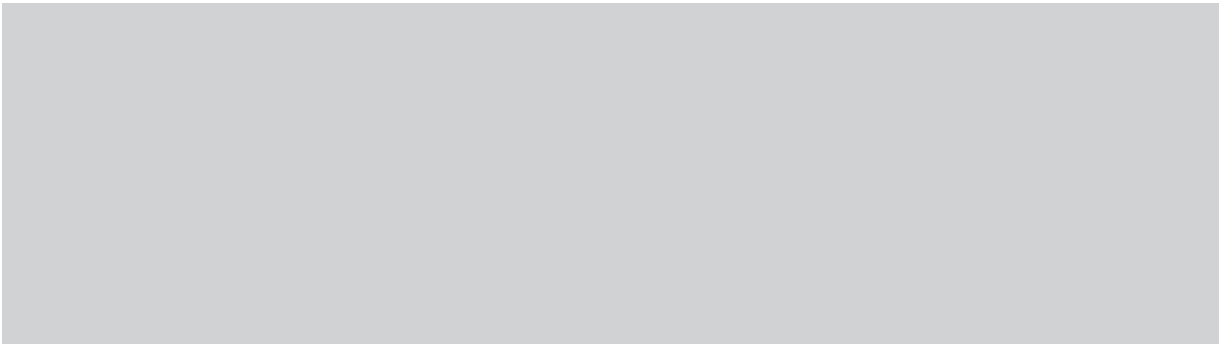
독일통일과 통합과정 중에 자신의 불만을 설득력 있게 표현할 능력이 있는 연구자, 교수 및 교사들이 갖고 있던 교육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만이 언론을 통해 많이 전달되었고, 독일통일과 관련된 정보를 주로 언론을 통해 전달받아온 우리가 그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해한 경우가 적지 않다. 독일통일과 통합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오해와 선입견을 먼저 내려놓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정책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을 검토하는 것이 그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교육통합 분야 관련 정책문서



# 교육통합 분야 관련 정책문서



# 문서 목록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1  | 교련 과목 폐지  | 1989년         | 동독 인민교육부장관 한스-하인츠 에몬스               | Deutsche Lehrerzeitung, 46/1989, S. 3,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154 f.                                      |
| 2  | 우리 시대의 투쟁에 있어 국가시민 교과의 의의-교육학술원 내 '사회과 학습업' 연구소 소장의 논문      | 1989년         | 교육학술원 내 '사회과학수업' 연구소 소장 호르스트 리하르트   | Gagel, Walter(Hrsg.), 1992, Politische Bildung nach der Vereinigung, Stuttgart, Düsseldorf, Berlin,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 Verlag  |
| 3  | 동독 '국가시민교육' 교과의 재정비에 관해-초빅카우 교육대학 내 '국가 시민 교과 방법론' 학부의 입장   | 1989년 11월 10일 | 초빅카우 교육대학(PH) 내 '국가시민 교육 교과 방법론' 학부 | Gagel, Walter(Hrsg.), 1992, Politische Bildung nach der Vereinigung, Stuttgart, Düsseldorf, Berlin,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 Verlag  |
| 4  | 국가시민 교과 업무에 대한 교육부, 직업훈련 및 교육학 학술원 담당 차관의 권고(7학년에서 10학년 대상) | 1989년 11월 16일 | 동독 국민교육부, 직업교육부차관 및 교육학 학술원         | Gagel, Walter(Hrsg.), 1992, Politische Bildung nach der Vereinigung, Stuttgart, Düsseldorf, Berlin,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 Verlag  |
| 5  | 동독의 국가시민 교과 관련 토론-(동독) 교육부의 견해                              | 1989년 11월 29일 | 동독 교육 · 학술부                         | National-Zeitung, 29.11.1989,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53   |
| 6  | 동독 내 '사회' 교과의 새 도입에 관해-동독 교육 · 학술부 지시                       | 1990년 2월 21일  | 동독 교육 · 학술부                         | Verfügungen und Mitteilungen des Ministeriums für Bildung Nr. 2/1990, S. 14,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54 f.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7  | 사회 교과: 공교육 11학년 및 12학년 학생 관련 권고                                      | 1990년 3월     | 동독 교육 · 학술부      |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Rahmenpläne für den Gesellschaftskundeunterricht, Berlin, März 1990,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61-364 |
| 8  | 사회 교과: 공교육 7학년-10학년 학생 관련 교육과정계획                                     | 1990년 3월     | 동독 교육 · 학술부      |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Rahmenpläne für den Gesellschaftskundeunterricht, Berlin, März 1990,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59-361  |
| 9  | 1989년 11월 이후 동독의 일반학교에서 시행되었거나 계획 중인 개혁 조치 일람(동일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회 연구논문) | 1990년 5월     | 서독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회 | Köhler, Gabriele; Knauss, Georg; Zedler, Peter(Hrsg.), Der bildungspolitische Einigungsprozess 1990, Verlauf und Ergebnisse der deutsch-deutschen Verhandlungen zum Bildungssystem, Leske + Budrich, Opladen 2000  |
| 10 | 동서독 공동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해 독일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회(KMK) 제248차 특별회의                  | 1990년 5월 10일 | 서독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회 | Köhler, Gabriele; Knauss, Georg; Zedler, Peter(Hrsg.), Der bildungspolitische Einigungsprozess 1990, Verlauf und Ergebnisse der deutsch-deutschen Verhandlungen zum Bildungssystem, Leske + Budrich, Opladen 2000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11 | “동독에는 포르노그래피 따위는 없습니다.’ 사회주의통합당의 지배 하에서 살만했다는 말이 동독지역 학생들 사이서 돌고 돌아서로 처음 배우는 내용이란다. 서독정부, 교과서를 보내주기 위해 수백만 마르크 지출.” | 1990년 5월 21일 | 서독 교육 · 학술부장관 위르겐 W. 뢰렌만                  | Der Spiegel, 21/1990   |
| 12 | 동서독 공동교육위원회의 과제 및 구조  | 1990년 5월 25일 | 연방교육 · 학술부                                | Köhler, Gabriele; Knauss, Georg; Zedler, Peter(Hrsg.). Der bildungspolitische Einigungsprozess 1990. Verlauf und Ergebnisse der deutsch-deutschen Verhandlungen zum Bildungssystem, Leske + Budrich, Opladen 2000  |
| 13 | 외국어 수업 강화 학급 신설에 관한 지침  | 1990년 5월 28일 | 동독 교육 · 학술부장관 요아힘 마이어                     | Gesetzblatt Teil I Nr. 35-Ausgabebetrag: 27. Juni 1990   |
| 14 | 임시 학교감독청 설립령  | 1990년 5월 30일 | 동독 내각회의;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교육 · 학술부장관 요아힘 마이어 | Gesetzblatt Teil I Nr. 32-Ausgabebetrag: 19. Juni 1990   |
| 15 | 학교 내 공동운영위원회 및 교장단 구조에 대한 명령  | 1990년 5월 30일 | 동독 내각회의;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교육 · 학술부장관 요아힘 마이어 | Gesetzblatt Teil I Nr. 32-Ausgabebetrag: 19. Juni 1990   |
| 16 | 동서독 공동교육위원회 1차 회의 회의록   | 1990년 6월 7일  | 서독 교육과학부,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동독 교육과학부   | Köhler, Gabriele/ Knauss, Georg/Zedler, Peter(Hrsg.). 2000. Der bildungspolitische Einigungsprozess 1990. Opladen: Leske + Budrich, S. 57-78.  |
| 17 | 학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  | 1990년 6월 14일 | 동독 교육 · 학술부                               | Verrügung und Mitteilung des 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1990, Nr. 6 v. 16. Juli 1990,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236 f.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18 | 학교 지도 및 운영에 있어 교감의 업무영역   | 1990년 6월 14일 | 동독 교육 · 학술부                  |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Hrsg.),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Reihe III, Band 8a-1990, Bonn o.J.(1990), S. 167-195,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165 f. |
| 19 | 동서독 공동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 1990년 6월 21일 | 독일연방공화국-독일민주주의공화국 간 공동교육위원회  | Köhler, Gabriele; Knauss, Georg; Zedler, Peter(Hrsg.), Der bildungspolitische Einigungsprozess 1990, Verlauf und Ergebnisse der deutsch-deutschen Verhandlungen zum Bildungssystem, Leske + Budrich, Opladen 2000, S. 78-86   |
| 20 | 아동 · 청소년복지법 개정안(아동 · 청소년복지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 KJHG)) | 1990년 6월 26일 | 사회복지법전 제8권 아동 · 청소년복지법(KJHG) |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
| 21 | 독일통일을 목표로 본 학술 및 연구 분야의 전망들. 12가지 권고                              | 1990년 7월 6일  | 학술자문회의                       | Wissenschaftsrat, Drucksache 9847/90  |
| 22 | 대학 내 인력계획 관련 권고안  | 1990년 7월 6일  | 학술자문회의                       | Wissenschaftsrat, Drucksache 9866/90  |
| 23 | 서독학교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동독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동독측의 입장                            | 1990년 7월 9일  | 공동교육위원회, 일반학교교육 · 신하위원회(동독측) | Köhler, Gabriele; Knauss, Georg; Zedler, Peter(Hrsg.), Der bildungspolitische Einigungsprozess 1990, Verlauf und Ergebnisse der deutsch-deutschen Verhandlungen zum Bildungssystem, Leske + Budrich, Opladen 2000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24 | 동독에서 더 이상 신입교수를 임용하지 말라(연방 교육·학술부 보도 자료) | 1990년 8월 21일 | 연방 교육·학술부장관 요아힘 뮐레만                    |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Presseinformation Nr. 120/1990 vom 21. August 1990,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199 |
| 25 | 통일조약-제37조 교육                             | 1990년 8월 31일 | 서독정부와 동독정부                             | BGBI. II, S. 885   |
| 26 | 동독 교육학술부 내 '정치시민교육' 프로젝트 그룹의 권고          | 1990년 9월     | 동독 교육·학술부                              | Gagel, Walter(Hrsg.), 1992. Politische Bildung nach der Vereinigung. Stuttgart, Düsseldorf, Berlin,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 Verlag  |
| 27 | 교원양성에 관한 명령(동독)                          | 1990년 9월 18일 | 동독내각회의;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교육·학술부장관 요아힘 마이어 | Gesetzblatt Teil I Nr. 63-Ausgabetaq: 26. September 1990   |
| 28 | 대학교에 대한 법령(임시 대학교령)                      | 1990년 9월 18일 | 동독내각회의;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교육·학술부장관 요아힘 마이어 | Gesetzblatt Teil I Nr. 63-Ausgabetaq 26. September 1990  |
| 29 | 학교 및 직업학교 관련 원칙과 규정 에 대한 법령-임시 '학교령'     | 1990년 9월 18일 | 동독내각회의;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교육·학술부장관 요아힘 마이어 | Gesetzblatt Teil I Nr. 63-Ausgabetaq: 26. September 1990   |
| 30 | 통일조약 38조-학술 및 연구                         | 1990년 9월 20일 | 독일연방공화국; 독일민주주의공화국                     | Bundesgesetzblatt Teil II Nr. 35-Tag der Ausgabe: 28. September 1990   |
| 31 | 통일조약 부록 1-14장 대학교 및 직업교육장려               | 1990년 9월 20일 | 독일연방공화국; 독일민주주의공화국                     |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30-1132, Tag der Ausgabe: 28.09.1990  |
| 32 | 동사독 공동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최종회의)회의결과기록          | 1990년 9월 26일 | 독일연방공화국-독일민주주의공화국 간 공동교육위원회            | Köhler, Gabriele; Knauss, Georg; Zedler, Peter(Hrsg.). Der bildungspolitische Einigungsprozess 1990. Verlauf und Ergebnisse der deutsch-deutschen Verhandlungen zum Bildungssystem. Leske + Budrich, Opladen 2000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33 |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겐주 및 동베를린지역의 일반교육학교 재정비를 위한 기본원칙 및 권고 | 1990년 9월 26일    | 공동교육위원회                | Sekretariat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ok. sc101, Typoskript,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225-228   |
| 34 | 베를린 주범의 단일화에 관한 법   | 1990년 9월 28일    | 베를린 국회의사당, 베를린의 구의회 회의 | Archiv der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
| 35 | 독일통일 및 교육연방주의에 대한 독일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회 의성명서                                   | 1990년 10월 4일    | 독일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회       | Pressemittteilung der KMK vom 8. Oktober 1990,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261 f.  |
| 36 | 동독에서 취득한 교사자격의 인정에 관한 임시 기본 원칙  | 1990년 10월 5일    | 각 연방주의 교육부장관, 교육부위원    | Beschluss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05.10.1990, Aus dem Archivraum der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
| 37 | 교사자격시험과 교사자격의 상호 인정   | 1990년 10월 5일 기준 | 각 연방주의 교육부장관, 교육부위원    | Beschluss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5. 10. 1990   |
| 38 | 동독에서 취득한 교원자격 인정과 관련한 임시 기본원칙(독일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회 의결)                        | 1990년 10월 5일    | 독일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회       | Sammlung der Beschlüsse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Loseblattsammlung), Dannstadt/Neuwied, Stand 1994, Nr. 716,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255 f.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39 | 시민교육/교육·문화/교육 및 청소년을 위한 베를린 시의회 회의록                                 | 1990년 10월 10일 | 시민교육/교육·문화/교육 및 청소년을 위한 참사시회 의회에 관한 프로토콜, 뒤빌레 폴크홀츠(Sybilie Volkholz) 위원, 학교, 직업교육 및 스포츠 행정처 | Archiv der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
| 40 | 베를린의 통합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   | 1990년 10월 12일 | 학교, 직업교육 및 스포츠 위원회, 교육행정관리, 모든 공립 및 사립학교, 각 관할지역의 학교감독 교육공무원, 관할지역의 구청, 민중교육 부서             | Rundschreiben V Nr. 102/1990, Archiv der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
| 41 | 신연방주 및 베를린의 대학교구조위원회 설립 및 대학교수임용정책 수립에 대한 권고                        | 1990년 11월 16일 | 학술자문회의  | Wissenschaftsrat, Drucksache [Nr. fehlt in Dok.] ( <a href="http://www.wissenschaftsrat.de/download/archiv/Neue_Laender_Berufung.pdf">http://www.wissenschaftsrat.de/download/archiv/Neue_Laender_Berufung.pdf</a> )  |
| 42 | 연방정부 보고: '대학정책 목표수립'[신연방주 관련 발취]                                    | 1990년 11월 29일 | 연방의회; 연방정부  | Parlamentsdokumentation Bundestag, Drucksache 11/8506   |
| 43 | 베를린시 학교장연맹 (Interessenverband Berliner Schulleitungen)의 1990년 연례보고서 | 1990년 12월 3일  | 베를린시 학교장연맹 (Interessenverband Berliner Schulleitungen)                                      | <a href="http://www.ibs-verband.de/files/pdf-dateien/J11990.pdf">http://www.ibs-verband.de/files/pdf-dateien/J11990.pdf</a> (Stand 10.10.2015)  |
| 44 | 브란덴부르크주 내 정치시민교육, 중등교육 1단계 '사회 과목'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취                   | 1991년         | 브란덴부르크주 청소년·교육·스포츠부   | Ministerium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 des Landes Brandenburg, Vorläufiger Rahmenplan Lernbereich "Gesellschaftslehre", Politische Bildung Sekundarstufe I, Potsdam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64-368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45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내 사회 과목: 하울트술레, 레알술레 및 김나 지움에 대한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체 | 1991년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교육· 학술· 문화부 | Vorläufige Rahmenrichtlinien Hauptschule, Realschule, Gymnasium-Sozialkunde-des Landes Mecklenburg Vorpommern, Schwerin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69 f.  |
| 46 | 작센-안할트주 내 사회 과목 +N45. 중등학교 중 하울트술레 관련 교육 과정 임시계획 중 발체         | 1991년        | 작센-안할트주 교육· 학술· 문화부       | 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 des Landes Sachsen-Anhalt, Vorläufige Rahmenrichtlinien-Sekundarschule: Bildungsgang Hauptschule-Sozialkunde, Magdeburg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72-374 |
| 47 | 튀링겐주 내 사회 과목: 레알술레 및 김나지움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체                      | 1991년        | 튀링겐주 문화부                  | Thüringer Kultusministerium, Vorläufige Lehrplanhinweise für Regelschule und Gymnasium Sozialkunde, Erfurt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74-376  |
| 48 | 동베를린 및 작센주 미트바이다지역 전문대 설립 관련 권고                               | 1991년 1월 22일 | 학술자문회의; 동독 교육· 학술부        | Wissenschaftsrat, Drucksache 27/91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49 |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지역 대학교수 과정 개혁 및 신진학자 육성에 관한 권고                  | 1991년 1월 25일    | 학술자문회의              | Wissenschaftsrat, Drucksache 26/91  |
| 50 | 브린덴부르크주 초이텐 소재 고에너 지물리학연구소 관련 의견                           | 1991년 1월 25일    | 학술자문회의              | Wissenschaftsrat, Drucksache 23/91 vg   |
| 51 | 신연방주 및 베를린의 대학 외 연구 기관들에 대한 의견-경제학 및 사회 학과들에 대해[발췌]        | 1991년 2월 19일    | 학술자문회의              | Wissenschaftsrat, Drucksache 93/91  |
| 52 | 통일독일의 교육, 과학 및 문화정책에 대한 호언하임 제안서                           | 1991년 2월 21/22일 |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 Sekretariat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Hrsg.), 1998. Einheit in der Vielfalt: 50 Jahre Kultusministerkonferenz 1948-1998. Neuwied/Krifle/Berlin. |
| 53 | 포츠담지역 내 대학교정 사회학과 개설 건에 대한 권고                              | 1991년 3월 13일    | 학술자문회의              | Wissenschaftsrat, Drucksache 97/91  |
| 54 | 동독 학술원 신하 대학 외 연구기관 틀 중 수학, 컴퓨터과학, 자동차 및 기계공학과에 대한 의견[발췌]  | 1991년 3월 13일    | 학술자문회의              | Wissenschaftsrat, Drucksache 92/91  |
| 55 | 베를린 우주과학연구소 및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노이슈트렐리츠 소재 위성관측소에 대한 학술자문회의 의견 | 1991년 3월 13일    | 학술자문회의              | Wissenschaftsrat, Drucksache 94/91  |
| 56 | 작센-안할트주 할레 소재 고체물리 학연구소 및 전자현미경연구소에 대한 의견                  | 1991년 3월 13일    | 학술자문회의              | Wissenschaftsrat, Drucksache 104/91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57 | 동독 학술원 소속 연구단들의 대학 내 재배치 절차에 대한 대학총장단 회의의 권고                         | 1991년 5월 6일     | 대학총장단회의   | Muszynski, Bernd(Hrsg.). Wissenschaftstransfer in Deutschland. Erfahrungen und Perspektiven bei der Integration der gesamtdeutschen Hochschullandschaft. 1993. Opladen: Leske + Budrich, 318   |
| 58 |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장관회의 상설 제122차 기관총회의 (Amtschetskonferenz) 의사록             | 1991년 5월 23/24일 | 독일연방공화국 교육 및 문화 관련 주 정부 장관 상임회의 사무국   | Sekretariat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59 | 신연방주 내 대학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개혁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정부 및 주정부 간의 합의-대학개혁 프로그램 (HEP) | 1991년 5월 24일    | 연방정부; 각 주정부   | Muszynski, Bernd(Hrsg.). Wissenschaftstransfer in Deutschland. Erfahrungen und Perspektiven bei der Integration der gesamtdeutschen Hochschullandschaft. 1993. Opladen: Leske + Budrich, 324-351   |
| 60 | 브란덴부르크주의 1차 학교개혁법 [발췌]   | 1991년 5월 28일    |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Brandenburg Teil I-Nr. 10, S. 116,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299-302. |
| 61 | 통일조약 37조 규정에 의거 동독법에 따라 이수한 교사자격 인정                                  | 1991년 6월 14일    | 독일연방공화국 교육 및 문화 관련 주 정부 장관회의 사무국  | Beschlussammlung der Kultusministerkonferenz, Beschluss Nr. 428.1  |
| 62 | 독일통일 이후 금여법의 경과규정에 관한 2차 명령(제2차 금여 경과규정-2. BesUV)                    | 1991년 6월 21일    | 헬무트 콜(Helmut Kohl) 독일연방 총리,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 내무부장관, 테오 바이겔(Theo Waigel) 재무장관 | Bundesgesetzblatt. 27. Juni 1991, S. 1345-1351   |
| 63 | 작센주 학교법-작센주 회의회 제2차 법안심의   | 1991년 6월 22일    | 작센주 회의회   | Plenarprotokoll Sächsischer Landtag, 1. Wahlperiode, 21. Sitzung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64 | 신연범주 내 전문대학 설립에 대한 학술자문회의의 권고   | 1991년 7월     | 학술자문회의  | Wissenschaftsrat, Empfehlungen zur künftigen Struktur der Hochschullandschaft in den neuen Ländern und im Ostteil von Berlin(Teile I-IV), Köln: Wissenschaftsrat, 1992, Teil II, S. 45-144,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267-270 |
| 65 | “당신들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소”-학술자문회의의 위원장 Dieter Ziem, 구동독지역 내 학술연구의 미래에 대해    | 1991년 7월 1일  | 학술자문회의, 의장 Dieter Ziem (박사)                     | Der Spiegel, 27/1991   |
| 66 |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노르트라이인베르트팔렌 주정부 간 교육 및 스포츠 분야에 있어 행정적 협력에 대한 협정 초안[보고서 및 토의] | 1991년 7월 3일  | 브란덴부르크주 문화부차관 베슈; 노르트라이인-베스트팔렌 주의회 학교 및 계속교육위원회 | Parlamentsdokumentation Landtag Nordrhein-Westalen, Ausschuss ß protokoll 11/299, 15-26  |
| 67 | 작센주 학교법(SchulG)   | 1991년 7월 3일  | 작센주 총리 쿠어트 비덴콕프; 문화 부차관 볼프강 노박                  | Sächsisches Gesetz- und Verordnungsblatt Nr. 15/1991-Ausgabetag: 9. Juli 1991  |
| 68 | 신연범주 내 대학 및 공과대학의 공학전공에 대한 권고   | 1991년 7월 5일  | 학술자문회의  | Wissenschaftsrat, Drucksache 325/91  |
| 69 |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노르트라이인-베스트팔렌 주정부 간 교육 및 스포츠 분야에 있어 행정적 협력에 대한 합의             | 1991년 9월 13일 | 교육 · 청소년 · 스포츠부차관 마리안 데 비어틀러; 문화부차관 한스 슈비머      | Schreiben(Vermerk: 11/851) des Chefs der Staatskanzlei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Wolfgang Clement an Landtagspräsidentin Ingeborg Friebe  |
| 70 | 신연범주 및 동베를린지역 의과대학에 대한 학술자문회의의 권고                                       | 1991년 9월 27일 | 학술자문회의  | Wissenschaftsrat, Drucksache 406/91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71 | '망각의 시간'/시사 주간지 슈피겔(Spiegel)의 기사-작센주에서의 교사 대량 해고         | 1991년 9월 30일 기준 | 베를린 국회의사당  | Spiegel 30. 09, 1991  |
| 72 | 학위 동등성 인정(대학교, 교회 양성 교육기관, 전문대학교 및 공업전문대학교 학위)           | 1991년 10월       |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 Sekretariat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 73 | 브란덴부르크주의 학교 개혁: '인생 설계-윤리-종교' 과목 시범모델                    | 1991년 10월       | 브란덴부르크주 청소년 · 교육 · 스포츠부                              | Ministerium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 Gemeinsam leben lernen: Modellversuch des Landes Brandenburg zu einem neuen Lernbereich und Unterrichtsfach "Lebensgestaltung-Ethik-Religion", Potsdam, 15. Oktober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285-287 |
| 74 | 통일조약 37조 1항 규정에 의거 학위의 동등성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의 결정 | 1991년 10월 11일   | 독일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                                     | Sammlung der Beschlüsse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Loseblattsammlung), Neuwied/Darmstadt, Stand 1994, Nr. 917,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270-272  |
| 75 | 신연방주 내 여성연구자들의 현황에 관한 간략형 대정부 질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 1991년 11월 27일   | 연방정부; 연방의회 내 시민당 교섭 단체; 연방 교육 · 학술부장관 라이너 오르트렘 박사/교수 | Drucksache 12/1653  |
| 76 | 제3차 베를린 주법의 단일화법   | 1991년 12월 19일   | 베를린 의회   |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Berlin, 47. Jahrgang Nr. 57, 31.12. 1991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77 | 작센주 법과 공동체 교과: 중등학교 교수계획에서 발췌                      | 1992년        | 작센주 문화부                | Sächs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Kultus:<br>Lehrplan Mittelschule-Gemeinschaftskunde/<br>Rechtserziehung, Klassen 8-10, Dresden 1992,<br>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br>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br>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br>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br>Budrich, 370-372  |
| 78 | 신연방주 및 동 베를린지역 내 미래의 대학 환경 및 구조에 대한 학술자문 회의의 권고    | 1992년        | 학술자문회의                 | Wissenschaftsrat, Empfehlungen zur künftigen Struktur<br>der Hochschullandschaft in den neuen Ländern und im<br>Ostteil von Berlin(Teile I-IV), Köln: Wissenschaftsrat,<br>1992, Teil I, S. 5-12, entnommen aus: Fuchs, Hans-<br>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br>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br>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br>Leske + Budrich, 279-283 |
| 79 | 신연방주 내 대학구조 재구성에 대한 학술자문회의 권고에 대한 보고               | 1992년 1월 15일 | 연방 교육 · 학술부장관 라이너 오토레프 | Muszynski, Bernhard (Hrsg.) – Wissenschaftstransfer<br>in Deutschland – Erfahrungen und Perspektiven<br>bei der Integration der gesamtdeutschen<br>Hochschullandschaft, 1993, Leske + Budrich,<br>Opladen, S. 333-351   |
| 80 | 베를린공대 토목학과 관련 의견                                   | 1992년 1월 24일 | 학술자문회의                 | Wissenschaftsrat, Drucksache 542/92   |
| 81 |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지역 미술, 음악 및 연극대학교의 미래에 대한 권고            | 1992년 1월 24일 | 학술자문회의                 | Wissenschaftsrat, Drucksache 510/92   |
| 82 |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지역에 있어 대학교서관에 필요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것에 대한 권고 | 1992년 1월 24일 | 학술자문회의                 | Wissenschaftsrat, Drucksache 537/92   |
| 83 | 에어프루트대학교 설립에 대한 의견                                 | 1992년 1월 24일 | 학술자문회의                 | Wissenschaftsrat, Drucksache 538/92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84 | 신안방주 및 베를린의 대학구조 변화에 대해-대학총장단회의 결정                     | 1992년 2월 18일 | 대학총장단회의  | Hochschulrektorenkonferenz, Entscheidung des 166. Plenums, in: Arbeitsbericht 1992, Bonn, S. 39-44,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S. 316-319 |
| 85 | 작센 자유주 내 대학 관련 분야 및 대학교 구조에 대한 법안 제정 관련 제2차 심의         | 1992년 3월 11일 | 작센 주의회   | Planarprotokoll Sächsischer Landtag, 1. Wahlperiode, 39. Sitzung  |
| 86 | 작센 자유주 내 대학 관련 분야 및 대학교 구조에 대한 법안(작센대학 구조법-SächsHSStG) | 1992년 4월 10일 | 작센주 총리 쿠어트 비텐콕프; 작센주 학술 · 예술부장관 한스 요아힘 마이어             | Sächsisches Gesetz- und Verordnungsblatt, Nr. 16/1992-Ausgabebetag: 08.05.1992  |
| 87 |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 학술원에 대한 협정                                | 1992년 5월 21일 |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 학술원; 베를린 시장 에버하르트 담겐;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 <a href="http://www.bbaw.de/die-akademie/aufgaben-und-ziele/staatsvertrag-pdf">http://www.bbaw.de/die-akademie/aufgaben-und-ziele/staatsvertrag-pdf</a>   |
| 88 | 비아드리나 프랑크푸르트 안 데어 오더 유럽대학교 설립을 위한 각서                   | 1992년 6월 21일 | 비아드리나 프랑크푸르트 안 데어 오더 유럽대학교 설립위원회                       |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272-276   |
| 89 | 튀링겐주 대학 분야 개혁을 위해 (주 학술 · 예술부장관 연설(발췌))                | 1992년 6월 24일 | 튀링겐주 학술 · 예술부장관, 울리히 픽켈                                |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20 f.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90 | 교사자격시험의 상호 인정에 관한<br>신연방주 간의 협정   | 1992년 6월 26일 | 구동독지역의 교육부장관 및 교육부<br>위원   | Beschluss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br>26.06.1992<br>KMK Erg.- Lfg. 75 September 1993  |
| 91 | 브린덴부르크 주정부의 주 재건을<br>위한 기본정책-교육부문   |              |                            | Landesarchiv Brandenburg, Rep. 1100 Nr. 412-413<br>in BLHA   |
| 92 | 학술과 연구  |              |                            | Landesarchiv Brandenburg, Rep. 1100 Nr. 412-413<br>in BLHA   |
| 93 | 신연방주 대학 내 인문학학과 관련<br>권고[발체]  | 1992년 7월 3일  | 학술자문회의                     | Wissenschaftsrat, Drucksache 812/92  |
| 94 | 잔괴를 낸 타협안-동독지역 대학<br>건전화가 혼돈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 1992년 8월 17일 | 작센주 학술·예술부장관 한스<br>요아힘 마이어 | Der Spiegel, 34/1992   |
| 95 | 주교육자문위원회 업무에 관한 작센주<br>문화부의 답변(상급학교 감독청에<br>대한 자문)                                  | 1993년 1월 29일 | 작센주 문화부; 주의회의원<br>안키에 루쉬   | Parlamentsdokumentation Sächsischer Landtag,<br>Drucksache 1/2710; Antwortschreiben des<br>Sächsischen Staatsministeriums für Kultus,<br>Aktenzeichen Z-0141.5/592 |
| 96 | 보도자료: 학술자문회의는 베를린-<br>포츠담지역 소재 대학들의 자연과학<br>분야 학과를 발전계획 간에 상호<br>조율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 1993년 2월 8일  | 학술자문회의                     | Wissenschaftsrat, Pressemitteilung 8/93  |
| 97 | 신연방주 그리고 통일독일에서 학술<br>과 연구 기반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br>한 연방정부의 보고-A장. 신연방주<br>대학 분야의 재구성      | 1993년 3월 24일 | 연방의회; 연방정부                 | Parlamentsdokumentation Bundestag, Drucksache<br>12/4629   |
| 98 | 신연방주 그리고 통일독일에서 학술<br>과 연구 기반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br>한 연방정부의 보고-B장. 신연방주<br>대학 외 연구 분야의 재구성 | 1993년 3월 24일 | 연방의회; 연방정부                 | Parlamentsdokumentation Bundestag, Drucksache<br>12/4629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99  | 동독에서 이수한 교직과정의 인정에 관한 협정                   | 1993년 5월 7일  |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 Beschluss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07.05.1993.<br>KMK Erg.-Lfg. 79, September 1994.  |
| 100 | 보도자료: 베를린 소재 예술대학들의 미래 발전계획에 대한 권고         | 1993년 5월 24일 | 학술자문회의                            | Wissenschaftsrat, Pressemitteilung 14/93  |
| 101 | 튀링겐주 학교법(ThürSchulG)                       | 1993년 8월 6일  | 주의회 의장 고틀프리트 뮐러 (페터 박하우스 주의회 부의장) |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Thüringen, Nr. 21-Ausgabebetag: 12, August 1993   |
| 102 | 보도자료: 베를린-이탈리스호프 내 화학연구센터의 미래가 보장되었다.      | 1993년 8월 12일 | 학술자문회의                            | Wissenschaftsrat, Pressemitteilung 18/93  |
| 103 | 교육-학술노조의 요구사항- '동서독지역에서의 교직 평등을 위하여'       | 1993년 10월    | 교원노조(GEW)                         | Gewerkschaft Erziehung und Wissenschaft, Oktober 1993, Aus dem Archivraum der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
| 104 | 중등교육 1단계의 학교 및 교육과정의 종류에 대해                | 1993년 12월 3일 | 독일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회                  | Sekretariat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ereinbarung über die Schularten und Bildungsgänge im Sekundarbereich I(Beschluss der 266. Kultusministerkonferenz vom 03.12.1993), Bonn, KMK(sg22Fu5),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08-311 |
| 105 | 학술연구지통합프로그램(WIP)의 실행에 관해-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를 중심으로 | 1994년        | 키트린 랑에                            | Beiträge zur Hochschulforschung 1994, Heft 3  |
| 106 | 교사 설문지                                     | 1994년 2월 25일 | 교육, 청소년 및 스포츠 정부 행정처, 베를린주 교육청    |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107 | ‘교사들의 입력’/신문기사   | 1994년 6월     | 해당 교사들   | Tagesspiegel vom 8. 6. 1994, Frankfurter Rundschau vom 15. 6. 1994, Frankfurter Allgemeine vom 15. 6. 1994, Süddeutsche Zeitung 15. 6. 1994.   |
| 108 | 교사급여의 동등화에 관한 신문 기사  | 1994년 6월 16일 | 독일 연방의회의 내부위원회                                 | Zeitungsartikel aus –Neue Zeitung“, –Tagesspiegel“, –Berliner Zeitung“ vom 16.06.1994  |
| 109 | 학술연구자통합프로그램 및 신연방 주 내 대학 및 연구 개혁프로그램 (WIP-HEP)의 재원 및 프로그램 적용 연구자들의 임용기간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 | 1994년 6월 23일 | 연방의회   | Plenarprotokoll Bundestag, 12. Wahlperiode, 235. Sitzung   |
| 110 | 신연방주 대학 내 연구에 대해서 (대학총장단회의의 권고)  | 1994년 7월     | 대학총장단회의  | Hochschulrektorenkonferenz(Hrsg.), Dokumente zur Hochschulreform Nr. 97/1994, Bonn,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21–323 |
| 111 | 베를린 공공부문의 소득 균등화에 관한 법(소득균등화법–EinkommAngG)   | 1994년 7월 7일  | 베를린 의회, 현직 베를린 시장 에버 하르트 디프겐(Eberhard Diepgen) |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Berlin, 50. Jahrgang, Nr. 35, 16.07.1994  |
| 112 | 교사 급여규정의 변경에 관한 법  | 1994년 8월 23일 | 독일 연방의회  | Archiv der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113 | 동독지역 대학개혁 결산(직선주 학술·예술부장관 강연) [발췌]  | 1994년 12월 7일 | 직선주 학술·예술부장관 한스 요아힘 마이어         | Sächs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Wissenschaft und Kunst(Hrsg.), o.J. Die Hochschulen in den neuen Ländern, Eine problemorientierte Bilanz, Dresden,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24-326 |
| 114 | 교사자질 검증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인의 소견서 작성 절차   | 1995년 5월 2일  | 교육청, 베를린 학교, 청소년 및 스포츠 정부부처 행정실 | Landschulamt 02.05.1995, Archiv der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
| 115 | 교사자질 심사를 위한 평가인의 소견서 작성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제안  | 1995년 5월 31일 | 지방교육청 부서 3                      | Landschulamt 31.05.1995, Archiv der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
| 116 | 동독 학술원-역사적 맥락 속에서 본 변화  | 1996년        | 한스-게오르크 볼프                      | Wolf, Hans-Georg, 1996, Organisationsschicksale im deutschen Vereinigungsprozeß. Die Entwicklung der Institute der Akademie der Wissenschaften der DDR, Frankfurt a.M., New York: Campus Verlag, S. 31-73   |
| 117 | 동독지역의 새로운 연구환경-그 특징 및 신연방주 경제에 대한 영향  | 1996년        | 베르너 메스케; 과학학회                   | Meske, Werner, 1996, "Die neue ostdeutsche Forschungslandschaft, Besonderheiten und Konsequenzen für die Wirtschaft der neuen Länder" in: Greif, Siegfried, Hubert Laitko und Heinrich Parthey(Hrsg.), Wissenschaftsforschung, Jahrbuch 1996/1997, Berlin   |
| 118 | 신연방주 내 대학 및 연구 개혁프로그램(HEP) 및 학술연구자통합프로그램(WIP) 연장에 대한 민주사회당(PDS) 및 사회민주당(SPD) 제출안 심의 | 1996년 1월 18일 | 연방의회                            | Plenarprotokoll Bundestag, 13. Wahlperiode, 80. Sitzung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119 |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결의안에 따른 증명확인-1993년 5월 6일/7일 '그라이프스발트 결의안', 제2항     | 1996년 2월 21일 | 작센안할트주 교육부, 막데부르크 상급관청, 할레(Halle) 및 데사우(Dessau)                               | Kultusministerium des Landes Sachsen-Anhalt, Archiv der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
| 120 | 학술연구자통합프로그램(WIP) 종료 이후 연구 및 수업 현황                                      | 1997년 3월 6일  |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내 민주사회당 교섭단체 소속 안드레아스 트룬슈게 박사(질문); 브란덴부르크주 학술·연구·문화부장관 슈테펜 라이헤(답변) | Parlamentsdokumentation Landtag Brandenburg, Drucksache 2/3836   |
| 121 | 독일통일의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 연례보고서-제6장, 교육, 학술, 연구 및 기술 부문                        | 1997년 9월 1일  | 연방의회; 연방정부  | Parlamentsdokumentation Bundestag, Drucksache 13/8450  |
| 122 | 독일통일 과정에서 구동독 학교의 개혁 브란덴부르크 및 기타 지역의 경험                                | 1998년        | 마리안느 비르틀러(Marianne Birtler), 브란덴부르크 교육, 청소년 및 스포츠부 장관관(1990-1992).            | Sekretariat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Hrsg.), 1998, Einheit in der Vielfalt: 50 Jahre Kultusministerkonferenz 1948-1998, Neuwied/Kriftel/Berlin. |
| 123 | 자폐증 증상 청소년 대상 특수교육 관련 베를린식 모델  | 1998년        | 1998년 하노버 개최 특수교육학 학술대회; 비르기트 프란츠; 버리티쉬르머 박사                                  | Entwicklungen-Standort-Perspektiven, Sonderpädagogischer Kongress in Hannover 1998( <a href="http://www.dr-brita-schirmer.de/pdf/artikel07.pdf">http://www.dr-brita-schirmer.de/pdf/artikel07.pdf</a> )        |
| 124 | '체치면환-구동독지역 내 주간 탁아 시설(Kindertagesstätte, Kita) 체험'/엘케 헬러(Elke Heller) |              | 그로스 클리니케(Groß-Glienicke) 소재 유치원장이자 포츠담(Potsdam)군 유치원 전문위원화자 엘케 헬러 박사          | Internationale Akademie an der FU Berlin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125 | “사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서문                                   | 2000년                             | 서독 교육과학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BMBW),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KMK), 동독 교육과학부(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MBW), 행정관청장회의 | Köhler, Gabriele/ Knauss, Georg/ Zedler, Peter(Hrsg.). 2000. Der bildungspolitische Einigungsprozess 1990. Opladen: Leske + Budrich. S. 11-53. |
| 126 | 구동독지역 교육시설 및 청소년사업에 대한 연표(1945-1991년)                          | 2003년 9월 18일 기준                   | 클라우스 디터 슈탐(Klaus Dieter Stamm)   | <a href="http://www.ddr-schulrecht.de">http://www.ddr-schulrecht.de</a> vom 28.10.2010   |
| 127 | 변혁기 중의 학교 교육: 통일 중 그리고 통일 이후 신연방주에서 교사들과 수업의 현황-동독 교육청 공무원의 보고 | 2003년 10월                         | 하이케 카악   | <a href="http://germanhistorydocs.gwi-dc.org/pdf/deu/Chapter13_doc8.pdf">http://germanhistorydocs.gwi-dc.org/pdf/deu/Chapter13_doc8.pdf</a>    |
| 128 | 학교 교수계획에서 동독 역사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 2004년                             | 올리히 아른스벨트  |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Hrs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41-42/2004   |
| 129 | 통일에 있어 성공적인 측면으로 평가되는 교육 및 연구 분야                               | 2009년 11월 10일                     | 다그마 쉬판스키   | Konrad-Adenauer-Stiftung e.V.(Hrsg.). 2009. Dreißig Thesen zur deutschen Einheit. Freiburg: Herder Verlag, 182-193                             |
| 130 | 빌프레트 자이링 전 베를린교육청장과의 인터뷰                                       | 2010년 10월 19일                     | 빌프레트 자이링 전 베를린교육청장   | Interview des Forschungsprojektes Wiedervereinigung, Institut für Koreastudien, Freie Universität Berlin                                       |
| 131 | 지빌레 폴크홀츠 전 베를린 학교·직업교육·스포츠부장관의 인터뷰                             | 2010년 11월 19일                     | 지빌레 폴크홀츠 전 베를린 학교·직업교육·스포츠부장관  | Interview des Forschungsprojektes Wiedervereinigung, Institut für Koreastudien, Freie Universität Berlin                                       |
| 132 |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학교·미디어 주정부 연구소(LISUM) 인터뷰의록                         | 2010년 11월 22일                     |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학교와 미디어 지방 연구소(LISUM)   | Interview des Forschungsprojektes Wiedervereinigung, Institut für Koreastudien, Freie Universität Berlin                                       |
| 133 | 국가공인 교육자 적응교육연수를 위한 법안   | 2010년 12월 13일-17일/2011년 1월 3일-14일 | 커뮤니케이션 및 중재 기관(Institut für Kommunikation und Mediation, IKOME)  | Institut für Kommunikation und Mediation   |

| 문서  | 제목                            | 날짜          | 담당자/기관         | 출처  |
|-----|-------------------------------|-------------|----------------|---|
| 134 | 전환기 이후 대학 외 연구기관 구조조정의 필요와 현실 | 2013년       | 올리히 판 더 하이덴 박사 | Leviathan, 41. Jg., 4/2013, S. 511-527  |
| 135 | 신연방주 내 연구환경의 확충               | 2015년 5월 5일 | 헬름홀츠-게젤사프트     | <a href="http://www.helmholtz.de/ueber_uns/die_gemeinschaft/geschichte/helmholtz_gemeinschaft_in_den_neuen_bundestaendern/">http://www.helmholtz.de/ueber_uns/die_gemeinschaft/geschichte/helmholtz_gemeinschaft_in_den_neuen_bundestaendern/</a> |



# 문서 요약

문서 요약(문서번호 1~135)

담당자 / 기관\_ 동독 인민교육부장관 한스-하인츠 에몬스

내용\_

이 문서는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직후 동독정부가 취한 교육개혁조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동독의 교육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독일교사신문에 실린 본 인민교육부 장관의 지시이다. 이 지시를 통해 각급 학교에서 실시되던 교련 과목이 즉시 폐지되었음이 공표되었다.

그에 따라 교련 교과에 포함되었던 사회주의적 조국방어 관련 수업과 방위준비의 날, 방위훈련소에 관한 수업은 1989년 11월 이후 더 이상 수행되지 못하게 되었다. 그 대신 인명 구조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1990년 6월부터는 모든 10년제 종합기술고등학교(POS)에서 9학년에 긴급구조 과목이 필수 교과 과목으로 도입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1990년 1월에 공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1989/1990학기년도부터는 12년제 확대일반고등학교(EOS) 남학생 대상의 일반적인 선행군사교육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 대신 모든 학생들이 위생교육을 받도록 한다고 하였다.

출처\_ Deutsche Lehrerzeitung, 46/1989, S. 3,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154 f.



문서  
번호 2

우리 시대의 투쟁에 있어 국가시민 교과에 의의-교육학술원 내 '사회과학수업'  
연구소 소장의 논문

1989년

담당자 / 기관\_ 교육학술원 내 '사회과학수업' 연구소 소장 호르스트 리허르트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교육학술원 소속 '사회과학수업' 연구소의 소장 호르스트 리허르트가 1989년 역사 및 국가시민교육 교과 저널에 발표한 논문이다. 그는 이 논문에서 동독에서 실시되고 있는 국가시민 교과의 현재적 역할과 미래에 대한 의의를 검토하였다.

리허르트는 그때까지 이루어진 국가시민 교과는 형식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존속될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그 이유는 그를 통해 학생들의 정치적 방향정립에 근본적인 기여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교과의 내용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여기서 피력하지 않고, 어떤 요소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검증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다.

출처\_ Gagel, Walter(Hrsg.). 1992. Politische Bildung nach der Vereinigung. Stuttgart, Düsseldorf, Berlin,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 Verlag

1989년 11월 10일

담당자 / 기관\_ 츠빅кау 교육대학(PH) 내 '국가시민교육 교과 방법론' 학부

내용

이 문서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직후인 1989년 11월 10일에 츠빅кау 교육대학의 국가시민 교과 방법론 학과의 교수들이 교육개혁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그 내용은 동독의 '교육학 저널'(1989년 말 발행), '역사 및 국가시민 교과 저널'(1990년 1월호)에 수록되었다. 그들은 학교 부문 전반에 대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국가시민 교과가 폐지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개혁된 새로운 사회에서도 성숙한 국민의 교육과 육성은 필요하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가시민 교과의 명칭을 사회 교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 과목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의 능력 배양이기 때문에 학업성취도에 대한 평가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하지만 교사와 학생 간의 또는 학생들 간의 대화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나아가 1989년 11월 당시 동독에서 진행되던 국가시민교육의 문제점들을 열거하였다. 거기에는 수업량이 과도하게 많으며 수업의 내용이 현실성이 부족하고, 수업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초과정으로 전락되어버린 점 등이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안한 개혁안을 보면 그들이 동독에 존재하던 현실사회주의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_ Gagel, Walter(Hrsg.). 1992. Politische Bildung nach der Vereinigung. Stuttgart, Düsseldorf, Berlin,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 Verlag



**문서 번호 4** 국가시민 교과 업무에 대한 교육부, 직업훈련 및 교육학 학술원 담당 차관의 권고 (7학년에서 10학년 대상)

1989년 11월 16일

**담당자 / 기관** 동독 국민교육부, 직업교육부차관 및 교육학 학술원

**내용**

이 문서는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 동독 교육부가 국가시민교육에 관한 권고사항을 독일 교사신문에 발표한 것이다. 이 권고에는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시민교육 과목은 일단 통상적인 시간계획에 따라 진행하되, 학기말이 아니라 학년말에 성적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구두로 진행되던 교과최종이수시험을 생략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7학년에서 10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가시민교육의 개혁과 관련한 권고안은 사회주의 색채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대상인 학생들을 앞으로 '사회주의의 개혁'을 담당할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독의 경제체제, 사회 및 문화적 성과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 권고안을 작성한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에도 동독과 서독이 두 개의 국가로 병존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동독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강조한다.

**출처** Gagel, Walter(Hrsg.). 1992. Politische Bildung nach der Vereinigung. Stuttgart, Düsseldorf, Berlin,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 Verlag

담당자 / 기관\_ 동독 교육·학술부

내용\_

이 문서는 베를린 장벽 붕괴 후 동독 교육부가 국가시민 교과목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견해서이다. 이 문서를 통해 한스 모드로우 수상이 이끄는 개혁정부의 교육부 또한 성숙한 국가시민 양성을 위해 국가시민 교과가 지닌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다. 국가시민교육을 통해 정치적 성향과 종교적 세계관과 무관하게 사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는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고 한다. 1989/1990학년도에는 현행 교과시간을 계속 유지하며, 이후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상세한 계획은 1990년 말까지 공표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990/1991년도의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토론할 사안은 이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하였다.

출처\_ National-Zeitung, 29.11.1989,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53



문서 번호 6 동독 내 '사회' 교과서의 새 도입에 관해-동독 교육·학술부 지시  
1990년 2월 2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교육·학술부

내용

이 문서는 통일이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한 1990년 2월 과도기 개혁정부의 교육부가 내린 지시로 국가시민교육 과목을 사회 과목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새로이 도입될 사회 과목을 담당할 교원은 사회 과목을 전공했거나 그와 관련된 연수 등을 통해 교사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로 충원된다고 밝혔다. 이들이 필요로하는 자문을 해주기 위해 해당 교육청에 그에 상응하는 전문 자격을 갖춘 교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각 교육위원회는 지역의 교육지도본부(Kabinett) 및 여러 학술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하였다. 동시에 동서독 교원 간의 교류를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조직적으로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 산하 교사교원 계속교육 중앙연구소(Das Zentralinstitut für Weiterbildung der Lehrer und Erzieher)가 사회 교과 담당 교원들의 계속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1989/1990학년도 후반기 사회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은 별도의 성적평가 없이 수업참가이수증만을 발급받도록 한다고 지시하였다.

출처 Verfügungen und Mitteilungen des Ministeriums für Bildung Nr. 2/1990, S. 14,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54 f.

담당자 / 기관\_ 동독 교육·학술부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기 개혁정부의 교육·학술부가 고등학교 11학년과 12학년의 철학수업과 관련하여 내린 권고안이다. 교육부는 이 권고안을 통해 철학수업이 상이한 세계관을 포용할 수 있도록 열린 수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나의 특정한 가르침에 편향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야 하며, 바로 이 점에서 철학 과목이 이전의 국가시민교육 과목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철학수업의 목표는 학생이 자율적인 생각을 하도록 자극을 주는 데 목표가 있으며, 그를 위해 철학수업의 교과과정은 단순히 주어진 내용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교사에 의해 자유롭게 변형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교수방법의 경우 이전과 달리 교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며,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가능하고 특히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출처\_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Rahmenpläne für den Gesellschaftskundeunterricht, Berlin, März 1990,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61-364





문서  
번호 8

사회 교과: 공교육 7학년-10학년 학생 관련 교육과정계획  
1990년 3월

담당자 / 기관\_ 동독 교육·학술부

내용

이 문서는 한스 모드로우 수상이 이끄는 개혁정부의 교육부가 발표한 교과과정계획 중에서 발췌한 것으로, 새로운 교과인 사회 과목의 수업 목표와 내용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7학년과 8학년 대상의 교과 내용이 학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변환경에 맞추어져 있다면, 9학년과 10학년의 경우는 전 지구적인 문제에 초점이 있다. 교수방법과 관련하여 수업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수업 중의 대화에 있어 학습한 방식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Rahmenpläne für den Gesellschaftskundeunterricht, Berlin, März 1990,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59-361

1989년 11월 이후 동독의 일반학교에서 시행되었거나 계획 중인 개혁조치 일람(독일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 연구논문)

1990년 5월

담당자 / 기관\_ 서독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

내용\_

이 문서는 서독의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KMK)가 다양한 출처에 기초해서 1989년 11월 이후부터 1990년 5월까지 동독에서 이루어진 일반교육 분야에서의 개혁조치를 정리한 실무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의 교육부는 방학기간, 학교형태의 개혁과 같은 구조적 혹은 조직적 문제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렸거나 또는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교과 과목의 내용 또한 논의의 대상이다. 서독의 시각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보다 종교교육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외에 외국어교육의 확대, 교련 과목의 폐지, 그리고 국가시민교육 과목이 사회 과목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종합기술고등학교의 수업에도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그 외에도 학생들이 자기 힘으로 생각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업목표가 변경되고 그를 위해 교사양성 과정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출처\_ Köhler, Gabriele; Knauss, Georg; Zedler, Peter(Hrsg.). Der bildungspolitische Einigungsprozess 1990. Verlauf und Ergebnisse der deutsch-deutschen Verhandlungen zum Bildungssystem. Leske + Budrich, Opladen 2000



**문서 번호 10** 동서독 공동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해-독일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KMK) 제248차 특별회의

1990년 5월 10일

**담당자 / 기관** 서독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

**내용**

이 문서는 서독의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KMK)의 회의기록으로 248차 회의에서 동독과 공동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가 토론된 것을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과의 공동교육위원회는 동서독이 두 국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운용될 한시적인 기구로서 동독지역에 연방주의적 구조가 정립될 때까지 교육정책을 계획하는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서독측에서 이 위원회에 참가하게 될 인원은 1990년 2월 15일에 연방정부와 각 연방주 대표들 간에 합의된 것에 따라 연방정부 대표 4명과 연방주 대표 4명이다. 공동교육위원회에는 a) 대학/학술, b) 일반학교 및 직장 내 직업교육 c) 직업교육 등의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분과위원회는 관련 단체와 조직들 및 전문가들의 적절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 회의에서 동서독의 교육부장관들은 1990년 5월 16일까지 공동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출처** Köhler, Gabriele; Knauss, Georg; Zedler, Peter(Hrsg.). Der bildungspolitische Einigungsprozess 1990. Verlauf und Ergebnisse der deutsch-deutschen Verhandlungen zum Bildungssystem. Leske + Budrich, Opladen 2000

“‘동독에는 포르노그래피 따위는 없습니다.’ 사회주의통합당의 지배 하에서 살  
만했다는 말이 동독지역 학생들이 서독의 교과서로 처음 배우는 내용이라니. 서  
독정부, 교과서를 보내주기 위해 수백만 마르크 지출.”

1990년 5월 21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교육·학술부장관 위르겐 W. 뮐렌만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5월에 발행된 슈피겔지에 실린 기사로, 당시에 서독의 연방정부가 동독 지역 학교들에 서독의 교과서를 무상 제공한 사실을 보도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1991학년도에 동독의 학교교육을 위해 서독 출판사가 제작한 교과서들이 제공되었다. 그 가치를 환산하면 약 3,000만 마르크에 상당한다. 그것은 동독에 대한 원조조치의 일환으로 공급되었다. 그중에는 역사 교과서도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서독이 제공하는 역사 교과서에 포함된 동독정권에 대한 표현이 지나치게 온건하다는 사실이다. 동독체제가 마치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인 것 인양 제시되었을 뿐, 이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비밀경찰 슈타지나 법치주의원칙의 부재와 같은 면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출처\_ Der Spiegel, 21/1990



문서  
번호 12

## 동서독 공동교육위원회의 과제 및 구조 1990년 5월 2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교육·학술부

###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의 교육학술부가 작성한 것으로 새로이 설치될 동서독 공동교육위원회의 과제와 구조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동교육위원회는 통일이 달성될 때까지 동서독이 서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맞추고, 교육 및 학술제도의 점차적인 통합을 위해 정치적 차원에서 자문하고 조정하는 기관이다. 공동교육위원회는 동서독을 대표하는 각각 8명의 위원들로 구성된다. 서독의 대표위원들은 연방과 연방주들에 의해 각각 절반씩 정한다. 동독은 주 단위의 지역단체가 설립되고 난 후에 지역의 대표위원을 참가시키도록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독 교육학술부장관과 서독 교육학술부장관 그리고 서독의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 의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공동교육위원회에는 1. 일반학교교육 2. 학교 내 및 직장 내 직업교육 3. 대학/학술 4. 계속교육 등 총 4개의 분과위원회가 설치된다. 그 외에 직업교육장려 및 교육통계 분야 전반의 전문가그룹을 구성한다. 또한 분과위원회 및 전문가그룹을 어떻게 구성할지 공고할 것이다.

출처\_ Köhler, Gabriele; Knauss, Georg; Zedler, Peter(Hrsg.). Der bildungspolitische Einigungsprozess 1990. Verlauf und Ergebnisse der deutsch-deutschen Verhandlungen zum Bildungssystem. Leske + Budrich, Opladen 2000

문서  
번호 13

외국어 수업 강화 학급 신설에 관한 지침  
1990년 5월 2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교육·학술부장관 요아힘 마이어

내용\_

이 문서는 드 메지에르 수상이 이끄는 동독 개혁정부의 교육부장관이 외국어 수업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내린 지침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1991학년도부터 각 학교는 외국어 수업을 강화한 학급을 신설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결정은 교육학자 및 학부모의 자문 하에 교장이 내린다. 물적이나 인적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교육위원회가 그런 학급의 신설을 금지할 수 있다. 학생의 능력이 그에 합당하다고 보일 경우,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학생을 외국어 수업 강화 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그에 대한 결정은 교장이 내린다. 외국어 수업은 3학년부터 영어, 러시아어, 또는 프랑스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고, 5학년부터는 제2외국어 수업을 시작한다. 학교에 인적 조건이 갖추어졌을 경우 7학년부터 학생이 제3외국어 수업도 시행할 수 있다.

출처\_ Gesetzblatt Teil I Nr. 35-Ausgabetag: 27. Juni 1990



문서  
번호 14

임시 학교감독청 설립령  
1990년 5월 30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회의;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교육·학술부장관 요아힘 마이어

내용

이 문서는 로타 드 메지에르 수상이 이끄는 과도기 개혁정부의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학교 감독청의 설립령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에서 주 단위의 새로운 지역행정기구들이 완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주법을 바탕으로 교육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때까지, 교육학술부의 감독 하에 임시로 주교육청들과 행정구역(Kreis) 교육청들로 구성된 학교감독청을 설립한다. 이 기간 중에는 교육학술부가 최상위의 학교감독청의 역할을 맡는다.

학교감독청은 교사들의 노동계약의 체결, 변경, 종료 및 이들에 대한 감독 외에, 수업업무의 조정 및 통제 그리고 교과 관련 업무 및 그와 관련해 발생하는 법적, 행정적 업무의 감독 등을 주관한다. 학교감독청장은 전문성과 풍부한 교육경험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사회적 법치국가의 질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출처\_ Gesetzblatt Teil I Nr. 32-Ausgabetag: 19. Juni 1990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회의;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교육·학술부장관 요아힘 마이어

내용

이 문서는 드 메지에르 정부가 발표한 학교 운영에 관한 명령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기구 내에서 교육자와 학부모 및 학생들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임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동운영위원회를 설립한다. 이 위원회는 정보, 청문, 자문, 그리고 권고의 권한을 지닌다. 학교 내에는 학교회의, 교사회의, 학급회의 및 학생대표단과 학부모대표단이 있어야 한다. 이 위원회의 과제는 (교과 관련해서나 학교 및 학과회의에서와 같은) 학교생활에 있어서의 다양한 문제들을 규율하고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지역단체의 차원에서는 지자체 학교회의 및 주 단위의 학교회의 및 이에 상응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특히 주 단위 학교회의는 주교육청에 대해 학교부문의 발전과 관련한 기본적인 문제들에 자문을 해주고, 법적 혹은 행정적 규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경험을 공유하며,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 등을 통해 학교제도가 계획적으로 발전하도록 기여한다. 이 명령은 나아가 학교공동위원회의 정확한 구성 및 그 구성원의 선출 그리고 위원회 내 활동을 위한 구성원의 자격조건 등을 규정한다.

출처\_ Gesetzblatt Teil I Nr. 32-Ausgabetag: 19. Juni 1990



문서  
번호 16동서독 공동교육위원회 1차 회의 회의록  
1990년 6월 7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교육과학부,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동독 교육과학부

**내용**

이 문서는 1990년 5월 16일 본에서 열린 동서독 공동교육위원회의 1차 회의의 회의록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서독정부가 교육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구성하기로 합의한 공동교육위원회의 1차 회의에서 동독의 교육부장관 한스 요아힘 마이어(Hans Joachim Meyer) 교수가 이미 도입되었거나 또는 계획되어 있는 동독의 교육개혁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서독의 위르겐 W. 뮐레만(Jürgen W. Möllemann) 교육부장관과 에바 뢰크코프(Eva Rühmkorf) 주교육문화장관회의 대표는 서독이 동독의 개혁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

- 1990년 추가예산과 관련하여 협력 및 교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 실행
- 3,000만 마르크(DM) 상당의 교과서 지원
- 계속교육을 위한 동독과 서독 양국 간의 콜로키움

동서독 공동교육위원회의 구조와 임무에 대하여 합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위원회는 동독과 서독 양국 각각 8명의 대표로 구성된다. 서독측에서는 연방과 주에서 각각 4명을 선별한다. 위원회 산하에 일반학교교육, 학교 및 기업 직업교육, 대학/과학 및 계속교육 하부위원회 등 4개의 하부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나아가 양성교육 지원, 교육통계, 도서관 분야에 대한 전문가 그룹을 조직한다.

공동교육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교육제도 그리고 도입되었거나 계획된 개혁에 대한 상호 정보 전달
- 사회적 관점을 비롯한 교육정책 및 교육계획상의 전망 및 과제 논의
- 유럽공동체(Europäische Gemeinschaft, EG) 기본 여건 그리고 유럽 및 국제 협력을 고려한 교육제도의 단계별 통합을 위한 지침 마련
- 이동성, 양성교육 지원, 학업 및 학력 인정, 교육기관 및 양성교육 과정 입학에 대한 논의
- 동독 교육제도 개혁 시 특정 지원조치 논의
- 협력 및 교류 프로그램 논의

**출처** Köhler, Gabriele/Knauss, Georg/Zedler, Peter(Hrsg.). 2000. Der bildungspolitische Einigungsprozeß 1990. Opladen: Leske + Budrich. S. 57-78.

문서  
번호 17

학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  
1990년 6월 14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교육·학술부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과도기 드 메지에르 정부가 학교회의의 구성과 관련하여 내린 지침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지침은 학교 내에 구성된 다양한 공동결정위원회 및 교장단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학교평의회에 참가한 각 위원의 구성에 관한 실질적인 규정이다. 나아가 학교의 규모에 따라 학교회의에 참가하는 교사, 학생 및 학부모 대표단들의 수가 어떠한 비율로 규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그리고 대표자 선출과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출처\_ Verfügung und Mitteilung des 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1990, Nr. 6 v. 16. Juli 1990,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236 f.



문서 번호 18 학교 지도 및 운영에 있어 교감의 업무영역  
1990년 6월 14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교육·학술부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교육부가 학교 교장단의 업무영역에 관해 설명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장의 업무영역을 새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동시에 교육부문에서 신속하게 변혁을 진행하기 위한 조건이다. 교장단이 담당하게 될 새로운 과제는 무엇보다 교과과정 계획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교육적 자유영역을 확보하고 수업시간계획에 필요한 변화를 주는 것이다. 나아가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를 위한 자문도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교감들은 특히 학교조직과 행정기술적 측면 그리고 자문업무를 책임진다.

출처\_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Hrsg.), Texte zur Deutschlandpolitik, Reihe III, Band 8a-1990, Bonn o.J.(1990), S. 167-195,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165 f.

담당자 / 기관\_ 독일연방공화국-독일민주주의공화국 간 공동교육위원회

내용

이 문서는 동서독 공동교육위원회의 2차 회의 기록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스 요아힘 마이어 동독 교육부장관이 동독의 교육부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1990년 하반기에 4억 3,700만 도이치마르크 정도 재원이 부족하다. 이러한 재정적자가 매워지지 않는다면, 대학연구에 심대한 차질이 올 수 있을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 전체에 걸쳐 광범위한 해고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어서 마이어 장관은 그때까지 동독에 이미 도입되었거나 도입 계획 중인 교육 관련 개혁조치에 대해 보고하였다. 일반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와 관련된 모든 규정들에는 앞으로 도입될 연방주의 구조가 반영되었다. 직업교육의 경우 1990년 9월 1일부로 서독의 직업교육법 및 수공업령이 동독에 도입되도록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업학교형태의 도입이 준비되고 있다. 대학교육의 경우 종합대학교 및 단과대학들이 1990/1991년 겨울학기부터 입학정원을 확충하도록 지시받았으며 그 외 대학제도에 관한 다양한 일반법령들이 준비되고 있다.

서독의 교육부장관 뮐레만은 서독정부가 동독대학의 도서관들을 위해 1,500만 도이치마르크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다. 공동교육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및 전문가그룹의 대표들은 그때까지 이루어진 업무를 보고하고, 제안 및 요구 사항을 발표하였다.

특히 긴급한 문제로 지적된 것은, 직업훈련계약 없이 교육 중인 (약 9,000명에 달하는) 도제, 즉 직업교육생의 존재와 만료된 직업훈련계약의 해지 사례(약 3000여 건), 그리고 대학 신입생 수가 전년도의 25,853명에서 31,857명으로 증가한 것 등이었다. 대학교 신입생 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6,469명이 대학입학 허가를 받지 못했다.

출처 Köhler, Gabriele; Knauss, Georg; Zedler, Peter(Hrsg.). Der bildungspolitische Einigungsprozess 1990. Verlauf und Ergebnisse der deutsch-deutschen Verhandlungen zum Bildungssystem. Leske + Budrich, Opladen 2000, S. 78-86



문서  
번호 20

아동·청소년복지법 개정안(아동·청소년복지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 KJHG))

1990년 6월 26일

**담당자 / 기관** 사회복지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복지법(KJHG)

**내용**

이 문서는 1990년 6월 26일 서독에서 제정된 사회복지법전 제8권(Sozialgesetzbuch Achesbuch) 아동·청소년복지법(SGB VIII; KJHG)이다.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아동·청소년복지법에 대한 법적 기반이 되었다(연방법률관보(Bundesgesetzblatt, BGBl) p.1,163).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법전 제8권(SGB VIII)은 아동·청소년복지법 제1조이다(KJHG; 본제: ‘아동·청소년복지법 개정을 위한 법’). 아동·청소년복지법은 아동·청소년복지에 해당하는 서독 연방법 규에 대한 기본법이다.

1990년 서독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이 법률은 1991년 1월 1일부터 구연방주에서 발효되었으며, 1922년 처음 제정되어 그 당시까지 유효했던 청소년복지법(JWG; 1963년 개정안)을 대체하는 것이다.

신연방주에서는 1990년 10월 3일부터 발효되었다.

사회복지법전 제8권은 아동·청소년(아동, 청소년, 젊은 성인) 및 그의 가족(특히 부모, 친권자, 양육권자)에 대한 연방차원의 복지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전 제8권은 1991년 이후 종종 수정, 변경, 보완되었다.

연방법령에 따라 유치원 등록에 대한 법적 권리를 규정하는 임신부 및 가족법 개편과 관련하여 1992년 대폭 수정되었다. 사회복지법전 제8권은 2004년 12월 27일 제정된 보육시설확충법(Tagesbetreuungsausbaugesetz, TAG)(아동보육정책(Kindertagesbetreuung) 참조), 2005년 9월 8일 제정된 아동·청소년복지확장법(Kinder- und Jugendhilfeentwicklungsgesetz, KICK), 2008년 12월 10일 제정된 아동지원법(Kinderförderungsgesetz, KiföG)으로 인하여 대폭 변경되었다.

**출처**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담당자 / 기관\_ 학술자문회의

내용\_

이 문서는 대학교육과 학술연구의 발전과 관련해 연방정부와 연방주들을 위한 최고자문기구인 서독의 학술자문회의(Wissenschaftsrat)가 작성한 학술, 연구 분야의 통일과 관련된 권고안이다. 이 권고안은 동서독의 학자들로 구성된 실무그룹이 작성해서 학술자문회의에 제출하였고, 자문회의의 이름으로 발표된 것이다. 이 권고안의 주된 목적은 대학의 역할이 교육에만 집중되어 있고 연구활동은 주로 대학 외의 연구소에서 이루어지던 동독의 체제를 점진적으로 서독의 구조와 유사하게 변경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대학이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는 기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 권고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에서 기존의 우수한 연구역량은 보전하며, 뒤쳐진 분야의 발전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설비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1995년도까지 소요될 비용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전문 도서 공급 비용 2억 9,000만 마르크, 새 컴퓨터 구입 비용 4억 5,600만 마르크, 실험실 설비 및 장비 10억 마르크, 대학교 건물 현대화 및 확충 7억 마르크.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주의 기본원칙에 따라 교육과 관련된 투자는 연방정부와 연방주가 비용을 절반씩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 구축될 신연방주들이 초기에 이 금액의 50 퍼센트를 부담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독에서는 한 해 출생인구의 12-13 퍼센트의 학생이 대학에 입학해 왔다. 반면에 서독에서는 1989년에 해당 학년도 출생인구의 23%가 대학에 입학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서도 대학교육 기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동독지역 대학들이 국제교류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 5년 동안 약 2억 5,000만 마르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신진학자 및 연구프로젝트 그룹을 육성하기 위해 1995년도까지 약 2억 5,000만 마르크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다.

동독에 많이 확산되어 있는 통신대학교육을 가능하면 앞으로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를 위해 서독 하젠시에 있는 방송통신대학교가 현재 동독에서 제공되고 있는 방송통신 과목의 수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전환교육 혹은 직업자격 능력조치에 대한 높은 수요도 이 통신대학교육을 통해 일부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서독에 현재 보장되는 다양한 교육지원 기회들이 가능한 한 빨리 동독 내의 학자들에게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일연구재단(DFG)은 1991년도와 1995년도 사이에 약 9억 마르크를 지출해야 할 것이다. 동독지역 학문이 국제적 변화에 함께 발맞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일국제학술교류진흥원(DAAD) 및 유럽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의 재원은 점진적으로 25 퍼센트씩 증가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열거된 모든 조치들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약 65억 마르크가 소요될 것이다.

출처\_ Wissenschaftsrat, Drucksache 9847/90

문서  
번호 22

대학 내 인력계획 관련 권고안  
1990년 7월 6일

담당자 / 기관\_ 학술자문회의

내용\_

이 문서는 서독의 학술자문회의가 통일되었을 때 의학대학을 제외한 다른 동독지역의 대학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관련해서 제출한 권고 사항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입학정원에 대한 법령(KapVo)에서 정원을 산출하는 근거는 교수 한 명이 담당할 수 있는 최대 대학생 수이다. 대학 교원 임용과 대학생의 수의 적절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교수, 연구 및 신진 학문세대의 양성이라는 각각의 요소들에 필요한 인적 수요를 독립적으로 평가한 후에 전체 수요에 따라 산정된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개별 학과들이 일정한 정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인력 수요 산정방식의 근거는 이 권고안에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이 권고안은 여기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그대로 실천에 옮겨졌을 때에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출처\_ Wissenschaftsrat, Drucksache 9866/90





문서  
번호 23

서독학교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동독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동독측의 입장  
1990년 7월 9일

담당자 / 기관\_ 공동교육위원회, ‘일반학교교육’ 산하위원회(동독측)

**내용\_**

이 문서는 동서독 공동교육위원회 산하 ‘일반학교교육’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동독측 대표가 발표한 동독측의 입장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의 개혁정부는 1964년 10월 28일(혹은 1971년 10월 14일)에 함부르크 협의라는 명칭으로 선언된 이후 서독에서 일반적인 원칙으로 간주되는 교육연방주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무교육의 시작시기 및 의무교육기간 그리고 학교형태 및 그 명칭 등을 서독제도에 맞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과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분과위원회는 동독지역 학교가 종교교육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동독에도 서독의 헌법인 기본법 141조와 유사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앞으로 동독지역에 주 단위 행정기구가 성립되면 교사양성 역시 서독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본규정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인했다.

**출처\_** Köhler, Gabriele; Knauss, Georg; Zedler, Peter(Hrsg.). Der bildungspolitische Einigungsprozess 1990. Verlauf und Ergebnisse der deutsch-deutschen Verhandlungen zum Bildungssystem. Leske + Budrich, Opladen 2000

문서  
번호 24

동독에서 더 이상 신입교수를 임용하지 말라(연방 교육·학술부 보도자료)  
1990년 8월 2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 교육·학술부장관 위르겐 뮐레만

내용\_

이 문서는 서독 연방정부의 뮐레만 교육부장관이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성명서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독의 교육부장관은 최근 발표한 240명의 교수의 신규 임용계획은 취소해야만 한다. 이러한 계획이 앞으로 추진될 대학 구조 변화에 제약을 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과거경력으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종신계약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동독 대학교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새로운 교수의 임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임시 계약직 교수 또는 시간강사 계약을 고려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출처\_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Presseinformation Nr. 120/1990 vom 21. August 1990,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199



문서  
번호 25

통일조약-제37조 교육  
1990년 8월 31일

담당자 / 기관\_ 서독정부와 동독정부

내용\_

통일조약 제37조는 기본적으로 동독에서 취득한 대학 학위, 시험성적 및 자격증을 서독의 자격증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다.

이 규정을 근거로 주교육문화장관회의에서 교사임용시험과 대학교 입학자격을 위한 경과 규정 및 학교제도의 새로운 구성을 위한 규정을 제정해야만 한다.

출처\_ BGBI, II, S. 885

담당자 / 기관\_ 동독 교육·학술부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교육부에 설치된 정치교육프로젝트 그룹이 통일 직전에 작성, 제출한 권고안이다. 이 프로젝트 그룹에는 동독과 서독의 전문가들이 참가하였다. 이 권고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의 정치교육, 즉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은 민주주의와 정치를 배우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다른 교과목을 통해서 다룰 수 없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학년에서 12학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주당 2시간의 수업이 배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교과과정계획은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교육학자, 담당교사로 구성된 프로젝트 그룹을 구성해서 각 연방주의 기본정책에 부합하는 교과과정을 개발하도록 한다. 동독지역의 교사들이 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추가교육이 실시되어야만 한다. 앞으로는 사회과 교사의 교육은 사회과학, 전문적인 교수방법론 및 교육학을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대학학위과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복합적인 교직과정이 현재 동독의 대학에는 존재하지 않고, 가까운 장래에 신연방주의 대학들이 그것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독지역 대학들과의 긴밀하고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권한다.

출처\_ Gagel, Walter(Hrsg.). 1992. Politische Bildung nach der Vereinigung. Stuttgart, Düsseldorf, Berlin, Leipzig: Ernst Klett Schulbuch Verlag



문서  
번호 27

교원양성에 관한 명령 (동독)  
1990년 9월 1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내각회의;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교육·학술부장관 요아힘 마이어

내용

이 문서는 통일 직전에 동독 교육부장관이 교원양성과 교육공무원자격시험의 제반조건에 관련해 내린 명령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에서의 교원양성제도는 서독제도에 상응하게 바뀌었다. 동독에서는 초등학교 교사는 대학에서 수학할 필요가 없었다.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교육과정이 별도로 존재했다. 1990년까지 이 과정을 수료할 사람들은 서독의 교원들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대학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보충 학위과정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교원양성기관에서 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이나 전문대학과정을 이수하고 재직 중인 교사들도 위에 상응하는 대학과정 이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직장경력은 교직준비과정의 이수로서 산정될 수 있다.

1991년에 학위를 마칠 예정인 대학생의 경우 통일 이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학위를 이수한 후에는 1991년 9월 이후 1년과정의 교직준비과정을 이수할 자격을 얻는다.

출처\_ Gesetzblatt Teil I Nr. 63-Ausgabetag: 26. September 1990

문서  
번호 28

## 대학교에 대한 법령 (임시 대학교령)

1990년 9월 1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내각회의;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교육·학술부장관 요아힘 마이어

###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의 교육부가 통일 직전에 내린 명령으로 대학교에 관한 규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동독지역의 다양한 대학기관에서 학위과정을 밟고 있는 연구장학생, 마이스터 학생 및 교수후보생들은 정해진 지원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전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박사학위논문 심사는 현행 규정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 동독에서 취득한 박사학위는 통일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며, 본인이 신청할 경우 통일된 독일연방공화국의 학위로 변경될 수 있다.

이 명령을 통해 장학금의 지급 및 대학교원임용령에 대한 시행규정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규정들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출처\_ Gesetzblatt Teil I Nr. 63-Ausgabetag 26. September 1990



문서  
번호 29

학교 및 직업학교 관련 원칙과 규정에 대한 명령-임시 학교령  
1990년 9월 18일

담당자 / 기관\_ 동독내각회의; 로타 드 메지에르 총리; 교육·학술부장관 요아힘 마이어

내용

이 문서는 동독정부가 통일 직전에 발표한 학교령이다. 그 목적은 동독지역의 학교제도를 서독의 학교체계와 부합하게 개혁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권리 및 의무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지닌 과제와 목표가 새로이 규정되었다. 공립학교의 운영주체는 기초자치단체(Kommune)가 된다. 학교제도의 계속적 발전을 위해 기존의 학교형태를 기반으로 다양한 실험(Schulversuch)을 도모하거나, 혹은 특별한 실험학교(Versuchsschule)도 설립할 수 있다. 나아가 청소년지원센터(Jugendhilfe) 및 특수학교, 자문단체 및 보건의료소 등의 기관들과 학교 간의 협력방식도 새로이 규정된다.

출처\_ Gesetzblatt Teil I Nr. 63-Ausgabetag: 26. September 1990

문서  
번호 30

통일조약 38조-학술 및 연구  
1990년 9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독일연방공화국;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내용\_

이 문서는 통일조약 중에서 학술 및 연구부문에 관한 문제를 규정한 내용이 포함된 38조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술 및 연구활동은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토대이다.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의 모든 공립 교육 기관들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새롭게 평가되어야 한다. 동독 학술원은 1990년 10월 3일부로 산하 연구소들과 분리된다. 동독 학술원의 미래는 신연방주들의 결정에 따른다. 동독 학술원 산하 연구소들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임시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연구원들의 고용관계는 일단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1990년 10월 3일부로 동독에서 연구·개발 부문의 최상위 자문기관이었던 연구자문위원회는 해체된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I Nr. 35-Tag der Ausgabe: 28. September 1990





문서  
번호 31

통일조약 부록 I-14장 대학교 및 직업교육장려  
1990년 9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독일연방공화국;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내용

이 문서는 통일조약의 부록 I 14장 중에서 대학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조약에 따라 교육부 소관 업무 분야에 해당하는 법들이 변경된다. 연방정부와 연방주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대학 계획위원회의 경우 대학건설진흥법에 따라 대학교의 설립 및 확충의 기본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4분의 3 이상의 찬성 대신, 단순 다수결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1993년도 말까지 대학건설진흥법의 부록에 언급된 대학교의 목록에 동독지역의 대학교들도 추가되어야 한다. 1994년도 말까지는 동독지역의 대학교들을 위한 기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기본법에는 동독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입학심사과정도 전국입학조정센터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동독 병역의무자의 병역수행 및 병역 중 성과를 반영하는 것도 대학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동독지역에 설립된 연방주들은 1990년 10월 3일 이후 3년 이내에 대학기본법 규정에 상응하는 연방주법을 제정해야만 한다. 연방직업교육진흥법에 따라 직업학교, 야간 하우트슐레, 직업 단기과정, 김나지움 및 야간 실업학교의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월간 직업교육 지원금의 액수를 동·서지역 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책정한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I, 1990, Nr. 35, S. 1130-1132, Tag der Ausgabe: 28.09.1990

담당자 / 기관\_ 독일연방공화국-독일민주주의공화국 간 공동교육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동서독 공동교육위원회의 3차 회의 회의록이다. 3차 회의가 이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공동교육위원회의 업무내용이 최종적으로 정리, 보고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서독 공동교육위원회의 업무로 인해 통일 이후 신연방주들의 교육행정업무에 제약 받을 수 있는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공동교육위원회는 특히 통일조약의 협상과정에서 8장에 들어갈 교육 관련 규정 및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했다. 나아가 산하 분과위원회와 전문가그룹이 각자 업무에 관해 보고했다. ‘학교교육’ 분과위원회는 통일 독일에서 학교교육제도를 유사하게 변경하는 작업에 역점을 두었다고 보고했다. ‘학교 및 직업교육’ 분과위원회는 2년 간의 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 기존의 직업훈련 자리를 보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위해 서독의 연방정부가 3억 1,200만 마르크를 제공하였다.

‘대학/학술’ 분과위원회는 학술 및 연구 분야에서 통일된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대학교 설비확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서독 연방정부가 이 분야에 13억 마르크를 지원하였다. 그 외에 교수 및 강사의 재임용 및 동독의 대학교 임원들의 고용 조치, 그리고 학위 및 자격시험, 과정수료의 인정문제가 이 분과위원회의 중요한 업무였다.

1990년 10월 3일 이후 동독 교육부는 해체되고 이 부처의 업무가 신설될 신연방주의 교육부에 인수인계될 때까지의 경과규정이 도입될 것이라고 예고되었다.

출처\_ Köhler, Gabriele; Knauss, Georg; Zedler, Peter(Hrsg.). Der bildungspolitische Einigungsprozess 1990. Verlauf und Ergebnisse der deutsch-deutschen Verhandlungen zum Bildungssystem. Leske + Budrich, Opladen 2000



문서  
번호 33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겐주 및 동베를린 지역의 일반교육학교 재정비를 위한 기본원칙 및 권고

1990년 9월 26일

담당자 / 기관\_ 공동교육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동서독 공동교육위원회가 구동독지역에 신설될 신연방주의 학교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제안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의 학교제도는 8학년 과정을 이수하면 학교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 통일된 이후 신연방주에서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 신연방주에서는 모든 학생이 최소한 9년, 최대 10년 간의 의무교육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다시 말해 모든 학생들이 최소한 중등교육기관인 하웁트슐레를 이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등교육1단계의 수학능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독정부가 시작한 학교 형태의 다원화 작업은 통일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며, 그에 따라 상이한 졸업장이 주어진다.

동독의 과도기 개혁정부가 동독의 학교, 대학교 그리고 전문대학 입학자격 취득조건을 서독의 체계에 상응하도록 개정하여 동서독의 대학입학예정자들이 동등한 자격을 갖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은 특히 환영할만한 것이다. 그러나 교사양성의 경우 아직 2단계로 이루어진 서독의 모델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가 남아 있다. 이 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_** Sekretariat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ok. scl01, Typoskript,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225-228

담당자 / 기관\_ 베를린 국회의사당, 베를린의 구의회 회의

내용\_

이 법에 따라 베를린 주법이 통일되면서 (구서)베를린 주법이 일부 소수지역을 제외하고 구 동베를린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구동베를린에 적용될 구서베를린의 학교, 직업교육 및 스포츠에 관한 주법 및 규정은 본 법 부록 II IX장에 나열되어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교사양성법, 전제조건 포함
- 베를린 학교법, 전제조건 포함
- 베를린주의 스포츠 장려법
- 전공과 관련된 전문대학 입학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규정
- 국립 베를린 공과대학의 졸업시험에 관한 규정
- 야간일반학교, 전문고등학교, 일반대학교 입학자격 취득을 위한 시민대학 및 전문대학의 선택과정에 관한 규정

다음의 동독 법규범은 학교제도에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 통일 사회주의 교육법
- 통일 사회주의 교육법에 대한 집행규정(학교제도)
- 통일 사회주의 교육법에 대한 집행규정(교육의무규정)

출처\_ Archiv der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문서  
번호 35 독일통일 및 교육연방주의에 대한 독일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의 성명서  
1990년 10월 4일

담당자 / 기관\_ 독일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

내용

이 문서는 통일 직후 각 주의 교육문화장관의 협의체인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연방주에서 교육문화를 담당하는 교육부장관들은 서독 연방주들의 교육부장관들과 함께 전 독일에 동일한 교육·학술·문화를 실현하는 데 동참하게 되었다. 교육과 문화는 독일이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되었던 시기에도 이미 동독과 서독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었다. 이제부터는 교육과 문화를 통해 두 개의 국가를 하나로 만드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 동서독 전역에 동등한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교육과 문화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중부 및 동유럽의 이웃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독일통일이 유럽통합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Pressemitteilung der KMK vom 8. Oktober 1990,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261 f.

담당자 / 기관\_ 각 연방주의 교육부장관, 교육부위원

내용\_

이 문서는 통일 직후 주교육문화장관협의회가 동독에서 취득한 교사자격의 인정에 관한 통일된 처리절차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 합의한 임시 기본 원칙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동독에 소재한 대학교에서 2개 또는 3개 교직과정 과목을 이수한 교사의 교사자격의 경우, 서독과 서베를린에서 이 교사가 이수한 과목이 해당 교직을 위해 허용될 경우, 1차 국가고시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 종합기술고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실업학교 교직, 직업학교 교직 그리고 중등교육 1단계 교직을 위한 수습근무로 편입된다. 특정한 학문적 소양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김나지움 및 중등교육 2단계 교직을 위한 수습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
- 수습기간은 2차 국가고시에 응시하면서 종료된다. 이 기간은 수업경험을 고려하여 단축될 수 있다.
- 구서독지역 및 구서베를린에서 취득한 교사자격증은 구동독지역에서 인정된다.

출처\_ Beschluss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05.10.1990. Aus dem Archivraum der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문서 번호 37 교사자격시험과 교사자격의 상호 인정  
1990년 10월 5일 기준

담당자 / 기관\_ 각 연방주의 교육부장관, 교육부위원

내용\_

이 문서는 통일 직후 각 연방주의 교육부 대표들이 교사자격의 상호인정과 교사자격시험에 관해 합의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교직 및 교사자격을 위한 1차 국가고시는 부록 1에 나와 있는 소위 학기 수에 따라 기본적으로 상호 인정된다.
- 예외적으로 추가 성과를 달성했을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가능하다. 즉, 해당 연방주의 요구조건과 비교했을 때 부록 2에 나와 있는 요구되는 시험 수준에 못 미치는 학업 및 시험 영역을 보충해야 한다.
- 예외적 경우는 다음에 해당한다.
  - a) 교직의 불일치(학교형태/종류 및 학급단계)
  - b) 최소 2개 교직과정 과목 미이수
  - c) 학교형태 또는 학급단계에서 해당 과목의 부재
  - d) 1차 교사자격증시험의 인정을 위한 의무사항 불이행
- 협정은 1990년 10월 15일 발효된다.

출처\_ Beschluss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5. 10. 1990

문서  
번호 38

동독에서 취득한 교원자격 인정과 관련한 임시 기본원칙(독일 주정부 교육문화 장관협의체 의결)

1990년 10월 5일

담당자 / 기관\_ 독일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

내용\_

이 문서는 통일 직후 독일의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에서 합의된 통일조약 37조 2항에 명시된 새로운 명령이 발효될 때까지의 경과규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에서 2개 내지 3개 교직이수 과목을 전공하여 취득한 교원자격은 1차 국가교원자격 시험 합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동독 종합기술고등학교(POS)의 디플롬을 취득하여 교원자격을 획득한 교사들은 중등교육과정의 교사직을 준비하기 위한 업무과정에 참가할 수 있다. 교직 경험을 참고해서 이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다. 2차 국가교원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이 과정이 종료될 수 있다.

신연방주에서 취득한 교원자격은 1990년 10월 5일에 독일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에서 결의된 ‘교원자격시험 및 교원자격의 상호인정’에 대한 합의에 따라 다른 연방주들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

출처\_ Sammlung der Beschlüsse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Loseblattsammlung), Dannstadt/Neuwied, Stand 1994, Nr. 716,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255 f.





**문서 번호 39** 시민교육/교육·문화/교육 및 청소년을 위한 베를린 시의회 회의록  
 1990년 10월 10일

**담당자 / 기관** 시민교육/교육, 문화/교육 및 청소년을 위한 참사사회 의회에 관한 프로토콜, 쥐빌레 폴크홀츠(Sybille Volkholz) 위원, 학교, 직업교육 및 스포츠 행정처

**내용**

이 문서는 통일 직후 열린 베를린 시의회의 1차 공동회의 회의록이다. 이 회의에는 동서베를린의 23개 행정구역의 대표들이 모두 참석해서 통일된 베를린의 교육체제와 교육행정의 통합에 관해 논의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통합된 학교법이 1991년 8월 1일부터 발효되고, 베를린 전역에 적용되므로, 구동베를린 학교제도의 구조적 전환과정이 최대한 빨리 종결되어야 한다.
- 구동독지역에서 김나지움과 게잠트슐레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반면 직업학교와 실업학교에 대한 수요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동독에서 구서독 학교로의 무방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구동독지역에 최대한 빨리 김나지움과 게잠트슐레의 이중기관을 설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일반 종합기술고등학교의 중등교육 1단계를 김나지움 또는 게잠트슐레로 전환하거나, 상급고등학교를 김나지움으로 그리고 종합기술고등학교를 게잠트슐레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 제안은 구서베를린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학생의 약 30%가 김나지움의 상급과정에 진학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직업학교 또는 실업학교를 설립하는 것 또한 허용된다.
- 초등교육의 경우 주거지에서 가까운 광범위한 기초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 학교제도의 빠른 전환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늦어도 1991년 3월/4월까지 중앙관리본부 및 각 행정구역의 대표들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에서 수립한 계획서를 각 행정구역에 송부할 예정이다. 어떤 학교 형태를 어디에 설립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은 최종적으로 관할구역에서 내린다.
- 관할구역의 결정이 높은 지지도를 얻기 위해 동료, 교사 및 부모 간의 상세하고 광범위한 토론이 필요하다.
- 구동독지역의 교사 및 학교감독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계속교육 및 향상교육은 늦어도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사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감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구서독 교사들이 구동독 교사들에게 수업관찰을 위한 학급방문 또는 워크숍과 같은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출처** Archiv der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문서  
번호 40

베를린의 통합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  
1990년 10월 12일

담당자 / 기관\_ 학교, 직업교육 및 스포츠 위원회, 교육행정관리, 모든 공립 및 사립학교, 각 관할지역의 학교감독 교육공무원, 관할지역의 구청, 민중교육 부서

내용

이 문서는 베를린 시정부의 교육부가 통일 직후에 발행한 회람으로 통일된 베를린의 학교 및 교육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통일조약이 발효되면서 23개의 관할지역을 포함한 통일된 베를린이 탄생되었다.
- 구서베를린의 시의회와 구동베를린의 시대표 회의는 베를린 주법의 유효영역에 관한 법을 동시에 통과시켰다.
- 이에 따라 (구서베를린) 학교법은 구동베를린지역에서 1991년 8월 1일부로 적용되게 된다. 그때까지는 동베를린 시대표회의가 9월에 의결한 학교법이 적용된다.
- 계속교육과정(국가고시 포함)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출처\_ Rundschreiben V Nr. 102/1990. Archiv der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문서  
번호 41

신연방주 및 베를린의 대학구조위원회 설립 및 대학교수임용정책 수립에 대한 권고  
1990년 11월 16일

담당자 / 기관\_ 학술자문회의

내용

이 문서는 대학과 학문연구 분야의 최고위 자문기구인 학술자문회의가 통일 직후 신연방주에서의 대학구조 개혁과 신규교수임용정책을 새로이 수립하기를 요구하는 권고안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연방주 대학교들의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조적 변화 및 인적 쇄신이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 특히 대학교수의 임용과 같은 여타 대학정책적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 신연방주들이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학구조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학구조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그리고 특히 당면한 시기에 특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교수 임용절차에 대한 고려에 대한 전반적 내용은 이 문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여기서 요구되는 사안을 시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신연방주들이 그에 상응하는 연방주대학령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출처 Wissenschaftsrat, Drucksache [Nr. fehlt in Dok.] ([http://www.wissenschaftsrat.de/download/archiv/Neue\\_Laender\\_Berufung.pdf](http://www.wissenschaftsrat.de/download/archiv/Neue_Laender_Berufung.pdf))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의회의 요구에 따라 연방정부가 대학정책의 목표에 관해 제출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의 5장에서는 동서독의 통일이 대학정책에 준 영향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신연방지역에는 25개 지역에 54개의 대학교들이 270개 이상의 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여기에는 종합대학교, 공과대학교 및 단지 1개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개설한 특수대학교가 포함된다. 전문대학교(Fachhochschule)는 여기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990/1991년도의 경우 전문대학교 실험 프로젝트 3개가 수행되었다. 대부분의 종합대학교들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다. 앞으로 신연방지역 출신 고등학교 졸업자 및 대학생들이 더 많이 배출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신연방지역의 대학교에 개설된 학과 전공의 폭은 비교적 협소한 편이다. 도서관에 비치된 서적 중에 서독이나 서구에서 발행된 출판물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연구를 위한 설비도 낙후되었다. 컴퓨터나 현대식 통신 수단은 아예 없거나 매우 낙후되었다. 학교 건물들도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로 인해 다른 장소로 옮겨져야 했던 연구 활동도 앞으로는 다시 재개되어야만 한다. 또한 서유럽 및 미국 대학교들과의 교류도 강화되어야 한다. 대학생들이 일부러 서독지역으로 이주할 필요가 없도록, 특히 법학, 경제, 사회과학 및 컴퓨터과학 전공은 완전히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적합한 서독지역 인력을 수급할 필요가 있다. 신연방지역의 신진 학자들을 위한 자격능력 프로그램이 별도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유럽 및 소련 전문 분야는 유지되어야 한다. 나아가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조건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자세한 통계를 부록으로 제시하고 있다.

출처\_ Parlamentsdokumentation Bundestag, Drucksache 11/8506



**문서 번호 43** 베를린시 학교장연맹(Interessenverband Berliner Schulleitungen)의 1990년 연례 보고서  
 1990년 12월 3일

**담당자 / 기관** 베를린시 학교장연맹(Interessenverband Berliner Schulleitungen)

**내용**

이 문서는 통일 직후 베를린시 학교장연맹이 발행한 연례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베를린의 학교장연맹은 동독 학교단체 대표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왔다. 동독의 학교 간부들과의 대화는 동독의 학교장들을 대상으로한 계속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를 통해 통일 이후 베를린학교장연맹의 관할지역을 동베를린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나아가 동독지역 학교장들의 추가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독일 학교장연맹 협의체(ASD)의 계획에 대해 보고되었다.

**출처** <http://www.ibs-verband.de/files/pdf-dateien/J1990.pdf>(Stand 10.10.2015)

문서  
번호 44

브란덴부르크주 내 정치시민교육. 중등교육 1단계 '사회 과목'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년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청소년·교육·스포츠부

내용\_

이 문서는 중등교육 2단계 대상 '사회 교과' 영역 교육과정 임시계획에서 발췌한 것으로 새로이 도입될 교과 과목의 과제와 목표가 요약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종전 국가시민 교과와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주어진 '진리'에 맞추어 교육하는 것 대신에 정치적 내용을 비판적이지자 성찰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정치시민교육은 자라는 청소년들이 복합적인 사회적 현실 속에서 올바른 방향 감각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사회를 적극적으로 변모시키는 데 참여하도록 장려받아야 하며 정치적 극단주의에 몰두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본 교과계획에서는 사회 교과에 있어 교수학적 구상 및 다루어질 만한 주제 분야들이 제시되었다.

출처\_ Ministerium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 des Landes Brandenburg. Vorläufiger Rahmenplan Lernbereich „Gesellschaftslehre“ Politische Bildung Sekundarstufe I, Potsdam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64-368



**문서 번호 45**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내 사회 과목: 하업트슐레, 레알슐레 및 김나지움에 대한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년

**담당자 / 기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교육·학술·문화부

**내용**

이 문서는 신연방주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교육부가 중고등학교의 사회 과목 개편을 위해 마련한 임시계획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 교과는 민주주의의 근본적 정치이념을 역사적이지도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소개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방향 감각을 갖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 과목은 사회적이거나 정치적 현상 및 현재적 갈등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갖고 그를 분석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이 정치적 맥락들을 더 면밀하게 살필 수 있고 정치적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갖도록 장려해야 한다. 여기에 제시된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형태의 학교에서 그리고 모든 학년에서 동일한 수업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단지 다양한 학교 형태에 따른 수업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추상화 및 난이도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

**출처** Vorläufige Rahmenrichtlinien Hauptschule, Realschule, Gymnasium-Sozialkunde-des Landes Mecklenburg Vorpommern, Schwerin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69 f.

문서  
번호 46

작센-안할트 주 내 사회 과목 +N45. 중등학교 중 하웁트슐레 관련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년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주 교육·학술·문화부

내용\_

이 문서는 신연방주인 작센-안할트주의 교육부가 발표한 중등학교 사회 과목 교육과 관련하여 발표한 임시계획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 교과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 경제 및 정치적 현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하웁트슐레에서의 사회 과목 수업은 학생들 자신의 느낌과 경험을 연관지으며 이루어진다. 일상적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배운 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민주적인 행위가 갖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성숙한 시민으로서 갖는 의무와 권리에 대해 미리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출처\_ 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 des Landes Sachsen-Anhalt. Vorläufige Rahmenrichtlinien-Sekundarschule: Bildungsgang Hauptschule-Sozialkunde, Magdeburg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72-374





문서  
번호 47

튀링겐 주 내 사회 과목: 레알슐레 및 김나지움 교육과정 임시계획 중 발췌  
1991년

담당자 / 기관\_ 튀링겐주 문화부

내용\_

이 문서는 신연방주 튀링겐주의 문화부가 중고등학교의 사회 과목 교육과정에 관해 발표한 임시계획안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 과목의 과제는 급속한 사회 변동을 깨닫게 하며 점차 더 복잡해지는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의 정치적 차원을 인식하게끔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반대로 정치에 대한 이해 역시도 자기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형성해나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 학생들은 정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치적 입장을 정해 이를 헌법질서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특히 김나지움에서 학생들에 대해 구동독에 대해 또 통일과정의 결과 체험할 수 있었던 변화에 대해 객관적인 관점이 전달되어야 한다. 수업은 통상 삶과 동떨어지지 않았으며 교수학적으로도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례를 들에 근거해야 하며, 학생들의 사전 지식과 의견 그리고 경험을 관련지으며 이루어져야 한다.

출처\_ Thüringer Kultusministerium. Vorläufige Lehrplanhinweise für Regelschule und Gymnasium Sozialkunde, Erfurt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74-376

담당자 / 기관\_ 학술자문회의; 동독 교육·학술부

내용

이 문서는 신연방지역에 전문대학(Fachhochschule)을 설립하는 것과 관련하여 학술자문회의가 제출한 권고안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에는 서독의 전문대학교(Fachhochschule)에 해당되는 교육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1990년 7월에 동독의 교육부가 종전의 베를린 리히텐베르크지역 및 미트베르다지역에 소재한 공업대학교(Ingenieurhochschule)를 국립 전문대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시험케이스로 선정하기도 했다. 서독의 모델에 따라 신연방지역에 새로운 전문대학교를 설립할 경우 기본적으로 동독의 공과대학교(Technischen Hochschule) 및 공업대학교 그리고 특수대학교에 소속되었던 박사 및 교수들이 계속 재직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진이 아닌 기타 인력의 경우 해당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경험이 없다.

구동독지역에 소재한 공과대학교의 인적, 공간적, 그리고 연구 설비는 현재 양호한 상태이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응용 연구, 개발 및 기술이전을 진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전문학교(Fachschule) 및 공업학교(Ingenieurschule)의 시설 설비는 이와 달리 아주 열악하다. 동독체제 하에서 상대적으로 널리 이용되었던 통신대학교를 통한 교육 기회는 보전되어야 한다. 특히 공업대학교가 전문대학교로 전환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12개의 공업대학교가 공과대학교로 인정받았다. 공업학교 및 전문학교는 그와는 달리 새로운 전문대학교 형태로 전환되기 힘들다. 경제 및 사회과학 학과의 경우 새롭게 변혁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현행 대학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학술자문회의는 통일된 베를린에서 전문대학교의 정원이 매우 부족하다고 진단하였다. 베를린 바르텐베르크지역 공업학교는 베를린 훔볼트대학교에 통합되었으며, 리히텐베르크지역 공업대학교는 신설 전문대학교로 전환될 것이다. 몇몇 산업 분야에 필요한 졸업생만을 배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목표로 상정되었던 대학 전공 분야 간의 차별화와 전문화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전문학교 수준에 해당하였던 기존의 동독 내 직업교육기관에 근무하던 교원들의 계속 고용은 계획하지 않는다.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각 교육기관 내 설립위원회가 상세한 재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출처\_ Wissenschaftsrat, Drucksache 27/91



문서  
번호 49

신연방주 및 동 베를린지역 대학교수과정 개혁 및 신진학자 육성에 관한 권고  
1991년 1월 25일

담당자 / 기관\_ 학술자문회의

내용\_

이 문서는 학술자문회의가 작성한 권고안으로 구동독지역 대학교의 교수과정과 신진학자 육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동독지역의 대학교들의 구조조정이 이미 시작되었다. 특히 인문과학, 사회과학, 법학 및 경제학 분야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새롭게 학과를 정립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학술자문회의의 실무단은 구동독지역의 대학교들을 직접 방문하였다. 실무단의 현지조사를 통해 대학교의 구조조정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와 연방주들이 재원을 제공해야만 하며, 빠른 시일 내에 그에 관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수업 개혁이 이루어져 구동독지역 대학생들이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서독지역과 해외에서 신속하게 교수요원을 충원해야만 할 것이다. 수업이 휴강 또는 폐강되는 문제는 초빙교수나 외부 강사를 통해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강의가 완전히 혹은 장기간 중단되어서는 더욱 안된다. 대학교들이 문제에 홀로 대처하도록 두어서는 안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퇴직한 명예 교수들이 투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서독지역 대학교 출신 신진학자들이 몇 학기 동안 강의를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동독지역 대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핵심 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해 서독지역 대학교들과의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다. 1991년도에서 1995년도 사이에는 그 시작부터 10년의 계약 기한을 두고 '학과를 설립하기 위한 창립교수'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다른 대학으로부터 초빙을 받은 교수들이 학교를 옮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행되는 협상제도가 구동독지역에도 도입되어야 한다. 학문 후속세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즉시프로그램을 도입해야만 한다.

출처\_ Wissenschaftsrat, Drucksache 26/91

담당자 / 기관\_ 학술자문회의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의 최고 연구기관이었던 고에너지물리학연구소에 대한 학술자문회의의 의견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7월에 동독과 서독 중앙정부와 각 주의 정부는 공동으로 학술자문회의에게 동독 지역의 학술연구에 대한 평가를 의뢰했다. 학술자문회의는 특히 브란덴부르크주 초이텐 소재 고에너지물리학연구소가 동독지역에 유일한 고에너지 전문 연구기관임에 주목하였다. 고에너지물리학연구소는 CERN(Genf), DESY(Hamburg) 및 IHEP(Serpuchow) 등의 유럽 소재 다른 연구소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었다. 1989년 이전에도 이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동독에서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해외에 연구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었다. 이들 연구원들이 발표한 논문의 대다수는 서방의 저명한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이러한 상황과 함께 연구소 자체의 요청을 고려하여, 학술자문회의는 이 연구소의 경우 다소 축소된 규모일지라도 대학 외 연구기관으로서 존속시킬 것을 추천하였다. 그러나 연구소의 소장을 포함한 모든 최고위급 직책은 신규 임용 공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연구원의 절반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출처\_ Wissenschaftsrat, Drucksache 23/91 vg



문서  
번호 51

신연방주 및 베를린의 대학 외 연구기관들에 대한 의견-경제학 및 사회학과들에  
대해[발췌]

1991년 2월 19일

담당자 / 기관\_ 학술자문회의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10월 및 11월에 학술자문회의 실무단이 동독 학술원 산하 7개 대학 외 연구기관들에 대해 실시한 심사결과이다. 실무단은 각 전공 부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취합하기 위해 신연방주들 내 대학교들의 해당 연구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에서는 일반적이었던 대학교육과 연구의 분명한 구분, 연구 동기에 있어서 다양성의 결여 그리고 전공 분야의 국제적인 연구성과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동독 학술원 산하 연구기관들은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낮다. 특히 경제학 및 정치학 분야의 경우에는 연구기관들의 본질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다. 사회학 연구소 중에 경험적 조사와 응용에 초점을 둔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들은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학술자문회의는 심사대상이었던 연구소를 원칙적으로 해체할 것을 권하며, 그것을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요구하였다. 개별적인 연구그룹의 경우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선별된 연구원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거나 새로 설립될 연구소로 이직을 도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출처\_ Wissenschaftsrat, Drucksache 93/91

담당자 / 기관\_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내용\_

이 문서는 베를린에서 열린 제251차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KMK) 본회의에서 신연방주의 교육부장관들이 공식적으로 이 협의회에 가입한 후, 1991년 2월 21/22일에 열린 제252차 본회의에서 합의된 ‘호엔하임 제안서(Hohenheimer Memorandum)’이다. 연방주의 교육부장관들은 이 제안서를 통해 통일독일의 교육, 과학, 문화정책 목표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였다. 그 중에서 학교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학교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각 주의 교육자치 원칙을 기본적으로 중시한다. 각 연방주는 학교 교육과정이 다른 연방주와 비교 가능하도록 기본틀을 보장함으로써 연방차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해야 한다.
- 통일조약에 따라 신연방주 학교제도의 재편성은 함부르크 협약(Hamburger Abkommen) 및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협의회 협정을 토대로 삼는다.
- 중등교육과정 이수 시 게잡트슐레(Gesamtschule) 졸업 상호 인정을 위한 기본협약의 요구사항(1982년 5월 27/28일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협의회 의결)을 고려하여야 한다.
- 아비투어는 학업기간과 관계없이 수학능력을 보장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요구 내용이 1989년 12월 1일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의결로 제시되었다.
- 신연방주에서 실시되는 직업교육과 관련된 주요 업무는 이원화 제도(Duales System)를 실행에 옮기고, 구연방주 간에 합의된 구조에 따라 전일제 직업학교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 교사 양성교육은 두 단계로 구분되어 이수하여야 하며 각 단계마다 국가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종합대학 또는 비교 가능한 단과대학에서 수학하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는 학교행정 관할 수습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모든 연방주의 교사 고용구조를 균등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교사에게는 계속교육 및 향상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

출처\_ Sekretariat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Hrsg.). 1998. Einheit in der Vielfalt: 50 Jahre Kultusministerkonferenz 1948-1998. Neuwied/Kriftel/Berlin.



문서  
번호 53

포츠담지역 내 대학과정 사회학과 개설 건에 대한 권고  
1991년 3월 13일

담당자 / 기관\_ 학술자문회의

내용

이 문서는 구동독지역에서의 사회복지사의 교육과 관련해서 학술자문회의가 제출한 권고안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에서는 서독의 경우 전문대학교 전공 과목인 '사회복지학과/사회교육학과/사회복지행정학과' 등에 상응하는 직업교육과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통일 직전인 1990년 9월에 포츠담에 소재한 보건·사회복지 전문학교에 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교육학과' 전공과정이 개설되었다. 학술자문회의의 실무단은 1991년 1월 22일에 이 기관을 방문하였다. 앞으로 구동독지역에 약 25,000명의 사회복지사 및 사회교육사에 대한 수요가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그런 수치를 기본으로 보면 연간 1,500명의 졸업생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그것은 신연방주의 10-12개 지역에 평균 규모가 500명에서 600명 정도인 사회복지행정학과 또는 학부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구동독의 여러 지역에 사립교육기관들이 사회복지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직업전환교육과정이며, 그 비용을 부분적으로 연방노동청의 지원으로 충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연방지역의 전문대학교에서 검증된 수학 기회를 조속히 제공해야 할 급박한 필요가 있다. 포츠담에 소재한 보건·사회복지 전문학교의 사회복지행정학과는 서독지역과 베를린의 여러 사회복지행정학과들과의 면밀한 교류 속에서 전문대학교 사회복지전공 이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과도기 규정을 조속히 도입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포츠담의 경우 아예 교육과정 자체를 새로이 설립하고 교수진 전원을 신규 임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전공 교원들도 계속교육을 통해 다음 단계인 교수자격을 획득하여 앞으로 새로 임용이 이루어질 전문대학교 교수자리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서독지역 전문대학교들과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출처\_ Wissenschaftsrat, Drucksache 97/91

1991년 3월 13일

담당자 / 기관\_ 학술자문회의

내용\_

이 문서는 학술자문회의가 작성한 동독 학술원 산하 연구소에 관한 평가서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술자문회의는 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해 수학 및 컴퓨터과학 담당 실무단을 구성하였다. 이 실무단은 1990년 10월과 11월에 구동독지역의 수학, 컴퓨터과학, 자동화 및 기계공학 분야 연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통해 구동독지역의 연구기관들이 서구권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모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컴퓨터과학의 경우 동독에서는 상당히 늦은 시기에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 정립되었고, 그와 관련된 연구도 우선적으로는 대학 외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컴퓨터과학의 기초 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다. 구동독지역에는 현재 매우 심각할 정도로 신기술이 보급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연구를 위한 기초 설비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동독 학술원 산하 연구기관들 중에서 더 이상 존속될 수 없는 기관이 적지 않다(목록 제시). 연구·개발 부문의 다수 프로젝트는 프라운호퍼연구소의 틀 속에서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이들 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원 중에는 앞으로 대학교들이나 대형 연구기관들, 혹은 프라운호퍼연구소나 라이프니츠연구소, 그리고 막스-플랑크연구소 및 연방의 연구기관들에 이직할 수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출처\_ Wissenschaftsrat, Drucksache 92/91





문서 번호 55 베를린 우주과학연구소 및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노이슈트렐리츠 소재 위성관측소에 대한 학술자문회의의 의견

1991년 3월 13일

담당자 / 기관\_ 학술자문회의

내용\_

이 문서는 구동독지역의 우주과학연구소와 위성관측소에 대한 학술자문회의의 평가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베를린 우주과학연구소는 기술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충분한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다. 몇몇 연구팀은 상당한 연구 업적을 성취한 바 있다. 설비 수준은 당시 동독의 기준으로 보면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많이 낙후되었다. 연구소의 작업 용량은 충분하다고 측정되었으며, 연구업무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다. 그러나 안보와 관련있거나 산업과 관련된 광범위한 연구 분야에서는 연구출판 활동이 거의 없었다. 1989년도 말부터는 서방 파트너들과의 학술 교류가 상당히 증가했다. 동·서독 간 국경 개방 이후 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이 서베를린 소재 대학들의 학술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연구원들은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고 연구소의 업무를 자신의 일로 여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소의 관리자들은 인력 감축이 필요하고 그것이 실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학술자문회의의 또한 조직구조를 전적으로 재편성할 것을 추천하고, 동시에 모든 관리자급 직위를 신규임용할 것을 추천한다.

출처\_ Wissenschaftsrat, Drucksache 94/91

담당자 / 기관\_ 학술자문회의

내용\_

통일 이전에 이미 동독정부와 서독 연방정부 그리고 연방주들이 공동으로 학술자문회의에 동독지역의 대학 외 연구기관들의 심사평가를 의뢰했었다. 학술자문회의는 이를 위해 실무단을 구성하고 동독 각 지역에 파견했었다. 이 문서는 실무단이 작센-안할트주 할레시에 소재한 고체물리학연구소와 전자현미경연구소를 방문해 질의하고 받은 답변과 연구소측에서 제출한 자료 그리고 현장조사 등을 기초로 작성된 평가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체물리학연구소와 전자현미경연구소의 인원 계획에 따르면 1990년도에 178명의 연구원들이 재직 중이었는데, 1990년도 초에는 161명으로 감소하였다. 이 연구소는 1960년 1월 1일에 할레종합대학교에서 분리된 연구기관이다. 이들 연구소는 서방의 전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나아가 연구기술의 모방 또는 자체 개발을 통해 국제적인 수준에 맞는 설비와 시설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술자문회의는 나아가 이 연구소를 막스-플랑크연구소 산하 연구소로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단지, 장기적으로는 연구원들의 수를 약 100명 정도로 감축해야 할 것으로 평가했다.

출처\_ Wissenschaftsrat, Drucksache 104/91



문서  
번호 57

동독 학술원 소속 연구단들의 대학 내 재배치 절차에 대한 대학총장단회의의 권고  
1991년 5월 6일

담당자 / 기관\_ 대학총장단회의

**내용\_**

통일조약에는 동독 학술원(AdW) 소속 연구기관들의 연구팀들을 대학 연구 안으로 포함 시킴으로써 대학 연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총장단은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제출하였다:

동독 학술원 산하 연구소의 연구팀을 대학 내로 포함시키는 절차는 해당 연구팀 또는 그 팀장이 대학연구기관으로의 이전을 신청을 할 경우 학술자문회의의 자문에 따라 적당한 대학교에 배정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은 연방주 차원에서 계획된 신연방주 내 대학 및 연구 개혁프로그램(HEP)을 통해 임시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또 어떠한 단계를 거쳐 해당 연구팀을 연방주가 지원하는 통상의 인적·물적 설비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연구팀의 팀장은 교수임용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팀장과 연구원들의 수업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도입되어야만 한다. 나아가 동독 학술원(AdW) 소속 연구 기관들의 공간과 설비들이 대학으로 이전되는 과정도 검토되어야만 한다. 이들 연구팀들을 프라운호퍼연구소나 막스-플랑크연구소에 포함시킬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

**출처\_** Muszynski, Bernd(Hrsg.). Wissenschaftstransfer in Deutschland. Erfahrungen und Perspektiven bei der Integration der gesamtdeutschen Hochschullandschaft. 1993. Opladen: Leske + Budrich, 318

1991년 5월 23/24일

담당자 / 기관\_ 독일연방공화국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 상임회의 사무국

내용

이 문서는 1991년 5월 23/24일에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분야에 있어 구동독지역과의 공동 성장’이란 주제로 열린 행정관청장회의의 의사록이다. 이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되었다:

‘구동독지역에서 교육직과 관련하여 실시된 시험 또는 취득된 자격증의 동등성’과 관련하여

- 직업교육 분과위원회 임시회장인 휘스터(Hüster) 장학관은 구동독지역에서 교육직과 관련하여 실시된 시험 또는 취득된 자격증은 각 담당부처에서 동등성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 서독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 상임회의의 직업교육 분과위원회(Unterschuss für Berufliche Bildung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UABBi)는 이에 알맞은 평가법안 결정 시 각 주정부 간 조정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하였다.
- 구동독지역에서 취득한 교육직업을 국가공인 교육직의 일부로만 인정
- 단지 ‘국가공인 교육자’ 자격취득 또는 동등성 인정의 대안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루어졌다.
- A) 교육자의 직업교육 및 시험에 대한 기본협약에서 언급된 조건의 실현-다시말해 주법(Landesrecht)에 따라 전문대학/전문아카데미 수학 또는 검정고시/외부평가시험 참가 후 직업실습

또는

- B) a)와 같은 규칙, 그러나 검정고시/외부평가시험의 경우 해당 지식을 국가공인 시험을 거쳐 증명서를 통해 증빙하는 학과에서는 시험이 면제될 수 있음

또는

- C) 1년 간의 직업실습 후 콜로키움

또는

- D) 직접 승인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1. 실무단은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 상임회의의 직업교육 분과위원회의 의결안을 바탕으로 ‘국가공인 교육자’ 자격취득 또는 동등성 인정이 가능하도록, 특히 C) 항의 상황 하에서, 의결을 실행하는 행정관서장협의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학교위원회장(의장)
- (박사) 게르트 하름스(Gerd Harms) 차관(브란덴부르크주)
- 레나테 위르겐스-피퍼(Renate Jürgens-Piper) 차관(니더작센주)
- 토마스 드 메체르(Thomas de Maizière) 차관(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출처** Sekretariat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1년 5월 2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각 주정부

내용

이 문서는 통일 이후 독일 연방정부와 연방주들이 신연방주지역의 대학과 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합의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연방주지역 대학 및 연구 개혁프로그램(HEP)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 대학교들의 인적 쇄신 및 학자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 학문 후속세대를 지원하며 학생들과 학자들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대학 외 연구기관을 대학교 내로 귀속시키는 것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시행기간은 5년이다. 그를 위해 총 17억 6,000만 마르크를 지출하기로 했다. 지출금의 75%는 연방정부가 그리고 나머지 25%는 신연방주의 정부가 부담한다. 신연방지역 대학을 개혁하고 신속하게 새로운 학과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명의 학과설립을 담당할 교수를 초빙하기로 한다. 나아가 신연방지역 대학에 근무하는 학자들이 다른 지역의 대학으로 초빙되어서 이주하고자 할 때 지역의 대학에 머물도록 설득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1,000만 마르크가 배정되었다. 박사후연구원 및 교수자격준비과정에 있는 연구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법학 및 경제학의 경우 현재 대학에서 이 과목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과 졸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졸업생들이 독일 전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추가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를 위해 3,500만 마르크가 배정되었다. 대학교와 연구기관들 소속 학문인력들이 학술교류 및 학술행사 참가를 통해 연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3,900만 마르크가 배정되었다. 신연방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통신대학 교육의 개선을 위해 3,200만 마르크가 배정되었다. 그 외에 좋은 성과를 보이고 경쟁력이 있는 전문대학교들을 확충하고, 새로이 초빙할 대학교수와 연구교원을 위한 주거 공간이 확충되어야 한다. 학생 기숙사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 신연방주들 대학의 도서관들이 전국적인 도서관연합시스템에 연결되어 원격대출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나아가 교수자격 준비과정에 있는 연구원과 대학교수 수에 있어 여성의 비율을 증대시켜야 한다.

출처 Muszynski, Bernd(Hrsg.). Wissenschaftstransfer in Deutschland. Erfahrungen und Perspektiven bei der Integration der gesamtdeutschen Hochschullandschaft. 1993. Opladen: Leske + Budrich, 324-351



문서 번호 60 **브란덴부르크주의 1차 학교개혁법[발췌]**  
1991년 5월 28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내용\_**

이 문서는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브란덴부르크주 학교제도의 재건에 대해 규정하는 학교개혁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교육제도의 개혁으로 각급 학년은 초등교육 1단계, 중등교육 2단계로 구분된다. 공립 학교는 종교적 정향성을 갖지 않는다. 이 법에 따라 새로운 학교가 설립, 정착되기 전까지는 브란덴부르크주의 학교들은 그때까지 운영되던 종합기술고등학교(POS)나 확대일반고등학교(EOS) 형태로 계속 운영될 수 있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Brandenburg Teil I-Nr. 10, S. 116,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299-302.

문서  
번호 61

통일조약 37조 규정에 의거 동독법에 따라 이수한 교사자격 인정  
1991년 6월 14일

담당자 / 기관\_ 독일연방공화국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사무국

내용\_

이 문서는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협회의 사무국이 통일조약 37조에 의거해서 동독에서 합법적으로 획득한 교사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연방지역 기존의 교사들의 교사자격 인정은 각 주의 청소년담당국과 해당관청이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관청은 교사들이 동독에서 이수한 교사양성교육의 입학자격, 내용, 기관 그리고 졸업시험 등이 유효규정에 부합하며,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연수 과정을 이수하였고, 교사직 직업경력을 통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그것을 근거로 국가가 공인하는 교사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3년 이상의 교사직을 수행한 직업경력은 6개월 간의 보충 연수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와 상관없이 구동독지역에서 취득한 교사직의 호칭은 독일 전역에서 사용될 수 있다.

출처\_ Beschlussammlung der Kultusministerkonferenz, Beschluss Nr. 428.1





문서  
번호 62

독일통일 이후 급여법의 경과규정에 관한 2차 명령(제2차 급여 경과규정-  
2. BesÜV)

1991년 6월 21일

**담당자 / 기관** 헬무트 콜(Helmut Kohl) 독일연방 총리,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 내무부장관, 테오 바이겔(Theo Waigel) 재무장관

**내용**

이 문서는 통일 이후 신연방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급여를 규정한 2차 급여 경과규정이다. 이 경과규정은 연방급여법(Bundesbesoldungsgesetz)을 바탕으로 신연방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판사 및 군인의 급여를 규정하였다. 이 규정의 틀에서 신연방지역에서 일단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된 일반학교, 직업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들의 급여가 정해지게 되었다.

그에 따르면 처음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일반적으로 구연방주에서 지급되었던 급여의 60% 수준으로 급여를 받게 되었다. 경과규정 제12조에 따라 한 달 급여 차액의 13배에 달하는 일시급이 보장되었다.

모든 교사는 부록 1에 따라 급여그룹 A10-12로 구분된다.

- 교육전문학교과정을 졸업한 '초등학교 교사'는 급여그룹 10으로 분류된다. 그들은 8년의 교직활동 후 또는 급여그룹 A10으로 분류되고 3년 간 재직한 후 급여그룹 A11로 진급할 수 있다.
- 2개의 교사 학위를 취득한 교사(Diplomlehrer)는 급여그룹 A12로만 분류되며, 급여그룹 A13에 대한 급여그룹으로의 분류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

**출처** Bundesgesetzblatt, 27. Juni 1991, S. 1345-1351

담당자 / 기관\_ 작센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주 학교법 제정을 위해 주의회에서 열린 2차 심의회의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제2차 법안심의에 앞서, 특히 학교위원회에서는 일반 시민의 견해와 요구가 많이 제시된 바 있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정보 관련 정책과 학교법안 작성 실무단의 업무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진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일반 시민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일을 추진한다는 점, 특히 법안에 종합학교(Gesamtschule)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판이 가해졌다. 주총리 비텐콕프는 종합학교 모델은 작센주에 고려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는데, 그 이유는 이 모델이 대규모의 포화밀집주거지역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만 적절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나아가 기초지자체의 재원으로 유아원(Horte)의 재정을 충당한다고 하는 임시방안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그럴 경우 대부분의 유아원들이 곧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주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되었다. 이와 달리 학교에 학부모와 학생의 공동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이루어진 것과 환경교육과 성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출처\_ Plenarprotokoll Sächsischer Landtag, 1. Wahlperiode, 21. Sitzung



문서  
번호 64

신연방주 내 전문대학 설립에 대한 학술자문회의의 권고  
1991년 7월

담당자 / 기관\_ 학술자문회의

**내용\_**

이 문서는 학술자문회의가 작성한 것으로 신연방주에 전문대학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연방주의 경제적, 사회적 구조의 변화를 위해서는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대학교체계가 중요하다. 특히 전문대학은 직업 현장과 직결되어 수업, 연구, 개발 및 계속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중요한 추진력을 줄 것으로 평가되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전문대학교의 재건을 통해 대학교육 기회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종합대학을 확장 또는 재건하는 것보다는 전문대학교의 정원을 늘리는 데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독에서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문제, 즉 대학교육이 직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단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전공의 폭도 가능한 확대해야만 한다. 그를 통해 대학의 교육 내용을 폭 넓고도 실용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복수전공을 통해 기업 또는 다른 경제영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아가 외국 대학에 교환 학생으로 나가는 학기를 정규과정에 통합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경제의 국제화 현상에 대처할 수 있게 한다.

신연방주에 존재하는 대학 중에 상당수는 전문대학교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많은 경우 필수적인 구조변화에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대학교로 전환하는 문제를 전적으로 서독지역의 모델에 따라 해결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구동독지역 전문대학교들이 자체적으로 기존 모델을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를 통해 이들 교육기관의 의미와 가치를 높이고 수행능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출처\_** Wissenschaftsrat, Empfehlungen zur künftigen Struktur der Hochschullandschaft in den neuen Ländern und im Ostteil von Berlin(Teile I-IV), Köln: Wissenschaftsrat, 1992, Teil II, S. 45-144,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267-270

“당신들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소”-학술자문회의 위원장 디터 지몬,  
구동독지역 내 학술연구의 미래에 대해

1991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_ 학술자문회의, 의장 디터 지몬 교수(박사)

내용\_

이 문서는 학술자문회의 의장인 디터 지몬 교수가 슈피겔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구동독지역 내 학술연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정치인들이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체제 하에서 학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학술 연구활동에 다양한 제약이 있었다. 사실 동독의 학자들은 교도소와 같은 환경에서 살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었다. 그들에게는 국제적인 통신 수단이나 서방세계의 발전된 기술에 대한 정보도 결여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인문과학, 사회과학 및 법학 분야 학자들을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자연과학 및 공학과학 분야는 아주 좋은 성과를 보였다. 우주공학의 경우 서독보다 더 뛰어났다고 할 수 있다. 구동독지역 학술연구에 대한 초기 평가과정에서 실책이 있었다. 물론 이 지역에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로 인해 평가라는 것을 처음 받았던 이 지역의 학자들에게 그런 작업 자체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평가과정에서 편파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서독 출신 학자들보다는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해외 학자를 더 많이 초빙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통일 직전인 1990년 10월 2일에 발표되었던 대학특별프로그램 II의 경우 원래 30억 마르크를 지원하기로 약속해 놓고 1년도 되지 않아 그 금액이 겨우 13억 2,000만 마르크로 삭감되었을뿐만 아니라 연방주들이 이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지원을 제공하지도 않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농담 같지도 않은 말장난이 되어 버렸다. 그로 인해 학술자문회의 의장의 개인적인 신뢰도 또한 많은 손상을 입었다. 비록 이 지역에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독일통일을 완성시키기 위한 재원 중 일부가 신연방지역의 연구 부문에 투자되어야만 한다. 학술자문회의는 단지 자문만을 할 수 있는 기구이다. 학술연구와 관련된 결정과정에 간섭하는 다양한 기구의 경우 그들의 효율성 자체가 의심적은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만일 지금 정치가 실패한다면, 독일은 앞으로 ‘학술적인 차원에서 후발국가’로 추락할 수도 있다.

출처\_ Der Spiegel, 27/1991



**문서  
번호 66**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 간 교육 및 스포츠 분야  
 에 있어 행정적 협력에 대한 협정 초안[보고서 및 토의]

1991년 7월 3일

**담당자 / 기관** 브란덴부르크주 문화부차관 베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학교 및 계  
 속교육위원회

**내용**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가 교육과 체육 분야에서 협  
 력하기로 합의하고 작성한 협정서의 초안이다. 브란덴부르크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는 주정부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모든 행정 분야에서 협력했었다. 여기에는 특  
 히 당시 브란덴부르크 주지사였던 만프레드 슈톨페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지사 요  
 하네스 라우의 개인적인 친분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협약의 목표는 브란덴부르크주의 교육 및 스포츠 분야를 확충, 재구성하기 위해 필요  
 한 조치 및 그에 대한 행정협조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은 전문가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지속적인 인적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공무원을 브란덴부르크주로 파견하거나 출장을 보낼 수도 있다. 나아가 브란덴부르크주  
 학교 및 스포츠행정부서 직원과 관리자들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견학,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계획되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교사들을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의 학교로 초청하는 사업은 이후 시점에나 가능한 것으로 연기되었다. 이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교원이 부족했던 반면, 브란덴부르크주에는 교원인력이 넘치  
 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교육행사들의 문호가 브란덴부르  
 크의 교육자 대표들에게 개방되며, 브란덴부르크주의 교육청 공무원 및 학교장들을 대상  
 으로 한 전문 학술회의도 개최한다.

이 협력의 또 다른 중점 사항은 브란덴부르크주 계속교육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교육학적  
 이자 조직운영적인 지원과 학교 간의 자매결연 지원사업이다. 이 협약은 총 4년 간 유효하  
 며 양측의 교육부는 매년 협력을 위한 실무안을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브란덴부르크주의 교육제도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복사본이 되는 것  
 은 아닌가하는 우려와 관련해 브란덴부르크주에 의해 요청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  
 루어질 것이며, 사전에 준비된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출처** Parlementsdocumentation Landtag Nordrhein-Westalen, Ausschußprotokoll  
 11/299, 15-26

담당자 / 기관\_ 작센주 총리 쿠르트 비텐콕프; 문화부차관 볼프강 노박

내용\_

작센주 학교법은 동 연방주 내 공립학교들의 구조와 기능을 규율하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와 직업학교, 특수학교와 (성인대상의 중고등학교 등을 포함한) 특별학교가 포함된다. 이외에도 학교운영주체, 교육의 의무 및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공동협의회에 대해서도 규정되었다. 독일 내에서도 특수한 사항으로서, 작센주의 학교법은, 특히 라우치치지역에 거주하는 독일 내 소수민족인 조르본(Sorben)족 출신 학생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에서는 어떠한 학교 형태에서 어떠한 교과수업이 이루어지고 몇 년의 학기 이수 후에 어떠한 종류의 이수자격이 취득될 것인지를 일반적으로 규율한다.

종교 교과가 정규 교과로 도입되었는데, 교육권한을 지닌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그 대신 윤리 교과를 배우도록 할 수 있다. 만 14세가 넘게 되면 학생은 스스로 그중 어느 교과를 배울지 선택할 권리가 생긴다.

수업 교과의 내용과 종류, 범위 그리고 학교규칙 및 시험규칙에 대해서는 (작센주) 문화부의 책임으로 정한다. 가족교육, 성교육 및 환경교육은 전 교과에 포괄적인 내용으로 포함되어 교육이 이루어진다.

최상급 학교감독청에 대한 자문을 위해 각각의 학교 형태를 대표하는 교사 및 학부모, 대학교원 및 종교단체 그리고 노동조합 등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주교육자문단(Landesbildungsrat)을 설립한다.

마지막으로 동 법은 종합기술고등학교(POS)나 확대일반고등학교(EOS)들은 다른 학교 형태로 전환되어지기 전까지 그대로 운영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출처\_ Sächsisches Gesetz- und Verordnungsblatt Nr. 15/1991-Ausgabetag: 9. Juli 1991



문서  
번호 68

## 신연방주 내 대학 및 공과대학의 공학전공에 대한 권고

1991년 7월 5일

담당자 / 기관\_ 학술자문회의

### 내용\_

이 문서는 학술자문회의가 신연방지역의 대학교에 대해 실시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하여 공학 관련 분야의 장래와 관련한 일반적인 권고를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는 개별적인 대학과 공과대학을 위한 구체적인 자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_ Wissenschaftsrat, Drucksache 325/91

1991년 9월 13일

담당자 / 기관\_ 교육·청소년·스포츠부장관 마리안데 비어틀러; 문화부장관 한스 슈비어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가 교육 및 스포츠 전 분야에 걸쳐 브란덴부르크주 내 해당 분야의 확충 및 재구성을 목표로 정보교환, 자문 및 교육연수 및 기타 협력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체결한 협력합의서이다. 이 합의는 4년 간 유효하며 두 차례에 걸쳐 2년씩 연장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합의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양측의 문화부장관과 차관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는다. 각 문화부의 부서 및 하위 기관 들은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한다. 또한 임시적인 인력 지원이나 교육 및 스포츠행정 확충에 필요한 물자의 지원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한다.

양측은 브란덴부르크주 교육부문 대표자들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소재 교육기관 및 (교육청이나 주문화교육장관청 등의) 다양한 행정단체기관에 초청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브란덴부르크주 교육부문 대표자들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열리는 추가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계속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행정합의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안에 있어 브란덴부르크주의 교육·청소년·스포츠부는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필요사항과 예상일시 및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기재한다.

출처\_ Schreiben(Vermerk: 11/851) des Chefs der Staatskanzlei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Wolfgang Clement an Landtagspräsidentin Ingeborg Friebe



문서  
번호 70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지역 의과대학에 대한 학술자문회의의 권고  
1991년 9월 27일

담당자 / 기관\_ 학술자문회의

**내용\_**

이 문서는 학술자문회의가 신연방지역의 의과대학의 장래에 관해 작성한 권고안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 이전인 1990년 7월에 동독정부와 연방주 그리고 서독 연방정부는 동독지역의 학문과 연구에 대한 평가를 학술자문회의에 의뢰하였다. 이를 위해 실무단이 투입되었고, 이 권고안의 토대가 되는 보고서를 작성한 ‘의대 및 의학 교육기관’ 실무단도 그중의 하나이다. 실무단은 1990년도 9월 초에 동독에 존재하던 9개의 의학 교육기관에 대해서 1990년 10월 31일까지 설문지에 답변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1990년 11월부터 1991년도 1월까지의 실무단이 직접 현지에 각 교육기관을 방문하였다. 당시 동서독의 의과대학 간에는 큰 차이점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서독지역 의과대학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

통일된 독일 전체를 볼 때 의과대학 4분의 1이 신연방지역에 있다. 그것은 이 지역에 의과대학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연방지역의 병상 수도 상대적으로 많다. 실제로 병상 수가 3분의 1 이상 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연방지역에서 의과대학을 새롭게 확충할 필요가 없다. 이 지역의 병원당 연간 1억 5,000만 마르크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를린 샤리테의과대학, 그라이프스발트, 로스톡, 라이프치히, 할레, 막테부르크, 예나 및 에어푸르트에 소재한 의학 교육기관 등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신연방지역 의과대학의 총 정원은 4분의 1 정도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 대학병원은 소재 지역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대형 의료기기와 같은 장비를 구매하는 것 또는 새로운 전문 분야의 개설과 같은 문제를 결정할 때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모든 관리자급 직책은 신규 임용공고를 통해 새로 채용되어야 하며, 대학교원에 대한 개별 심사는 신속하게 종결되어야 한다. 학술조교의 경우 정규직으로 고용된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그 비율을 현격하게 감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병원들은 신속하게 비용추정치를 포함한 광범위한 전체 계획을 작성하도록 한다.

출처\_ Wissenschaftsrat, Drucksache 406/91

담당자 / 기관\_ 베를린 국회의사당

내용\_

이 문서는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작센주의 교사해고에 관해 보도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른 신연방주에 비해 작센주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활동을 과거에 했던 교사들에게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했다. 1991년 12월 31일까지 과거경력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교사들을 교직에서 해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5만 2,000명 중 7,000명에 달하는 교사들이 해고되었다.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활동을 과거에 했던 교사들이란’ 과거 구청 및 지역 교육위원, 장학사, 인사과장, 블록정당의 상임위원 그리고 자유독일청년당(Freien Deutschen Jugend, FDJ) 및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인민회의 원내 교섭 단체의 최고 위원회 회원들이었다. 1991년 9월 말까지 작센주 고등교육청에서 약 3,000명의 교육자를 ‘슈타지 교사’로 분류하고 이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였다. 사직 통보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럴 경우 고등교육청의 청문위원회에서 자신이 공직을 수행하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즉시 해고절차가 진행되었다. 해고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거의 모두 이의를 제기하였고, 자신들도 엄밀히 말하면 제도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였다. 교사노동조합(GEW)은 이들을 지지하였다. 교사노동조합은 장학사 또는 인사과장의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가 ‘해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깨끗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모토 아래 과거 경력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교육자들이 그들의 지위를 통해 독일사회주의통일당제도를 결정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청문위원회 회원들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고 비밀에 붙여졌다.

출처\_ Spiegel 30. 09, 1991



문서  
번호 72

학위 동등성 인정(대학교, 교회 양성교육기관, 전문대학교 및 공업전문대학교 학위)  
1991년 10월

담당자 / 기관\_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내용\_**

이 문서에는 통일 이전에 동독에서 취득한 대학졸업을 포함한 학력의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관할권에 대한 연방주 간의 협정과 학력의 동등성 인정에 대한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의결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통일조약 제37조 제1항을 바탕으로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는 구동독에서 취득한 학위의 평가를 실행하였다.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국립 그리고 국가가 공인한 대학에서 직접 수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수학하여 취득한 예술석사를 포함한 석사
  - 대학 범주에 속한 목사 양성교육기관의 졸업
  - 전문대학 및 공업전문대학 졸업

평가는 통일 이전, 또는 과도기에 동독지역에서 이수하였거나 1993년 말까지 이수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학업의 동등성 인정을 위한 관할권은 주 협약을 통하여 규정한다. 통일조약 제37조에 따르면 학위의 동등성 인정은 비교 가능한 형식적 자격수준의 인정뿐만 아니라 서독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독에서 취득한 학위 간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학위 평가는 사회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줄이고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학위 평가를 위한 일관적인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분류하여 결정한다.

**사례그룹 1**

이 그룹의 학위는 1990년 10월 3일 이전에 서독의 종합대학 또는 그 종합대학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는 단과대학에서 획득한 학위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한다.

**사례그룹 2**

이 그룹의 학위는 1990년 10월 3일 이전에 서독의 종합대학 또는 그 종합대학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는 단과대학에서 획득한 학위와 동등하다. 그러나 교육의 내용이 동독의 경제 및 사회체제에 밀접하게 맞추어져 있었으므로, 학업내용을 고려해 보면 서독과는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사례그룹 3**

이 그룹의 학위는 서독의 전문대학에서 획득한 학위와 동등하다.

**사례그룹 4**

이 그룹의 학위는 서독의 전문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하다. 그러나 교육내용이 동독의 경제 및 사회체제에 밀접하게 맞추어져 있었으므로, 학업내용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2.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헤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를란트, 작센, 작센-안할트, 쉬레스비히-홀슈타인, 튀링겐주는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1조

동독에서 취득한 학위를 서독의 학위와 동등하게 인정하기로 규정한 통일조약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위의 동등성에 대한 검토는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학위를 취득한 교육기관이 존재하는 지역의 대학제도국이 담당한다. 이는 동서독의 통일 이후 신연방 지역에서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1993년 12월 31일까지 학위과정에 재학중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2조

조약체결 주 중 한 곳에서 학위의 동등성을 인정하였을 때 그것은 다른 모든 주에서도 유효하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평가방식은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의결에 의해 보장된다.

3조

본 협약은 조약체결 주가 모두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사무총장에게 동의서를 제출한 당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사무총장은 이 시점을 조약체결 주들에게 통지한다.

**출처** Sekretariat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문서  
번호 73

브란덴부르크주의 학교 개혁: '인생설계-윤리-종교' 과목 시범모델  
1991년 10월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청소년·교육·스포츠부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실험적으로 실시해 보기로 한 윤리 교과 과목에 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교육·스포츠부의 프로젝트 그룹의 주도하에 몇 년 동안 실시해 볼 계획으로 구상된 교과모델은 앞으로 브란덴부르크주의 각 행정구역의 학교 중에 한 곳씩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실시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종교단체,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대표 그리고 노조와 정당이 파견한 대표들로 구성된 사회자문단이 함께 활동한다.

이 시범모델 수업의 목표는 앞으로 제정될 브란덴부르크주 학교법에 포함될 종교교육 과목을 위한 기본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동독의 학교에서는 세계관적, 종교적 혹은 윤리적 내용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범모델에 수업영역을 급속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교육체계의 대답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이 시범모델 수업에는 스스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부모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가 비록 학교에서 특정 종교에 정향된 교육을 받기를 원하지 않지만, 다양한 종교들의 내용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사실도 감안되었다. 특정 종교에 소속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공동수업은 세속주의화가 진행된 사회에서 대화능력과 상호 인정능력을 함양할 것이며 교육부문에 있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것이다.

**출처\_** Ministerium für Bildung, Jugend und Sport. Gemeinsam leben lernen: Modellversuch des Landes Brandenburg zu einem neuen Lernbereich und Unterrichtsfach „Lebensgestaltung-Ethik-Religion“Potsdam, 15. Oktober 1991,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285-287

1991년 10월 11일

담당자 / 기관\_ 독일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

내용\_

통일조약 37조 1항을 근거로 문화 및 교육 관련 장관회의는 통일 이전 동독에서 취득했거나 1993년 말까지 취득예정인 학위를 평가했다. (군사대학을 제외한) 모든 전문대학, 공과대학 및 일반대학에서 취득한 학위가 이에 포함되었다.

여기서 37조에 따른 학위의 동등성이란 형식적으로 그 학위과정 이수자격의 수준이 서독의 그것과 비교가능한가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동독과 서독에서 각기 이수한 과정의 실질적인 내용이 서로 비교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도 포함한다.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학위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동독의 사회경제체제와 특별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전공과정의 경우 체계적인 조건으로 인해 학업내용이 본질적인 차이가 너무 커서 단지 학위의 수준이 동등하다는 사실만 인정하는 것에 한정되었다.

출처\_ Sammlung der Beschlüsse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Loseblattsammlung), Neuwied/Darmstadt, Stand 1994, Nr. 917,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270-272



문서  
번호 75

신연방주 내 여성연구자들의 현황에 관한 간략형 대정부질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1991년 11월 27일

**담당자 / 기관** 연방정부; 연방의회 내 사민당 교섭단체; 연방 교육·학술부장관 라이너 오르  
트렙 박사/교수

**내용**

연방 교육·학술부장관 오르렙은 연방정부를 대표하여 사민당 소속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였다. 그는 우선 동독지역 학술 부문의 구조변화와 관련하여 양적 자료는 단지 제한적으로만 파악 가능하다고 발언하였다. 1990년도에 동독지역의 대학교들에서 여성의 비율은 연구원의 경우 35 퍼센트, 강사의 경우 12 퍼센트, 그리고 교수의 경우 5 퍼센트였다. 1991년 7월 31일에 동독 학술원 산하기관들에 소속되었던 대학졸업자 중 약 26 퍼센트가 여성이었다. 건설 교육원 산하 기관들의 경우 이는 1990년도와 1991년도에 약 30 퍼센트였다. 오르렙 장관은 1989년도에 대학교들 내 여성의 비율에 대한 선별된 학과들의 상황자료표를 제출하였다. 그 외에 1988/1989년도 및 1990/1991년도의 대학 신입생 중 여성의 비율에 대한 자료표도 제출하였다. 모든 연방주들에 있어 유효한 대학기본법에 의거하여 각 대학교들은 여성 학자들의 기회의 평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연방정부는 대학구조위원회, 인사위원회 및 임용위원회에 있어 여성의 참여비율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 하지만 다른 개별 자료들로 미루어보아, 이들 위원회에서도 여성이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앞으로 여성을 더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출처** Drucksache 12/1653

문서  
번호 76

제3차 베를린 주법의 단일화법  
1991년 12월 19일

담당자 / 기관\_ 베를린 의회

내용\_

이 법에 따라 주공무원법, 공무원의 자격 인정에 관한 법 및 기타 규정들이 동베를린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동독체제 하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했던 교사들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

- 법에 의거하여 동독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 및 다른 동독의 공무원들은 '수습 공무원'으로 임명된다.
- 교사들은 자격 인정을 위해 수습기간 동안에 교직 외에 보충 과정을 이수하여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 자격 인정 여부는 최고 관할 관청에서 결정한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Berlin. 47. Jahrgang Nr. 57, 31.12. 1991





문서 번호 77 작센주 법과 공동체 교과: 중등학교 교수계획에서 발췌  
1992년

담당자 / 기관\_ 작센주 문화부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주 중등학교의 사회과 교수계획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과 교과목의 수업목표는 학생이 국가와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향 감각을 갖고 시민으로서 스스로와 사회에 대해 책임있는 행위를 하도록 능력을 함양하는 데 있다. 윤리와 종교 과목의 심화 학습을 통해 자유롭고 민주적인 공동체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정치적 이해를 돕는 것에 중점을 둔다.  
사회과 수업에서는 단순한 전문지식의 전달을 넘어 스스로 지식을 실천하도록 성장하는 학생을 자극하여야 한다. 그에 있어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법치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은 개인들의 참여에 달려있다는 인식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_** Sächs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Kultus: Lehrplan Mittelschule-Gemeinschaftskunde/Rechtserziehung, Klassen 8-10, Dresden 1992,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70-372

1992년

담당자 / 기관\_ 학술자문회의

내용\_

이 문서는 학술자문회의가 1992년에 작성한 것으로 신연방지역의 대학과 연구 환경의 장래에 관한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 들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여름에 동독정부와 서독 연방정부 그리고 연방주 정부들은 학술자문회의에 동독 내 학술 기관들과 대학교들의 현황을 평가하고 미래의 체제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동독의 대학교와 연구기관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대학들은 교육으로부터 분리되고 연구활동만 전념할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받은 아카데미 연구기관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로 인해 대학이 외부로부터 고립되었고, 연구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었다. 대학교 수업의 20 퍼센트가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군사교육과 스포츠로 채워졌다. 동독의 대학교들은 서독의 대학교에 비해서 아주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대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했다. 동독에서 주민당 대학 졸업생 수가 서독의 경우보다 상당히 낮을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동독의 54개 대학교들을 12개의 종합대학교와 12개의 미술 및 음악대학교들 그리고 20개의 전문대학교들로 전환하도록 한다. 인문학의 경우 전공가능한 학과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미술대학과 음악대학의 경우 특별한 변화가 필요없다고 본다. 학술자문회의가 권고한 사안들 중에서는 한시적인 성격을 띤 것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기본조건을 언급하는 것들도 있었다. 학술자문회의의 권고안은 대체로 7개 기본원칙을 따르고 있다. 1. 아카데미 소속 학자들을 대학교 내로 통합 2. 비대학 연구기관과 대학 연구기관 간의 협력 3. 특수대학교를 종합대학교의 학부로 통합 4. 전문대학교의 설립 5. 전공과정의 지나친 전문화 탈피 6. 신규 종합대학교 설립 이전에 기존의 대학교들의 전반적 개혁 추진, 7. 1995/1996년까지 1차 시기에 기존의 대학교들의 견실화 및 전문대학교의 확충

출처\_ Wissenschaftsrat, Empfehlungen zur künftigen Struktur der Hochschullandschaft in den neuen Ländern und im Ostteil von Berlin(Teile I-IV), Köln: Wissenschaftsrat, 1992, Teil I, S. 5-12,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279-283



문서  
번호 79

### 신연방주 내 대학구조 재구성에 대한 학술자문회의 권고에 대한 보고 1992년 1월 1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 교육·학술부장관 라이너 오프레프

####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의회 교육학술상임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연방정부의 교육학술부장관이 보고한 것이다. 교육부장관은 1992년 1월에 제출된 이 보고서에서 학술자문회의가 동독의 대학구조 개혁을 위해 제출한 권고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술자문회의는 연방정부의 요청으로 9개의 실무단을 구성해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추가로 통신대학 교육을 평가하기 위한 실무단도 구성되었다. 동독에는 1989/1990년도에 54개 대학교들과 24,500명의 학자들 그리고 127,000명의 대학생들이 있었다. 당시에는 외국의 전문서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연구 기기, 컴퓨터 및 통신 수단은 낙후되어 있었다. 연구 공간은 협소했으며 건물의 상태도 열악했다.

연방교육부장관은 보고서에서 다양한 학과의 현황과 신연방주의 대학교육 현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는 신연방주들에 앞으로 설립될 전문대학교가 이 지역의 경제발전 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사범대학교들의 장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신연방주들은 그 사이에 자체적인 대학교법을 제정하였고 학술자문회의의 자문에 부응하여 인적 쇄신 및 학과의 쇄신을 위해 대학구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나아가 대학 및 연구 개혁프로그램(HEP)에 의해 제공되는 재정지원에 힘입어, 새로운 학과를 설립할 교수를 초빙하고, 강의담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들 대학의 대학교수 초빙공고에 서독지역뿐만 아니라 해외대학의 학자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학술자문회의의 자문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학술자문회의의 의견은 방향 설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자문회의의 평가에 신연방지역의 대학교들이 갖는 장점들을 어떻게 대 학수업에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그 성과를 독일 전체 대학에 어떻게 유익하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은 유감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제는 앞으로 대학교들이 각자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_ Muszynski, Bernhard(Hrsg.)-Wissenschaftstransfer in Deutschland-Erfahrungen und Perspektiven bei der Integration der gesamtdeutschen Hochschullandschaft, 1993, Leske + Budrich, Opladen, S. 333-351

담당자 / 기관\_ 학술자문회의

내용\_

이 문서는 1992년 1월에 학술자문회의가 통일로 인해 한 도시 내에 대학이 여러 개로 증가한 베를린시의 대학정원과 공대의 장래 계획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베를린 시정부가 서베를린 소재 대학들의 정원을 더 이상 증원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환영할 일이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시정부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분명하게 교육정책의 목표를 설정해 대학교육의 중점사항을 조정할 것이 요구된다. 동베를린지역에 기술·경제 전문대학교를 설립하기로 한 베를린시의 결정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베를린공대(TU)와 관련된 계획을 보면 개별 전공 분야들의 안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연구를 통해 개발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이 충분히 보장되어야만 한다. 학과들이 연구와 교육을 더욱 긴밀하게 상호연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취하는 것도 여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학과를 통합하거나 공간적으로 재편성해서 연구, 교육공간의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도서관을 한 곳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_ Wissenschaftsrat, Drucksache 542/92



문서  
번호 81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 지역 미술, 음악 및 연극대학교의 미래에 대한 권고  
1992년 1월 24일

담당자 / 기관\_ 학술자문회의

내용

이 문서는 학술자문회의가 제출한 신연방주의 음대, 미대와 관련된 권고안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술자문회의의 실무단은 1991년 9월과 10월 중에 신연방주에 소재한 모든 미술, 음악 및 연극대학을 방문한 후 직원 및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각 학교에서의 수업과 예술적 발전, 연구 및 시설에 관해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각 대학에 발송한 질문문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보완되었다.

아마 대학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법령이 통일되었기 때문에 음대와 미대에서도 여러가지의 구조적 조정이 취해졌고, 특히 이데올로기적 색채가 강했던 영역에서는 내용적으로도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연방주의 예술대학들은 많은 측면에서 서독지역의 예술대학들보다 모범적이라고 할 만큼 장점을 갖고 있었다. 특히 학생에 대한 지도나 직업현장과 밀착된 직업교육 등이 그 예이다.

여기에서 검토된 대학교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연방주정부가 운영주체였다. 이곳에서도 이미 인적 감축 외에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러시아어 그리고 스포츠 과목의 폐지가 이루어졌다.

동베를린 소재 예술대학의 경우 연구와 교육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구조위원회와 교수 임용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추가적으로 연방주 대학구조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 외에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문서에서 열거된 대학들의 재건이 필요하다고 간주되었다.

이상의 권고사항은 이미 실천에 옮겨졌거나 앞으로 실행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다. 학술자문회의는 그런 계획에 대한 평가도 덧붙이고 있다.

출처\_ Wissenschaftsrat, Drucksache 510/92

신연방주 및 동베를린지역에 있어 대학도서관에 필요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것에 대한 권고

1992년 1월 24일

담당자 / 기관\_ 학술자문회의

내용\_

이 문서에서 학술자문회의는 신연방지역의 대학도서관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연방지역 대학 도서관들의 공간 문제는 현재 재앙에 가까운 상태이다. 많은 경우 장서들의 목록도 작성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귀중 고서본도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1991년도에 취득한 신규 기본장서 및 자료처리 기계들도 일부 지역에서는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건설 계획도 빨라야 5년에서 7년 이후에야 현 상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 지역의 대학도서관들의 절반은 1900년도 이전에, 다른 4분의 1은 1900년과 1949년 사이에 건설되었다. 여기에 아직까지 복구되지 못한 2차 대전의 피해도 남아 있다. 조사된 도서관들 중 40 퍼센트의 경우 신축 건물을 건립해야 한다. 그 외에 많은 중앙도서관들이 여러 건물에 분산되어 있는 상태이다. 때때로 중앙도서관에 한 동의 건물이 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신연방주들과 베를린은 총 7개의 대학도서관의 신규 건설 계획을 신청하였다. 새로운 도서관이 건설되는 기간 동안이라도 이들 도서관들이 가능한 한 빨리 기본장서, 특히 교과서 장서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학과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도서만 해도 약 670,000권에 달한다. 그것을 앞으로 12년 안에 구비할 수 있게 해야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신연방지역 대학 도서관들을 가능한 한 빨리 기존의 도서관종합검색시스템에 연결시키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신연방주정부는 대학도서관들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제안하였다. 이 문서의 부록에는 대학교들과 전문대학교의 기본장서의 확충과 관련한 전공학부별 추산이 표로 별첨되어 있다.

출처\_ Wissenschaftsrat, Drucksache 537/92



문서  
번호 83

## 에어프루트대학교 설립에 대한 의견 1992년 1월 24일

담당자 / 기관\_ 학술자문회의

###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 주정부의 요청에 따라 학술자문회의가 에어프루트시에 종합대학교를 설립하는 문제에 관해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튜링겐 주정부의 대학구조위원회에 1991년 10월에 에어프루트시에 대학을 설립하는 문제에 관해 의견을 문의해 왔다. 이에 대한 학술자문회의의 답을 준비하기 위해 위원회는 실무단을 구성하였다. 에어프루트시와 시민들은 이전에 이 도시에 존재했었던 대학의 설립 600주년을 기념하게 될 1992년에 시내에 대학을 다시 재건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기존의 대학들은 새로이 설립될 종합대학교로 통합된다면 일단 공간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수업도 신속하게 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튜링겐 주정부는 언제 에어프루트대학이 건립되어야 할지, 또 그것이 어떠한 규모로서 어떠한 학과 전공의 폭을 구비해야 할지, 그리고 튜링겐주 내 다른 대학교들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야 할지에 대해 아직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다. 튜링겐주의 기존 대학교들의 건전화 및 재건, 신설된 전문대학교의 확충을 고려했을 때, 대학구조위원회는 에어프루트시 내 종합대학교 건립은 중기적으로나 고려될 수 있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1만 명의 정원에 이르는 종합대학교를 건립할 것을 추천하였다. 우선 법학 및 경제학 그리고 인문학부가 만들어져야 한다. 건립 2단계에는 신학부 및 자연과학학부가 이에 뒤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에어프루트 종합대학교의 건립으로 인해 기존 대학교들의 건전화에 지장이 초래될 위험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 모든 조건을 고려할 때 이르더라도 1990년대 후반에나 에어프루트 종합대학교의 건립을 고려할 만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당분간은 에어프루트 종합대학교에 자연과학학부를 설립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에어프루트 종합대학교 계획은 넓은 의미의 인문과학 분야에 국한되어야 한다. 법학부 내에서는 특별히 행정학에 강조점이 주어져야 한다. 에어프루트 종합대학교 내에 고전 문헌학 설립은 추천되지 않는다. 신규 종합대학교를 위해 도시건축 아이디어 경연을 실시해야 한다.

출처\_ Wissenschaftsrat, Drucksache 538/92

담당자 / 기관\_ 대학총장단회의

내용\_

이 문서는 대학총장단회의가 1992년 초 신연방주의 대학과 연구자들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평가·작성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연방지역의 대학 외 연구기관은 통일조약에 따라 1991년도 말까지 해산 후 구조조정을 거쳐야만 했다. 대학 외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중 단지 2,000명 만이 대학교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고, 나머지 11,000명은 앞으로도 계속 대학 외부에서 연구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신연방주들은 대부분 앞으로 법정정을 통해서 대학교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전공구조 및 직위의 수요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도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때로는 대학구조위원회 및 임용위원회 간의 통합결정에 대한 대학과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교직원들의 슈타지 관련 인적 사항을 보여주는 문서가 아직 1년 이상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신연방주들에서는 60 퍼센트까지 기존 직위의 해지가 이루어졌다. 많은 경우 대학 외 연구기관 소속 학자들의 선발 과정에 대학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신연방지역의 대학생 수가 1990년 가을부터 15.2 퍼센트 정도 증가하였다. 독일연구재단(DFG)은 1991년도에 총 1억 1,850만 마르크에 달하는 재원을 신연방지역 학자들의 연구프로젝트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연방 연구·기술부는 1991년도에 총 1억 200만 마르크에 달하는 재원을 신연방지역 대학교 연구팀이 주도하는 연구프로젝트를 위해 지출한다고 발표했다. 신연방지역에서의 강의는 서독지역과 해외로부터 초빙되는 학자를 통해 보장되었다. 교과계획은 크게 조정되었고 신규 전공과정이 개발되었다. 법학, 경제학,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의 구조조정이 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총장단회의는 신연방지역의 대학교들의 기능에 있어 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문서에는 그런 문제점이 자세히 열거되어 있다.

출처\_ Hochschulrektorenkonferenz, EntschlieÙung des 166. Plenums, in: Arbeitsbericht 1992, Bonn, S. 39-44,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S. 316-319



담당자 / 기관\_ 작센 주의회

내용

이 문서는 작센 주의회가 주정부에 제출한 대학구조법안을 심의한 회의록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작센 주의회의 야당인 동맹90/녹색당의 원내교섭단체 대표 미하엘 베버는 작센 주정부가 제출한 대학구조법안을 비판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 법안은 너무 단기적인 관점만이 반영되어 있을 뿐이었다. 베버는 서독지역 대학교들의 단점이 신연방지역에 그대로 전이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대학교들의 자율성을 위협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작센주 민주당 의장인 페터 포르쉬는 이 법안으로는 대학이 안고 있는 어떤 위기도 타개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것은 단지 대학교들을 하향 평준화할 뿐이라고 비난하였다. 서독지역 대학교 체계를 작센주에 이전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하는 질문을 연방정부와 서독의 문화·학술부장관, 학술자문회의 및 작센 주정부의 그 누구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단지 '구동독의 냄새가 나는 것'이라면 다 없애버리려는 정서가 작용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포르쉬는 기민당/기사당 연합 소속 독일 연방의회의원 게어하르트 패zelt를 인용하여 "우리는 구연방주들 출신 인사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가능하다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통일 전의 서독의 과오를 반복하는 일 없이 신연방주들 내에 하나의 예술작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독교민주당 소속 에리히 뢰슬러 의원은 '산업에 필요한 기초연구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소규모 전문대학교들이 산재해 있는 현 상태'는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작센주는 독일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종합대학교, 전문대학교 및 예술대학교 간에 균형잡힌 다양성이 자리를 잡고 있다. 완전히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공산주의 이후의 구조를 견지하려 하거나 추억에 쌓여 이를 미화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대학 부문에 있어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야당도 이 법안을 공동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작센주 학술·예술부장관인 한스 요아힘 마이어는 주정부의 대학안이 현재 예산에 맞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보다는 미래에 작센주에 어울리는 대학 부문의 기본틀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대학구조법은 종합대학교 및 대학교들의 자율성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 그 외에 이 법안이 급조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랜 토론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출처\_ Plenarprotokoll Sächsischer Landtag, 1. Wahlperiode, 39. Sitzung

문서  
번호 86

작센 자유주 내 대학 관련 분야 및 대학교 구조에 대한 법안(작센대학구조  
법-SächsHStrG)

1992년 4월 10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주 총리 쿠어트 비텐콤포프; 작센주 학술·예술부장관 한스 요아힘 마이어

내용\_

이 문서는 1992년에 제정된 작센주 대학구조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1년 7월 25일 제정된 대학개혁법에는 작센주 대학이 어떤 체제로 구축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대학구조법을 통해 이 점이 수정되게 되었다. 이번 대학구조  
법에 따라 종합대학교, 전문대학교 및 예술대학교로 대학이 정착되게 되었다. 별도 사범대  
학교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은 종합대학교에 병합되게 된다. 대학  
교의 소재지는 대학개혁법에서 이미 확정되었다. 대학구조법에서는 대학 업무의 중점과제  
에 관해 설명하고, 해체되어야 할 교육기관과 유지되거나 신규설립되어야 할 기관들도 규  
정되었다. 특히 학자 및 연구원들의 선발과 인계가 확정되었다. 인력의 재배치, 해체되어야  
할 교육기관의 도서관 및 설비의 소속 변경 등으로 인해 작은 규모로 추가비용이 발생  
하게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학의 인력감축을 통해 비용절감이 될 것이다. 작센주의 새  
로운 학술정책적 이미지는 유럽 및 독일의 학문 전통에 연원을 두고, 학문의 자유와 대학  
의 자치를 강조할 것이다. 차별화, 전문화 그리고 조직적 분리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질문을  
추구하고자 하는 훔볼트와 칸트의 대학 이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이 이  
법의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

출처\_ Sächsisches Gesetz- und Verordnungsblatt, Nr. 16/1992-Ausgabetag: 08.05.1992



문서  
번호 87

##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학술원에 대한 협정 1992년 5월 21일

**담당자 / 기관**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학술원: 베를린 시장 에버하르트 뎅겐;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 내용

이 문서는 1992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학술원을 새롭게 재조직하기로 합의한 문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700년에 선제후령으로 설립된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학술원은 이제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의 공동기관으로 새롭게 재조직되었다. 법적 관할권은 베를린 법원에 있으므로 베를린 주법의 적용을 받는다.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학술원의 주된 목적은 연구지원을 통해 학문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연구자들과 사회 간의 대화를 장려하며, 특히 정책자문의 과제도 담당한다. 학술원은 총 200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학술원은 동독 학술원의 인프라 설비 및 재산을 인수받는다. 구동독지역 외에 남아 있는 프로이센 학술원의 재산도 인수받는다. 그 업무 달성을 위해 학술원은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보조금을 받는다. 이 학술원은 제3자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학술원은 공무원 계약 관계를 체결할 권리를 지닌다.

**출처** <http://www.bbaw.de/die-akademie/aufgaben-und-ziele/staatsvertrag-pdf>

담당자 / 기관\_ 비아드리나 프랑크푸르트 안 데어 오더 유럽대학교 설립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폴란드와의 국경인 오더강 유역에 있는 프랑크푸르트시에 대학을 재건하기로 결정한 합의문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브란덴부르크주에 비아드리나 프랑크푸르트 안 데어 오더 유럽대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종합대학교는 1506년 최초로 브란덴부르크지역에 설립되어 1811년 브레슬라우지역으로 이전된 종합대학교의 이름을 이어받았다. 비아드리나 종합대학교는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어권에서 3번째로 큰 종합대학교일 때도 있었다. 브란덴부르크 주정부는 이 대학교를 재건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비아드리나대학은 학문적인 협력을 통해 동서유럽 간의 문화협력에 기여한다. 특히 폴란드의 대학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3년에서 4년 정도 소요될 초기단계에 특히 경제학, 법학, 문화학 그리고 언어훈련과 관련된 과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다. 경제학의 경우 특히 동독과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 연구에 그 포커스를 맞출 것이다. 법학은 특히 국제법, 그리고 인문학에서는 지역의 정체성과 타인에 대한 관용에 관한 연구에 집중할 것이다. 국경도시에 있는 대학으로 비아드리나대학은 특히 독일-폴란드 간의 관계 정상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나아가 영국, 프랑스 등의 다른 유럽국가 그리고 유럽을 넘어선 다른 국가의 대학들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유럽대학의 명칭을 달게 될 비아드리나대학은 객원교수를 초청하기 위해 충분한 재원을 배정할 것이다.

출처\_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272-276



문서  
번호 89

튜링겐주 대학 분야 개혁을 위해(주 학술·예술부장관 연설)(발췌)  
1992년 6월 24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주 학술·예술부장관, 올리히 픽켈

내용

이 문서는 튜링겐주 학술·예술부 장관, 올리히 픽켈 박사가 튜링겐주 주의회 전체회의에서 대학개혁과 관련해 행한 연설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튜링겐주는 1990년에 6개의 대학교들을 관할하게 되었다. 튜링겐주는 다른 신연방주와 달리 이들을 전문대학교로 전환시키지 않았다. 튜링겐주에 있는 3개 전문대학교는 종합대학교를 전환시킨 것이 아니라 모두 새로 설립되었다. 튜링겐주 주정부는 대학교의 제반환경 쇄신과 확충하는 일을 중요한 과제로 본다. 10년에서 12년 후에 기존의 대학교들은 설비 및 제공되는 학과의 폭에 있어 서독지역 대학의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간 10억 마르크 이상의 보조금이 필요하다. 1991년도 초에 이 지역 대학교의 학생들과 연구원들은 가능한 한 빨리 튜링겐주 자체의 대학교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법안이 제출되었고 이제 주의회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 사이 다수의 변화가 있었다. 특히 대학입학과 관련하여 동독체제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들을 위한 규정이 변경되었다. 대학교 사무총장은 법률 전문가일 필요가 없게 되었다. 대학의 집행위원회의 구성비율이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조정되었다. 학생들은 앞으로 대학의 모든 위원회에 교수 다음으로 큰 그룹이 되며 브란덴부르크주의 대학교법과 비교할 때 투표권을 하나 더 갖게 된다.

출처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20 f.

문서  
번호 90

교사자격시험의 상호 인정에 관한 신연방주 간의 협정  
1992년 6월 26일

담당자 / 기관\_ 구동독지역의 교육부장관 및 교육부위원

내용\_

이 문서는 통일 이후 신연방주의 교육부장관들이 교사자격시험을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한 협정문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연방주 및 베를린에서 1990년 10월 3일 이전에 교사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개정된 주법에 따라 졸업시험을 치른 경우 1990년 10월 5일에 발효된 ‘교사자격증시험과 교사자격의 상호 인정’에 관한 협약에 정한 규정에 따라 1차 및 2차 교사자격증시험을 그대로 인정한다. 각 신연방주에서 제정한 교사 양성 규정에 관한 개요는 이 문서의 부록에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대학교 및 종합대학교는 이미 1991년 여름학기부터 서독지역 대학의 학업 규정 및 체계적인 학교제도에 적응함으로써 서독지역의 구연방주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시작하였다.

출처\_ Beschluss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26.9.1992  
KMK Erg.- Lfg. 75 September 1993



문서  
번호 91

###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주 재건을 위한 기본정책-교육부문

#### 담당자 / 기관

#### 내용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발표한 브란덴부르크 재건프로그램 중에서 교육과 관련된 주정부의 기본방향을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새로운 학교구조를 구축하는 사업에는 유럽의 교육정책 개발 경향과 연계, 종합학교(Gesamtschulen)를 도입, 인문계 고등반(Oberstufen)의 신설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문계고등학교와 직업학교의 신설은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그것은 지역의 학교발전정책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대학입학자격시험(아비투어) 준비 과정을 포함하는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체계의 발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학교를 연계하는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해야만 한다. 이러한 직업교육체제는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체제 하에서 학교가 경제적 진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지식과 능력의 개발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Lebenslanges Lernen)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기술세계에서 계속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전제조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교육은 경제적 성과와 같이 개인의 발전 및 직업적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학교 내부 영역에서 개별 아동 지원은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휴머니즘에 입각한 아동을 위한 좋은 학교 형성은 학교생활의 포괄적인 민주화의 범위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학교는 부모와 교육자가 참여하고 적극적인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 밖 보호는 우리 주에 있는 여성들에게 기본법에 의거하여 남녀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이다.

출처 Landesarhiv Brandenburg, Rep. 1100 Nr. 412-413 in BLHA

담당자 / 기관\_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발표한 정부정책의 기본입장에 관한 설명 중에서 학술과 연구 분야에 관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정부는 작은 규모의 거점으로 이뤄진 다수의 지역에 고등교육기관 관련 시설의 집중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지역화된 고등교육기관 발전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어쩔 수 없이 베를린과 베를린 주변의 지역을 강화시키고 브란덴부르크주의 지역들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지역화 전략과 학술자문회의(Wissenschaftsrat)가 제출한 권고안에 따라,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학술연구문화부는 주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브란덴부르크 고등교육기관법에 명시된 프랑크푸르트-오더대학, 코트부스기술대학, 포츠담대학을 설립하였다. 이 법에 따라 브란덴부르크, 에버스발데(Eberswalde), 라우지츠(Lausitz, 코트부스/젠프텐베르그 소재), 포츠담, 빌다우(Wildau) 전문대학교들도 설립하였다. 포츠담-바벨스베르그에 있는 영화 및 미디어 전문대학교 또한 브란덴부르크 고등교육기관법에 의거하여 새로운 구조를 갖추게 된다. 대학 외부의 연구기관을 재건하려는 계획과 관련하여 교육, 연구, 개발 기관의 긴밀한 연계를 추구하는 네트워크가 생겨났다. 이를 통하여 브란덴부르크주의 교육 인프라가 강력한 면모를 갖추었고, 각 지역의 사회적 발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유럽 및 동유럽을 연결하는 브란덴부르크의 연결기능(Brückenfunktion)이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출처\_ Landesarchiv Brandenburg, Rep. 1100 Nr. 412-413 in BLHA





문서  
번호 93

신원방주 대학 내 인문학학과 관련 권고[발췌]  
1992년 7월 3일

담당자 / 기관\_ 학술자문회의

**내용\_**

이 문서는 신원방주 대학의 인문학 발전과 관련해 학술자문회의가 작성한 권고안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술자문회의는 이 권고안을 통해 가능하면 신속하게 신원방주의 대학들이 인문과학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재구성할 수 있는 방안과 전망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 권고안이 인문과학의 현황과 장래에 관한 기본원칙은 아니다. 학술자문회의가 인문과학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구성한 실무단은 신원방주들의 대학구조위원회와 협의 하에 그리고 그들이 작성한 각 전공영역 관련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논의를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제출된 권고안에는 철학, 역사, 언어학, 민속학, 고고학, 동양학, 예술사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었다:

1. 전공학부들의 내용적 규정 및 조직적 형태.
2. 문화학부에 대한 포괄적인 방안.
3. 지역간의 중점사업 조성.

이 권고안은 학술자문회의가 1991년 7월 구동독지역의 대학 외 인문과학 분야와 관련해 발표한 기본입장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구동독지역의 인문과학 분야의 경우 내용적으로, 구조적으로 또 인적 차원에서도 근본적인 방향전환 내지 새로운 방향정립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이 권고안에서는 특히 그라이프스발트, 할레, 예나, 라이프치히, 로스톡 및 베를린(훔볼트대학교)의 인문학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이다.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코스부스, 프랑크푸르트 안 데어 오더 및 포츠담시의 신규 종합대학교 설립에 대해서도 별도로 의견을 피력할 것이다. 학술자문회의는 구동독지역의 인문학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서로 다른 중점영역을 형성하기를 권한다.

출처\_ Wissenschaftsrat, Drucksache 812/92

담당자 / 기관\_ 작센주 학술·예술부장관 한스 요아힘 마이어

내용

이 문서는 1992년에 슈피겔지가 보도한 기사로 신연방지역의 대학개혁 현황에 대한 작센주 교육부장관 한스 요아힘 마이어의 비판적 평가를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연방주의 종합대학교 건전화 작업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주 단기간 내에 많은 수의 교수가 새로이 임용되어야 했고, 행정기구는 축소되고 교과과정은 변경되어야 했다. 그런 조건 하에서 ‘혼란이 올 것은 거의 계획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인문과학, 경제학 및 법학의 경우 대부분 서독 출신 대학 교수를 임용하고 완전히 새로 설립되어야 한다. 이런 작업을 담당할 대학의 심사위원회들은 대학에 고용될 직원들이 도덕적으로 큰 결함이 없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신연방주의 학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대학 외 연구기관에서 대학교로 소속을 옮겨야만 한다. 신연방지역 대학교의 구조조정을 위해 2000년도까지 최소한 180억 마르크가 필요할 것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연방 교육부장관이 제시한 개혁프로그램에서는 5년 간 단지 24억 마르크만이 책정되어 있을 뿐이다. 동독체제 하에서 74,000명의 연구자를 고용했던 산학연계 연구 분야에서 종사하던 연구인력 중에 현재 4분의 1만이 남아있다. 이 지역이 ‘학술적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다. 몇몇 학자들이 해고조치에 반발해서 연방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부분 패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역 출신의 학생들이 이미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학생 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독지역의 대학교로 대거 몰려 갈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_ Der Spiegel, 34/1992



문서  
번호 95

주교육자문위원회 업무에 관한 작센주 문화부의 답변(상급학교 감독청에 대한 자문)

1993년 1월 29일

**담당자 / 기관** 작센주 문화부; 주의회의원 안키에 루쉬

**내용**

이 문서는 작센 주정부가 주교육자문위원회와 관련한 주의회의 질의에 대해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작센주학교법에 따라 주교육자문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와 관련한 명령이나 법안을 작성하기 전에 주교육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만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주교육자문위원회는 총 5개 명령에 대해 자문을 주었는데, 그 자문내용은 최종안에 반영되었다. 자문위원회는 나아가 최상급 학교감독청에 권고 및 의견을 전달할 권리를 지닌다. 앞으로도 자문위원회는 학교부문에 대한 기본적 법안에 대해 자문을 줄 것이다.

**출처** Paramentsdokumentation Sächsischer Landtag, Drucksache 1/2710; Antwortschreiben des Sächsischen Staatsministeriums für Kultus, Aktenzeichen Z-0141.5/592

보도자료: 학술자문회의는 베를린-포츠담지역 소재 대학들의 자연과학 분야 학과들 발전계획 간에 상호 조율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다.

1993년 2월 8일

담당자 / 기관\_ 학술자문회의

내용\_

이 문서는 학술자문회의가 배포한 보도자료로 베를린과 포츠담지역의 자연과학 관련 학과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베를린과 포츠담지역에 독일 내에서도 매우 큰 규모로 대학 및 대학 외 연구기관의 수학 및 자연과학연구소가 설립될 예정이다. 학술자문회의는 주대학구조위원회와의 합의 하에 자연과학과 공학과학이 갖는 지역적, 국가적 의미와 이 분야의 연구능력을 고려해서 이 분야는 가능하면 예산의 감축으로부터 보호하기를 권한다.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장기적이고 점차적으로 실행하며, 해당 학과에서 핵심적인 교수진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선 다른 교수직(Eckprofessur)부터 신규 임용하도록 한다. 나아가 교수직의 수를 가능하면 감축하고 계약직 연구원의 자리를 늘리도록 한다.

그 외에 베를린공대와 베를린자유대는 학교규정 및 시험규정으로 인해 자연과학전공 학생들이 지나치게 오랜 기간 재학하거나 학업을 포기하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나아가 베를린의 3개 종합대학에서 교직과 관련된 수업이 분산되어 있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그로 인해 교직을 이수하는 것이 매력적이지 못하고 투자한 노력에 비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적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자연과학 분야 교직전공은 베를린자유대 및 베를린 훔볼트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베를린공대에서는 이를 폐지하기를 제안한다.

출처\_ Wissenschaftsrat, Pressemitteilung 8/93



문서  
번호 97

신연방주 그리고 통일독일에서 학술과 연구 기반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A장. 신연방주 대학 분야의 재구성

1993년 3월 2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정부

내용

이 문서는 연방의회의 요구에 따라 연방정부가 제출한 통일 후 학술연구기반의 강화에 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보고서는 구동독지역의 학술연구부문 전환 과정이 서술되었다. 이 지역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연구에 대해서는 1993년도 여름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신연방지역 대학교들의 구조조정 목표는 국제적 학문수준에 맞추고 대학 외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을 대학 내로 통합시킴으로써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것에 있다. 또한 긴급하게 시설개선 및 보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대형 설비 및 컴퓨터 그리고 서적들을 구비할 수 있어야 한다. 신연방주 주정부들과 해당 대학교들은 독일의 학술조직 체계로 통합되었다. 나아가 각 주별로 대학교법을 제정하였고, 대학교의 소재지를 확정하는 한편 전문대학교의 토대를 기초했다. 신연방주에 신설된 대학구조위원회들은 각 주에 소재한 대학교들의 구조와 발전을 위한 자문을 해준다. 연방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대학교 제반환경의 구조변화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1991년도 7월에 시작된 신연방주 내 대학 및 연구 개혁프로그램(HEP)을 소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신연방주의 학술연구 지원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로서 1996년도 말까지 24억 300만 마르크에 달하는 재원이 배정되었다. 여기에 포함된 학술연구자통합프로그램(WIP)에 따라 현재 1,920명의 학자가 지원을 받는다. 이 보고서에 첨부된 부록에서는 개별 전공 분야들에 대한 학술자문회의의 자문 내용의 요약을 읽을 수 있다.

출처\_ Parlandsdokumentation Bundestag, Drucksache 12/4629

신연방주 그리고 통일독일에서 학술과 연구 기반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B장. 신연방주 대학 외 연구 분야의 재구성

1993년 3월 2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의회의 요구에 따라 연방정부가 제출한 통일 후 학술연구기반의 강화에 관한 보고서 중 대학 외 연구기관에 관해 기술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도 여름에 이미 서독의 연방정부와 연방주들, 학술 단체들 및 연방 연구·기술부는 동독지역에서의 학술 연구 부문의 재편성에 대해 논의를 나눈 바 있다. 그때 학술자문회의에 동독지역 대학 외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도 요청하였다. 통일 이후 동독 학술원 산하 연구기관들을 1991년 12월 31일자로 모두 폐쇄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통일 직후인 1990년 10월 11일에 연방정부의 연구·기술부는 '통일독일에서 연구·개발 부문의 전망(신연방주들에 대한 8개항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학자들은 국제적 학문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며, 몇 가지 연구 및 기술 분야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특히 대학 외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역량을 대학교 내로 통합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평가하였다. 당시 학술자문회의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학술 및 연구 부문의 문화적이자 경제적 역할에 대한 설명이 있다. 학술자문회의는 연구 분야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또 연구 체계를 경쟁력있게 재건해야 한다고 권했고, 그와 관련하여 7개의 기본원칙을 설명하였다. 나아가 2,000명의 학자들을 대학교들로 통합시키고 나머지 11,000명의 연구자들은 대학 외 연구기관들에서 연구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하였다. 대학교들의 신설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1991년 7월 11일에 도입된 신연방주를 위한 대학개혁프로그램(HEP)이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와 연방주들의 합의 하에 도입된 것으로 1992년도에 총 24억 3,000만 마르크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연방정부와 연방주들은 1992년 1월 1일부로 총 108개의 연구기관들을 설립하였다. 그 리스트는 이 보고서의 부록으로 포함되어 있다.

출처\_ Parlamentsdokumentation Bundestag, Drucksache 12/4629



문서  
번호 99

동독에서 이수한 교직과정의 인정에 관한 협정  
1993년 5월 7일

담당자 / 기관\_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내용\_**

이 문서는 성공적인 통합의 달성을 위해 연방주의 교육부장관들이 합의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체제에서 이수한 교사양성 과정은 각 연방주에서 유효한 정규과정 또는 각 법적 규정에 따라 부록 1에서와 같이 연방급여규정 A호봉군으로 분류한다. 이는 동독체제에서 양성교육을 마치고 신연방주 및 베를린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에 한하여 적용된다. 해당 교사의 경우, 특정한 전제조건에 따라 수습근무 및 2차 국가고시를 교사 활동 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증명확인절차는 각 주법에 따라 실시된다. 증명확인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a) 일반 공무원법의 전제조건, b) 2차 급여 경과규정 취득을 위한 시험을 이수, 국가시민교육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는 배제, c) 최소 총 3-4년의 재직기간에 대한 증명, d) 50세 미만

여기서 언급된 증명확인절차와 관련한 방식 및 기준은 이 문서의 부록 2에서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증명확인절차는 최고 관할 관청에서 a) 인사 기록, b) 교사보습교육 참여 증명 및 c) 적합한 공무원에 의한 전문적 평가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심사결과와 소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업참관과 개별면담이 필수적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a) 중기 수업계획 제출, b) 수업과 교육과 관련된 성과 및 능력, c) 필요 시 더 높은 지위에서의 성과 및 능력, d) 수업방문 후의 면담 평가, e) 일반적인 인격 및 자질, f) 기타 요소, 특히 의무의식.

신연방주에서 활동하지 않는 교사들도 1990년 10월 5일에 체결된 '구동독지역에서 취득한 교사자격의 인정에 관한 임시적 기본 원칙'에 따라 교사자격을 인정받는다.

**출처\_** Beschluss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07.05.1993.

KMK Erg.-Lfg. 79. September 1994.

담당자 / 기관\_ 학술자문회의

내용\_

이 문서는 학술자문회의가 통일로 인해 한 도시의 동서지역에 모두 종합대학과 예술대학이 존재하게 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 베를린의 대학 중에서 서베를린에 소재한 예술대학을 평가하고 제출한 권고사항에 대해 배포한 보도자료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술자문회의가 베를린 예술대학(HdK)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것은 학술자문회의가 통일 이후 처음으로 서독대학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통일 후 동서베를린에 위치한 예술대학 간의 경쟁이 심화되었다. 이 때문에 학술자문회의는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전공가능한 분야를 예술 및 예술학적 분야 및 그에 상응하는 예술 관련 교직전공으로 한정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 외 예술과 무관하거나 미미한 정도로만 관련이 있는 학문 전공 분야들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인쇄출판 분야 및 교육학과 사회학 전공 분야들은 각각 공업전문대학 및 훔볼트대학으로 이전통합하라고 제안했다.

학술자문회의는 유사한 학교들이 동베를린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서베를린이 통일된 상황을 감안했을 때, 대학의 규모확장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오히려 베를린 예술대학의 입학정원을 종전의 3,700명에서 3,200명으로 감축하라고 권했다.

출처\_ Wissenschaftsrat, Pressemitteilung 14/93





문서  
번호 101

### 튀링겐주 학교법(ThürSchulG)

1993년 8월 6일

**담당자 / 기관** 주의회 의장 고트프리트 뮐러(페터 박하우스 주의회 부의장)

#### **내용**

이 문서는 튀링겐주 학교법으로 튀링겐주 내 다양한 형태의 학교, 직업학교 및 특수학교와 (성인대상의 중고등학교 등을 포함한) 특별학교의 구조와 기능을 규율한다. 그 외에도 이 법은 학교운영주체, 교육의 의무 및 교사, 학생 및 학부모 공동협회의 기능을 규정한다. 이 법은 어떠한 학교 형태에서 어떠한 교과수업이 이루어지고 몇 년의 학기 이수 후에 어떠한 종류의 이수자격이 취득될 것인지를 일반적으로 규정한다.

튀링겐주에서는 종교 과목과 윤리 과목이 정규 교과목으로 도입되었다. 만 14세가 넘게 되면 학생은 스스로 종교 과목과 윤리 과목 중 어느 쪽을 배울지 선택할 권리가 생긴다. 교과 과목의 내용과 종류, 범위 그리고 학교규칙 및 시험규칙에 대해서는 튀링겐주 교육문화부가 책임지고 결정한다. 성교육은 전 교과에 포괄적인 내용으로 반영되어 교육이 이루어진다.

주정부의 문화부를 자문해 주기 위해 주차원의 학교자문회의(Landesschulbeirat)를 설립한다. 이 기구는 각각의 학교 형태를 대표하는 교사 및 학부모, 유치원 교사 및 특수학교 교원, 학생 및 사립학교들 및 그 외 교육부문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출처**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Thüringen, Nr. 21-Ausgabetag: 12. August 1993

보도자료: 베를린-아를리스호프 내 화학연구센터의 미래가 보장되었다.  
1993년 8월 12일

담당자 / 기관\_ 학술자문회의

내용\_

이 문서는 학술자문회의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로 베를린 동남부 아를리스호프의 화학연구센터의 장래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와 베를린 시정부는 베를린에 응용화학연구소의 건립을 위해 다음 10년 간 250에서 300억 마르크를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미 업무를 시작한 설립위원회는 산업체, 연방정부, 베를린 시정부 및 저명한 화학 분야 학자들로 구성되었다.

응용화학연구소는 150명 이상의 자체 소속 연구원 및 산업체가 자원을 조달하는 70여 명의 외부 연구원을 고용할 것이다. 충분하게 외부 재원이 조달될 때까지 초기에는 그중 25명의 연구원에 대해 연방정부 및 베를린 주정부가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학술자문회의는 베를린 응용화학연구소의 건립과 함께 동독체제에서 학술원 소속이었던 산하 연구기관들의 최종 처리가 거의 완료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새로 건립한 연구소의 능력 평가는 설립 후 약 7년 후에 자세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출처\_ Wissenschaftsrat, Pressemitteilung 18/93



**문서 번호 103**    **교육-학술노조의 요구사항-  
'동서독지역에서의 교직 평등을 위하여'**  
1993년 10월

**담당자 / 기관**\_ 교원노조(GEW)

**내용**\_

이 문서는 교원노조가 1993년에 새로이 제출된 임금급여체계 법 초안을 비판하며 자신들의 요구를 발표한 문건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원노조는 연방정부가 1993년 8월 3일에 마련한 구동독 및 구서독지역 교사들의 차등평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교사 급여 변경에 관한 법 초안에 반대하며, 동독 양성교육을 받은 교육인력의 평등을 요구한다. 이 법 초안은 1993년 5월 7일 그라이프스발트에서 체결된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의결안과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당시 작성된 의결안은 이전까지 논란이 되었던 교사집단, 특히 저학년 교사들의 지위 및 급여 평등화를 제안한 반면, 지금 제출된 법 초안은 저학년 교사들의 등급을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의 제안보다 한 단계 낮은 급여그룹만큼 하향 조정하여 초등교사의 차등대우를 정착시키려고 한다. 이는 신연방주의 교사들 사이에서 불만과 불쾌함을 유발할뿐만 아니라 동독시기에 교직을 이수한 교사들이 구서독 교사들 뿐만 아니라 현재 구동독지역에서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후진 교육인력에 비해서도 낮은 급여그룹으로 분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교원노조는 일반학교 교사, 특수학교 교사 및 직업학교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사그룹에 대한 요구사항을 요약문으로 정리하였다. 한 예로 일반 종합기술고등학교의 저학년 교사의 경우 2차 급여 경과규정에 따라 급여그룹 A10으로 분류되는 반면, 구연방주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급여그룹 A12로 분류된다.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의 제안에 따라 해당 교육인력은 급여그룹 A11/12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법 초안은 해당 교육인력을 계속해서 급여그룹 A10으로 분류할 것을 지시한다. 교원노조는 해당 교사그룹을 위해 장기적으로 급여그룹 A12의 초등학교 교육인력과의 동등화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여그룹 A11의 지위를 요구한다.

**출처**\_ Gewerkschaft Erziehung und Wissenschaft, Oktober 1993. Aus dem Archivraum der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담당자 / 기관\_ 독일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체

내용\_

이 문서는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장관회의 중등교육 1단계 교육과정에 관해 합의한 것이다. 여기에는 학교부문의 구조 및 다양한 학교 종류의 특징과 그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졸업증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주들의 절대 다수 지역에는 하웁트슐레, 실업학교, 김나지움 및 종합학교의 네 종류의 학교 형태가 존재한다. 그 외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들이 추가된다. 이와는 달리 몇몇 연방주들에는 별도의 학교형태가 존재하기도 한다. 중등교육 1단계의 모든 학교유형과 교육 과정은 보편적인 기초교육, 개별 학생마다 다른 측면을 증시하는 교육, 그리고 학생 능력에 상응하는 식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기본원칙이 전제가 된다. 이때 그 다음 단계의 교육 과정을 앞둔 5학년과 6학년은 특별한 지원과 관찰 그리고 방향설정 에 대한 상담이 중요한 내용이 된다. 7학년부터 각 학교유형들 간의 차이는 제공되는 교과들이나 학생 개별적으로 정한 중점사항과 관련해 요구되는 사항들 그리고 목표로 하는 졸업증 등의 상이함 때문에 점점 더 커진다. 여러 종류의 교육과정이 제공되는 학교의 경우에 학생들이 취득하게 될 졸업장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학급을 구성해서 수업하게 된다.

출처\_ Sekretariat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Vereinbarung über die Schularten und Bildungsgänge im Sekundarbereich I(Beschluss der 266. Kultusministerkonferenz vom 03.12.1993), Bonn, KMK(sg22Fu5),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08-311



문서  
번호 105

학술연구자통합프로그램(WIP)의 실행에 관해-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를 중심으로  
1994년

담당자 / 기관\_ 카트린 랑에

내용

학술연구자통합프로그램(WIP)은 신연방주 내 대학 및 연구 개혁프로그램(HEP)의 일환으로 기획되고 실시되었다. 신연방주 내 대학 및 연구 개혁프로그램(HEP)에 따라 실력을 갖춘 구독일민주주의공화국 학술원 소속 학자들과 연구팀들, 그리고 연구소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학술자문회의가 요구하였다. 학술자문회의는 이들이 앞으로 신연방주들의 대학교로 통합되어야 된다고 권고하였다.

출처\_ Beiträge zur Hochschulforschung 1994, Heft 3

문서  
번호 106

## 교사 설문지

1994년 2월 25일

담당자 / 기관\_ 교육, 청소년 및 스포츠 정부 행정처, 베를린주 교육청

###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시기에 이미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사람들이 통일 후 계속 근무하기 위해서 제출해야만 했던 교사 설문지이다. 신연방지역의 모든 교사들은 증명확인을 위해 이 설문지에 답을 작성해야만 했다. 설문지는 첫째, 교사로서의 자질에 관한 개인 진술 그리고 둘째, 동독에서의 슈타지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설문지에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기술한 것이 드러날 경우 그것은 해고의 근거가 되었다. 그 이유는 이 설문지의 마지막 장에 포함된 사실진술 보증에 대한 확인에 본인이 직접 서명했기 때문이다. 사실진술을 확인하는 문구는 다음과 같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사실대로의 진실을 진술한 것을 서약한다. 만약 위 사실에 거짓이 있으면, 이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한다.”

출처\_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문서** '교사들의 압력/신문기사  
**번호 107** 1994년 6월

**담당자 / 기관** 해당 교사들

**내용**

이 문서는 1994년에 일어난 구동독지역 교사들의 시위에 관한 신문보도기사 모임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4년 6월 8일에 브란덴부르크에 소재한 약 1,000개 학교 중 100개 이상의 학교들이 통일된 독일 전국에서 동등한 급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동맹 파업을 벌였다. 이 시위는 이어 신연방주와 베를린에서 벌어진 시위운동의 발단이 되었다. 6월 14일에는 독일 전역에서 모인 수천 명이 넘는 교사들이 시위에 가담했다. 시위의 계기는 연방회의(Bundesrat)가 제출하고 연방의회(Bundetag) 내무위원회가 심의하게 될 교사급여 관련 법 초안이었다. 급여법의 변경을 위한 법 초안은 2차 경과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구동독지역의 초등학교 및 직업학교 교사들을 급여그룹 A10 및 A11로 분류하고, 구서독지역의 교사들을 급여그룹 A11 및 A12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은 구동독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의 급여가 구서독 동료들의 급여보다 2개 등급까지 낮게 분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회의는 구동독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육전문학교를 다녔고,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논거를 제시하였다. 그에 대해 교원노조와 약 5만 명에 달하는 신연방주 초등학교 교사들은 설령 급여동등화를 급하게 실현시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는 궁극적으로 전반적인 구동독 교육체계를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자신들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평가절하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Tagesspiegel vom 8. 6. 1994, Frankfurter Rundschau vom 15. 6. 1994, Frankfurter Allgemeine vom 15. 6. 1994, Süddeutsche Zeitung 15. 6. 1994.

담당자 / 기관\_ 독일 연방의회의 내무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교사급여문제에 관한 신문기사이다. 이 기사에는 독일통일 5년 후에서야 구동독 교사들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한 독일 연방의회 내무위원회의 결의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 연방의회 내무위원회는 작센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발의한 구동독 양성 교육을 받은 교사들의 급여등급을 계속해서 2단계 낮게 평가한다는 내용의 법 초안을 기각하고, 각 신연방주에 교사급여의 규정을 결정할 권한을 위임한다. 이에 따라 신연방주들은 1995년 말까지 교사들의 등급을 직접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동독체제 하에서 대학교 교직교육을 받지 않고 교사로 임용된 약 4만 명에 달하는 초등학교 교사들도 새로운 급여제도를 적용받게 되었다. 작센주를 제외한 모든 신연방주들은 교사들의 급여등급을 구서독지역의 기준에 맞추려고 한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교육부장관 슈테피 슈노어(Steffi Schnoor)(기민당)에 의하면 교사들의 급여동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 이미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 베를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위르겐 클레만(Jürgen Klemann)(기민당)은 1만 4,000명의 구동독 교사들의 등급을 내년 안에 구서독 교사들과 동등하게 분류하고자 한다고 발언했다. 작센-안할트주 교육부장관 라이너 슐부르크(Reiner Schomburg)(기민당)는 '그라이프스발트 결의안'에 상응하는 봉급의 동등화를 제안하였다. 브란덴부르크 교육부장관 롤란드 레쉬(Roland Resch)(녹색당)는 연방정부가 너무 늦게 이와 관련된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하였다. 튜링겐주 교육부장관 디터 알트하우스(Dieter Althaus)(기민당)는 연방정부의 결정을 '통일된 법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한 기회'라고 말하며 구동독지역의 합의를 방해했다고 작센 주정부를 비난하였다. 그는 작센주가 재정적인 이유로 인해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_ Zeitungsartikel aus „Neue Zeitung“, „Tagesspiegel“, „Berliner Zeitung“ vom 16.06.1994





문서  
번호 109

학술연구자통합프로그램 및 신연방주 내 대학 및 연구 개혁프로그램(WIP-HEP)의  
재원 및 프로그램 적용 연구자들의 임용기간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

1994년 6월 2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내용\_

사민당 소속 독일 연방의회 의원 헬가 오토 박사는 연방정부에 대해 학술연구자통합프로그램(WIP)에 충분하게 재원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하였다. 또한 해당 학자가 종전의 경력기간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질의하였다. 연방 연구·기술부 담당자의 답변에 따르면, 학술연구자통합프로그램에는 6억 마르크의 예산이 계획되었다. 경력기간의 인정은 연방공무원 급여체계에 따르는데, 여기에는 이미 1991년 1월 1일 이전 시기를 고려하는 경과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사립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경력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연구원도 있다. 연방 연구·기술부는 연방 내무부 및 독일 연방주 급여협회와 경력기간의 인정에 대해 합의하였다.

출처\_ Plenarprotokoll Bundestag, 12. Wahlperiode, 235. Sitzung

담당자 / 기관\_ 대학총장단회의

내용\_

이 문서는 대학총장단에서 작성한 것으로 신연방주 대학의 연구현황에 관한 분석과 권고를 담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연방주에서는 전문대학교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변화가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했다. 그 와중에 60 퍼센트 가량의 일자리가 감축되었다. 한편 신규 채용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 연령 구조로 인해 다수의 직위 공백을 예상해야만 한다. 공간부족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건물의 기본적 상태도 부분적으로는 재앙에 가까울 정도로 열악한 상태이다. 도서관은 도서관으로 기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 결과 학문 후속세대가 대학 외 연구기관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구동독지역 경제의 붕괴로 인해 외부로부터 연구프로젝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리고 대학들은 예산과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대학총장단회의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간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발전의 균형을 추구할 것. 대학교, 연방주, 연방정부 및 사적 재원출연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중기적인 계획의 보장. 대학건물 및 설비 그리고 도서관 시설을 위한 재원의 증대. 교수자격준비과정의 지원. 동독지역 소재 재단들의 계속된 적극적 참여 유도.

출처\_ Hochschulrektorenkonferenz(Hrsg.). Dokumente zur Hochschulreform Nr. 97/1994.

Bonn,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21-323



문서  
번호 111

베를린 공공부문의 소득 균등화에 관한 법(소득균등화법-EinkommAngG)  
1994년 7월 7일

담당자 / 기관\_ 베를린 의회, 현직 베를린 시장 에버하르트 디프젠(Eberhard Diepgen)

내용

베를린 의회는 동서지역 공공 분야의 공무원 봉급을 단계적으로 균등화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국가 예산안에 따라 공공 분야의 임금 협약에 따라 구동독지역의 임금 직급에 속하는 근로자의 급여등급을 매년 단계적으로 1996년 10월 1일까지 100%까지 상향 조절할 예정이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Berlin. 50. Jahrgang. Nr. 35. 16.07.1994

문서  
번호 112

교사 급여규정의 변경에 관한 법  
1994년 8월 23일

담당자 / 기관\_ 독일 연방의회

내용\_

연방의회는 연방회의와의 협의 하에 교사 급여규정의 변경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동독체제 하에서 교사자격을 획득한 교사들에게도 교사를 연방급여규정과 지방급여규정의 A호봉 그룹으로 분류하는 법을 적용하게 된다.

출처\_ Archiv der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문서 번호 113** 동독지역 대학개혁 결산(작센주 학술·예술부장관 강연)(발췌)  
1994년 12월 7일

**담당자 / 기관** 작센주 학술·예술부장관 한스 요아힘 마이어

**내용**

이 문서는 과도기 동독 개혁정부의 마지막 교육부장관이었고, 통일 직후 작센주의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한스 요아힘 마이어가 1994년에 강연한 원고로 신연방지역에서 이루어진 대학개혁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언급할 것은 신연방지역에서 이루어진 대학개혁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은 무엇보다 동독체제 하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했던 대학 인사들을 해고한 것이었다. 작센주의 신규 교수초빙 과정을 보면 신규초빙되어야 할 교수직의 88 퍼센트가 정식으로 초빙을 받아들였거나 현재 교수대리로 충원되었다. 교수초빙 대상자의 66 퍼센트는 신연방 지역 출신이다. 작센주에서 교수직 중 여성의 비율이 단지 9.5 퍼센트로 여전히 낮은 편이지만, 현재 서독지역의 다른 대학에서도 여성교수의 비율은 5 퍼센트에 불과할 뿐이다. 현재 작센주 교수의 5분의 1만이 1989년 10월에 교수로 재직하였다. 교수 초빙 전에 학문부문 중간층에 속했던 상당수가 대학 교수로 초빙받았다. 다수의 교수가 서독지역과 해외로부터 초빙되면서 작센주의 대학교에 새로운 경험과 전문능력이 빠르게 축적되었다.

마이어 장관은 작센주 내에서의 노동법소송과 관련한 간단한 설명에 이어 1989-1990년 전환기에 대학의 연구진들과 함께 학생들이 학교개혁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언급했다. 그는 대학 및 대학 외 연구기관 간의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동독체제 하에서도 대학은 연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었다. 동독 시절에 교육과 연구가 분리되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그는 통일 직후 자주 언급되었던 대학 외 연구기관을 대학 내로 통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리고 그는 인문과학이 독일 연구환경에서 더 많이 장려되어야 한다는 학술자문회의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출처** Sächs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Wissenschaft und Kunst(Hrsg.). o.J. Die Hochschulen in den neuen Ländern. Eine problemorientierte Bilanz. Dresden,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324-326

담당자 / 기관\_ 교육청, 베를린 학교, 청소년 및 스포츠 정부부처 행정실

내용\_

이 문서는 통일 후 베를린 교육청과 시정부가 교육 관련 공무원을 평가하는 절차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오랜 논쟁을 거쳐 베를린 각 지역에 교육청 제5국이 제출할 평가인의 소견서를 작성, 제출하는 절차와 관련 다음과 같이 결정이 내려졌다. 평가인 소견은 전적으로 교육청 제5국 소속 고위 관리와 장학사 또는 대리인에 의해 작성된다. 수업참관은 최소 7일 전에 학교측에 통보하고, 학교측은 해당 교사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모든 수업시간(45분) 그리고 제출된 수업단위에 대한 수업초안(90분)이 평가 대상이 된다. 이어서 각각 45분 동안 심층면담과 교육법/교육학 그리고 교수법 및 교수학에 관한 인터뷰가 진행된다. 1차 수업참관을 통해 충분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을 경우, 6개월 이내 수업참관을 다시 실시한다. 평가인의 소견서는 평가기관에 보고하여 제출한다.

출처\_ Landschulamnt 02.05.1995. Archiv der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문서 번호 115 교사자질 심사를 위한 평가인의 소견서 작성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제안  
1995년 5월 31일

담당자 / 기관\_ 지방교육청 부서 III

**내용\_**

이 문서는 베를린 교육청이 작성한 것으로 동독체제에서 교직을 이수한 교사의 자격심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할 평가인의 소견서 작성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청의 제3국은 모든 학교 감독부서의 동의 하에 조정된 행정구역별 특징을 고려한 단일화된 절차를 도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평가자의 소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아래 언급된 담당자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한다.

- a) 교육청의 고위 관리 및 장학사, 학교 행정처 부서 II-V
- b) 구서독지역 교육청의 고위 관리 및 장학사
- c) 자체 지역을 제외한 구동독지역 교육청의 고위 관리 및 장학사
- d) 구동독 및 구서독지역의 교생 실습 세미나의 지도교수
- e) 구동독 및 구서독지역의 세미나 상임 지도교수
- f) 구동독 및 구서독지역의 수업참관 및 심층면담 세미나의 상임 지도교수

심사절차의 규모 및 시간은 다음과 같이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 수업계획안 최대 5장
- 심층면담 최대 45분
- 교육법/교육학 최대 45분

**출처\_** Landschulamt 31.05.1995. Archiv der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담당자 / 기관\_ 한스-게오르크 볼프

내용

동독 학술원은 그 고용 인원이 거의 2만 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동독 전체의 연구·개발 부문의 약 14 퍼센트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그렇기에 동독 학술원은 동독 내에서 가장 중요한 비산업체 연구단체였다. 당시 서독에 퍼져 있던 생각과는 달리 동독에서의 연구부문이 완전히 대학교 외부로 분리된 것은 아니었다. 동독의 학술 부문, 그리고 특히 학술원은 1989-1990년도의 사회적 변혁을 추동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학술원에도 소위 '원탁 회의'가 구성되어 학술원 지도부와 공동으로 결정을 내렸다. 국가보위부 요원의 활동에 대한 과거청산 작업도 시작되었다. 학술원의 예산은 그 사이에도 계속 보장되었다. 국제적 그리고 동서독 간의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학술원 산하 연구기관들은 학술적 네트워크를 넓히고 더 나은 설비를 갖추게 되었다. 이 협력 단계에서 서독측 파트너의 주된 목표는 동독지역 연구부문에 대한 정보를 개선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 학술원 내부에서는 학술원 및 그 산하 기관의 미래에 대한 무수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학술원 내부의 변화 속도는 비교적 빠르긴 했으나, 정치적 변화의 속도에 비견해서는 여전히 느린 편이었다. 학술원의 지도부는 얼마 안되어 정당성과 관철력을 상실하였다. 동시에 서독 지역의 언론 매체들은 학술원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학술원 산하 기관들은 외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외부 평가는 단지 학술자문회의가 나중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데 기초 자료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1990년 7월 3일에 동·서독 학술·연구부 장관들, 연방주들의 대표들 그리고 학자들과 산업체 대표들의 대담에서 경제자문단(Wirtschaftsrat)이 동독의 연구 부문을 평가할 것이 결정되었다. 1990년 7월에 학술원 원장은 학술원 및 산하기관에 대한 협상을 '점령 협상'이라고 묘사하였다. 1990년 7월부터 학술원 내에서 인력 감축은 신속하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문서의 두번째 부분에서는 학술자문회의의 학술원에 대한 평가 결과 및 그 추후 문제가 상세하게 설명된다.

출처 Wolf, Hans-Georg. 1996. Organisationsschicksale im deutschen Vereinigungsprozeß. Die Entwicklung der Institute der Akademie der Wissenschaften der DDR. Frankfurt a.M., New York: Campus Verlag, S. 31-73





문서  
번호 117

동독지역의 새로운 연구환경-그 특징 및 신연방주 경제에 대한 영향  
1996년

담당자 / 기관\_ 베르너 메스케; 과학학회

**내용\_**

이 문서는 1996년에 발표된 논문으로 신연방지역의 연구환경 변화가 경제에 준 영향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연방지역 경제의 변환에 있어 신기술이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신연방지역의 체제변화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대부분 독일사회 내부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서독지역의 삶의 질을 균등화하는 문제는 1950년대 말 프랑스령이었던 자를란트지역을 서독의 연방주로 통합했던 경험과 비교할 만하다.

구동독지역의 생산·연구 분야의 역량이 많이 와해되었다. 특히 서독에 이미 유사한 것이 존재하는 분야에서는 그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심지어 기계설비생산과 같이 동독의 산업생산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분야까지도 서독의 경쟁회사들이 정치적, 경제적 압력을 행사해서 폐쇄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조치가 취해진 이유가 완전 고용이나 높은 경제성장보다 경제적인 생산효율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생산·연구 분야의 인력 이동 또한 아주 높았다. 통일 당시에 비교할 때 구동독지역 경제에서 약 20에서 25 퍼센트의 연구·개발 부문 인력이 감소하였다. 대학 외 연구기관에서는 약 3분의 1 정도의 감축이 일어났다. 대학교들에서는 약 60 퍼센트까지 감원이 이루어졌다. 대학의 중간연구층에서 절반 정도의 인력이 감축되었다. 구동독지역의 연구·개발 부문에 남아 있는 연구인력의 80 퍼센트는 500명 이하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중 40 퍼센트는 심지어 100명 이하를 고용하는 회사에 근무한다. 통상적으로 취약한 자본적 토대 및 시장적 위치 때문에 이들은 고도의 투자를 요하는 생산품에 창의성을 발휘하거나 이를 실현할 능력을 쌓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독지역의 연구소들은 대부분 서독지역 기업들의 용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서독지역의 시장도 정체를 겪고 있다. 그로 인해 구동독지역 기업의 연구의 상당한 부분은 공적지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구동독지역에 경쟁력 있는 지역혁신체제를 건설하는 것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출처\_** Meske, Werner. 1996. „Die neue ostdeutsche Forschungslandschaft. Besonderheiten und Konsequenzen für die Wirtschaft der neuen Länder“ in: Greif, Siegfried, Hubert Laitko und Heinrich Parthey(Hrsg.). Wissenschaftsforschung. Jahrbuch 1996/1997. Berlin

1996년 1월 18일

####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 내용\_

이 문서는 신연방주의 대학교육과 연구지원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의 연장과 관련한 연방의회의 심의기록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민당 소속 독일 연방의회 의원 티로 브라우네는 독일 연방의회 전체 회의에서 199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연방주 내 대학 및 연구 개혁프로그램(HEP)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 지역의 학술적 구조변화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이 정치적 과제로 규정한 독일국민이 독일 전역에서 균등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데 일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민당 독일 연방의회 원내교섭단체는 2000년도까지 시행될 새로운 대학특별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브라우네 의원은 연방정부의 위르겐 류트키 교육부장관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신연방주들은 여전히 충분한 자생력을 축적하지 못했고, '풍요로운 도시경관'은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동독체제 하에서 대학들이 연구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짐작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한편 기민당/기사당 연합 소속 에곤 위트너 의원은 신연방지역에 전문대학교를 구축하기 위해 190명의 대학설립을 담당할 총장과 및 학과설립을 추진할 교수가 초빙되었고 그 비용은 신연방주 대학 및 연구 개혁프로그램(HEP)을 통해 지원되었다고 응수하였다. 그는 나아가 대학의 시설과 설비를 위한 비용은 원래 연방주들이 담당해야만 하지만, 통일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신연방주의 대학시설과 설비를 위해 소요될 재원을 보조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고 지적하였다. 연방정부와 연방주가 분담하는 일반적인 재정 보조금 비율 50 대 50을 초과하여 지원하였으며, 특히 신연방주 내 대학 및 연구 개혁 프로그램(HEP)의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75 퍼센트를 부담하였다고 강조했다. 동독의 지배 정당이었던 사회주의통합당의 후신인 민주사회당 소속 루드비히 엘름 의원은 연방정부가 1996년에는 독일 모든 대학들이 유사한 조건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연방정부가 교육 연구와 같이 아주 민감한 문제를 파괴적이며 거칠게 다루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사민당의 제안은 비록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그 중에 몇 가지 불분명하거나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점이 있기 때문에 민사당도 자체적인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민당의 굿마허 의원은 1996년 이후에도 신연방지역의 학자들을 통합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한편 베르트 노이만 연방 교육·학술·연구·기술부차관은 동독체제 하에서 지난 40년 간 실책이 범해졌던 것을 생각할 때 현재의 상황은 벌써 많은 성과가 달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연구 및 학술 부문에서 통합은 다른 모든 부문들에서보다 더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유효성을 엿볼 수 있는 곳도 있다고 하였다. 연방정부가 사민당보다 적게 학술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사민당이 이 부분에서 너무 과욕을 부린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응수하였다.

출처\_ Plenarprotokoll Bundestag, 13. Wahlperiode, 80. Sitzung

문서  
번호 119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결의안에 따른 증명확인-  
1993년 5월6일/7일 '그라이프스발트 결의안', 제2항  
1996년 2월 21일

**담당자 / 기관** 작센안할트주 교육부, 막데부르크 상급관청, 할레(Halle) 및 데사우(Dessau)

**내용**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주에서 1993년 5월 7일에 체결된 그라이프스발트 결의안 제2항에 따른 교사자격 증명확인 절차의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교사자격의 증명확인 절차는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교사 교환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심사·평가를 담당한 사람의 소견서 작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문서에는 '교육인력의 자격 증명확인에 관한 평가인의 소견서'에 관한 자료가 첨부되었다.

**출처** Kultusministerium des Landes Sachsen-Anhalt. Archivder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문서  
번호 120

학술연구자통합프로그램(WIP) 종료 이후 연구 및 수업 현황  
1997년 3월 6일

**담당자 / 기관**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내 민주사회당 교섭단체 소속 안드레아스 트룬쉬케 박사(질문); 브란덴부르크주 학술·연구·문화부장관 슈테펜 라이헤(답변)

**내용**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민사당 소속 안드레아스 트룬스케 의원이 1996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학술연구자통합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질의한 것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트룬스케 의원의 질의는 학술연구자통합프로그램의 종료로 인해 브란덴부르크주 내 대학교의 강의에 차질이 야기될 것인가? 그로 인해 어떠한 학술적 주제들이 더 이상 다루어지지 못하게 되는가? 이에 대해 주정부를 대표하여 학술·연구·문화부장관 슈테펜 라이헤는 학사규정에 따라 계획된 강의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다. 어떠한 연구 활동과 연구 주제가 계속 수행될 것인가는 각 대학교들이 결정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교들은 많은 연구프로젝트를 신청한 상태이다.

**출처** Parlandsdokumentation Landtag Brandenburg, Drucksache 2/3836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정부

내용

이 문서는 연방정부가 발행한 통일독일의 현황에 대한 1997년도 연례보고서 중에서 교육 학술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1년에서 1995년까지 연방정부의 교육연구부(BMBF) 및 그 전신인 교육부는 약 121억 마르크를 신연방주 내 교육,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제공하였다. 여기에는 (대학 외 연구기관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32억 6,000만 마르크, 프로젝트 지원이 43억 4,000만 마르크, 그리고 (학자금지원, 대학설립 및 대학특별프로그램을 포함한) 특별지원이 44억 9,000만 마르크가 포함되었다. 1996년의 경우에는, 기관을 위한 지원이 10억 2,000만 마르크, 프로젝트 지원이 12억 마르크, 그리고 특별지원이 9억 마르크였다. 총 30억 마르크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수준은 앞으로도 몇 년 간 계속 유지될 것이다.

동서독의 통일과 신연방주들이 건립된 후 각 주의회는 1991년까지 학교부문의 개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에 따라 주마다 각각 고유한 학교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교육 및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직업상당이 특히 중요하다. 547,0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1995년 10월과 1996년 9월 사이에 신연방주에서 직업상당 기회를 이용하였는데, 이 중 약 209,000명이 직업교육을 신청하였다.

직업교육 확충 및 현대화를 위해 연방정부는 직업교육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충분한 수의 직업교육자리가 제공되도록 노력했다.

연방노동청(BA)은 1995년과 1996년 약 145억 마르크 상당의 금액을 직업추가교육 및 전환교육에 사용하였다. 관련해 1997년에는 연방노동청 예산에 약 59억 마르크를 배정했다.

출처\_ Parlamentsdokumentation Bundestag, Drucksache 13/8450

문서  
번호 122독일통일 과정에서의 구동독 학교의 개혁  
브란덴부르크 및 기타 지역의 경험

1998년

**담당자 / 기관** 마리안느 비르틀러(Marianne Birthler), 브란덴부르크 교육, 청소년 및 스포츠 부 장관관(1990-1992).

**내용**

이 문서는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장관회의 사무국이 이 기구의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발행한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책자에 수록된 마리안느 비어틀러 전 브란덴부르크 교육부장관(1990-1992)의 경험에 관한 보고이다. 이 글에서 마리안느 비르틀러는 구동독지역과 브란덴부르크지역에서 이루어진 학교개혁 과정을 광범위하고 생생하게 설명하였다.

## 1. 출발조건

- 1990년 말 구동독지역에서 신설될 예정이었던 각 정부부처들은 통일조약에 따라 교육제도의 개정안을 1991년 중반까지 도입해야 할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교사들 사이의 불안감, 아비투어를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 급증, 직업교육의 구조 개정 또는 과거와의 대면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

1989년과 1990년에 동독에서 시작된 개혁의 바람이 불어 동독체제뿐만 아니라 서독의 체제와도 다른 새로운 사회로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사회의 변혁은 궁극적으로 통일로 귀결되었고, 통일조약이 체결된 후에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인해 교육 분야의 개혁을 위한 행동범위가 지극히 제한되어 구동독사회의 민주화 및 연방국가로의 발전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었다.

## 2. 두 번째 변화

학교제도의 개혁과 관련해 구서독의 기준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비평없이 수용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개혁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여론의 화두는 내적인 학교개혁에서 학교구조의 개혁으로 급격하게 바뀌었다. 학교구조를 결정하는 데 시간을 더 들이자는 제안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은 불만과 불안감을 표출했다. 그 결과 동독에 있었던 통일된 종합학교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초등학교, 김나지움, 실업학교 그리고 계잠트슐레로 분화·전환되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동독체제 하에 존재하던 학교의 교육적, 교훈적 전통을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새로운 교육의 자유와 자유공간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동독체제에서 학교들은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의 요새와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 시작된 후 동독의 독재체제와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교육정책의 문제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고, 과거 당 간부, 슈타지 정보원 및 비밀경찰과 연루되었던 교사들을 해고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다.

### 3. 행정조직의 구성

통일 초기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내에 교육, 청소년 및 스포츠부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던 시기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재건기획조정실에서 근무했다. 2년 후에는 구동독과 구서독의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일하게 되었다. 구서독지역에서 온 동료들은 대부분 높은 의욕을 갖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전해줄 수 있는 것에 기쁨을 느낄뿐만 아니라 일종의 책임감과 모험심도 갖고 있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전문 지식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구동독지역의 공무원들이 일종의 도제와 같은 입장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게다가 동서지역의 상이한 급여체제와 많은 수의 구서독지역 교사들이 관리자급의 직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다.

### 4. 브란덴부르크의 길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학교의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교사, 학생 및 학부모 3주체의 의견이 동등하게 학교회의에도 반영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새로운 교육제도의 기본설계는 구동독과 구서독지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진이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육과정의 변화를 일종의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동독체제에서 교사가 담당했던 정치적인 역할을 고려하여 통일 후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가능하면 모든 학교에서 연수와 워크숍 등을 통해 그런 역사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권장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런 장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예산문제로 인해 인력을 20% 감축해야만 하게 되었을 때 브란덴부르크 주정부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하에 노동시간과 임금을 80% 삭감하는 대신 교사를 해고하지 않고 모든 교육 인력을 수용할 수 있었다. 브란덴부르크의 특별한 길로 불리는 이런 정책은 아주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교사의 해고가 인사위원회에서 합헌적 절차에 따라 개별 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추진된 학교 구조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6년제 초등학교제도는 도입하고, 하우트슐레는 도입하지 않기로 내린 결정이 바로 그런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학교개혁법을 통해 처음으로 의무교육이 장애아동에게도 확대되었으며 이들을 일반학교로 편입한다는 목표가 설정되었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의무교육 대상이 되는 학생 및 청소년의 10% 정도만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이 주에서는 삶-윤리-종교 과목(Lebensgestaltung, Ethik und Religionskunde, LES)이 새롭게 실험모델로 도입되었다.

### 5. 구서독지역과 상이한 구동독지역의 상황

구동독지역에서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KMK)에서 지정한 틀에서 구서독지역의 경우와 상이한 학교개혁이 실천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대부분의 신연방주들은 이원적 학급제도를 도입하고 계속해서 동독학교 및 12년제 대학입학자격시험 원칙을 고수하였다. 행정상의 도움은 각 자매주 차원에서 제공되었지만 자매주측에서 구서독지역에서 구동독지역으로 ‘강요’하는 식의 ‘통제’는 없었다. 오히려 구동독의 교육개혁과 관





련된 결정이 구서독의 논쟁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6.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는 형식적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통일과정으로 인해 상당한 도전과제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오히려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의 역사적 과제를 구동독과 구서독 간의 토론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통합기관에서 담당했으면 더 효율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Sekretariat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Hrsg.). 1998. Einheit in der Vielfalt: 50 Jahre Kultusministerkonferenz 1948-1998. Neuwied/Kriftel/Berlin.

담당자 / 기관\_ 1998년 하노버 개최 특수교육학 학술대회; 비르기트 프란츠; 브리타 쉬르머 박사

내용

통일 이후 동베를린이 그 권역에 포함되자, 전 베를린에서 자폐증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학생들의 수가 거의 2배로 증가하였다. 통일 이전 동독에서는 이러한 증상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 및 그 현황에 대한 파악이 서독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이다. 1992년에는 1개 학교에 위탁을 주고 2명의 추가 양호교사를 투입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서베를린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받은 바 있던 자폐증 관련 특수교육체계가 동베를린지역에도 이전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서베를린에는 빌머스도르프지역에, 동베를린지역에는 프리드리히스하인지역에 각각 자폐증 아동을 위한 위탁학교로서 아동지원 센터가 존재하게 되었다.

출처\_ Entwicklungen-Standort-Perspektiven, Sonderpädagogischer Kongress in Hannover 1998(<http://www.dr-brita-schirmer.de/pdf/artikel07.pdf>)



문서  
번호 124

‘체제변환—구동독지역 내 주간 탁아시설(Kindertagesstätte, Kita) 체험/엘케 헬러 (Elke Heller)

**담당자 / 기관** 그로스 글리니케(Groß-Glienicke) 소재 유치원장이자 포츠담(Potsdam)군 유치원 전문위원회장 엘케 헬러 박사

**내용**

이 문서는 엘케 헬러 박사가 베를린자유대학교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원고이다. 이 글은 통일 이후 새로운 시작에 대한 자신의 관점 및 신연방주의 보육시설 업무 개발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교육자

1990년 10월 1일에 이미 신연방주에서 발표된 아동·청소년복지법과 더불어 법적 토대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이전에 유효하였던 교육프로그램, 기본지침, 명령과 같은 규정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수의 교육자는 본인의 직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여, 이른바 자격취득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많은 교육자가 주간 탁아시설 업무의 법적 토대를 다른 교육자 양성교육 일부가 중요한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모든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앞으로의 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 교육개념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제시

경제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른 토대를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에서 주간 탁아시설의 보육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제는 신연방주의 교육자들에게 있어 예기치 못한 상당한 부담이었다. 동독에서 아동 보육 및 교육은 사회주의적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인민 양성을 지향하고, 인민에 대한 모든 것을 당이 사전에 계획하고 규정하였던 반면, 민주적으로 구성된 통일된 독일의 사회체제 내에서는 어릴 때부터 아동의 자기결정력, 자기책임, 자주성, 개성을 존중하고 또한 이를 북돋아 주어야 한다. 일부 교육자는 새로운 방식을 시험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개념을 익히고 실행해야 하는 요구에 부응하였다.

또 다른 일부 교육자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그들에게 명확하고 체계화된 목표 방향과 확신, 안정감을 주었던 전문적인 업무기반이 붕괴되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계획 없는 교육 업무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으며, 몇몇 교육자들에게는 지금까지도 그러하다. 그들은 홀로 방치되어 과중한 요구에 직면하여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교육자는 연수를 통한 집중 및 성찰의 과정에 있어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젝트 모델을 통하여 지원받고 있다.

헬러 박사는 오늘날 주간 탁아시설 여건이 더욱 다채롭고 다양해졌다는 점을 환영한다. 부모는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염두에 두고 있는 시설 수준에 적합한 주간 탁아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 헬러 박사는 나아가 구동독지역에서도 구서독지역과 마찬가지로 교육자

로 하여금 업무에 필요한 공인 및 가치평가를 받도록 그들에게 동기부여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구동독지역 전문가들이 나서서 역량과 기량을 결집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출처\_ Internationale Akademie an der FU Berlin



문서  
번호 125

“사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서문  
2000년

**담당자 / 기관** 서독 교육과학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BMBW),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KMK), 동독 교육과학부(Ministerium für Bildung und Wissenschaft, MBW), 행정관청장회의

**내용**

이 문서는 1990년 6월에서 9월 사이 진행된 교육정책상의 통합과정 및 구동독지역의 교육 정책에 미친 영향을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1월부터 정치, 경제적 접근 및 통합 과정과 병행하여 서독 교육과학부와 동독 교육과학부 간 접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 5월에서 9월의 기간 동안 공동교육위원회(Gemeinsame Bildungskommission)가 통일조약을 위한 통합과정 내지 협상과정의 중심을 이루었다. 공동교육위원회는 5월 본(Bonn)에서 열린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의 발의를 통해 설치되었다. 공동교육위원회 임무는 통일을 이루기까지 동독과 서독 양국 간 협력과 양국의 교육 및 학문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데 있다. 공동교육위원회는 동독과 서독 양국에서 선발된 16명의 대표로 구성되었다. 교육위원회는 9월에 해체되기 전까지 총 3회 열렸다. 공동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정책 통합과정에 대하여 도출된 성과는 다음과 같다.

동독과 서독 양국의 상이한 교육제도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구서독지역의 학교체제 기반을 이어받는 것이 핵심이었으나, 결코 서독측이 중심이 된 강압적 강요는 아니었다. 그와 동시에 동독의 특성이 고려되었다.

동독측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관찰될 수 없었다.

- 교육에 관한 소송권
- 모든 구동독지역에서 유효한 특별한 학교기본법의 마련
- 10년 과정의 전일제학교 의무교육
- 10년 과정의 동독 정규학교 교육의 광범위한 수용
- 아비투어(Abitur)를 포함한 직업교육의 제약 없는 유지
- 종합기술교육 수업 유지
- 교사 양성교육 2단계를 대학과 연계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오직 각 주에서 유보된 학교법과 관련하여 실현될 수 있거나 또는 개정된 형태로 기간이 제한된 과도기적 규정으로 허용될 수 있다.

- 절충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다.
  - 학력의 동등성
  - 12년의 교육과정 이수 후 아비투어 응시의 부분적 유지
  - 다양한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중등교육 1단계(Sekundarstufe I)의 학교개혁 수용
  - 취득한 교사자격 인정

한편 통일조약을 구동독지역 교육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기회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통일조약은 구동독지역에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교수법과 교육학의 변화를 기대했던 동서독 사람들에게는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제정된 신연방주의 교육 및 학교법은 신연방주가 체결된 기본협약을 통해 주어진 재량권을 바탕으로 보호 가치가 있으며 바람직한 동독의 요소들을 새로운 틀로 옮겨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연방주는 교육에 대한 권리를 수많은 학교법상에 근거를 갖도록 하였다. 브란덴부르크주는 아비투어 응시 때까지 우선 12학년 이수를 고수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는 이분적 학제를 선호하는 예외규정이 있다.

공동교육위원회의 틀에서 발전된 ‘공동의 비교 가능한 기본구조’가 ‘단일의 기본구조’라는 개념을 대체하였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각 주의 교육자치권이 강화되었고, 주 고유의 출발점과 이해에 따른 유연성이 증가되었다.

**출처** Köhler, Gabriele/ Knauss, Georg/ Zedler, Peter( Hrsg.). 2000. Der bildungspolitische Einigungsprozeß 1990. Opladen: Leske + Budrich. S. 11-53.



문서  
번호 126

구동독지역 교육시설 및 청소년사업에 대한 연표(1945-1991년)  
2003년 9월 18일 기준

담당자 / 기관\_ 클라우스 디터 슈탐(Klaus Dieter Stamm)

내용

이 문서는 1991년 1월에서 12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구동독지역에서 새로 개정된 학교법을 연표로 엮은 것이다.

교육제도 및 청소년사업을 위하여 제정되었던 의결사항 및 새로운 법령의 중요한 발전사항이 연표에 목록으로 정리되어 있다.

출처\_ <http://www.ddd-schulrecht.de> vom 28.10.2010

2003년 10월

담당자 / 기관\_ 하이케 카악

내용\_

이 문서는 교육청의 직원이었던 하이케 카악이 통일과정 중 학교체제의 변화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설명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화, 경제 및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고 곧이어 통일이 실현되고 신연방주들이 설립될 것으로 전망되던 무렵에 동독에서는 대부분 학교체제를 서독체제에 상응하도록 변화시키는 것만이 유의미한 변화의 방향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1990년 3월 최초의 자유총선거가 실시되고 최고인민의회가 선출된 이후에 동독 교육부의 상황은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니었다. 교육부의 지도부만이 교체가 되었을 뿐 그 전체적 구성 자체는 그 전의 사회주의통합당에 의한 독재시절과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동독 교육부 전체에 복사가기 단지 두 대밖에 없었을뿐만 아니라, 팩스기기는 하나도 구비되지 못했다. 서독의 수도 본으로 전화연결을 하려면 매번 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때문에 공무원들은 더 나은 설비를 갖추고 있었던 근처의 제국의회건물로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하이케 카악의 업무는 무엇보다도 이데올로기적으로 점철되었던 교과과정인 국가시민교육 과목(Staatsbürgerkunde)을 대체할 사회 과목(Gesellschaftskunde)의 기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동독 교육부 직원들에게 서독의 교육제도가 어떻게 가능하고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는 난관이 있었다.

통일조약에서는 무엇보다 경과규정들을 통해 주정부 교육문화장관협의회가 작성했던 동독 교육제도의 변혁을 위한 기본틀이 규정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신연방주들은 1991년 6월 30일까지 각각 주학교법을 제정하여 교육부문을 재구성해야만 했다. 그리고 1990년 9월에 이미 서독식 모델에 따라 교원양성이 이루어질 것이 인민의회에서 의결되었다.

1991/1992학년도가 시작되었을 때 (작센의 경우에는 그로부터 1년 후) 새로운 학교법 그리고 행정법의 규정들과 새로운 교수방법 및 내용이 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교사들에 실행되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에는 동독체제 하에서 근무했던 인원 중 10에서 20%에 해당하는 교원들만이 감축되었다. 교장급 인원만 정치적으로 혹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과거사문제가 없는 인원으로 전원이 교체되었다. 통일조약에서는 전문능력이나 적성에 있어서 흠결, 수요 부족, 인권이나 법치국가원리의 위반 혹은 슈타지와 협력했던 사실의 존재 등이 교원업무로부터의 해고요건으로 제시되었었다. 이러한 요건들은 각 연방주에서 각각 다르게 해석 및 적용되었다. 작센주에서는 무엇보다도 교원들이 “인격적으로 정직했는가”를 중요하게 보았다면, 그에 비해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나 작센-안할트주에서는 전문능력이 현 교원의 심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출처\_ [http://germanhistorydocs.ghi-dc.org/pdf/deu/Chapter13\\_doc8.pdf](http://germanhistorydocs.ghi-dc.org/pdf/deu/Chapter13_doc8.pdf)





문서  
번호 128

학교 교수계획에서 동독 역사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2004년

담당자 / 기관\_ 올리히 아른스발트

**내용\_**

이 논문에서 다루는 질문은 어떻게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독일 역사의 한 부분이 학교에서 이 체제를 경험하지 못했던 청소년들에게 전달되는지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각 연방주 특유의 교과과정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역사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역사 교과에서 (각 주의 모든 역사 교과서 중) 55 퍼센트가, 또 사회 교과 및 정치 교과에서는 33 퍼센트가, 그리고 독일어 교과 및 종교 교과에서 일부가 그러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전후 독일에서 새로운 정치적인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 역사 교과 과정에서 상세히 다루어진 것에 반해, 당시 상이한 정치체제 및 사회질서가 태동하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단지 암시가 이루어진 수준이었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사회를 그 체제의 특징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은 단지 시도만 된 수준이었었는데, 부분적으로는 그것도 학생의 상당한 선행지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그중에서도 사회주의라는 사회모델과 그의 이론적이자 이데올로기적인 전거에 대해서는 역사 교과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사회사에 대해서도 단지 부분적으로 설명이 되었는데, 특히 소련점령지구 및 독일민주주의공화국에서 1945년과 1989년 사이의 저항과 반발, 그리고 비타협의 역사는 매우 상이한 정도로 다루어졌으며, 부분적으로는 독일연방공화국 내 저항운동의 고찰과 관련되어 논의되었다. 독-독 간 관계 및 국제적 맥락 하에서 통일의 문제는 특히 김나지움 교과과정에서 중요했다.

전체적으로 보아 이들 교과과정에서 다양한 주제영역들은 상이한 정도의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었다. 저자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이루어진 전문적 연구의 결과가 교과서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교사들의 양성교육에 있어 대학에서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역사에 관한 수업 기회가 더욱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_**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Hrsg.).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41-42/2004

담당자 / 기관\_ 다그마 쉬판스키

내용\_

전 튜링겐주 학술·연구·예술부 장관이자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전 독일 주정부 교육문화 장관협의회 의장이었던 다그마 쉬판스키는 이 글에서 동독 교육부문의 특징을 정리하는 한편 교육정책적 측면에서의 통일과정을 요약하였다. 그중 특히 개혁과정에서 신연방주 간에 각각 고유하게 발전한 교육제도 및 (엘리트양성, 8년과정 김나지움과 같은) 구동독 학교제도가 유지된 측면들이 강조되었다.

대학 및 대학 외 연구부문에 있어 특히 교육과 연구가 함께 추구된 것과 구동독 학술원 기구들이 기존의 연구기관들에 편입되게 된 사항 역시 강조되었다. 라이프니츠-게젤샤프트의 경우처럼 기관 내 구조에는 유사성이 있기는 하지만 신연방주에 설립된 기관이 더 현대적인 면모를 띄기도 한다.

출처\_ Konrad-Adenauer-Stiftung e.V.(Hrsg.). 2009. Dreiig Thesen zur deutschen Einheit. Freiburg: Herder Verlag, 182-193



문서  
번호 130

### 빌프레트 자이링 전 베를린교육청장과의 인터뷰 2010년 10월 19일

**담당자 / 기관** 빌프레트 자이링 전 베를린교육청장

**내용**

본 인터뷰가 이루어진 빌프레트 자이링은 베를린교육청장을 역임했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독지역의 교사들은 교과별로 새롭게 등급이 매겨졌다. 서독과 동독 출신의 교사들은 상호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각각의 학교를 방문하였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출신 교사들에 있어 혹시 동독 국가보위부를 위해 활동한 여부를 묻는 설문지에 대한 응답문 작성은 의무사항이었다.

신연방주들 내에서 사용될 기본 교과계획 및 교과서는 구연방주들로부터 전달되었다.

**출처** Interview des Forschungsprojektes Wiedervereinigung, Institut für Koreastudien, Freie Universität Berlin

담당자 / 기관\_ 지빌레 폴크홀츠 전 베를린 학교·직업교육·스포츠부장관

내용\_

지빌레 폴크홀츠는 1989년 3월부터 1990년도 11월까지 베를린 학교·직업교육·스포츠부장관을 역임하였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 학교·직업교육·스포츠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동·서독 간에 교원들 및 학교들 간의 가능한 한 폭넓은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동독지역 선거 이후인 1990년 5월부터 동베를린 시정부와 서베를린 시정부 간의 협력이 시작되었다. 동베를린 시정부는 2주에 1번 회의를 가졌다. 학교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그룹이 투입되었다.

종합기술고등학교 및 확대일반고등학교(EOS)를 6년제 초등학교 및 그에 이어지는 종합학교 또는 김나지움으로 변경하는 안이 제안되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시점에 있어 하우스슐레에 대한 수요가 서베를린의 이주자층에서 낮았기 때문이다. 다수의 구(區)에서 이와 같이 실행하였는데, 물론 항상 누가 자문을 했는가에 따라 달라지기도 했다.

교사의 추가교육은 담당 교과에 집중되어 시행되었는데, 사실 교과적 지식에 있어서 이들 교원들에 부족함은 없었다. 실제로 어려웠던 것은 어떻게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질문이었다.

이 때문에 그에 동반되는 추가교육을 실시하고 상호 교류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이 변화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의 머리 안에도 변화가 생긴다.

출처\_ Interview des Forschungsprojektes Wiedervereinigung, Institut für Koreastudien, Freie Universität Berlin

담당자 / 기관\_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학교와 미디어 지방 연구소(LISUM)

내용\_

인터뷰 참가자

로타 차일레(Lothar Zscheile) 박사, 로즈마리 베크(Rosemarie Beck), 보리스 안게러(Boris Angerer) 그리고 박수진(Su Geen Park)

로타 차일레 박사는 과거 동독시민으로 동독에서 러시아-영어 교사의 교사양성과정을 밟았다. 그는 독일통일 이후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새로 설립된 교육, 청소년 및 스포츠부에서 모든 학교제도, 학과, 직업훈련과 일반교육의 종합적 기본 계획을 세우고 그후 6년 동안 LISUM에서 근무하였다.

로즈마리 베크는 1991년부터 LISUM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초기에 러시아어, 폴란드어 및 영어와 불어를 제외한 기타 소수 외국어의 기본 교과 과정을 보조하였다. 베크는 현재 제 III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에서의 초등학교 외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보리스 안게러는 중등 및 고등 교육과정의 기초 사회과학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의무교육 이상의 상급 학교의 종합적 기본 교과 과정의 기획, 특히 정치학과 역사학과 같은 기초 사회과학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2002년부터 LISUM에서 근무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세 명의 전문가와의 인터뷰는 두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핵심 주제는 독일통일 이후의 일반 교육 및 외국어와 정치교육 과목의 기본 교과 과정에 대한 개혁이다.

1. 출발 분위기는 사람들이 시간적인 압박감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움, 새로운 것을 이룩하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일종의 도취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2. 단기간에 새로운 과정, 방식, 수업방식, 교재 그리고 학교형태와 관련한 너무 많은 변화가 기대되었다. 통일조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엇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교사들을 다룰 때에는 특히 많은 인내심과 배려심이 요구된다.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3. 초기에는 기본 교과 과정에 대한 구상 없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표본만 존재했다. 그리고 몇 년 후에야 구상을 발전시켜 갔다. 그러나 차후에 구상을 발전시키는 방식은 과목 간의 틈이 벌어지고, 과목 간의 관계 또한 조화롭게 발전되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반작용을 일으켰다.
4. 이 단계에서 의견의 교환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5. 종합적 기본 계획을 발전시키면서 기본 계획 그룹의 회원들이 직접 교사들과 그들의 계획에 관하여 대화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만남의 자리는 참가자가 120명이 넘는 대규모 행사를 비롯하여 국가교육청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고무적이고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지만 동시에 돈이 많이 필요했던 과정

- 이기도 하였다.
6. 브란덴부르크에서는 1학년부터 외국어 수업을 도입하였다. 이것은 브란덴부르크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이 함께 발전시킨 아주 획기적인 모델이었다. 동독에는 기존에 5학년부터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3학년 때에 외국어 수업이 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브란덴부르크에서는 독일 전국에서 최초로 현대 외국어를 위한 학급을 뛰어넘는 기본 계획을 발전시켰다.
  7. 모든 학교 형태가 아닌 모든 학급을 위한 계획이 세워졌다.
  8. 학교에서는 주민교육 수업 대신에 정치수업을 가르쳤다. 정치수업 교사들은 과거에 주민교육 수업을 담당했던 교사들이 아니라, 다양한 과목을 가르쳤던 교사들로 정치수업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을 다시 받은 교사들이었다.
  9. 정치수업과 관련하여 1990년대 중반에 구연방주의 기본 계획을 적용시키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자체적인 기본 계획은 2000년 초에 적극적으로 마련되었다.
  10. 초기에는 베를린-브란덴부르크 학교와 미디어 지방 연구소에 많은 인원으로 구성된 정규직 팀이 운영되지 않았다. 팀은 동독과 서독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함께 협력하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상대방의 진실한 면모를 알게 된 것이다.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여 결국 해체된 그룹도 있었지만 이것은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었다.
  11. 의사소통과 갈등을 이겨내는 경험은 통일과정의 한 부분이었다. 이 과정은 또한 재교육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출처\_ Interview des Forschungsprojektes Wiedervereinigung, Institut für Koreastudien, Freie Universität Berlin



문서  
번호 133

### 국가공인 교육자 적응교육연수를 위한 법안 2010년 12월 13일-17일/2011년 1월 3일-14일

담당자 / 기관\_ 커뮤니케이션 및 중재 기관(Institut für Kommunikation und Mediation, IKOME)

####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체제 하에서 교사자격을 획득한 모든 유아원 교사, 유치원 교사, 호르트(Hort) 교사들이 직무자격에 대한 국가공인을 받기 위하여 자격취득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을 증명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자격취득연수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 동독에서 법령에 따라 취득한 교육직무 자격
- (독일) 국가공인 교육자 업무범위 내에서 동독에서 취득한 직무자격에 대한 일부 인정
- 교육 분야에서 최소 2년의 교육 경험(12개월 아동교육 참작 가능)
- 경찰 신원조회서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뒤에는 ‘국가공인 교육자’ 직무자격이 주어진다. 연수비용은 840 유로이며 160 유로의 시험료가 가산된다.

출처\_ Institut für Kommunikation und Mediation







문서  
번호 135

## 신연방주 내 연구환경의 확충

2015년 5월 5일

담당자 / 기관\_ 헬름홀츠-게젤샤프트

### 내용\_

독일 헬름홀츠 연구협회는 구동독지역의 연구환경을 보전하고 또 이를 높은 학문적 수준으로 재건하는 데 공헌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독일 헬름홀츠연구협회 소속 연구소들이 소개되었다. 그중에는 1991년에 설립되어 현재 4개 소재지에서 거의 900명의 연구진을 갖추고 있는 헬름홀츠환경연구소가 있다. 포츠담의 헬름홀츠지구과학연구소는 1992년도에 설립되어 1,000명의 연구진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는 세계에서 최초로 지구과학의 전 학문분야가 통합되었다. 베를린 부호지역의 막스-델부릭 분자의학센터는 1992년도에 설립되어 800명 이상의 학자를 고용하고 있다. 1992년도 이래 독일 항공우주연구센터는 베를린 아들러스호프지역 및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노이슈트렐리츠지역에도 연구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994년도에 독일 헬름홀츠연구협회의 협력 회원인 막스-플랑크연구소 내 플라즈마물리학연구소가 그라이프스발트에 설립되었다. 그 외에 포츠담에는 알프레트-베게너 극지 및 해양연구소가 존재한다.

출처\_ [http://www.helmholtz.de/ueber\\_uns/die\\_gemeinschaft/geschichte/helmholtz\\_gemeinschaft\\_in\\_den\\_neuen\\_bundeslaendern/](http://www.helmholtz.de/ueber_uns/die_gemeinschaft/geschichte/helmholtz_gemeinschaft_in_den_neuen_bundeslaendern/)